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881-000003-10

RM2018-11

제 1 7 호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881-000003-10

RM2018-11

제 1 7 호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날로 증가하고 기술혁신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이직, 전직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대폭 커질 것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을 촘촘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직자, 재직자 재교육 수요 증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2008년 26.4%에서 2017년 35.8%로 증가하는 등 참여율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인평생교육 활성화’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간의 평생교육 진흥 방향과 청사진이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 법령과 전달 체계에서부터 영역별, 대상별,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 등 그 간의 평생교육의 변천과 추진 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2017 평생교육백서'는 여러 모로 뜻깊다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종합 안내서인 이번 백서가 국민들께 유의한 자료집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책자를 발간해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상 곤**



인사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기구로서 그 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예산의 일부로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의당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계, 평생교육행정계, 평생교육학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집적하고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자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평생교육백서는 이러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함께한 바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백서는 3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신뢰하는 자료가 됩니다.

평생교육백서에서 주목하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적인 교육활동은 프로그램화된 교육활동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일상의 평생교육은 적어도 「평생교육법」의 대상이 아니며, 평생교육백서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백서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주목하고, 이에 한정하여 정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평생교육의 법적 기초와 전달체계를 다루고, 영역별, 대상별,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과 전체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현황도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현황을 제시하고,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그 활동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백서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 나아가 평생교육정책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평생교육정책사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년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좀 더 진전된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생교육백서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토대 위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성찰이 중요합니다. 분석은 말할 것도 없고 성찰에도 해안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백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기구로서 국민 여러분의 기구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미래는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2017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위원, 집필위원, 정책관계자, 기획 실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윤여각**

도입

INTRODUCTION

- 한눈에 보는 평생교육 역사
-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한눈에 보는 평생교육 역사

	1980년대	1990년대
평생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명문화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 교육부 장관에게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할 의무 명시 ▶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교육부 행정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 1983년 사회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 ▶ 1986년 사회국제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평생교육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독학학위제 업무) 설치 ▶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개시(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 진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
주요 특징 및 역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규정 ▶ 평생교육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 ▶ 대학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설치 ▶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교육 확대 ▶ 언론사 및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 등 민간 평생교육기관 확대 ▶ 사내대학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고등교육 참여 확대 추진(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 1990년 독학학위제 운영 개시 ▶ 1997년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 ▶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개시

2000년~2007년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

- ▶ 2001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4년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명칭 변경
- ▶ 2005년 평생학습국으로 명칭 변경

- ▶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 설치
- ▶ 2000년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 ▶ 2002~2006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제1,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중앙 및 지역단위 평생교육지원체제 기반 마련
-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본격화
- ▶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문화 관련사업 시작

- ▶ 2000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제도 시행
- ▶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작
- ▶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개최
- ▶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상 개최
- ▶ 200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

2008년~현재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09년~현재) - 주요 내용

- ▶ 2009년 평생학습계좌제 제도기반 마련
- ▶ 2013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일원화
- ▶ 2014년 문해교육 개념 확장·지원 근거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 2015년 지자체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 2016년 문해교육 지원체계 및 문해교육센터 설치 근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설립 근거 마련

-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 ▶ 2013년 교육부로 개편
- ▶ 2014년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 ▶ 2008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18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 2011~2016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부산, 대전, 충북, 경기, 울산, 제주, 충남, 인천,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전남, 경남, 서울, 세종, 전북-개원순)

- ▶ 2008~2012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13~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18~2022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임무 부여
- ▶ 중앙-광역-기초 지역단위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 ▶ 대학평생교육활성화 및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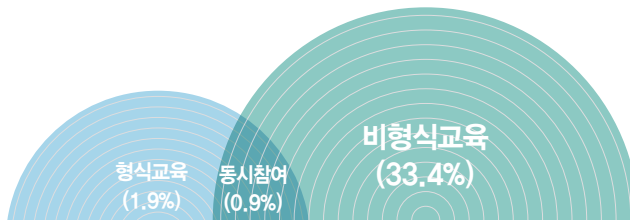
- ▶ 2008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시작
- ▶ 2010년 평생학습계좌제 시행
- ▶ 2011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시작
- ▶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 2012~2015년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 2014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비스 개통
- ▶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시
- ▶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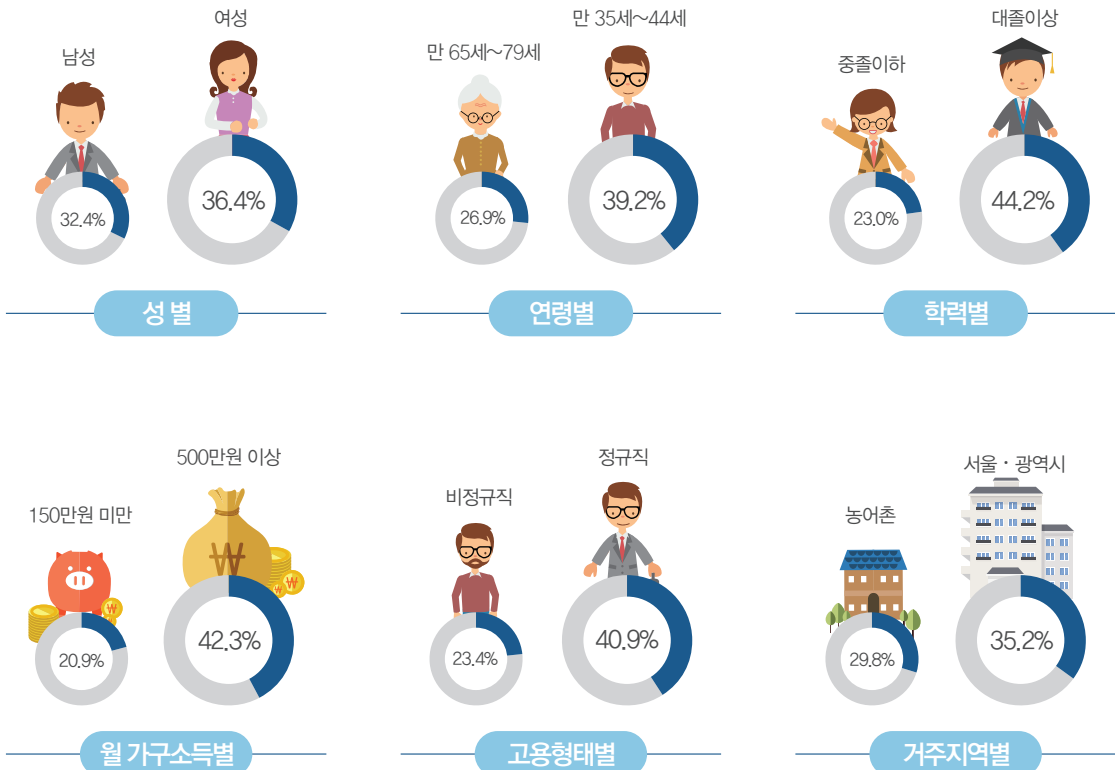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이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7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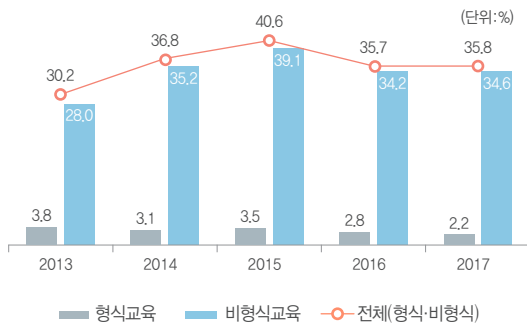


형식교육+비형식교육-동시참여 =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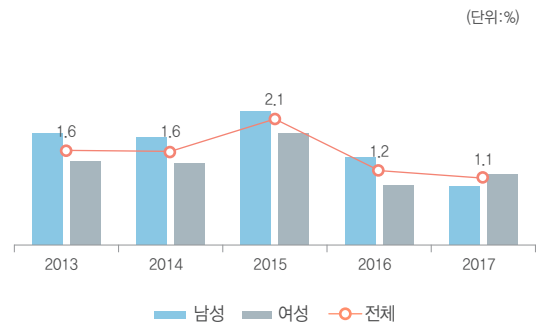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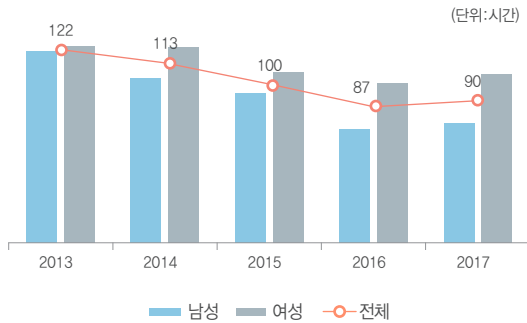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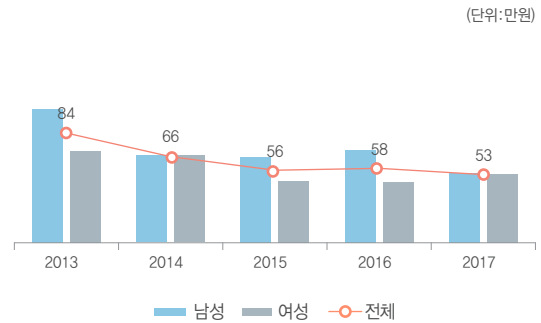
평생학습 동시 참여자 비율²⁾



비형식교육 참여시간³⁾



자기부담 학습비⁴⁾



1) 1년간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율

$$\text{평생학습 참여율(\%)} = \frac{\text{형식교육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참여자} - \text{동시참여자}}{\text{한국의 성인인구}} \times 100$$

※2017년 실태조사는 만25세~79세 한국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해 만25세~64세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35.8%)를 나타낸 것임.

2) 평생학습 동시 참여자 비율(%) = 형식교육 참여율 + 비형식교육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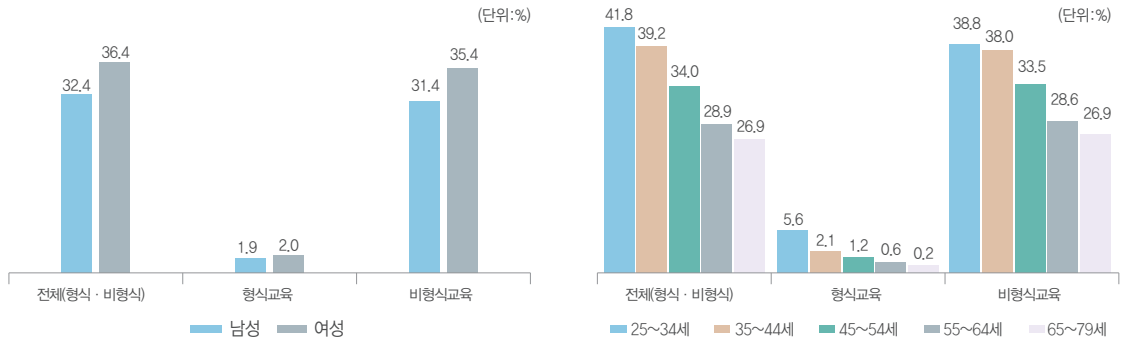
3) 지난 1년간 비형식교육 참여자들의 연평균 교육 참여시간. 비형식교육이란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예: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백화점문화센터 등 프로그램 수강, 직무연수나 특강, 학원 수강, TV 및 인터넷 강의 수강, 학습 동아리, 개인교습 등)

4)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투자한 자기부담학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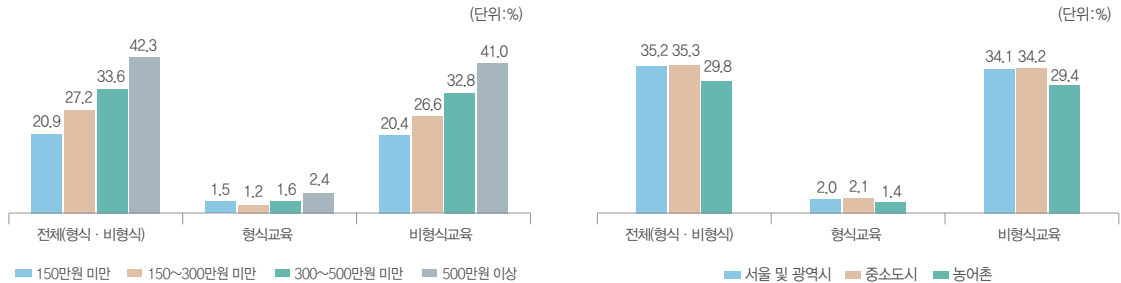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 현황(배경변인별)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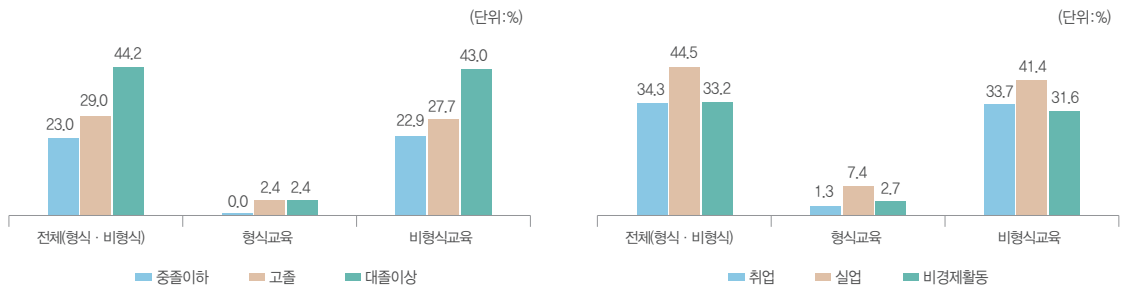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월 가구소득별,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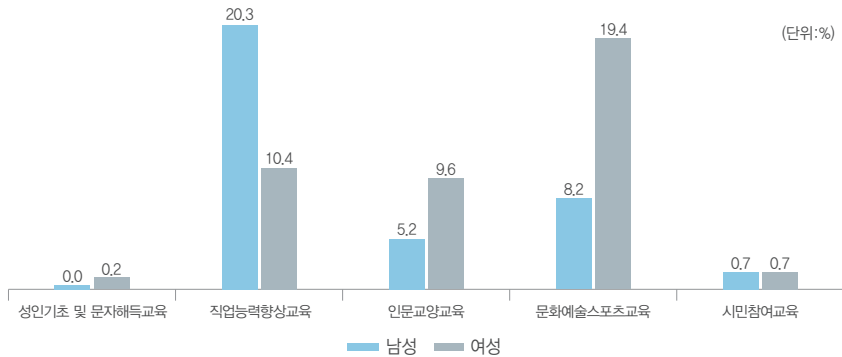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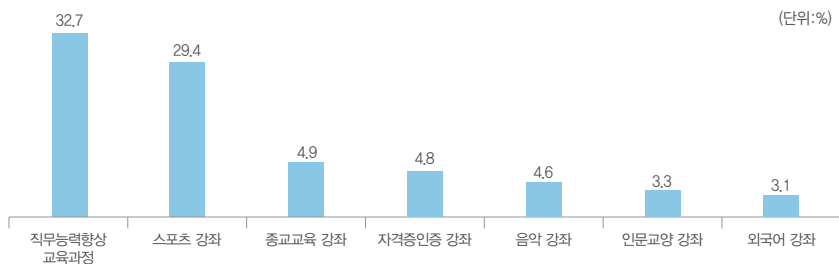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 현황(비형식 교육)

평생교육 영역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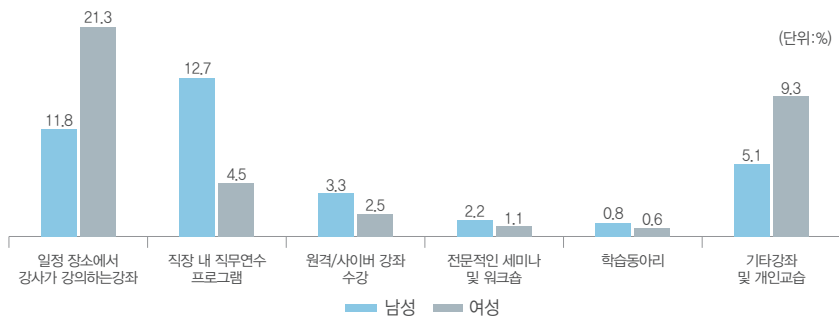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율(상위7위)



주: 1) 비형식교육 참여자(만 25~79세)의 참여 프로그램 응답 수에 대한 현황임
 2) 한 사람의 응답자가 '6가지 비형식교육 영역별'로 최근 참여한 프로그램을 3개까지 응답 가능(최대 18개의 참여프로그램)하며, 1인당 약 1.3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평생교육 참여 형태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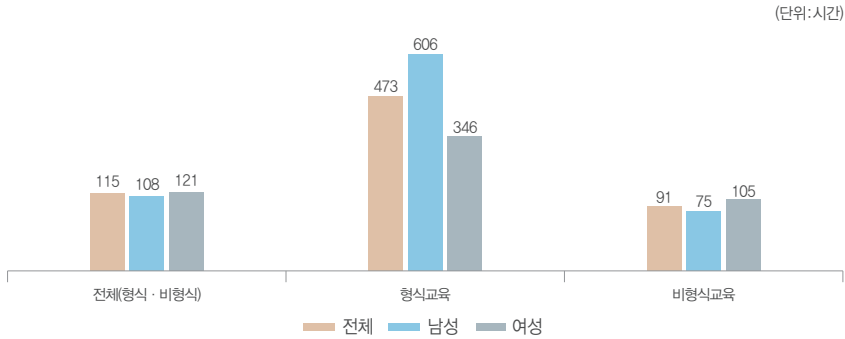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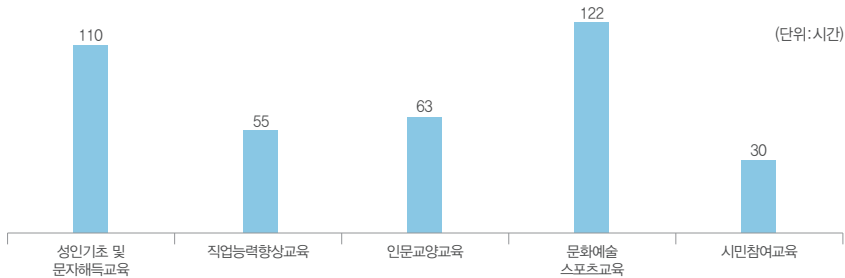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평생학습 연평균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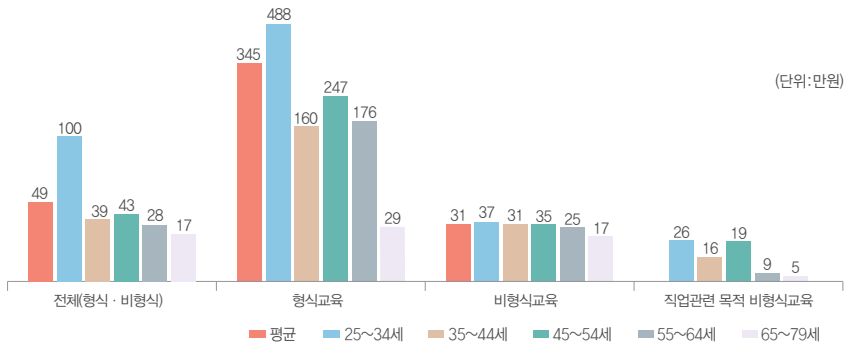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비형식교육 영역별 연평균 참여시간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평생학습 연평균 자기부담 학습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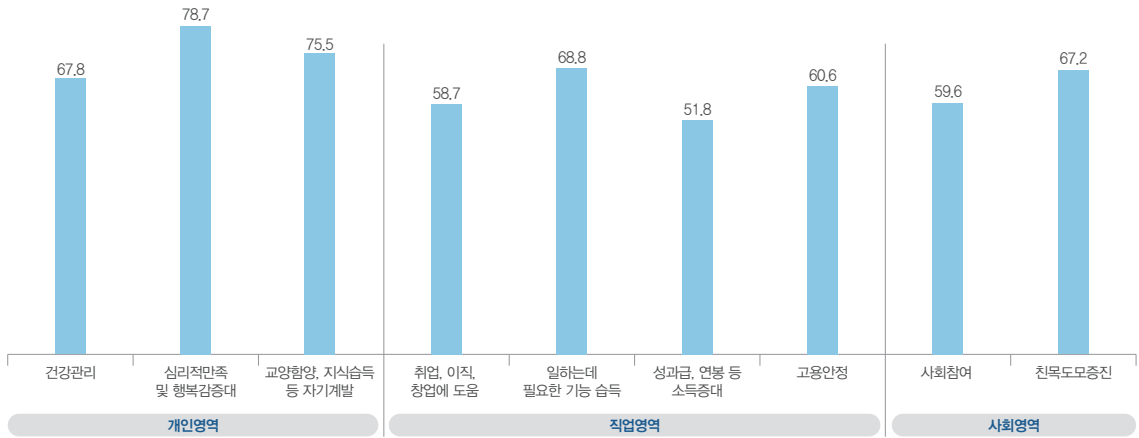
주: 1)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직업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평생학습 성과

평생학습 성과(개인·직업·사회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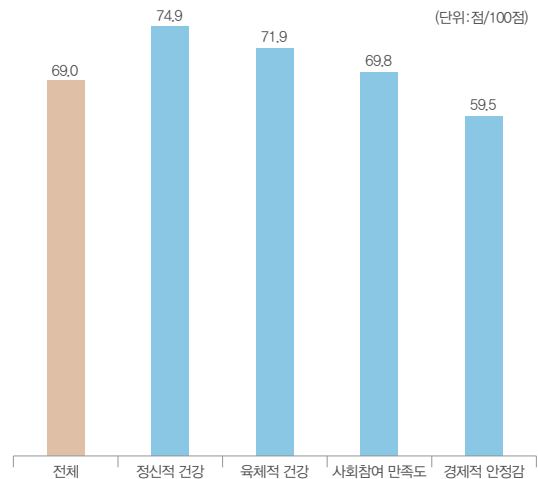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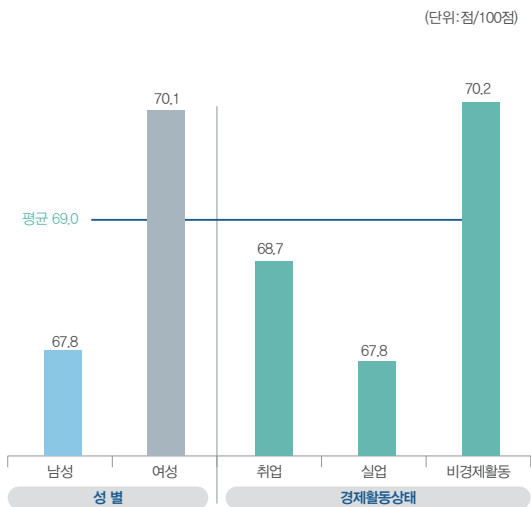
(단위: 점수/100점)



주: 1)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5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안 됨 ~ 5점: 매우 도움이 됨)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삶의 질 향상 기여도(성별, 경제활동상태별)

삶의 질 향상 기여도(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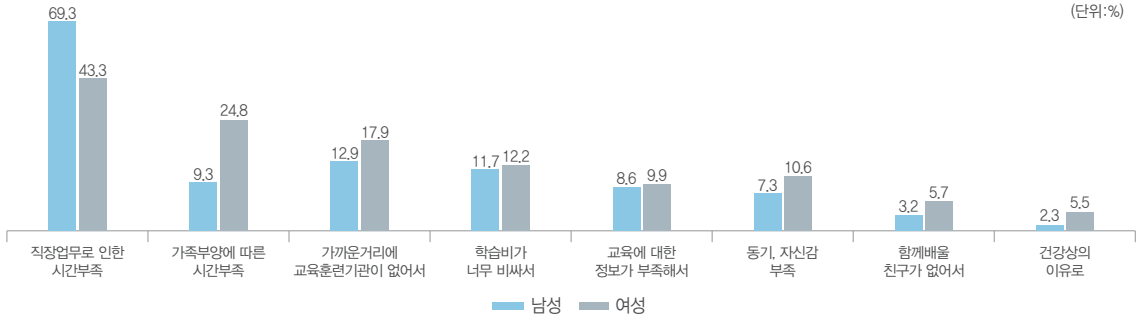
주: 1)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5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안 됨 ~ 5점: 매우 도움이 됨)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주: 1)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5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안 됨 ~ 5점: 매우 도움이 됨)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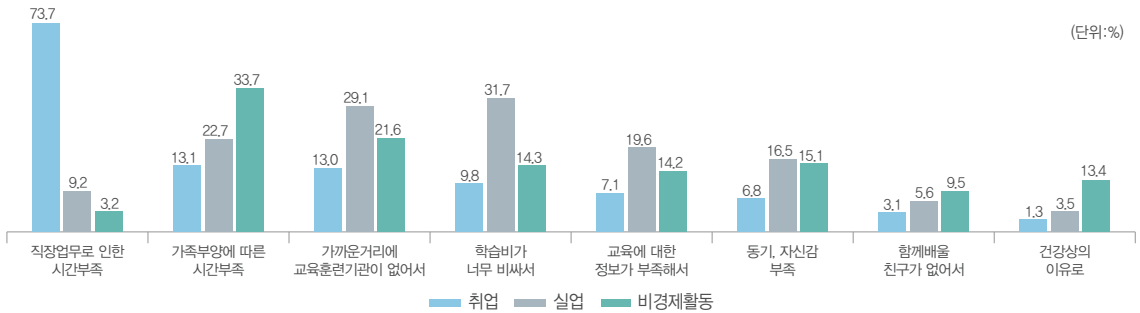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 환경

평생학습 불참요인 (성별 : 상위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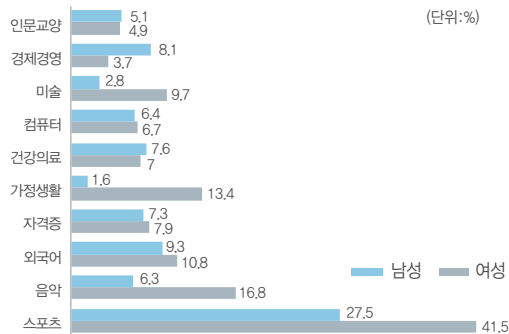
주: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만 25~79세)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 문항임

평생학습 불참요인 (경제활동상태별 : 상위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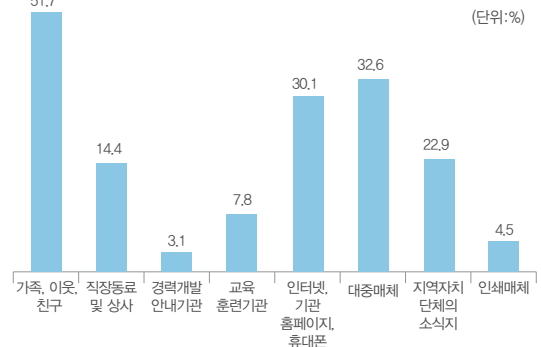
주: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만 25~79세)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 문항임

참여 희망프로그램(상위10위)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임

평생학습 정보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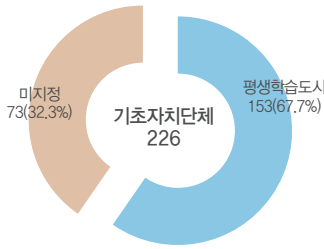


주: 20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임

평생교육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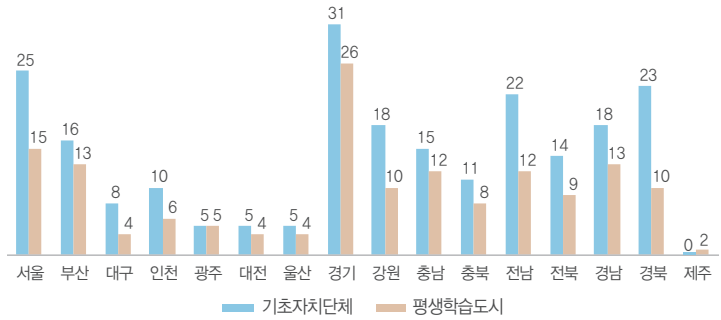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비율(201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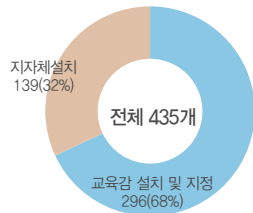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현황(201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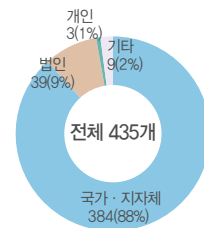
평생학습관

설치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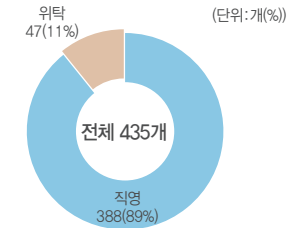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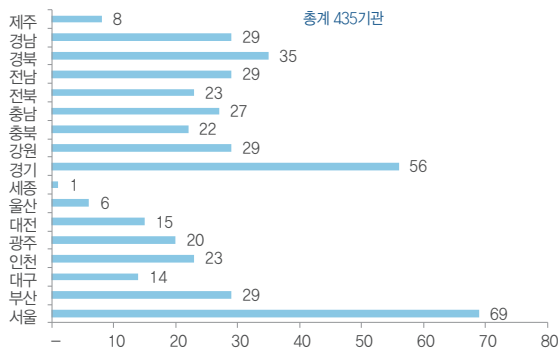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운영 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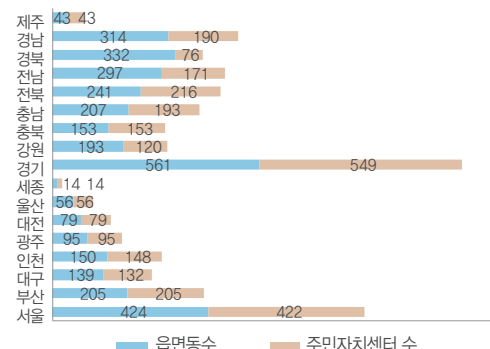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지역별 평생학습관 수(2017)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주민자치센터설치현황(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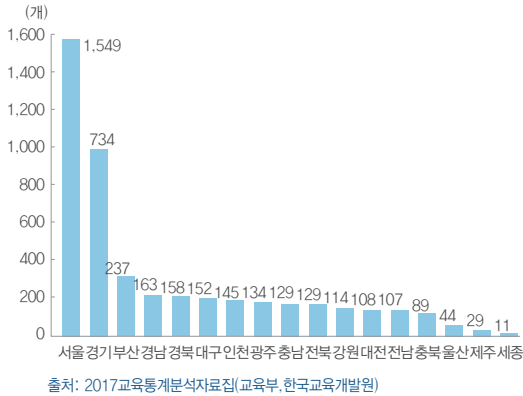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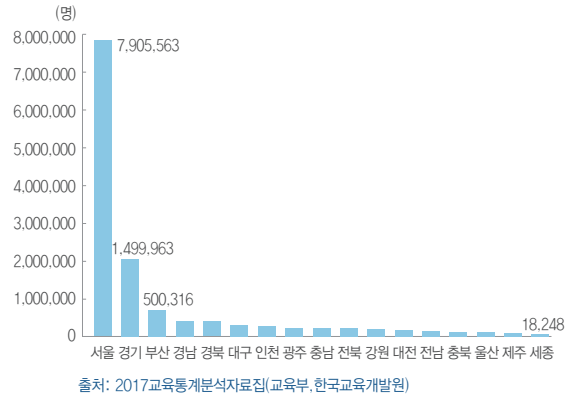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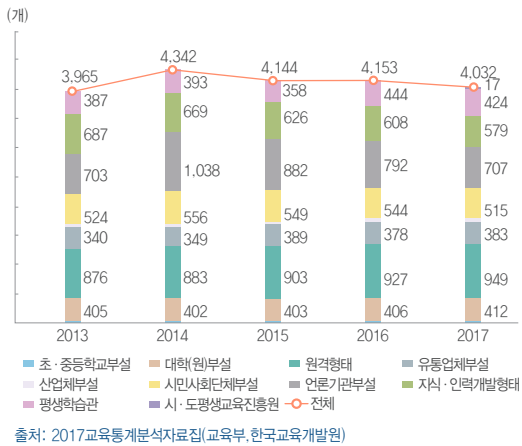
지역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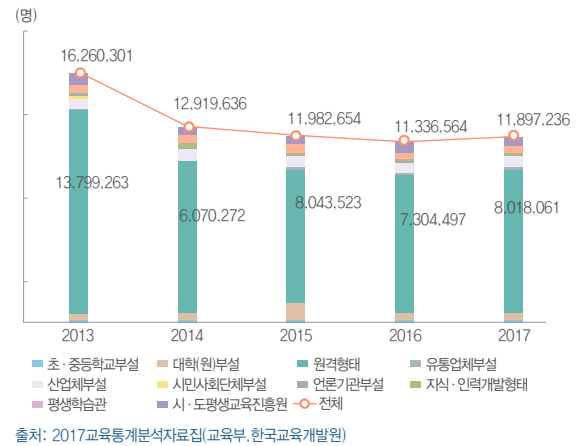
지역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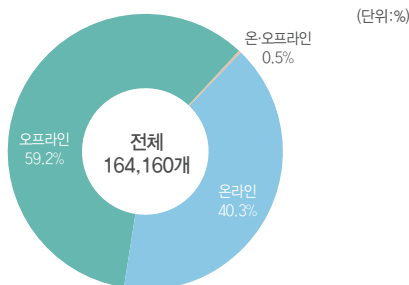
기관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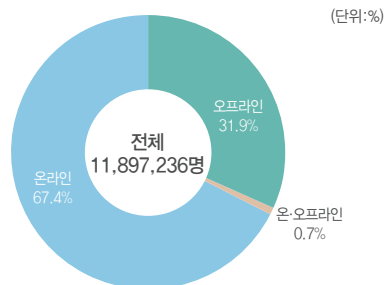
기관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수



강의 방식별 프로그램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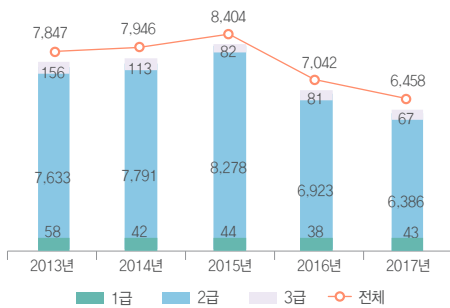


강의 방식별 학습자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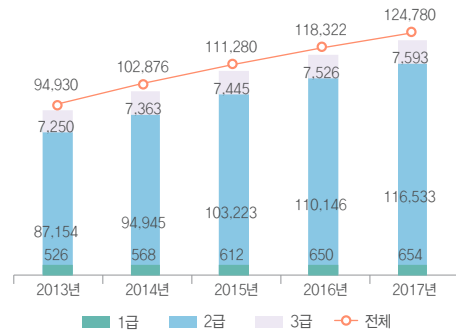
평생교육사·문해교육 교원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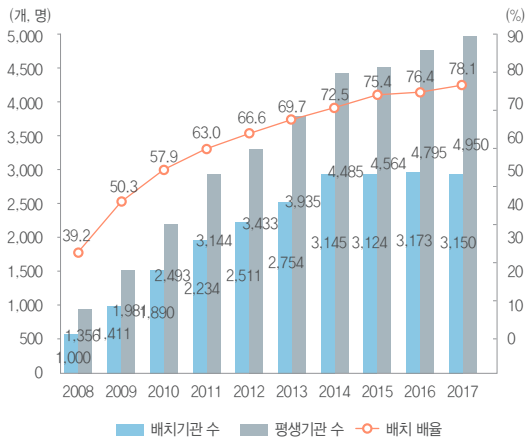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평생교육사 자격증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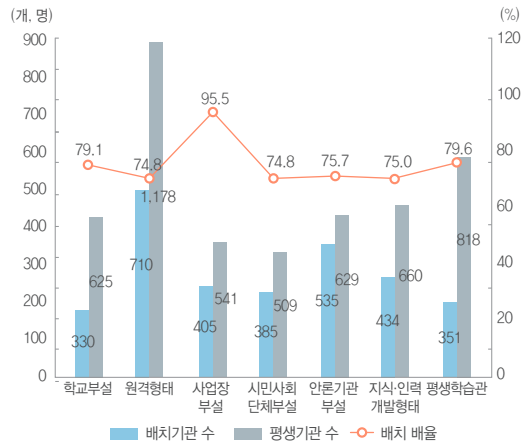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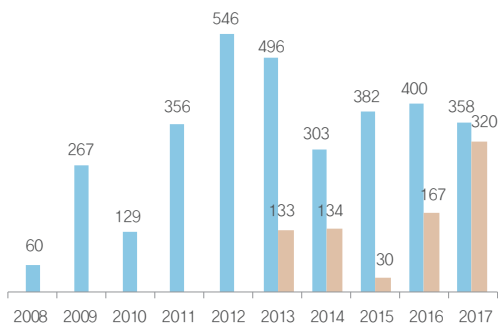
출처: 2017교육통계분석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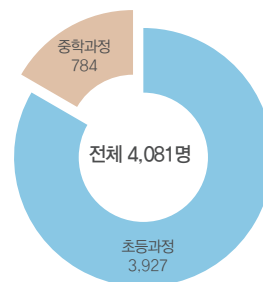
출처: 2017교육통계분석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문해교육교원 양성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중학과정은 2013년 부터 개설됨.

문해교육교원 양성 인원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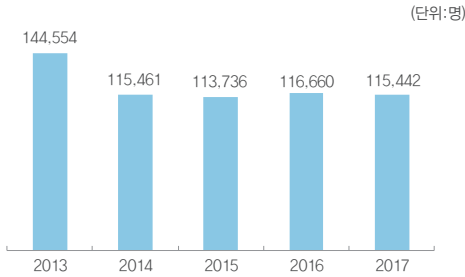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중학과정은 2013년 부터 개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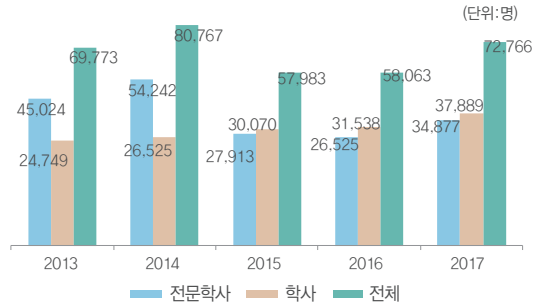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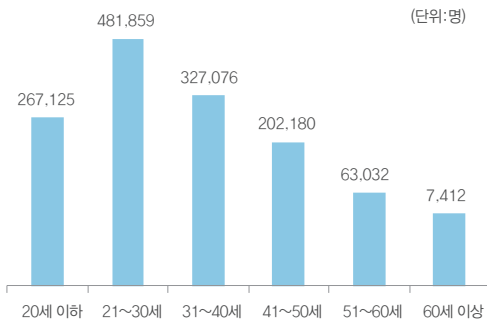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학위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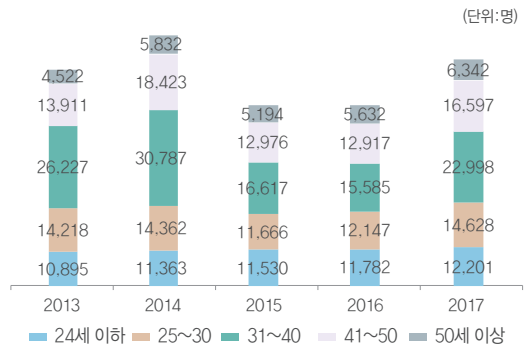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연령별 학점은행제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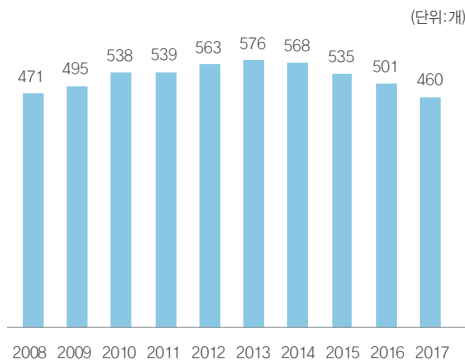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 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연령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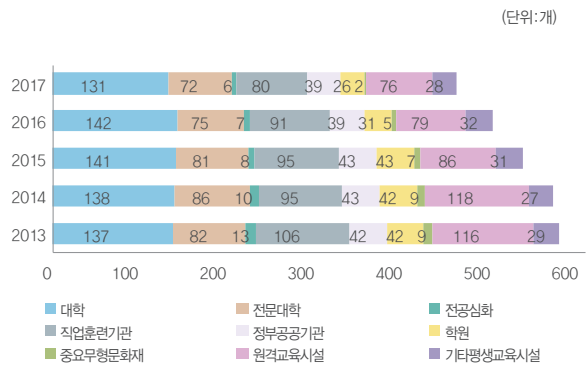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수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 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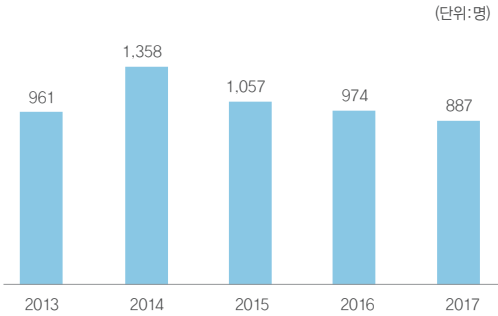
유형별 교육훈련 기관 수



출처: 2017 평생교육통계 자료집(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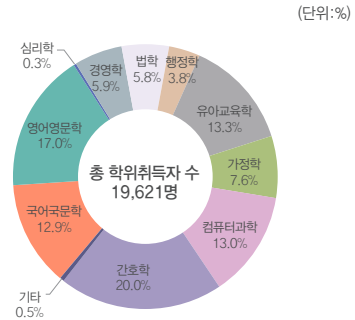
독학학위제

독학학위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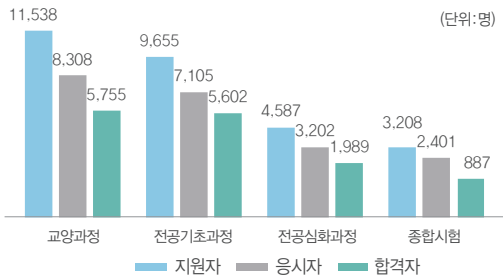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전공별 독학학위 취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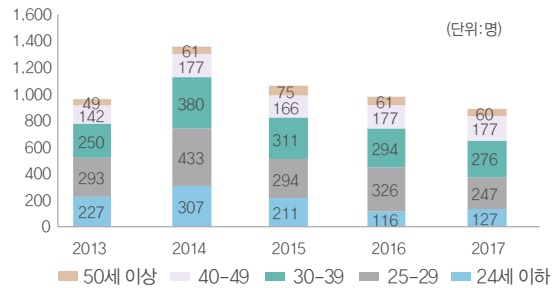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과정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수(201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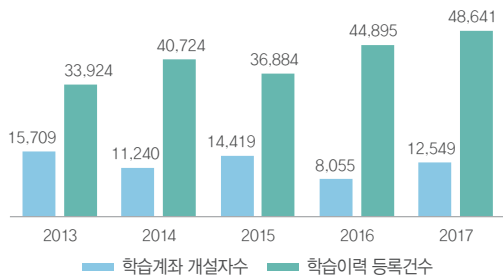
독학학위 취득자 연령별 분포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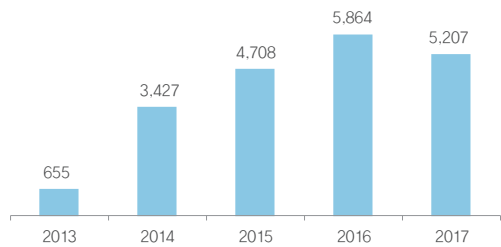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 개설자 수 및 학습이력 등록 건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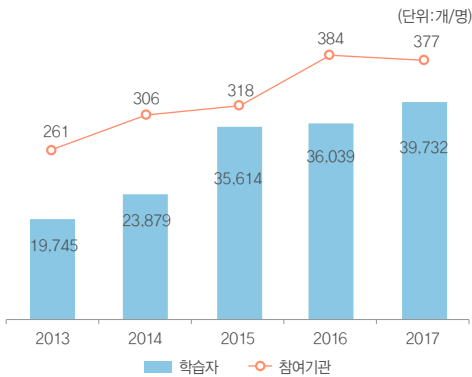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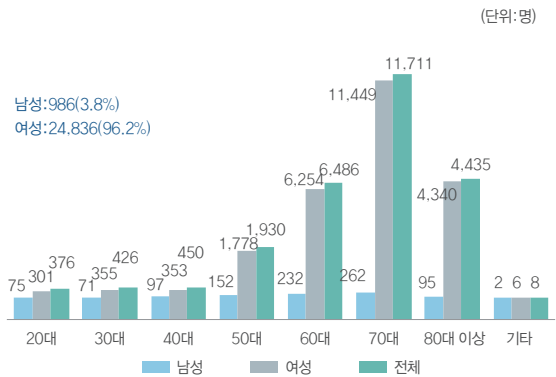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참여 기관/학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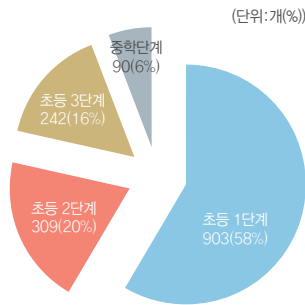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성별 · 연령별 참여학습자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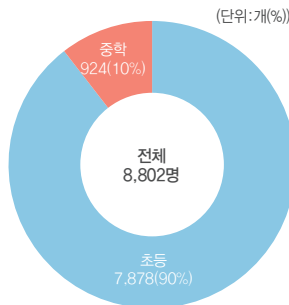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교육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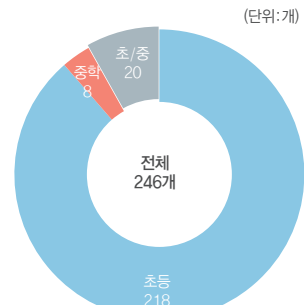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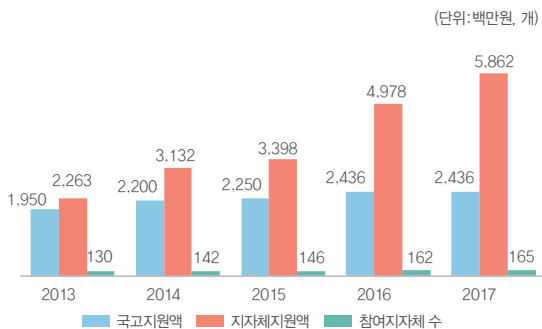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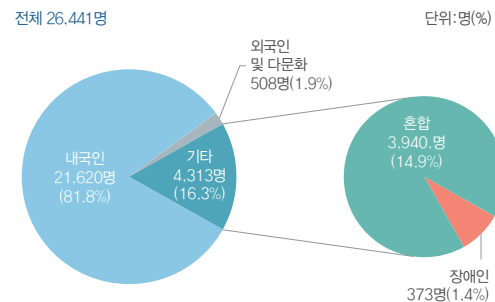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예산 및 참여 지자체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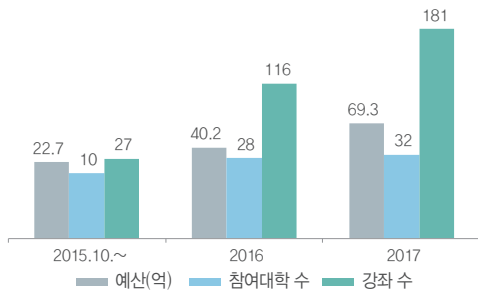
참여 대상별 학습자 수(201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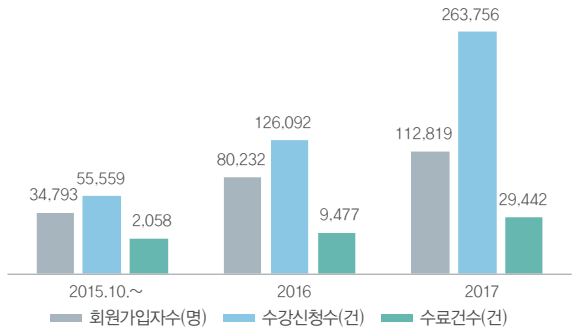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K-MOOC 예산·참여대학수·강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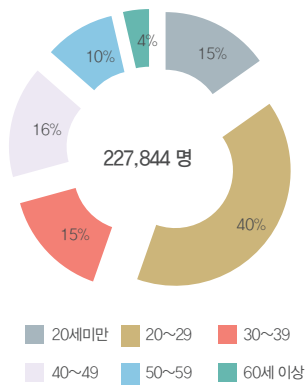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K-MOOC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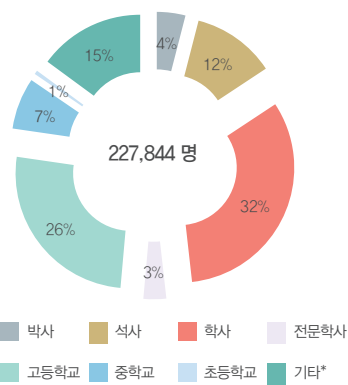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K-MOOC 가입자 연령별 분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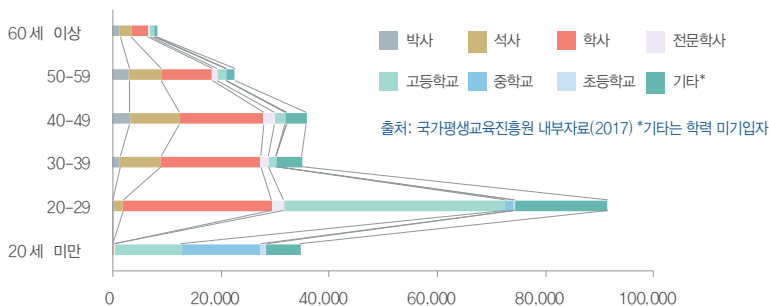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K-MOOC 가입자 학력별 분포(201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기타는 학력 미가입자

K-MOOC 가입자 연령별·학력별 분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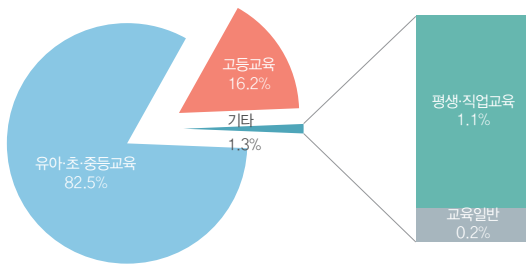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기타는 학력 미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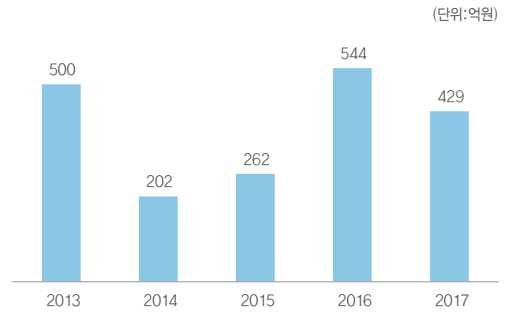
평생교육 예산 현황

2017 교육분야 정부예산 구성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재정-예산정보(www.moe.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 예산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Contents



제1부 총론

-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3

제2부 평생교육의 법적 기초 및 전달체제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19
제1절 평생교육법	2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5
제2장 평생교육 전달체제	47
제1절 중앙정부 전달체제	5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전달체제	54
제3절 민간 전달체제	70
제3장 평생교육 전문인력	79
제1절 평생교육사	81
제2절 문해교육 교원	96

제3부 평생교육 현황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현황	107
제1절 학력보완교육	109
1. 독학학위제	109
2. 학점은행제	117
제2절 성인문해교육	129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141
제4절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148
제5절 시민참여교육	156
제2장 대상별 평생교육 현황	165
제1절 여성 평생교육	167
제2절 노인 평생교육	177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191
제4절 농·어업인 평생교육	202
제5절 군 평생교육	212
제6절 학부모 평생교육	220
제7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228
제3장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	235
제1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237
제2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48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0
제4절 대학평생교육	270
제5절 평생교육기관	284
제4장 평생교육 예산 현황	299
제5장 평생교육 국제교류 현황	311

제4부 평생교육 문화 조성

제1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및 제도	323
제1절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325
1.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325
2.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335
3. 대한민국 문해의 달	341
제2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평생학습도시	348
제3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357
제4절 평생학습계좌제	370
제2장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활동	383
제1절 공공단체의 활동	385
제2절 민간단체의 활동	390

제5부 향후 평생교육의 전망 및 과제

1. 2013 ~ 2017년의 성과와 한계	405
2.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망	409

표 차례



〈표 1-1〉 국가중심 민주주의와 국민중심 민주주의의 비교	4
〈표 2-1〉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23
〈표 2-2〉 2008~2016년까지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24
〈표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25
〈표 2-4〉 소관 부서별 평생학습 관련 위원회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28
〈표 2-5〉 평생교육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28
〈표 2-6〉 평생교육 관련 학력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29
〈표 2-7〉 2016년 이후 제출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30
〈표 2-8〉 2017년에 개최된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포럼 또는 공청회 내용	32
〈표 2-9〉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위임 업무	36
〈표 2-10〉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관련 조례 제정 현황	38
〈표 2-11〉 시·도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관련 특성	39
〈표 2-12〉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및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여부	40
〈표 2-13〉 시·군·구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센터의 장 자격 기준	41
〈표 2-14〉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상의 규정 내용	42
〈표 2-15〉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 분석	44
〈표 2-16〉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50
〈표 2-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와 정원	53
〈표 2-18〉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54
〈표 2-19〉 각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55
〈표 2-20〉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57
〈표 2-21〉 20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현황	58
〈표 2-2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59
〈표 2-23〉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현황	60
〈표 2-24〉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특별 조직	61
〈표 2-25〉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62
〈표 2-26〉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66
〈표 2-27〉 평생교육기관 분류	70
〈표 2-28〉 민간평생교육기관 개황	75
〈표 2-2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83

〈표 2-30〉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84
〈표 2-31〉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2017.12.31. 기준)	86
〈표 2-32〉 양성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3~2016년)	87
〈표 2-33〉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88
〈표 2-34〉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배치 현황	89
〈표 2-35〉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	90
〈표 2-36〉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2013~2017년)	91
〈표 2-37〉 2017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91
〈표 2-38〉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운영 현황(2013~2017년)	93
〈표 2-39〉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자격 조건	97
〈표 2-40〉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99
〈표 2-41〉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99
〈표 2-42〉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01
〈표 2-43〉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02
〈표 3-1〉 독학학위제 주요 추진 경과	110
〈표 3-2〉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110
〈표 3-3〉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	112
〈표 3-4〉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현황	113
〈표 3-5〉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14
〈표 3-6〉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118
〈표 3-7〉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119
〈표 3-8〉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121
〈표 3-9〉 최근 5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121
〈표 3-10〉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122
〈표 3-11〉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23
〈표 3-1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124
〈표 3-1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125
〈표 3-14〉 2006~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132
〈표 3-15〉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	133
〈표 3-16〉 2017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	133
〈표 3-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134
〈표 3-18〉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별·연령별 현황	134
〈표 3-19〉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현황	136
〈표 3-20〉 2011 ~ 2017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137

〈표 3-21〉 성인문해교과서 무상지원 현황	138
〈표 3-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143
〈표 3-2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43
〈표 3-24〉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현황	144
〈표 3-25〉 일학습병행제 현황	145
〈표 3-26〉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영역	149
〈표 3-27〉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규정과 지침	150
〈표 3-28〉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2016년 기준)	151
〈표 3-29〉 시민참여교육의 범주	158
〈표 3-30〉 평생교육시설별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현황	159
〈표 3-31〉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추이	161
〈표 3-3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연도별 현황	162
〈표 3-33〉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주요 사업내용	171
〈표 3-34〉 새일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세부 내용	173
〈표 3-35〉 새일직업훈련 취업현황	174
〈표 3-3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180
〈표 3-37〉 비형식교육기관 노인 참여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182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185
〈표 3-3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185
〈표 3-4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2016년)	186
〈표 3-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2017년 노인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현황	187
〈표 3-42〉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현황	187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	196
〈표 3-4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현황	198
〈표 3-45〉 글로벌브릿지 수혜 다문화학생수	198
〈표 3-46〉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효과성 사후조사 결과	199
〈표 3-47〉 농업·농촌교육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및 역할	203
〈표 3-48〉 농업·농촌교육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204
〈표 3-49〉 농촌진흥사업 교육훈련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206
〈표 3-50〉 연차별 전문인력 육성 현황	214
〈표 3-51〉 군내 자기개발사업 추진성과	215
〈표 3-52〉 산·학·군 맞춤형 기술 인력 육성사업 추진성과	216
〈표 3-5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222
〈표 3-54〉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229
〈표 3-5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	229

〈표 3-56〉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	230
〈표 3-57〉 하나원의 사회적 교육과정(기본 프로그램)	230
〈표 3-58〉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예시	231
〈표 3-59〉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한 교육부 학교평생교육 추진 경과	238
〈표 3-60〉 2017년도 시·도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추진 현황	239
〈표 3-61〉 2013년 및 2017년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비교	245
〈표 3-62〉 최근 5년간(2013~2017년) 방송중 운영 현황	250
〈표 3-63〉 방송중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7년)	250
〈표 3-64〉 방송중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2015~2017년)	251
〈표 3-65〉 방송고 학생 연령별 분포(2014~2017년)	252
〈표 3-66〉 방송고 졸업생 및 대학교 진학생 현황(2013~2017년)	252
〈표 3-67〉 2017년 방송중·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제 및 내용	253
〈표 3-68〉 방송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신규 개발 현황 및 계획	255
〈표 3-69〉 대학원 재학생수 현황	262
〈표 3-7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지원액 현황	273
〈표 3-71〉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참여 대학 현황	274
〈표 3-72〉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참여 대학 현황	275
〈표 3-73〉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현황	278
〈표 3-74〉 2017년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	280
〈표 3-75〉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범위와 유형	285
〈표 3-76〉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287
〈표 3-7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289
〈표 3-7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290
〈표 3-7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학습자 수	291
〈표 3-80〉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292
〈표 3-8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사무직원 수	293
〈표 3-8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294
〈표 3-8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295
〈표 3-8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학습자 수	295
〈표 3-8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296
〈표 3-86〉 교육 예산 및 정부 총 예산 현황(최근 5년)	301
〈표 3-87〉 분야별 교육 예산 현황(최근 5년)	303
〈표 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규모(2017년, 정부출연금 기준)	307
〈표 3-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307
〈표 3-90〉 교육 분야 투자계획(2017~2021년)	309

〈표 3-91〉 업무협약 체결 현황	313
〈표 4-1〉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현황	327
〈표 4-2〉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현황	328
〈표 4-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329
〈표 4-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330
〈표 4-5〉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332
〈표 4-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333
〈표 4-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현황(2014~2017)	336
〈표 4-8〉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개인부문)	338
〈표 4-9〉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사업부문)	338
〈표 4-10〉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부문별 수상현황(2017)	339
〈표 4-11〉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 결과	343
〈표 4-12〉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프로그램	344
〈표 4-13〉 2012~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결과	344
〈표 4-14〉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결과	345
〈표 4-15〉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 및 전국 동시 시화전 개최 결과	346
〈표 4-1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경과	349
〈표 4-17〉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현황	349
〈표 4-18〉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현황(2017.12. 현재)	350
〈표 4-19〉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현황	351
〈표 4-20〉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353
〈표 4-21〉 행복학습센터 운영 참여지자체(2014~2017)	354
〈표 4-22〉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2017년 12월 기준)	361
〈표 4-23〉 K-MOOC 검수 프로세스	362
〈표 4-24〉 K-MOOC 연도별 실적(2017.12월 기준)	365
〈표 4-25〉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가입자 수(2017.12월 기준)	366
〈표 4-26〉 K-MOOC 전문(무음)강좌 개발(안)	369
〈표 4-27〉 학습계좌 개설자 수	372
〈표 4-28〉 학습이력등록건수	373
〈표 4-29〉 평생학습계좌제 협약기관 및 유관사업(제도) 연계 현황	374
〈표 4-30〉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 요건	375
〈표 4-31〉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375
〈표 4-32〉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핵심과제	394
〈표 4-33〉 한국문해교육협회의 주요사업	395

그림 차례



[그림 2-1] 교육관련법의 기본 체계	21
[그림 2-2]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전달 체제	49
[그림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52
[그림 2-4]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82
[그림 2-5]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절차	98
[그림 2-6]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02
[그림 3-1]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 과정도	111
[그림 3-2] 학점은행제 학점원	119
[그림 3-3] EBS 뉴스 심층취재 주요 화면	129
[그림 3-4]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체제	131
[그림 3-5]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136
[그림 3-6]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142
[그림 3-7]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율	152
[그림 3-8]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생태계의 확장	153
[그림 3-9] 2010년, 2013년, 2016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169
[그림 3-10]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율(60~79세)	183
[그림 3-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186
[그림 3-12]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191
[그림 3-13] 전체/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192
[그림 3-14]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개요)	195
[그림 3-15]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제	197
[그림 3-16]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 체계도	203
[그림 3-17]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추진 전략	221
[그림 3-18] 개방 시스템으로서 학교평생교육 실천모형	246
[그림 3-19] 방송중·고의 비전 및 목표	248
[그림 3-20] 방송중·고 온라인교육시스템 신규 학습창 화면 예시	256
[그림 3-21] 방송대 신입입생 입학지원자 변화추이(2007~2016)	261
[그림 3-22] 신입입생 연령별 분포(2008~2016)	262

[그림 3-23] 프라임칼리지의 전체 교육과정	264
[그림 3-24] 2008학년도 입학생 학적 변화 시계열표	265
[그림 3-25] 방송통신대학교의 핵심가치	267
[그림 3-26]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272
[그림 3-27]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	276
[그림 3-28] 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301
[그림 3-29] 정부 총 예산 추이(최근 5년)	302
[그림 3-30]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최근 5년) 증가율	304
[그림 3-31] 분야별 교육 예산 비중(최근 5년 평균)	304
[그림 3-32]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12년 기준)	305
[그림 3-33] 평생·직업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306
[그림 3-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308
[그림 3-35]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향후 5년) 증가율 전망	309
[그림 4-1] 2015~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작품	341
[그림 4-2]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절차	342
[그림 4-3] K-MOOC 사업의 운영 개요	358
[그림 4-4] K-MOOC 사업추진 체계	359
[그림 4-5] 참여 대학 선정 절차	360
[그림 4-6] K-MOOC 시스템 구성도	364
[그림 4-7] K-MOOC 수강 후 목적 달성 도움	366
[그림 4-8] K-MOOC 종합만족도	367
[그림 4-9]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구조	370
[그림 4-10]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	371
[그림 4-11] 2017년 학습이력 유형별 등록건수	373
[그림 4-12] 국가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주요 화면	376
[그림 4-13] 평생학습계좌제와 타기관·제도 시스템 연계 현황	377
[그림 4-14]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동영상	379
[그림 4-15]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조직	392
[그림 4-16]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비전과 목적	394

제1부 총론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1.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산파역을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상황을 보완하는 조치였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국민의 정책 제안을 종합하여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의 정책 운영방향과 정책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하고,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국민의 시대 개막’의 의의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표1-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국민의 시대’는 바로 국민주권시대를 의미하며, 이는 문민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건너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를 거쳐 ‘국민주권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국민 주권시대는 국가중심 민주주의에서 국민중심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시대는 개개인의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로 옮겨가면서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한다.

국민중심 민주주의는 바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직접 민주주의는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을, 일상의 민주주의는 늘 행사되는 국민 주권을, 과정의 민주주의는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부 평생학습정책의 풍향계이기도 하다.



〈표 1-1〉 국가중심 민주주의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비교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5대 국정목표에 따라 20대 국정전략을 주축으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은 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4대 비전과 12대 핵심공약, 그리고 201개의 실천을 앞세워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밑그림이라 볼 수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2017)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별도의 평생교육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평생교육을 다루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약과 비슷하게 평생교육에 대한 명확한 과제 제시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국정과제인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등이 들어 있는 정도이다. 이를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는 없다.

19대 대통령 공약에서는 ‘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무상교육기회 제공,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무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강의 제공 및 학점 취득기회 제공,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산업맞춤단기직 무인증과정인 매치업¹⁾ 운영,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서는 ‘52. 고등 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거리감은 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될 만한 과제를 찾아보면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인생3모작 지원, 새일센터 등,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 있는 삶 보장,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기능 개편 등이다.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국정과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평생교육은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서보다는 촉진자, 촉매자, 연결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교육부의 조직개편과 국가교육회의 출범

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출범

새 정부가 비상한 상황에서 5월 중에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평생학습정책을 전개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의 전개는 평생학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부터 분석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부의 동향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사에 나타난 ‘공평한 학습사회’관부터 살펴본다.

1) 2018년 2월 그간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로 불리던 사업명칭이 매치업(Match業)으로 확정되었음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라면서 공평한 학습사회관을 피력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교육기회 균등과 공평한 학습사회관은 대통령 취임사의 평등, 공정, 정의론과 맥을 같이 한다. 양자를 결합하여 공평한 학습사회관을 완성하면, 평생학습 기회는 평등하고, 평생학습 과정은 공정하며, 평생학습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공평한 학습사회이다. 공평한 학습사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린 장관의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공평한 학습사회로 남아 있다.

이번 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이 지향할 학습사회의 유형과 정신을 알려주는 최적의 핵심어가 ‘공평한 학습사회’이다. 공평한 학습사회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대표되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에 비견할만하다. 교육기회 균등과 공평한 학습사회는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표현한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본적 도구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지렛대이다.

위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나왔듯이 교육부의 2017년 후반기는 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의 교육부 조직개편,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과 같은 기틀 마련과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예산 마련에 주안점을 둔 시기로 평가받을 만하다. 교육부의 조직개편과 국가교육회의 운영은 2018년부터 교육부와 국가의 평생학습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가늠케 해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먼저 대통령공약에서부터 언급되어 비상한 관심을 끈 국가교육회의의 활동이다. 2017년 12월 27일에 국가교육위원이 위촉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가교육회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고른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기능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와 평생교육 기회의 고른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상설 전문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한다. 평생교육 주무국의 명칭이 ‘평생미래교육국’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은 미래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말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도 국가교육회의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심의의 향배를 알려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가 2018년에 추진되어 국가교육회의의 의제 설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지능정보화사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성과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비전, 교육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실천 과제 및 로드맵 마련에 주안점을 둔다.

주요 연구 내용은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및 주요 평생·직업교육 분야 이슈 분석, 우리나라의 평생·직업(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주요 선진국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사례 분석, 중장기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비전, 목표 및 혁신과제 제시이다. 연구의 성과물인 장기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비전, 목표 및 혁신과제 제시와 관련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체제 혁신방향과 평생·직업교육의 질 개선, 접근성 향상, 다양성·형평성 제고 및 교육주체 간 연계 강화 등 세부 혁신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이외에도 학교교육과 연계 및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 활성화, 고용·복지와 연계, 지역·계층 간 격차 완화, 인프라 구축·선진화, 개혁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교육부 조직개편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예고한대로 2017년 12월 8일에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평생학습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직개편이었다.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였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각각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 개편하였다.

전과 같이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과는 평생학습정책과이다. 다만 학원, 자격, 통계, 국가역량체계 등 사무가 확대되었다. 평생학습정책과의 관장 사무는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 및 운영 지원, 4.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6.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1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 육성 지원, 19.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20. 지역사회 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21.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22.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4.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5.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26.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평생미래교육국의 주무과도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미래교육기획과로 바뀌었다. 물론 평생학습정책과가 당연히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과이지만 몇몇 평생교육 관련 사무는 미래교육기획과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 등에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미래교육기획과는 인적자원개발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한국형 온라인대중강좌(K-MOOC)와 매치업을 관장한다.

미래교육기획과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로는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정책 수립·시행, 2.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1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을 활용한 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 운영 지원 등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의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정책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정책과와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회보장과에서도 교육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회보장과에서는 교육소의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대안교육 제도,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북한 이탈 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정책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국민주권 시대, 국민중심 민주주의를 맞아 주목받을 만하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 나란히 시·도 및 시·군·구의 ‘시민대학’과 같은 각종 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라 이번 정부에서 시민교육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3. 2018년도 평생학습 예산확보와 신규 사업

가. 2018년도 예산 확보 개요

교육부는 2017년 12월 6일 2018년 교육부 예산으로 68조 2,322억원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 예산 61조 6,316억원과 비교했을 때 6조 6,006억원이 증가, 2017년 대비 10.7% 늘어난 규모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에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분야에 4조 4,261억원이 배정되었다. 이러한 교육부 예산 증액에 따라 평생교육 분야의 새 정부 국정과제인 매치업 운영(2018년 15.5억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2018년 23.9억원) 등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에 13.1억원, 평생교육·검정고시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689억 3천 9백만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8억 7천 1백만원), 사회정책 조사 분석 및 협력의제(2억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려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 부분 예산은 5,912억원으로 2017년 6,195억원에서 283억원(4.6%) 감소되었다. 이나마 대부분은 직업교육 예산으로 순수한 평생학습정책 예산은 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한 평생교육 분야 예산으로 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은 2017년 50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68억원 감소되었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생학습진흥 지원 10억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1억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127억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억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6억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7억원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 336억원은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0.049%에 불과하다.

나. 주요 신규 사업

첫째, 평생교육 바우처는 그동안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였던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 지원,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평생교육 복지 지원체제 기반을 구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2018년에 23.9억원을 5천여명에 지원하며 연간 최대 1인당 35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참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저학력 계층 대상, 학력 취득 및 자기개발 목적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평생교육 바우처 참여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습계획 수립 지원 및 학습이력 관리를 실시한다.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을 희망하는 학습자 대상 학습 정보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및 관리체계 정립에 힘쓸 예정이다.

둘째, 2018년부터 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매치업)이 도입된다. 매치업은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유다시티(Udacity)가 시작한 학습 인증제도로 미국 정보통신 기업들은 구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한다. 매치업도 이와 유사하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및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을 위해 2018년에 15.5억원을 지원한다.



매치업의 운영 흐름을 살펴보면 산업별 협의체,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상설자문단이 유망분야 및 대표기업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대표기업은 핵심직무 발굴 및 평가방식을 결정하고 해당 분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핵심직무 및 세부직무능력을 제시한다. 상시협의체에서 유망분야에 따라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들은 재직자, 구직자가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그런 후 이수자 평가 실시 및 인증은 대표기업의 몫이 되고, 학습 이수자는 취업 연계, 교육훈련 이력으로서 직무능력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본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며, ‘매치업 홈페이지(www.matchup.kr)’를 개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매치업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재직자, 구직자가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변화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매치업을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직업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

셋째, 2018년도 신규로 지정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지원으로 13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 교육 현황조사, 장애유형·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및 교구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예산안의 세부항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억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8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2억원(평생교육 영역별 교육과정 4종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력 능력개발 3억 1천만원(장애인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4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천만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1억 3천 3백만원(공사비, 실시설계비, 자산취득비)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확보된 데에는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항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법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5월 29일부로 시행된 평생교육법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대부분의 추진 조직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항이 들어가 있다.

교육부가 연말에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내용과 교육부의 2018년 신규 사업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4일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체제 및 확산을 위한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평생교육에서 눈여겨봐야 할 분야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이다.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18년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시작, 2019년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2020년~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등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4.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노력

끝으로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노력이 있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17년에 준비하여 2018년 초에 발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과도 관련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의 이유를 보면,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부처 차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성 높은 부처 차관 7명으로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재정 지원의 근거로 그 의미가 컸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지 못했던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를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유기적 연계,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확대 등이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이다.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도 넓힌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다른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의 평생교육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법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심의 사항이 바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이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대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확정 통보 단계를 차례대로 밟는 가운데 평생교육법의 내용이 온전히 시행되고, 평생교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 실적이 미진했던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국가 수준에서 구성 운영되면 시·도 수준의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수준의 평생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심의와 협의를 주 기능으로 하는 협의체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활성화 방안,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평생교육정책 및 시설, 프로그램 간 연계 협력 및 평생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담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2018년 2월 23일 확정, 발표되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대강을 한 눈에 보여주는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으로 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4P를 채택하여,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사람(People) 전략,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뜻하는 참여(Participation) 전략,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을 뜻하는 성장과 번영(Prosperity) 전략,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뜻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 전략이다. 4대 주요 과제로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으로 하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정책 성과로 기록될만하므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별도로 소개하기로 한다.

제2부

평생교육의 법적 기초 및 전달체제

- 제1장 | 평생교육 관련 법령
- 제2장 | 평생교육 전달체제
- 제3장 | 평생교육 전문인력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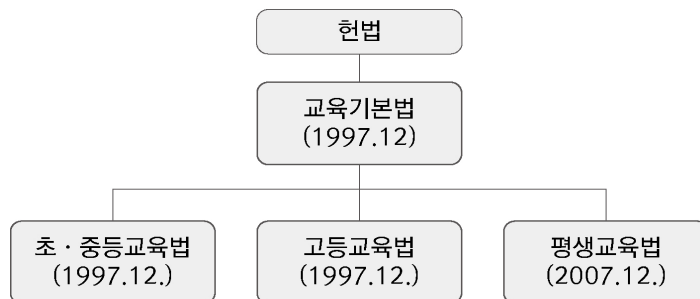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제1절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 개요

현행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진흥 의무조항을, 그리고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천명하였다. 헌법 규정에 따라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선언적인 의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시되었고 ‘사회교육전문요원제도’라는 평생교육 자격전문가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 후 학교교육법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관련 법제가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1997년에 정비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밝힘과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6항의 법률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학교교육’을,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교육 관련법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에 비하여 주변적인 법률에 머물러 있었던 사회교육법이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 교육관련법의 기본 체계



2007년에 기존의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정비된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평생교육법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권두승 외, 2008).

첫째,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 6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을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교육부장관하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지사 소속하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 시·군·구의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다섯째, 종래에 파편적으로 운영되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3대 전담기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규정하였다.

여섯째, 학습휴가제, 강사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력인정 등 다양한 학습지원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곱째,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및 학력인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2007년의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은 종래의 「사회교육법」과 1999년의 「평생교육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구분	특징	한계
「사회교육법」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 ·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제시 · 한국평생교육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 ·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진흥임무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 · 평생교육 추진체제 규정 미제시
「평생교육법」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체제정비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규정 신설 · 평생교육 전담조직 체제 구축 · 평생교육시설의 세분화 · 국민의 평생학습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 「사회교육법」 내용을 존치시킴 · 선언적 의미의 평생교육 진흥조항 유지
「평생교육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단 및 제도의 체계화 ·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추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 ·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정비 · 문해교육 및 성인문해 학력인정제도와 평생학습계좌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간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이원화 체제 유지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시설 관리 등 시행상의 문제점 발생 · 평생교육 개념정의에 대한 모호함과 영역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

출처: 변종임 외(2014).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연구. p.30.

2.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및 현황

가.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

평생교육법은 2007년 전부개정된 이래 2017년 말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타법개정 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법 개정을 제외하고 총 8차례에 걸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2>에서와 같이 주로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의 근거 마련,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입학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내대학 교육의 접근성 강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문제 해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체제의 일원화,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의 완화, 문해교육의 개념정리, 읍·면·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운영규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학습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학습비 반환 조치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규정을 평생교육법 체제로 편입하는 등과 같은 내용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표 2-2〉 2008~2016년까지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구분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법률 제9641호 (200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근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정 최소규정 · 사내대학의 입학대학 확대를 통한 사내교육의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계좌제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 근거 규정 · 사내대학의 입학대상 확대 규정 보완
법률 제10915호 (2011.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법』상의 원격교육시설 사이의 상충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하더라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
법률 제11770호 (2013.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체계적인 자격증관리의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교육부장관명의로 일원화하되, 그 교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법률 제12130호 (201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내대학 활성화 도모 · 학력 미인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업무를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대학의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등에까지 확대 · 학력 미인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업무를 교육감으로 이양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규정
법률 제12339호 (2014.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해득교육의 개념을 사회변화에 맞게 확장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고 개념을 확대하여 개념 재정의 ·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 신설
법률 제13238호 (2015.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규정
법률 제13945호 (20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실효성 확보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반환 등 조치사유 법률에 명시 ·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규정신설

구분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법률 제14160호 (2016.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를 두도록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제 구축 필요 · 부정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자격취소 규정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소 규정 명문화

나. 현행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현행 「평생교육법」은 8장 46조 부칙으로, 「평생교육법시행령」은 6장 78조 및 부칙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시행규칙」은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3>과 같다.

평생교육법은 총칙 등 8장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학력·학위 취득기회확대,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은 6장 7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출연금 요구, 지급, 평생학습 지원제도의 운영방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또는 인가절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등록(변경) 절차, 변경신고,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등급, 배치기준, 그리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은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교육 실무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8장 46조, 부칙	6장 78조, 부칙	25조, 부칙
구성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평생교육결과의 관리·인정, 보칙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 평생교육시설 등록(변경), 문해교육이수자학력인정



구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평생학습관 - 읍·면·동평생학습센터	· 출연금 요구, 지급, 관리 · 결산서 제출 등 ·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 지원제도의 운영방법 등	·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학력·학위취득 기회확대 - 초·중·고학력인정시설 - 전문대학 학력인정시설 -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 시설의 지정 또는 인가기준 및 절차 · 폐쇄인가 또는 신고절차	· 문해교육이수자 학력인정 절차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 학교(학교부설)의 평생교육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 시설의 설치 신고·등록 · 시설의 변경신고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변경 신고 절차
	다양한 평생학습지원제도 - 유급 또는 무급학습휴가제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교육사 -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등급, 배치기준 등 · 학습계좌제운영, 평가인정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지정 및 지원 기준	· 전문인력정보은행운영 · 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 · 문해교육이수자의 학력인정 또는 학습과정인정절차

다.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관련법간의 관계

현행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법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행 평생교육법 이외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평생교육법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라든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과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별법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이 있다. 이들 기본법 내지 개별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표 2-4>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관련 위원회나 시설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소관의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평생교육시설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전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규제중심으로, 직업전문학교는 지원중심의 법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권두승, 2017 참조).

둘째,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가운데에서 평생교육 전담인력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한 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이 있으며 이들 법들은 각각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법들은 각각 전담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업법과 청소년기본법은 각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가운데에서 학력인정관련 법령으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령들이 지니고 있는 주요 특성들을 비교·제시하면 <표 2-6>과 같다. 여기에서 독학학위제도는 1990년부터, 학점은행제는 1997년부터 실시된 대안형태의 고등교육제도로 한편으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표 2-4〉 소관 부서별 평생학습 관련 위원회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구분	법명	관련 조항 및 내용	평생학습 시사점 (주요 평생학습 지원시설)
기본법	교육기본법 (교육부)	· 평생학습권 보장 지원근거 제시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지원	· 학교교육 중심 ·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강화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자기계발 지원·활용	· 국민의 인적자원형성·개발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인적자원개발 시설)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지원	· 청소년의 학습권·참여 강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근거 제시	· 국민의 포괄적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구체적·포괄적 규정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
개별법	평생교육법 (교육부)	· 평생교육의 계획 및 집행관련	· 평생교육 3대 전담기구 · 8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학교 및 민간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 전체 국민대상 영리추구형 직업기술교육 기회 제공	· 평생직업교육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 제고	· 근로자직무능력개발 지원 ·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기능대학 등)

〈표 2-5〉 평생교육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구분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소관 부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자격 제도	평생교육사 1, 2급 (법 제24조)	사회복지사 1,2,3급 (법 제11조)	청소년지도사1,2,3급 (법 제21조)	문화예술교육사1,2급 (법 제27조의 2)
주요 시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1~38조)	사회복지관 (법 제34조의5)	청소년시설 (법 제17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법 제10조 제6항)
전담 공무원 제도	없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제(법 제14조)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제	없음

〈표 2-6〉 평생교육 관련 학력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구분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비고
구성	8장 46조, 부칙	12조, 부칙	7조, 부칙	
제정 배경	· 평생교육 진흥(법 제1조)	· 평생교육의 이념구현(법 제1조)	· 평생교육의 이념구현(법 제1조)	· 독학학위제는 1990년부터 시행 · 학점은행제는 1997년부터 시행
학력 인정	· 초·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전문대학 학력·학위 인정 · 4년제 대학 학력·학위 인정	· 4년제 대학 학력·학위 인정	
주요 내용	· 학력인정을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학력인정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학력·학위 인정 기회부여	· 독학자에게 시험을 통해 학사 학위취득기회 부여	

3.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성과

가.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출 성과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법률안으로는 정부안 1건, 의원입법안 12건 등 총 13건이 있고, 이들은 현재 소관위원회에서의 입법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내용들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13건의 평생교육법률 개정안 가운데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과 관련된 건이 3건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들의 주된 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시설의 책무성확보장치, 그리고 문해교육 담당자의 자격요건 개선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표 2-7〉 2016년 이후 제출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 이유 및 내용
정 용 기 의원 외	2016.6.22	·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
이 은 재 의원 외	2016.7.13	·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설 훈 의원 외	2016.9.21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의 직위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부지사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 도모
신 보 라 의원 외	2016.11.7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
한 선 교 의원 외	2016.12.8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확보 장치 마련
정 부 안	2016.12.27.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등을 통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설 훈 의원 외	2016.12.30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 분야에서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를 기하고자 함
최 해 연 의원 외	2017.2.10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 삭제
염 동 렬 의원 외	2017.2.24.	·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관련 분야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 은 혜 의원 외	2017.8.31	·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설 훈 의원 외	2017.9.01	·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 창 현 의원 외	2017.9.12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 영 진 의원 외	2017.9.22	·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등 통계조사의 실시·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성과

2017년도에 들어서 평생교육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학습 타임즈 주관 하에 2017년 3월에 이루어진 평생교육정책포럼을 통해서 평생교육법 개정의 방향과 관련된 정책개선 논의가 있었다(평생학습타임즈, 2017). 여기에서의 논의된 주된 내용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평생교육 정책철학, 국가평생교육추진체제의 재구조화, 평생교육 6대 영역의 정책 아젠다,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와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평생학습도시와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일과 학습과 삶’이 함께하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었다.

둘째, 2017년 7월에 열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주관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주제의 국회공청회였다(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2017). 여기에서는 평생교육 전달체계개선, 평생학습 이력관리제, 평생교육사의 지위향상 및 의무배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과 관련된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셋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9월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포럼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나노 디그리와 K-MOOC를 중심으로, 지역학습 서비스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학습모임의 연계 가능성, 평생교육법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넷째,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주관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을 주제로 2017년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가 있다(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2017). 여기에서는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인생 제3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된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평생교육법 이외에 새로운 평생교육관련법으로서의 2개의 법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4차례에 걸친 정책포럼 내지는 공청회를 통하여 2017년도에 주로 거론된 평생교육법 개정관련 과제는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및 전담공무원제, 평생학습 이력관리제,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표 2-8〉 2017년에 개최된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포럼 또는 공청회 내용

구분	평생학습타임즈 주간 포럼	한평연, 평교협, 전평 협 주간 공청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간 정책포럼	전국평생학습 연석회의 주간공청회
일자	2017.3.27.	2017.7.10.	2017.9.29.	2017.11.14.
주제	· 차기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향배를 논하다	·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주요 내용	· 국가평생교육추진 체제의 재구조화 · 평생교육 6대영역 정책 아젠다 ·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와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 장애인 평생학습권 · 평생학습도시와 마을교육공동체 · 평생학습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 평생교육전달체계개선 · 평생학습이력관리제 · 평생교육사 지위향상 및 의무배치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바우처 제도	· 평생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 · 나노디그리와 K-MOOC · 지역학습 서비스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학습모임 · 평생학습법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전환	· 평생교육법인제 도입 · 평생교육사 전문성과 배치확대 · 인생 제3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

4. 향후 과제

앞으로 평생교육계는 한편으로는 「평생학습 기본법」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차원에서 「평생교육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을 통합하여 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희수, 2017; 권두승,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과 소통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래의 경제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사람중심 패러다임으로 교육에 대한 관점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래 파편적으로 운영되어온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인적자원 개발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 개념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과제이다. 현재,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에서 평생교육은 적어도 학교교육과 동등한 병립적인 의미의 교육, 말하자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기본법상에서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평생교육법」이라는 점에서 이들 3개 법령 간에 용어상의 혼란 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와 같이 국민에 대한 지식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는 달리 전담 공무원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제도의 도입을 통한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에서의 평생교육사 배치도 임의배치를 벗어나 의무배치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차원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가 단순히 국민의 평생학습 과정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차원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력관리제도’로 개편·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자치 행정과 교육자치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평생교육행정 지원체제를 학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청 중심으로, 시설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제 도입 및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시민교육 참여 확대방안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2017년 평생교육정책 포럼자료집(2017.11.14.).
- 권두승(2008). 평생교육법 개정 해설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 권두승(2017).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정책 개선 국회공청회 자료집(2017.11.14.).
- 변종임·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희수(2017). 평생교육법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정책포럼 자료집(2017.11.14.).
-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2017).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정책 개선 국회공청회 자료집(2017.11.14.).
- 평생학습타임즈(2017). 2017 차기정부 평생교육 정책의 향배를 논하다. 평생학습타임즈 2017년 포럼 발표자료집(2017.3.27.)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한국평생교육사협회·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정책개선 공청회 자료집(2017.7.1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의 설치·운영 근거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감의 평생교육 진흥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도지사의 임무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1조에서 연도별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제12조에서 평생교육 시·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13조에서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자료요청, 제18조에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실시·지원, 제20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무로는 제21조 제2항에 의한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이 있다.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관련 임무로서는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제21조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제2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등록 업무를 비롯하여 제22조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3조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처리, 제24조의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6조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7조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제42조) 및 지도·감독업무(제42조의2) 등이 있다. 그리고 제39조 제2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지원, 제39조의2 제2항에 의한 문해교육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의 이원화된 체제로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의 구성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의 규정 근거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생교육 주요 추진체제의 구축, 평생교육 3대 전담기구(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9>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위임 업무

구분	법조항의 규정 내용	비고
제11조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 지사의 임무(광역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분	법조항의 규정 내용	비고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도 지사의 임무(광역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 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군·구의 임무(기초자 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21조의 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 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 학습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내용 분석

평생교육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조례를 통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2-10> 참조).



〈표 2-10〉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관련조례 제·개정	위원구성	
			구성	위원구성(명)
1	서울	완료	완료	공무원(市 2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12명, 평생교육기관 2명, 기타1명 (19)
2	부산	완료	완료	공무원(市 5명, 교육청 2명), 시의원1명, 평생교육전문가 4명, 평생교육기관 2명, 평생교육단체 3명 (17)
3	대구	완료	완료	공무원(市 3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5명 (15)
4	인천	완료	완료	공무원(市 4명, 교육청 2명), 시의원 2명, 평생교육전문가 3명, 교육기관 4명 (15)
5	광주	완료	완료	공무원(市 2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6명, 교육기관 4명, 기타 1명 (15)
6	대전	완료	완료	공무원(市 2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3명, 교육기관 6명, 시의원 1명 (14)
7	울산	완료	완료	공무원(市 3명, 교육청 3명), 평생교육전문가 4명, 교육기관 2명, 대학 관계자 4명, 기타 3명 (19)
8	세종	완료	완료	공무원(市 1명, 교육청 1명, 국립세종도서관 1명), 평생교육전문가 11명, 기타 3명 (17)
9	경기	완료	완료	공무원(道 2명, 교육청 2명), 도의원 2명, 평생교육전문가 10명, 교육기관 1명 (15)
10	강원	완료	완료	공무원(道 3명, 교육청 2명), 교육위원회도의원 1명, 여성위원 5명, 교육기관·단체 5명 (16)
11	충북	완료	완료	공무원(道 3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7명, 교육기관 8명 (20)
12	충남	완료	완료	공무원(道 2명, 교육청 3명),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3명, 기타 2명 (15)
13	전북	완료	완료	공무원(道 3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4명, 기타 2명 (16)
14	전남	완료	완료	공무원(道 3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육기관 7명 (17)
15	경북	완료	완료	공무원(道 2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5명, 교수 등 교육기관 6명, 기타 2명 (17)
16	경남	완료	완료	공무원(道 3명, 교육청 2명), 도의원 2명, 평생교육전문가 2명, 교육기관 10명 (19)
17	제주	완료	완료	공무원(道 2명, 교육청 2명), 도의원 2명, 평생교육전문가 4명, 대학관계자 5명, 기타 3명 (18)

출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조례를 통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남의 6개 시·도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시·도 산하의 인재개발원이나 대학교 등에 지정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1> 시·도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관련 특성

연번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규정		
		설치·운영 규정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규정	운영형태
1	서울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2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3	대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4	인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5	광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6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7	울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8	세종		세종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9	경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10	강원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1	충북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2	충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13	전북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4	전남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5	경북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6	경남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7	제주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화학재단과 통합해 2018년 1월 1일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설립·운영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2017.11.20.)



한편,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 평생교육조례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가운데 서울,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만이 평생교육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배치 이외에도 세종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타 일부 시·도에서는 안전조치 등을 위한 규정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12〉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및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여부

연번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조항		
		평생교육사 배치규정 유무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기타
1	서울	배치규정 있음(o)		은평학습장 등 규정
2	부산	배치규정 없음(x)		
3	대구	배치규정 없음(x)		
4	인천	배치규정 없음(x)		
5	광주	배치규정 없음(x)		
6	대전	배치규정 없음(x)		
7	울산	배치규정 없음(x)		
8	세종	배치규정 없음(x)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9	경기	배치규정 없음(x)		영어마을 운영규정
10	강원	배치규정 없음(x)		안전보험가입 규정
11	충북	배치규정 없음(x)		
12	충남	배치규정 있음(o)		안전보험가입 규정
13	전북	배치규정 없음(x)		안전보험가입 규정
14	전남	배치규정 있음(o)		
15	경북	배치규정 없음(x)		

연번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조항		
		평생교육사 배치규정 유무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기타
16	경남	배치규정 있음(o)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17	제주	배치규정 없음(x)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문해교육 운영규정
	소계	4개 시·도만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2017.11.20.)

한편, 이들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조례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제정된 평생교육조례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무로서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원 지정·운영(제21조 제2항),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 규정(제21조의3)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평생교육(진흥)조례 또는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시·군·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 차원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형태로,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정읍시 등 극히 일부 시·군·구만이 평생학습센터 혹은 평생학습관의 기관장에 대한 자격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3〉 시·군·구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센터의 장 자격 기준

구분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장 자격 관련 규정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조(자격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라남도 광양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센터에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유급 운영요원을 둔다. ②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7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구분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장 자격 관련 규정
전라북도 정읍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평생학습관장) 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된 평생학습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행정분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2017.11.20.)

3.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조례 구성 현황

가.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의 규정 근거

시·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제21조 제1항(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제20조(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등록 업무), 그리고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이들 시설들에 대한 행정처분(제42조)과 지도·감독업무(제42조의2),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지원(제39조 제2항),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임무(제39조의2 제2항)를 부여받고 있다.

〈표 2-14〉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상의 규정 내용

구분	평생교육법 조항	관련 내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교육감에 등록, 학력인정 기관의 경우 지정절차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교육감 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교육감 신고

구분	평생교육법 조항	관련 내용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교육감 신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교육감 신고(초/중/고) 교육부 보고(대학평생교육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교육감 신고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교육감 신고
행정처분	평생교육법 제42조	법령 위반시
지도·감독 업무	평생교육법 제42조의 2	교육감 신고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지원	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과 지원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임무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평생교육법에 의거(2017.11.20.)

나.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 내용 분석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를 통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대부분 ① 평생교육 연구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②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③ 평생교육 상담, ④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⑤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⑥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교육청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이 기존의 도서관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경비지원과 학습비 징수 및 감면 규정을 통해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들 지역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평생교육과, 부산교육청은 건강생활과, 대구교육청은 교육복지과, 인천은 평생교육체육과 등과 같이 대부



분의 지역교육청이 평생교육을 소관하는 부서명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생교육만 주된 업무로 하는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교육청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 분석

구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경비지원	학습비징수 및 감면	담당부서명
서울		○	○	○	평생교육과
부산		○	○	○	건강생활과
대구		○	○	○	교육복지과
인천		○		○	평생교육체육과
광주		○	○	○	미래인재교육과
대전		○	○	○	교육정책과
울산		○	○	○	평생교육체육과
세종		○	○	○	행정과
경기		○	○	○	평생교육과
강원		○	○	○	지식정보과
충북		○	○	○	과학국제문화과
충남		○	○	○	행정과
전북		○	○	○	미래인재과
전남		○	○	○	행정과
경북		○	○	○	과학직업과
경남		○	○	○	창의인재과
제주		○	○	○	미래인재교육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2017.11.20.)

4. 향후 과제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조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으로 이원화된 차원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차원의 특화된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갈등 소지 내지는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평생교육법상의 교육부-지역교육청으로 연계되는 교육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활성화 내지는 교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전담하면서부터,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진흥업무가 다소 위축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도 차원의 일반행정과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육행정이 상호 파트너십 하에 협력 및 지원체제를 지니고 지역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이희수, 2017). 특히, 평생교육법 부칙 제4조(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부터 수행하여 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하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래의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현재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학습 진흥 업무가 분리·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방안이라고도 지적되고 있다(변종임 외, 2013, 권두승, 2017). 이를테면, 평생교육 진흥업무와 관련하여 일반행정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력 및 학위인정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관련 기능은 교육청 중심으로 이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적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 차원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본다.



참고문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례(<http://www.law.go.kr>)(2017.11.20.).
- 권두승(2017).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정책 개선 국회공청회 자료집(2017.11.14.).
- 변종임·이세정·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이슈와 정비방향.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희수(2017). 평생교육법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정책포럼 자료집(2017.11.14.).

제2장

평생교육 전달체제





제1절 중앙정부 전달체제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육부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한 학습권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7년 12월 현재 평생직업교육국 산하에 4개의 과(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두었다.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시설 관련 업무, (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3)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 학점은행제, (5) 독학학위제, (6) 평생학습계좌제, (7)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8) 학원 관련 업무 등이다.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6〉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분류	업무 내용	관련 법령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제9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제16조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	제17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2조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육성	제3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8조
기관 설립 및 구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제15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	제1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협조	제19조의2

분류	업무 내용	관련 법령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	제24조, 제24조의2, 제43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제25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
문해교육	문해교육 진흥, 운영 및 지원	제39조
	문해교육센터 설치	제39조의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제40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40조의2
그 외 사업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공개	제18조,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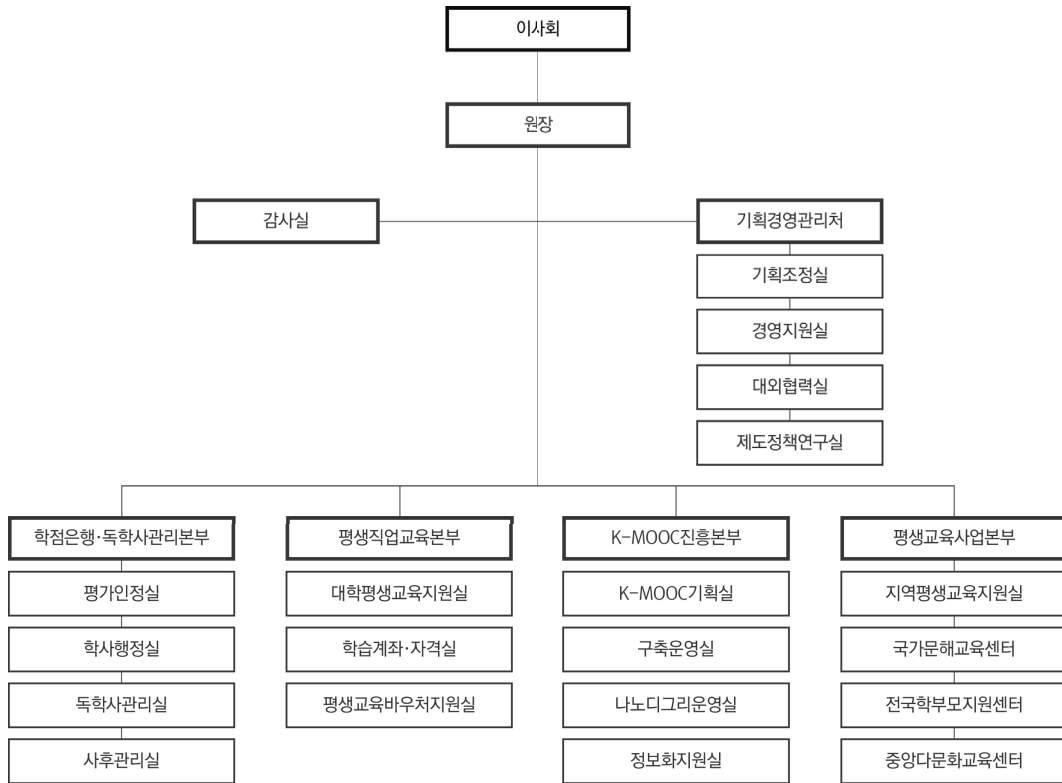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 국가평생교육진흥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7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08년에 개원하였다. 2012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서울 서초동으로, 2017년 5월에 서울 중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미션과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 진흥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조직 및 구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 12월말 현재 조직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8월 직제개정을 통해 1처 4본부 1실 체제를 갖추었다. 이전까지 1처 3본부 5센터 1실 1단의 구성이었으나 사무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K-MOOC 진흥본부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전략기획처와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기획경영관리처를 새로 조직하였다. 이외의 센터들을 각 본부와 통합 혹은 산하에 둬으로써 4본부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와 정원

직급	직종별 인원			비고(직명)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임원 (상근이사)	1			원장
1	1			[1급, 2급] 수석전문위원
2	4			[3급] 전문위원
3	12			[4급] 선임전문위원
4	17			[5급] 전문위원, 사무원
5	44			[6급] 전문위원, 사무원, 기능원
6		7(4)		[7급] 사무원, 기능원
7		-		
합계		86		

* ()는 시간제근로자 정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전문직은 수석전문위원(1급, 2급), 전문위원(3급), 선임전문위원(4급), 전문위원(5급, 6급)으로 구성된다. 사무직은 사무원(5급, 6급)이 있으며 기능직은 기능원(6급)으로 구분한다.

다. 주요 기능 및 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영역은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4) 평생학습계좌제, (5) 학점은행제, (6) 독학학위제, (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8)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9) 성인문해교육 지원, (10)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11)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전달체제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동 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 전달체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는 시·군·구 자치 단체와 교육지원청,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가 전달체제로 존재한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협약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1.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시·도 교육청이 협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업무 수준은 다르며,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8〉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단위: 명)

광역자치단체	주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인원
강원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1
경기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7
경남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담당	3
경북	인재개발정책관 소속	3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소속	1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평생교육팀	6
대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소속	1

광역자치단체	주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인원
부산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팀	5
서울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3 (국장 및 국 주무관 포함)
세종	(없음)	(없음)
울산	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3
인천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담당	4
전남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육성팀 소속	1
전북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3
제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6 (과장 포함)
충남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4
충북	정책기획관 교육지원팀 소속	1

출처: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검색 정리

광역자치단체 중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국 단위로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과 단위로도 제주특별자치도 1곳 밖에 없으며, 팀 단위로 존재하는 곳은 9곳(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충남, 충북)이다. 6곳(강원, 경북, 광주, 대전, 전남, 충북)은 특정한 과나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중 경북을 제외한 5곳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는 각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9〉 각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단위: 명)

교육청	주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인원
강원	지식정보과 평생학습담당	5
경기(북부청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9 (과장 포함)
경남	교육복지과 평생교육담당	4
경북	과학직업과 평생교육담당	5
광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6
대구	평생체육보건과 보건평생교육담당	5 (과장 포함)
대전	교육정책과 평생교육담당	4



교육청	주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인원
부산	건강생활과 평생교육담당	7
서울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33 (국장 및 국 주무관 포함)
세종	행정과 학원/평생교육담당	6
울산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7 (과장 포함)
인천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7 (과장 포함)
전남	행정과 평생교육팀	5
전북	미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7
제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3
충남	행정과 평생교육팀	6
충북	과학국제문화과 평생교육담당	3

출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검색 정리

시·도 교육청 중 평생교육 업무가 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유일하며, 과 단위는 4곳(경기, 대구, 울산, 인천), 나머지 12곳에서는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 담당 업무는 북부청사에서 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모두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국 단위로 편성한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고, 과 단위로 편성한 곳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팀 단위로 편성한 곳은 경남, 부산, 충남 등 3곳이며, 이외에는 행정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단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1) 운영 현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갖추었으며 시설 소유 형태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0〉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기관	시설소유형태			운영 현황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 단체소유	임대	법인 설립	지정	지정 기관
강원	•				•	강원발전연구원
경기		•	•	•		
경남			•		•	경남발전연구원
경북	•				•	대구대학교
광주		•		•		
대구			•		•	대구경북연구원
대전		•		•		
부산			•	•		
서울			•	•		
세종		•			•	세종인재육성재단
울산			•		•	울산발전연구원
인천			•		•	인천인재육성재단
전남			•		•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북		•			•	전북연구원
제주*			•		•	제주발전연구원
충남			•	•		
충북	•				•	충북연구원
계	3	5	10	6	11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5월 1일 조례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내부자료(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위의 표와 같이 시설을 운영주체가 소유한 경우는 3곳(강원, 경북,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곳은 5곳(경기 체인지업 캠퍼스,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임대를 한 경우가 10곳(경기 본원 및 지식캠퍼스,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이다. 경기도는 3개의 캠퍼스로 나뉘져 있으며, 본원과 지식캠퍼스는 임대 형태를, 체인지업 캠퍼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형태로 운영한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한 곳은 6곳(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충남), 다른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이 11곳(강원, 경남,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이다.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지역연구원이나 지역인재육성재단을 지정하였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예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1〉 20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관	예산 현황							
	계	재원별			목적별			
		국비	지방비	기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강원	662	-	662	-	261	306	95	-
경기	27,054	-	20,553	6,501	7,031	14,718	5,305	-
경남	810	10	800	-	177	591	42	-
경북	500	-	500	-	166	304	30	-
광주	2,497	-	2,273	224	602	1,463	194	238
대구	500	-	500	-	189.7	249.8	60.5	-
대전	6,825	-	4,259	2,566	1,737	4,011	1,067	10
부산	6,393	3,923	2,470	-	1,182	4,242	418	551
서울	4,098	-	3,799	299	1,034	2,215	642	207
세종	1,034	-	934	100	235	671	128	-
울산	1,251	124	1,127	-	303	808	140	-
인천	1,140	-	1,140	-	410	531	171	28
전남	1,110	10	1,100	-	279	431	400	-
전북	400	-	400	-	198	140	57	5
제주	2,445	-	2,445	-	287	2,085	73	-
충남	2,474	-	2,135	339	858	1,357	259	-
충북	400	-	400	-	194	170	36	-
계	59,593	4,067	45,497	10,029	15,143.7	34,292.8	9,117.5	1,039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내부자료(2017).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재원은 대부분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평생교육사업 외에 인재육성 사업도 수행하여 국비 재원이 큰 비중으로 있다. 목적별 예산 항목에서는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만이 사업비보다 인건비 예산이 높게 측정하였고, 그 외 15개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 조직 및 구성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조직은 기관마다 다르다. 각 기관의 조직과 체제 및 구성은 종사자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기관	종사자 현황							
	계	원장	본부장 / 국장	실·팀장	직원 (연구원)	파견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강원	8	1	-	1	4	2	-	-
경기	131	1	4	15	41	-	56	14
경남	4	1	-	2	2	-	-	-
경북	7	1	1	2	3	-	-	-
광주	14	1	1	2	8	1	1	-
대구	7	1	1	2	3	-	-	-
대전	40	1	1	4	34	-	-	-
부산	21	1	1	7	11	-	1	-
서울	16	1	1	3	9	-	2	-
세종	6	1	1	1	3	-	-	-
울산	9	1	1	2	3	-	1	2
인천	7	1	-	1	3	2	-	-
전남	9	1	1	2	4	1	-	-
전북	4	1	1	-	2	-	-	-
제주	36	1	1	2	3	16	13	-
충남	12	1	-	3	8	-	-	-
충북	7	1	1	2	3	-	-	-
계	338	17	16	51	144	22	74	16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내부자료(2017).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원장급 17명, 국장/본부장 급 16명, 실·팀장 급 51명을 중심으로 총 338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국장/본부장 급 4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이 종사해 가장 규모가 크다.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3〉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현황

기관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현황			
	계	1급	2급	3급
강원	5	1	4	-
경기	15	2	13	-
경남	4	-	4	-
경북	6	1	5	-
광주	8	-	8	-
대구	4	-	4	-
대전	32	3	29	-
부산	8	1	6	1
서울	10	1	9	-
세종	5	2	3	-
울산	7	1	6	-
인천	4	-	4	-
전남	4	2	2	-
전북	2	1	1	-
제주	4	1	3	-
충남	6	-	6	-
충북	5	-	5	-
계	129	16	112	1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내부자료(2017).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종사하는 338명 중 129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6조제4항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별표 2>를 제시하며, 시·도

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명시한다. 이와 같은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강원,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등 8곳이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담당 업무 수행 부서 외의 조직을 갖춘 형태도 있다.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그것이며, 이에 관하여 각 기관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4〉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특별 조직

기관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타
강원					
경기	•				
경남			•		
경북			•		인사위원회
광주					
대구				•	
대전	•	•		•	
부산	•	•			
서울	•	•		• ¹⁾	
세종				•	
울산					
인천	•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	
충북				•	실무협의회

1) 서울시는 '정책사업기획단'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내부자료(2017).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에 이사회를 둔 경우들이 있다.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대전, 부산, 서울, 인천은 감사실도 따로 두었다. 그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와 감사실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장학사무국의 이사와 감사도 맡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독자적인 이사와 감사만을 맡지는 않는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며,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충남, 충북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북은 인사위원회를, 충북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있다.

3) 주요 사업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들을 진행한다. 다음 표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이다.

〈표 2-25〉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1-1-①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1-1-②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1-2-①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1-2-②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1-3-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1-3-②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 교육훈련 - 자격 연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2-1-①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2-1-②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2-2-①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2-2-②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2-2-③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2-3.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2-3-①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2-3-②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2-3-③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3-1.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1-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3-1-②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지원		3-1-③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3-2.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3-2-①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3-2-②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2-③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3-3-①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3-3-②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3-3-③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4-1-①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4-1-②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4-2-①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4-2-②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4-3-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4-3-②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출처: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사업들은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학’을 운영한다. <찾아오는 대전학>, <찾아가는 대전학> 등 2가지를 운영하며, 교재 발간, 40여 개의 정규강좌, 대전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 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배달강좌, 직무연수와도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대전시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세종학>,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남도학>,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북학>,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추진하고 있다.



(2) 평생학습 지수 개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형 평생학습 지수>를 개발하여 평생학습 정책 추진성과 모니터링 지표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실천가능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시민의 지속적 생애역량을 증진하고자 한다.

(3) 그 밖의 특색사업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창올림픽 연계 문화도민 평생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을 맞이하여 국제적 행사에 걸맞게 도민들의 역량을 평생교육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한다. 체인지업 캠퍼스는 (구)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진흥원과 통합되어 하나의 캠퍼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체인지업 캠퍼스는 기존에 진행하던 글로벌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한다. 지식 캠퍼스 (GSEEK 사업)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MOOC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이다. 평생학습 포털 이상의 체제를 갖추고자 캠퍼스 단위로 확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들을 위한 중국어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도민 중국어교육과정과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이는 중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또한 도민 친절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제주지역 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표 2-26〉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구분	기관수	설립주체				운영형태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직영	위탁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44	258	64	7	15	279	65
지자체 설치	122	122	-	-	-	113	9
총계	466 〈22〉	380 〈1〉	64 〈14〉	7 〈2〉	15 〈5〉	392 〈20〉	74 〈2〉

주: 〈 〉는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총계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 평생학습관의 운영 유형

평생학습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직영과 위탁으로 나뉜다. 아래에서는 두 유형의 대표적 도시의 조례를 통해 운영 형태를 제시한다.

(1) 직영 유형 - A시

A시는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A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4조(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A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한다.

③ 센터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2.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7. 평생학습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및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다만,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센터장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소지자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거나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로 평생교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생교육사 :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② 운영요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A시는 평생학습센터 아래 도서관을 담당하는 팀도 따로 존재하며 그 밖에도 평생교육과와 여성보육과, 2개의 과를 두고 각각 4개, 6개의 팀을 배치하여 10개의 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영으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기에 센터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이나 평생학습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등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였다. 직영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위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 계약 갱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2) 위탁 유형 - B시

B시는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B시의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평생학습 종합정보의 제공·홍보 및 학습상담
3.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 지원
4.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 ~ 21: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B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며, 수탁기관 인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때 수탁기관은 통계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B시는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과 수탁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조례에 담고 있다. A시와는 다르게 B시는 위탁 운영시 재계약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대신 다른 조례를 통하여 위탁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는 재위탁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위탁을 하여 그 업무를 맡기기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조직에 대해서도 생략하고 있다. 다른 곳과 다르게 평생학습관의 개관 시간을 명시한 점이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제3절 민간 전달체제

1. 체제 개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다. 셋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7〉 평생교육기관 분류

	관계법	시설구분	유형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제20조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인정시설(교육감 지정)	각종학교, 기술학교 등
	제2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제22조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제22조 시행령 제46조		원격교육형태
	제23조	④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제24조	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 300인 이상 시민단체를 지칭
	제25조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제26조 시행령 제44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제27조	⑧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제2조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관계법	시설구분	유형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학원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중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국립중앙도서관 등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국립중앙박물관 등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여성 관련 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아동보호시설
	직업 훈련 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전수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국악원 등		

출처: 최도민 외(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p.21.

현재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평생학습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과 연계 협력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의 상황이나 운영 프로그램 관련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2. 민간 평생교육기관 유형과 현황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 6대 영역 중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영역까지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일컫는다.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한다. 이렇게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된다.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어 고등교육의 학력도 인정이 가능하다.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라 기업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문대학 혹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었거나,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직원이거나, (3)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이다. 이러한 사내대학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라 설치가능하며 원격대학 혹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IT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형태의 고등교육이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나 학력·학위와 관계없는 원격교육도 가능하다.

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된 6대 영역 중 학력보완교육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장에게 수요자 관점으로 평생교육을 개발·시행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학력과 상관없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 외에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일컫는다.

(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생 혹은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존재하는 평생교육원이 이에 해당한다.



(4)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구든지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장점 때문에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기관수와 학생·학습자수가 가장 많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백화점 등을 포함한 많은 유통업체와 산업체,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6)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확보하고 있으면서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이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면서 ① 일간·주간·인터넷 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방송을 하는 법인, ③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에 해당하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해야 함을 밝힌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는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으며,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현황

평생교육통계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을 준형식기관(semi-forma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로 집계하고 있다. 아래 표는 학력인정 및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2016년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4,153개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21만여 개 프로그램에 1,133만여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는 73,204명, 사무직원수는 19,842명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을 인정하는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는 초·중등학력 수여 기관 170개에 49,563명의 학습자가 등록하였으며, 854개 고등교육 학위 수여 기관에 517,768명이 등록하였다.

〈표 2-28〉 민간평생교육기관 개황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비 형 식	전체	4,153	212,339	11,336,564	73,204	19,842	
	학교부설	초·중등학교부설	6	57	1,337	35	15
		대학(원)부설	406	29,532	902,600	15,033	1,983
		소계	412	29,589	903,937	15,068	1,998
		원격형태	927	63,602	7,304,497	11,123	6,494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부설	378	69,138	1,141,911	20,389	1,544
		산업체부설	48	1,373	64,984	739	223
		소계	426	70,511	1,206,895	21,128	1,767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준 형 식	시민사회단체부설	544	6,206	156,000	3,575	1,479		
	언론기관부설	792	4,624	151,101	3,604	2,010		
	지식·인력개발형태	608	10,824	664,509	6,916	3,738		
	평생학습관	444	26,983	949,625	11,790	2,356		
	전체	1,024	-	567,331	7,076	2,717		
	초·중등 교육형태	소계	170	-	49,563	3,656	799	
		공민학교	-	-	-	-	-	
		고등공민학교	3	-	61	11	3	
		고등기술학교	7	-	897	96	23	
		각종학교(초·중·고)	43	-	8,159	998	202	
		산업체부설고등학교	-	-	-	-	-	
		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	3	-	71	16	-	
		방송통신중학교	20	-	3,241	345	94	
		방송통신고등학교	42	-	10,996	1,079	257	
		학교형태학력 인정평생교육 시설	초	3	-	1,640	50	12
			중	5	-	1,386	8	2
			고	28	-	12,759	646	119
			통합	16	-	10,353	407	87
			소계	52	-	26,138	1,111	220
	고등교육 형태	소계	854	-	517,768	3,420	1,918	
방송통신대학		1	-	184,074	153	510		
산업대학		2	-	33,245	371	130		
기술대학		1	-	98	-	-		
각종학교		2	-	3,544	148	132		
원격대학		2	-	3,224	25	24		
사이버대학		19	-	120,057	599	576		
사내대학		8	-	778	4	6		
기능대학		11	-	28,956	863	285		
전공대학		3	-	11,939	246	85		
특수대학원		805	-	131,853	1,011	170		

출처: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브로슈어.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돈민·윤여각·노기호·강대중(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인터넷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각 시·도청 사이트

- 1) 강원도청 <http://www.provin.gangwon.kr>
- 2) 경기도청 <http://www.gg.go.kr>
- 3) 경상남도청 <http://www.gyeongnam.go.kr>
- 4) 경상북도청 <http://www.gb.go.kr>
- 5)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
- 6)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 7)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 8)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9)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 10) 세종특별자치시청 <http://www.sejong.go.kr>
- 11)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 12)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13) 전라남도청 <http://www.jeonnam.go.kr>
- 14)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
- 15)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u.go.kr>
- 16)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 17) 충청북도청 <http://www.chungbuk.go.kr>



◎ 시·도 교육청 사이트

- 1) 강원도 교육청 <http://www.gwe.go.kr>
- 2) 경기도 교육청 <http://www.goe.go.kr>
- 3) 경상남도 교육청 <http://www.gne.go.kr>
- 4) 경상북도 교육청 <http://www.gbe.kr>
- 5) 광주광역시 교육청 <http://www.gen.go.kr>
- 6) 대구광역시 교육청 <http://www.dge.go.kr>
- 7) 대전광역시 교육청 <http://www.dje.go.kr>
- 8) 부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pen.go.kr>
- 9)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sen.go.kr>
-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http://www.sje.go.kr>
- 11) 울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use.go.kr>
- 12) 인천광역시 교육청 <http://www.ice.go.kr>
- 13) 전라남도 교육청 <http://www.jne.go.kr>
- 14) 전라북도 교육청 <http://www.jbe.go.kr>
- 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http://www.jje.go.kr>
- 16) 충청남도 교육청 <http://www.cne.go.kr>
- 17) 충청북도 교육청 <http://www.cbe.go.kr>

제3장

평생교육 전문인력



제1절 평생교육사

1. 제도 개요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 관련하여 등급과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등은 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우선 직무범위는 시행령 제17조에서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②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③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과 함께 운영되기 시작한 평생교육사 제도(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는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보다 이수과정(20→30학점), 직무(2등급→3등급), 실습(비학점→학점화), 배치기준에서 강화되었다. 이후 2013년에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되면서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자격증 교부 권한이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자격증 발급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였고, 2014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증 교부·재교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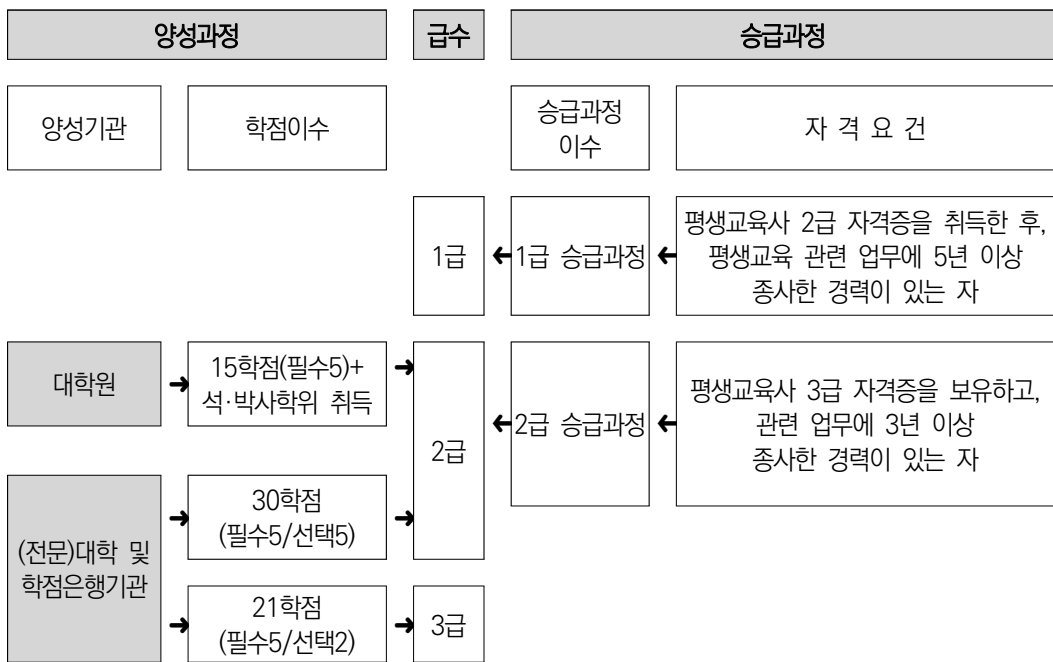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학력인정 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기관 유형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정착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자격 소지자의 채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채용 기관들도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학습)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 등의 평생교육 전담 조직에 전문인력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기관 외에도 행복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2. 제도 추진 현황

가.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이수과정은 [그림 2-4]와 같이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양성과정은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이고, 승급과정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이다.



[그림 2-4]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은 다음 <표 2-29>와 같다. 평생교육사 1급은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수한 자,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평생교육사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3급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21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표 2-2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등급	자격기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항 별표1의 2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8,404명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7,042명, 2017년 6,496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현황은 2017년 12월 현재 1급 693명, 2급 115,494명, 3급 7,421명 등 총 123,608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회교육법 시기에 양성된 사회교육전문요원과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사 자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3년 동안 사회교육전문요원은 연평균 1,770명이 양성된 것에 비해, 평생교육사는 18년 동안 평균 5,589명이 양성되어 그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30〉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3급	총 계	비 고
1986 ~1999년	0	21,007	2,008	23,015	(구)사회교육 전문요원
2000년	22	1,548	344	1,914	평생교육사
2001년	25	2,878	513	3,416	
2002년	38	2,957	636	3,631	
2003년	31	2,982	601	3,614	
2004년	32	2,776	551	3,359	
2005년	26	3,734	490	4,250	
2006년	33	3,735	143	3,911	
2007년	16	4,566	316	4,898	
2008년	33	5,448	273	5,754	

연도	1급	2급	3급	총계	비고
2009년	57	5,447	260	5,764	
2010년	55	6,697	383	7,135	
2011년	30	6,808	221	7,059	
2012년	70	7,900	183	8,153	
2013년	58	7,633	156	7,847	
2014년	42	7,791	113	7,946	
2015년	44	8,278	82	8,404	
2016년	38	6,923	81	7,042	
2017년	43	6,386	67	6,496	
총계	693	115,494	7,421	123,60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1>과 같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29.0%), 경기(17.6%)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경북, 충남, 광주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과 제주의 경우는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편차는 자격증 발급 현황으로 연결되어 지역간 자격 소지자의 차이도 유사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이 대표적인 양성기관이었으나, 지난 4년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자격교부현황을 살펴보면, <표 2-32>와 같이 일반평생교육시설이 9,106명(29.1%)으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였고, 이어서 방송통신대학 6,984명(22.4%), 대학 6,683명(21.4%), 원격 및 사이버대학 4,434명(14.2%) 순으로 양성하였다. 여기에서 일반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로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급격한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표 2-31〉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2017.12.31.기준)

(단위: 개)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대학원	일반 대학원	7	-	1	-	1	-	-	2	1	-	-	1	-	1	-	-	-	
	특수 대학원	17	7	1	-	-	2	1	-	2	2	1	1	-	-	-	-	-	
	대학원 대학	11	5	-	-	1	-	1	-	3	-	-	1	-	-	-	-	-	
대학	대학	121	31	9	2	2	6	5	-	20	5	8	12	6	2	8	4	-	1
	산업 대학	1	-	-	-	1	-	-	-	-	-	-	-	-	-	-	-	-	-
	전문 대학	30	3	-	3	-	1	-	-	6	1	3	1	2	3	5	2	-	-
	원격 대학 ¹⁾	16	8	2	-	-	-	1	-	2	-	-	1	-	-	2	-	-	-
학점 은행 기관	원격 기반	28	18	-	2	-	3	-	-	1	-	-	1	2	-	1	-	-	-
	출석 기반	36	5	3	2	2	2	3	-	11	-	-	4	1	-	1	2	-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2	-	-	-	-	-	-	-	1	-	-	-	-	-	1	-	-	-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1	1	-	-	-	-	-	-	-	-	-	-	-	-	-	-	-	-	
기타 ²⁾	2	1	-	1	-	-	-	-	-	-	-	-	-	-	-	-	-	-	
계	272	79	16	10	7	14	11	0	48	9	12	21	12	5	19	8	0	1	

주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으로 분류

주2) 기타유형 : 백석예술대학교(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한국사학진흥재단(폐교대학 관리).

주3) 해당자료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edu.nile.or.kr) 홈페이지 가입기관에 한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표 2-32〉 양성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기관유형	2013	2014	2015	2016	계
전문대학	521	667	826	729	2,743
교육대학	-	3	3	4	10
대학	1,991	1,662	1,686	1,344	6,683
방송통신대학	1,676	1,788	1,977	1,543	6,984
산업대학	146	105	64	53	368
각종학교	23	4	-	-	27
원격 및 사이버대학	1,244	1,103	1,042	1,045	4,434
대학원대학	151	142	127	117	537
전공대학	59	43	51	50	20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1	30	38	35	144
일반평생교육시설	1,995	2,399	2,590	2,122	9,106
계	7,847	7,946	8,404	7,042	31,239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2017).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과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과 배치기준은 다음 <표 2-33>과 같다.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등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가 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제26조제3항)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다.



〈표 2-33〉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출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의 재직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가 2017년 12월 현재 123,608명인 것에 반해 재직자수는 6,677명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재직률은 5.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율은 총 기관 대비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비율은 78.5%이다. 평생교육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1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점은행기관(97.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94.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93.9%)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영역별로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이 총877개 기관 중에서 627개의 기관(71.5%)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민간 평생교육기관은 총3,591개 기관 중에서 2,799개의 기관(77.9%), 학점은행기관은 총421개의 기관 중 411개의 기관(97.6%)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의 평균 배치 인원은 1.37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1.61명, 민간평생교육 기관은 1.15명, 학점은행기관은 2.6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4〉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배치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기관유형	총 기관수	배치 기관수	배치율	평생교육사 재직현황	
공공 평생교육 기관 ¹⁾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	100.0	4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17	100.0	139	
	시·도청(평생교육 전담부서)	17	6	35.3	12	
	시·군·구청(평생교육 전담부서)	228	175	76.8	400	
	시·도교육청(평생교육 전담부서)	17	10	58.8	19	
	교육지원청(평생교육 전담부서)	176	39	22.2	55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131	123	93.9	273
		교육감 설치지정	290	256	88.3	743
소계		877	627	71.5	1,410	
민간 평생교육 기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5	2	40.0	2
		대학(원)	412	328	79.6	623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424	405	95.5	54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707	535	75.7	629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579	434	75.0	660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515	385	74.8	509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949	710	74.8	1,178
	소계		3,591	2,799	77.9	4,142
학점은행 기관	학점은행기관 ²⁾		421	411	97.6	1,125
	소계		421	411	97.6	1,125
합계		4,889	3,839	78.5	6,677	

주1) 시군구청과 지자체 설치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재직현황은 일부 중복되었으며, 소계는 중복현황을 제외하였음

주2)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수의 일부는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중복됨

주3) 굵은 글씨는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대상 기관

주4) 조사기준일 및 조사처 : 공공평생교육기관(201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간평생교육기관(2017.5.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기관(2017.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조사에 따르면, <표 2-34>에서와 같이 공공 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총 1,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957명이었으며, 순수 정규직은 830명, 무기계약직은 127명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453명이었으며, 임기제계약직 179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직은 141명, 기간제계약직은 111명, 시간제계약직은 10명, 기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사들의 직업적 안정성이 높지 않아



전문성의 축적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비율은 67.9%였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비율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교육감 설치·지정 시·군·구 평생학습관 93.3%, 교육지원청 78.2%,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6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설치·지정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교육행정기관에서의 평생교육사 정규직 비율은 92.4%로 시도청, 시군구청, 지자체 설치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일반행정 기관에서의 평생교육사 정규직 비율인 2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무기 계약	계	비율 (%)	임기제 계약	시간 선택제 임기제계약	기간제 계약	시간제 계약	기타	계	
시도청	1	1	2	16.7	4	5	-	-	1	10	12
시군구청 ¹⁾	69 (54)	22 (6)	91 (60)	22.8	137 (50)	134 (66)	29 (18)	6 (5)	3 (2)	309 (141)	400 (201)
시도교육청	16	3	19	100	-	-	-	-	-	-	19
교육지원청	25	18	43	78.2	6	1	5	-	-	12	5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	3	23	54.8	-	-	19	-	-	19	4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74	12	86	61.9	10	-	35	-	8	53	139
시군구 평생 학습관	지자체 설치 ²⁾	60 (6)	11 (5)	71 (11)	26.0	81 (31)	91 (25)	23 (5)	5	2 (61)	202 (72)
	교육감 설치·지정	625	68	693	93.3	22	1	23	4	-	50
총계 ³⁾	830	127	957	67.9	179	141	111	10	12	453	1,410

주 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관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주 2)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군구 인력 현황을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으로 활용하였으며 시군구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주 3) 중복된 현황을 제외한 합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다. 평생교육 연수 운영 현황

평생교육사 연수는 승급과정과 일반 과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1·2급 승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사 184명이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였으며 183명이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7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은 40명이 이수하였으며 39명이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2급 승급과정은 2010년 35명을 배출한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

〈표 2-36〉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2013~2017년)

연도	선발	이수	자격발급
2013	42	41	41
2014	31	30	30
2015	40	38	38
2016	41	35	35
2017	40	40	39
총계	194	184	18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2017년 1급 승급과정의 교육내용은 비전과정 및 직무역량개발 5개 영역 (평생교육기관 경영 및 관리, 변화촉진 및 지역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평생학습상담 및 컨설팅, 평생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기타과정 등 3개 분야, 7개 영역, 29개 교과목으로 구성(2017년 기준)되어 있으며 영역별 교육내용은 다음 <표 2-37>과 같다.

〈표 2-37〉 2017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영역	교육과목(시간)
평생교육 비전과정 (평생교육특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이해(3H) 2. 평생교육법의 이해와 해석(3H) 3. 평생교육학의 종론과 통섭의 이해(3H) 4. 평생교육사의 거시적 자격담론(3H) 5. 평생교육사의 직업윤리(3H) 6. 평생교육 리더십(3H)



영역		교육과목(시간)
		7. 평생교육사 전문성과 비전빌딩(3H) 8. 평생교육사의 임파워먼트 팔로우업(3H) 9. 조별프로젝트 운영 및 발표(5H)
직 무 역 량 개 발	1. 평생학습 상담 및 컨설팅	10. 생애발달과 평생학습상담(3H) 11. 평생교육사의 자기경력 개발(3H) 12. 진로상담과 경력개발(3H) 13. 의사소통과 타인육성역량(3H)
	2.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텍소노미(3H) 15. 프로그램개발팀 구성 워크숍(3H) 16. 프로그램개발 타당성 분석 워크숍(3H) 17. 프로그램요구분석/우선순위설정워크숍(3H) 18. 프로그램설계, 모니터링 워크숍(3H) 19. 프로그램평가 및 성과관리(3H)
	3. 평생교육기관 경영 및 관리	20. 평생교육기관 경영 및 재정운영(3H) 21. 조직분석 및 기관역량 분석(3H) 22. 마케팅 및 기관홍보전략 수립(3H)
	4. 변화추진 및 지역디자인	23. 평생학습공동체와 변화추진(3H) 24. 평생학습동아리 조직화(3H) 25.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개발(3H) 26. 평생학습네트워크전략(3H) 27. 실천사례발표 및 워크숍(3H)
	5. 평생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28. 평생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3H) 29. 평생교육 교수학습방법 개발(3H) 30. 평생교육에서의 평가(3H)
기타과정		개강식 및 종강식(2H) 종합시험(3H) 평생교육기관 및 행사 견학(8H)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회 실시되었으며, 1,444명이 이수하였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대상 연수의 교육내용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등 직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회 실시되었으며, 632명의 평생교육사가 연수를 이수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연수가 일회성의 특강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공통의 교육과정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사 연수 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 평생교육사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표 2-38〉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운영 현황(2013~2017년)

연도	대상	운영횟수	이수자 수	계
2013	평생교육사	2	282	638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3	356	
2014	평생교육사	7	218	660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4	442	
2015	평생교육사	4	132	446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2	314	
2016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2	174	174
2017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담당자	2	158	158

※ 2013~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PE센터(연수원)의 연간 운영 계획에 의한 연수 실시(2014. 8. CPE센터 폐지).

3. 향후 과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전문화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 연수라는 전문계속교육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017년 까지 약 12만 여명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지만, 양성 이후의 연수나 기관에의 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이 필수적이다. 위 <표 2-3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연수 전담 기구(CPE 센터)가 있던 2013년과 2014년의 연수 운영현황과 CPE센터가 폐지된 2015년 이후의 연수 운영 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연수를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양성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 연수는 체계적인 연수시스템 없이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도 중요한 문제이다.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79.3%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란 양성과정에서의 역량 개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격 취득 이후 연수와 현장 업무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개발된 평생교육사 연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사 연수 기관인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 연수의 교육 내용을 새로운 평생교육 관련 분야(최근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 직업교육 등)들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평생교육사가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지도·감독 조항이 없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위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사의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기관 4,030개 기관에는 5,339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기관당 평균 1.32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 평생교육사 1명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모두를 수행하기에는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은 홀로가 아니라 집단적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단계화와 실천 역량의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한 배치 기준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셋째,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영역의 평생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전담인력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비율은 15.9%에 불과하여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문자격으로써 평생교육사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렬로서 평생교육 영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의 전문화·고도화·다양화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중·김한별·김현수·한승희·현영섭(201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교육백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2017). 각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관련 내부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계획.
 양병찬(2017).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창립대회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제2절 문해교육 교원

1. 사업 개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²⁾가 제시되어 있다.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고,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학력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반드시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³⁾에서 양성한 문해교육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문해교육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30. 2016.8.2.>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제70조의 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교육 기관[본조신설 2016.8.2.]

2. 사업 추진 현황

가. 문해교육 교원 연수 운영

문해교육 교원연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집합교육과 더불어 현장 실습을 운영한다.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5일, 현장실습 1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중학과정 문자해득 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6호, 성인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이 있다. 또한 중학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과서 개발 등 제반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이 추진되었다.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목별 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졸업자도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 운영하였다. 중학과정은 집합교육 3일과, 현장실습 15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9〉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자격 조건

과정	신청 자격
초등 과정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중학 과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⁴⁾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⁵⁾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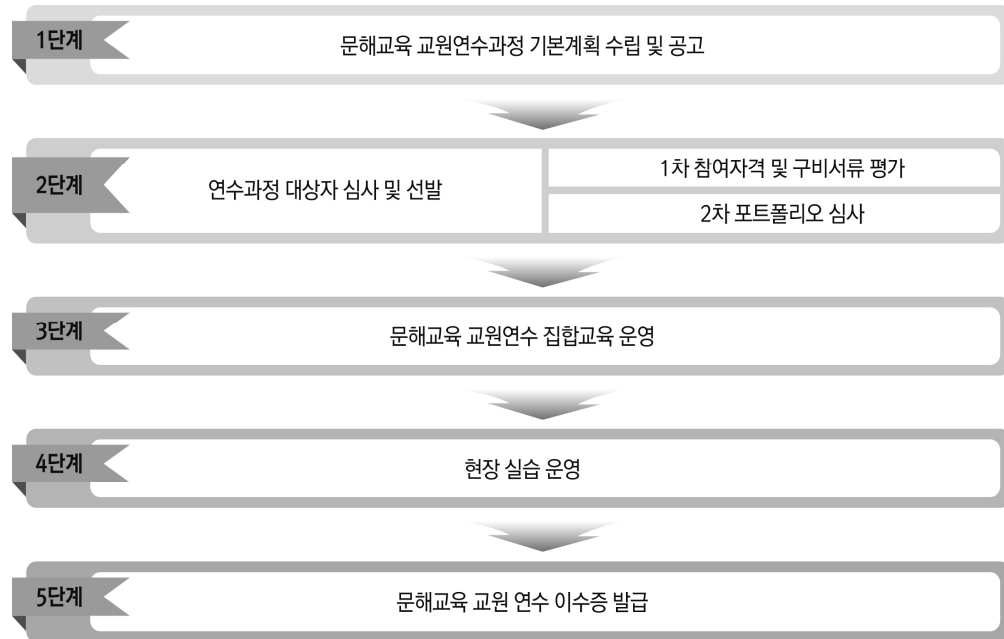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의결

- 4)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5)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나.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절차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는 연수 과정 운영을 위하여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2-5]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절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3. 사업 운영 성과

2016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문해교육교원은 총 4,081명이 되었으며,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은 3,297명,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은 784명이었다.

〈표 2-40〉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초등과정	2	9	4	7	15	12	8	12	12	10	91
중학과정*						3	4	1	7	11	26
합계	2	9	4	7	15	15	12	13	19	21	117

*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운영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표 2-41〉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회)

연도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선발대상자)		이수자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20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회		60명		60명	
200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회		278명		267명	
20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회		136명		129명	
20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회		375명		356명	
20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회		597명		546명	
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회	3회	404명	137명	375명	133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29명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4명		22명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77명		70명	
20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회	3회	247명	119명	242명	109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3명		30명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0명	26명	31명	25명
20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0명	30명	40명	30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5명		35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28명		28명	



연도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선발대상자)		이수자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5명		34명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30명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6명		36명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2명		22명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9명		29명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9명		29명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40명		40명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회		59명		59명	
201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9명	31명	39명	31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26명	14명	26명	14명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1명		31명	
	인천직할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44명		43명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2명	21명	29명	17명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9명		19명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6명	32명	45명	32명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34명		34명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0명		20명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40명		40명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8명		28명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28명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7명	32명	37명	32명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3명		22명
201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30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25명	17명	25명	17명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23명		23명
	인천직할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5명		31명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39명		39명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회		27명		27명	

연도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선발대상자)		이수자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회	2회	78명	111명	75명	109명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2명	25명	40명	25명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40명	30명	40명	30명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50명	20명	49명	20명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1회	34명	11명	34명	11명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30명		29명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1회		24명		24명
합 계		91회	26회	3,466명	810명	3,297명	784명
		117회		4,276명		4,081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표 2-42〉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초등과정	60	267	129	356	546	496	303	382	400	358	3,297
중학과정*	-	-	-	-	-	133	134	30	167	320	784
합계	60	267	129	356	546	629	437	412	567	678	4,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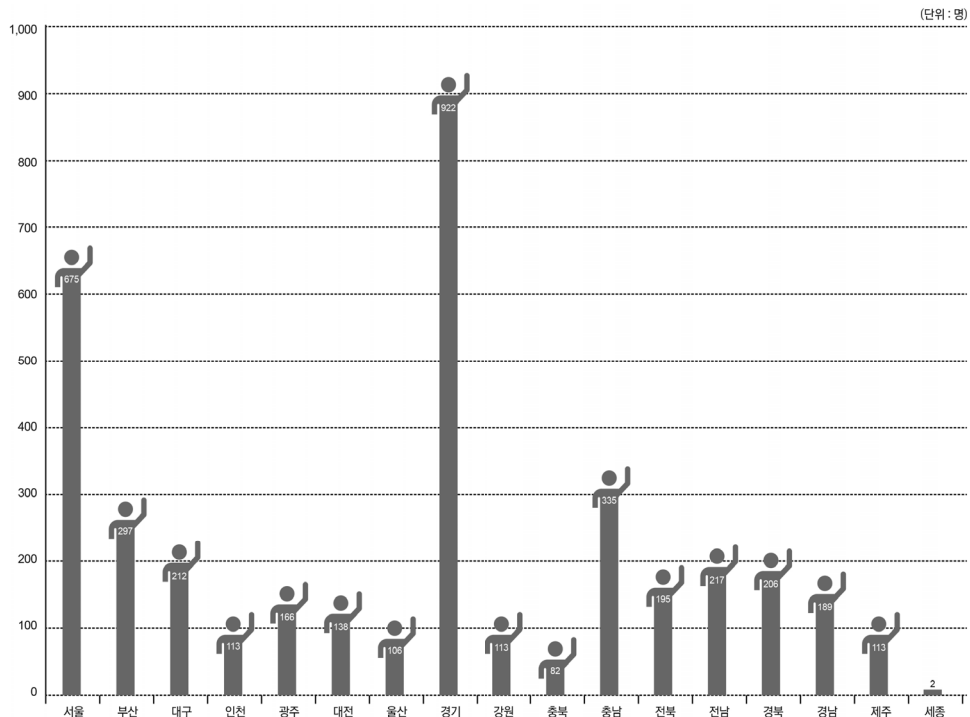


〈표 2-43〉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명)

지역/ 연도	초등과정										소계	중학과정					소계	합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서울	13	36	20	97	117	100	59	47	39	0	528	52	23	7	31	34	147	675
부산	5	11	7	24	40	52	38	29	26	25	257	3	6	0	14	17	40	297
대구	1	12	2	12	19	4	39	34	27	4	154	10	26	0	4	18	58	212
인천	0	12	10	12	16	8	3	1	27	0	89	0	2	1	0	21	24	113
광주	0	9	3	14	9	19	13	30	29	0	126	9	12	2	17	0	40	166
대전	1	12	3	8	8	10	13	0	1	39	95	11	14	0	18	0	43	138
울산	0	8	1	5	0	28	0	36	0	26	104	1	1	0	0	0	2	106
경기	17	62	39	83	157	110	59	40	63	75	705	30	28	9	34	116	217	922
강원	2	9	2	7	11	7	10	29	34	0	111	2	0	0	0	0	2	113
충남	3	15	1	8	5	12	13	2	20	0	79	0	0	0	1	2	3	82
충북	0	14	15	44	94	28	4	1	41	40	281	11	8	9	0	26	54	335
전북	3	26	10	18	21	3	6	4	28	40	159	0	5	1	0	30	36	195
전남	6	21	7	3	19	11	17	29	28	49	190	3	4	0	0	20	27	217
경북	5	8	2	8	11	17	9	40	35	30	165	1	2	0	26	12	41	206
경남	2	11	3	7	13	17	20	60	1	30	164	0	2	1	22	0	25	189
제주	2	1	4	6	5	70	0	0	0	0	88	0	1	0	0	24	25	113
세종	0	0	0	0	1	0	0	0	1	0	2	0	0	0	0	0	0	2
계	60	267	129	356	546	496	303	382	400	358	3,297	133	134	30	167	320	784	4,081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그림 2-6〉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4. 향후 과제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교원연수 과정의 운영은 전국의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전국 1644개(’17년 전국 지자체 성인문해교육 지원현황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르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 참여 학습자의 인원은 상이할 수 있으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필요 없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나 참여 학습자의 인원 대비 상관없이 전국의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교원연수 양성에 참여 및 교원 연수 과정이 전국에 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개정이다. 2016년 8월 2일자로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만이 제한된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개최 가능한 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지역의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기능 등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 교원 연수 개최 시 영역별 전문 강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전국의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되고 지역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학력인정기관에 관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 강사의 인원 부족은 문해교육 교원연수 개최 시 필요한 영역별·수준별 전문 강사진의 부재로 연수 과정의 개최를 지연 및 제한시키고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의 영역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된 강사 양성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매뉴얼 2.0.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법무부(2016). 평생교육법 시행령. 서울: 법무부(개정 2014.6.30. 2016.8.2.).

제3부

평생교육 현황

- 제1장 | 영역별 평생교육 현황
- 제2장 | 대상별 평생교육 현황
- 제3장 |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
- 제4장 | 평생교육 예산 현황
- 제5장 | 평생교육 국제교류 현황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현황



제1절 학력보완교육

1. 독학학위제

가.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독학학위제는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개방형 고등교육제도이다.

1980년대 후반 대학 진학에 대한 과잉 욕구 해소 및 재수생 문제 해결 그리고 대학진학을 원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갖춘 자가 자학자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1~4과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 주관하에 처음 실시된 이후, 1998년 관련 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되었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 검정해 줌으로써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1990년 4월 7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4227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곧바로 동년 5월 3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00호), 5월 18일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86호)을 제정·공포하였다. 1990년 10월 21일 제1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이 중앙교육평가원 주관 아래 시행되었다. 독학학위제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 독학학위제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4227호) 제정·공포
1990년 6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 설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 개시
1990년 10월	제1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6개 전공)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
1992년 4월	5개 전공 신설(행정학, 유아교육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1993년 2월	제1회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147명)
1995년 7월	1개 전공 신설(중어중문학)
19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업무 이관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기관 변경
2013년 7월	1개 전공 신설(정보통신학)
2014년 2월	1개 전공 신설(심리학)
2015년 9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13223호) 일부개정
2017년 2월	2017년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974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나. 제도 추진 현황

1) 운영체제

(1) 전공 분야

독학학위제는 문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등 10개 학위종별 11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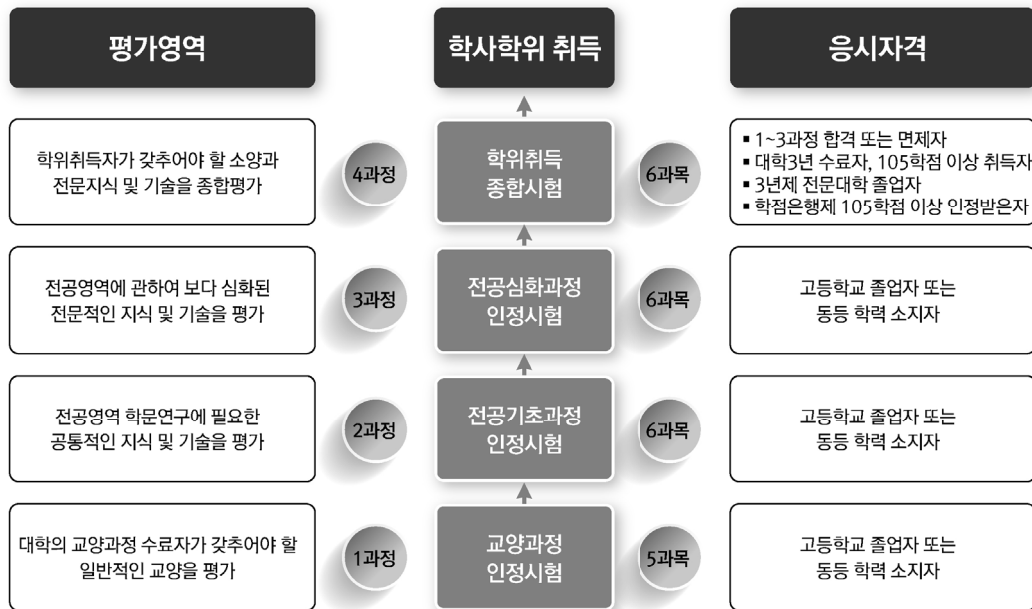
〈표 3-2〉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학위종별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중어중문학(신규 응시 폐지)
법학사	법학
행정학사	행정학
경영학사	경영학
이학사	수학(신규 응시 폐지)

학위종별	전공
공학사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3, 4과정만 지원 가능)
가정학사	가정학
간호학사	간호학(4과정만 지원 가능)
교육학사	유아교육학(3, 4과정만 지원 가능)
농학사	농학(신규 응시 폐지)

(2) 학사학위 취득과정

독학학위제는 총 4개 과정의 시험(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평가영역 및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 과정도



나. 주요 현황

1) 독학학위제 시험 실시 현황

독학학위제 시험 지원자는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이후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8,988명의 학습자가 시험에 지원하였다. 2015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3과정 시험의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완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소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양과정인정시험 (1과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2013년	14,884	10,568	7,921	11,239	8,218	5,842	4,139	2,925	2,526	2,891	2,227	961
2014년	13,335	9,126	6,680	8,868	6,401	4,643	3,540	2,558	2,051	3,382	2,687	1,358
2015년	12,270	8,722	6,278	8,662	6,412	4,170	3,376	2,429	1,953	3,910	3,003	1,057
2016년	11,313	7,874	5,071	9,456	6,659	4,254	4,389	3,097	1,960	3,539	2,645	974
2017년	11,538	8,308	5,755	9,655	7,105	5,602	4,587	3,202	1,989	3,208	2,401	887

* 1~3과정 합격자는 1과목 이상 합격자 수이며, 4과정 합격자는 학위취득자 수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12.31.기준)

2)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2008년 이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1~3과정 지원자의 증가에 비하여 학위취득자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독학학위제를 응시하는 목적이 학위취득만이 아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각종 시험자격 응시자격 충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4〉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현황

(단위: 명)

전공 \ 연도	199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국어국문학	1,658	108	94	144	99	134	124	84	77	2,522
영어영문학	1,896	166	238	222	214	229	159	90	112	3,326
중어중문학	22	1	0	0	0	0	0	0	1	24
심리학	-	-	-	-	-	7	19	15	20	61
경영학	851	38	45	51	54	48	28	19	22	1,156
법학	838	37	54	41	32	36	33	27	35	1,133
행정학	640	11	21	19	22	12	6	10	5	746
유아교육학	1,973	69	54	51	99	83	132	76	81	2,618
수학	24	0	2	0	0	0	0	0	0	26
가정학	1,119	56	49	54	59	71	29	26	20	1,483
농학	40	0	0	0	1	0	0	0	0	41
컴퓨터과학	2,097	63	51	66	70	67	67	32	37	2,550
정보통신학	-	-	-	-	2	3	3	1	0	9
간호학	747	193	179	302	309	668	457	594	477	3,926
계	11,905	742	787	950	961	1,358	1,057	974	887	19,621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분야는 2003~2006년까지 순차로 폐지, 기존 학적보유자만 응시 가능함

* 정보통신학(2013년), 심리학(2014년) 분야는 신설 전공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12.31.기준)

학위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30대의 학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학위취득비율은 57.8%로 독학학위제가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정규학교 졸업 후,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평생교육제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5〉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연령 연도	24세 이하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2013년	227 (23.6)	293 (30.5)	250 (26.0)	142 (14.8)	49 (5.1)	961 (100.0)
2014년	307 (22.6)	433 (31.9)	380 (28.0)	177 (13.0)	61 (4.5)	1,358 (100.0)
2015년	211 (20.0)	294 (27.8)	311 (29.4)	166 (15.7)	75 (7.1)	1,057 (100.0)
2016년	116 (11.9)	326 (33.5)	294 (30.2)	177 (18.2)	61 (6.3)	974 (100.0)
2017년	127 (14.3)	247 (27.8)	276 (31.1)	177 (20.0)	60 (6.8)	887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12.31.기준)

다. 제도 운영 성과

독학학위제는 11개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간호학)에 217개 시험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전공 폐지 이후, 9개 전공으로 운영되던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학(2013년), 심리학(2014년) 전공 분야를 신설하였다. 특히 심리학 전공은 2014년 1,487명에서 2017년 3,054명으로 지원자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매년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9월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1~3과정의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하였다. 응시자격 완화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독학자의 학습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를 해소하여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독학학위제 지원자는 완화된 응시자격이 적용된 2016년부터 소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학위취득 이외에 교육수요(학점인정,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 등)가 증가하여 학습경험 인정의 징검다리로서 독학학위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는 선택형과 서술적 단답형 혼합 실시에서 선택형으로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의 방법을 변경하였다.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의 시험방법은 객관식(4지택1형)이며, 문항 수는 총 40문항(예외과목은 25문항)이 출제된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방법은 객관식(4지택1형)과 서술형 주관식이며, 문항 수는 총 28문항(예외과목 20문항)이 출제된다.

독학학위제는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대적, 학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교양분야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과 공학계열(컴퓨터과학 전공,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독학학위제 시험에 참여하는 11개 전공별 외부 전문가 118명을 대상으로 독학학위제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라. 향후 과제

독학학위제는 시·공간적 제한 없는 저비용·고효율 고등교육제도로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매년 약 3만명의 학습자가 독학학위제 시험에 지원하고 약 1천명의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력보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필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계속교육 차원에서 독학학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를 반영한 신규 전공 및 시험과목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해 인정받고, 시험을 통한 개인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인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독학학위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불편사항 분석 및 개선을 통해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독학학위제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학점은행제와 연계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 대학 등 학위취득 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독학학위제 유용성 강화를 위해 지원자 및 합격자 추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학습자 측면에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학습 유인 및 저해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위 취득자의 사회적 경로 조사를 통해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이유, 목적, 진학과 취업 등 활용 및 성과에 대해 조사하여 독학학위제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독학학위제 내부자료.

2. 학점은행제

가.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434호)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학점은행제를 토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이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정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됨으로써 정규 고등교육의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방형 평생학습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 한국교육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1998년 3월부터 실행되었고,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와 함께 고등교육 불수혜 집단에게 고등교육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규 학교교육 밖에서 이수한 결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교육력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 밖 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1997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은행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곧바로 동년 9월 11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고 1998년 2월 28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학점은행제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6〉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1997년 9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1998년 2월	제1차 표준교육과정, 제1차 교수요목 고시(41개 전공, 167개 과목)
1998년 3월	제1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1개 기관, 274개 과목)
1999년 8월	1999년도 하반기 학위 수여(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2003년 3월	10개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3년 3월	11개 군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4년 3월	제1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개 기관, 42개 과목)
2006년 3월	20개 간호·보건계열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기관 변경
2015년 9,10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2016년 11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시스템 「학점은행제 알리미」개통
2017년 2월	2017년 전기 학위수여(학사 18,279명, 전문학사 17,349명)
2017년 8월	2017년 후기 학위수여(학사 19,610명, 전문학사 17,528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나. 제도 추진 현황

1) 운영체제

학점은행제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국가자격과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등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인정학습과정</p> <p>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p>	<p style="text-align: center;">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p> <p>제적 혹은 졸업한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시간제등록</p> <p>시간제등록이란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p>	<p style="text-align: center;">자격</p> <p>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고시문에 포함된 자격만 학점인정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독학학위제</p> <p>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무형문화재</p> <p>「무형문화재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이거나,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p>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그림 3-2] 학점은행제 학점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인한 수여 방식과 대학(교)장 명의로 인한 수여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7>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 종류와 전공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전공별 학위수여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이다.

표준교육과정은 노동 시장 등 사회적 요구와의 부합성, 학문적 타당성, 현실성,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해오고 있다.

2) 주요 현황

(1) 학습자 현황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약 14만 명을 정점으로 2014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 매년 약 11만 명 정도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로 등록한 총 학습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140만 명으로 도입한 지 채 19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8〉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단위: 명)

연도	상반기			하반기			계
	1분기	2분기	소계	3분기	4분기	소계	
2013년	23,726	67,483	91,209	24,506	28,839	53,345	144,554
2014년	16,685	52,019	68,704	21,653	25,104	46,757	115,461
2015년	21,285	48,775	70,060	21,804	21,872	43,676	113,736
2016년	20,883	49,682	70,565	21,932	24,163	46,095	116,660
2017년	22,628	45,254	67,882	23,338	24,222	47,560	115,44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2) 학점인정 현황

원격기반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확대 등의 조치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통한 학점인정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감소하였고 2016년 소폭 상승하다가 2017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시간제등록 질 관리 조치로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인정이 2012년에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3-9〉 최근 5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단위: 학점, %)

연도	학점원별 인정 학점							계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	독학사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시간제 이수	
			시험합격	면제과정				
2013년	6,224,079 (71.3)	322,716 (3.7)	123,685 (1.4)	2,985 (0.0)	1,695,123 (19.4)	555 (0.0)	357,823 (4.1)	8,726,966 (100.0)
2014년	5,841,919 (71.0)	293,942 (3.6)	102,802 (1.2)	3,578 (0.0)	1,680,825 (20.4)	745 (0.0)	300,751 (3.7)	8,224,562 (100.0)
2015년	5,812,088 (72.0)	302,151 (3.7)	93,647 (1.2)	2,990 (0.0)	1,647,862 (20.4)	543 (0.0)	216,686 (2.7)	8,075,967 (100.0)
2016년	5,899,644 (72.6)	379,914 (4.7)	80,366 (1.0)	2,440 (0.0)	1,586,769 (19.5)	575 (0.0)	174,384 (2.1)	8,124,092 (100.0)
2017년	6,247,888 (73.0)	481,627 (5.6)	95,985 (1.1)	2,873 (0.0)	1,590,597 (18.6)	598 (0.0)	136,443 (1.6)	8,556,011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또한, 독학사와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등을 통한 학점인정 경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과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한 학점인정은 감소하다가 2016년에 반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3) 학위수여 현황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역전되어 아래표와 같이 2014년까지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학사학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이 용이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다시 학사학위 취득자 수가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수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위의 해당 자격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전체 학위취득자 수는 약 8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2015~16년에는 약 6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7년 학위취득자 수는 약 7만 명으로 이전보다 1만 여명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표 3-10〉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문학사	학사	계
2013년	45,024	24,749	69,773
2014년	54,242	26,525	80,767
2015년	27,913	30,070	57,983
2016년	26,525	31,538	58,063
2017년	34,877	37,889	72,76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2017.12.31.기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위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학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미만의 학습자 비율은 약 36%인데 비하여, 30~40대 이상의

학습자 비율은 약 63%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30~40대 이상의 학위취득자 수는 약 46천명으로, 2016년 30~40대 이상의 학위취득자 수인 약 34천명보다 약12천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대학 수학 연령 이외의 집단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제도로써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연도 \ 연령	24세 이하	25~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계
2013년	10,895 (15.6)	14,218 (20.4)	26,227 (37.6)	13,911 (19.9)	4,522 (6.5)	69,773 (100.0)
2014년	11,363 (14.1)	14,362 (17.8)	30,787 (38.1)	18,423 (22.8)	5,832 (7.2)	80,767 (100.0)
2015년	11,530 (19.9)	11,666 (20.1)	16,617 (28.7)	12,976 (22.4)	5,194 (9.0)	57,983 (100.0)
2016년	11,782 (20.3)	12,147 (20.9)	15,585 (26.8)	12,917 (22.2)	5,632 (9.7)	58,063 (100.0)
2017년	12,201 (16.8)	14,628 (20.1)	22,998 (31.6)	16,597 (22.8)	6,342 (8.7)	72,76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2017.12.31.기준)

(4) 평가인정 현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은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 평생직업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기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454개 기관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202개 기관으로 전체 454개 기관 대비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을 포함하면 대학 관련 기관이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시설이 94개로 20.7%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훈련시설이 78개로 17.2%, 학원은 26개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등 39개 기관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표 3-1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 %)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율
대학 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31	28.9
	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71	15.6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6	1.3
	소계	208	45.8
직업훈련 시설	공공직업훈련원	2	0.4
	인정직업훈련원	76	16.7
	소계	78	17.2
학원	기술계학원	11	2.4
	사회계학원	11	2.4
	예능계학원	4	0.9
	소계	26	5.7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7	1.5
정부·지자체 등 교육시설		39	8.6
평생교육시설		94	20.7
국가무형문화재기관		2	0.4
합계		45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2017.12.31.기준)

(5) 표준교육과정 현황

표준교육과정은 1998년 2월에 41개 전공을 고시한 이후, 2017년까지 22차례 걸쳐 학사 115개, 전문학사 110개 전공이 개발·고시되어 있다. 2017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을 살펴보면, 학사학위 과정에는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등 26개 학위종류, 115개 전공이 있고,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가정전문학사를 비롯하여 13개 학위종류, 110개 전공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1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단위: 개)

구분	학위 종류	전공 수
학사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무용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법학사, 보건학사, 세무학사, 수사학사, 신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이학사, 지식재산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해양학사, 행정학사 등 총 26개	115
전문 학사	가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언어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의료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 등 총 13개	110

출처: 교육부(2017). 교육부 고시 제2017-93호.

다. 제도 운영 성과

1) 추진 성과

2017년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교육훈련기관 신청 학습과정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였으며, 학습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학점인정 표준 DB를 개발하여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한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를 위해 담당자 연수 실시 및 평가인정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를 강화하였고, 학습자들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 및 학습단위 등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평가중점사항 및 세부평가 요소와 정량지표 평가기준, 그리고 배점표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단계적으로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와 지표별 점수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해 왔다.

둘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점인정 표준 DB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학점인정 표준



DB란 학습자가 시간제 또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른 학습구분(전공, 일선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메뉴로 검색기능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기준으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99,819개 과목을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셋째,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의 한 제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기관 질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연수 실시와 평가인정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해 재평가를 강화하였다. 2017년 총 2회에 걸쳐 261개 교육훈련기관의 449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15개의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110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넷째, 2017년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관련한 정보를 학습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기관별 공시, 과목별검색, 통합비교공시 등 공시정보와 기관비교검색, 지표별 검색, 테마통계 등의 통계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다섯째, 표준교육과정 개발의 경우, 학문의 발달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6년에 무역학을 신설하였고, 2017년에는 세무학 전공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전공을 확대하여 왔다. 2017년 세무학 전공신설에 따른 조세법총론을 비롯한 17개 과목이 신설되었다. 한편 광고디자인 등 43개 과목을 다른 전공과 새롭게 연계하는 등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가 무형문화재 일부 종목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표준교육과정 전공명 및 과목명을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해 2017년에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전문자격 1개와 원산지관리사 등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2종 및 소방안전관리자 2급 등 기존 6개 자격을 재검토하여 학점 부여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게임기획전문가 등 5개 자격에 대한 추가 전공연계가 이루어졌다.

2) 시사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의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에 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질수록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부터 평가기준의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강화를 시작으로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연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실시 등의 노력으로 질 관리를 보다 향상시켰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을 유도하였고, 학습자가 직접 학습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표준DB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왔다.

이와 더불어 자격의 학점인정 발굴과 표준교육과정의 신설 등이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화된 실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향후 과제

향후에도 학점은행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학위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기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강화 및 평가기준 재정비를 통해 평가인정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보공시제의 도입과 더불어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정보의 정확한 공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운영 인력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훈련기관과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습자의 상담유형 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개선하고 학점인정 표준DB를 확충하여야 한다. 콜센터와 평가인정 전문인력 보강을 통하여 점증하는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하게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등의 사후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평생학습 경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의 학점인정 등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의 결과가 학점은행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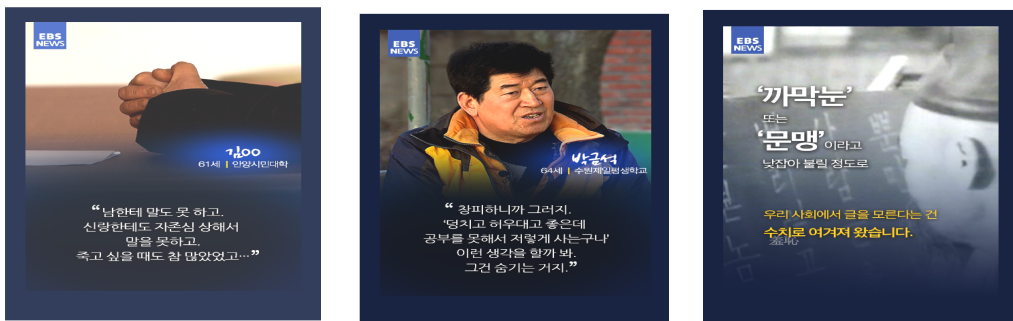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학점은행제 내부자료.

교육부(2017). 교육부 고시 제2017-93호, 제22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고시. 서울: 교육부.

제2절 성인문해교육

1. 사업 개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글이 쓰이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버스에서, 은행에서, 시장에서 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학교는 꿈같은 존재이며, 학령기 때 놓친 교육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글을 모르는 삶에 대해 비문해 학습자는 “창피하니까 숨겼지요.,” “어디를 나서는 게 진짜 힘들어요. 누가 글 쓰라 할까봐.,” “남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었다.”라고 한다(EBS NEWS, 2015.4.10.). 문해교육은 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인에게 희망의 교육이다.



[그림 3-3] EBS 뉴스 심층취재 주요 화면

출처 : 글 없이 세상을 살아온 비문해자들의 이야기, EBS NEWS, 2015.4.10.

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은 약 264만명으로, 약 6.4%가 이에 해당된다.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으로 약 13.1%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5).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성인문해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문해교육 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학력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 성인문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해교육 학습자 참여 촉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합리적·체계적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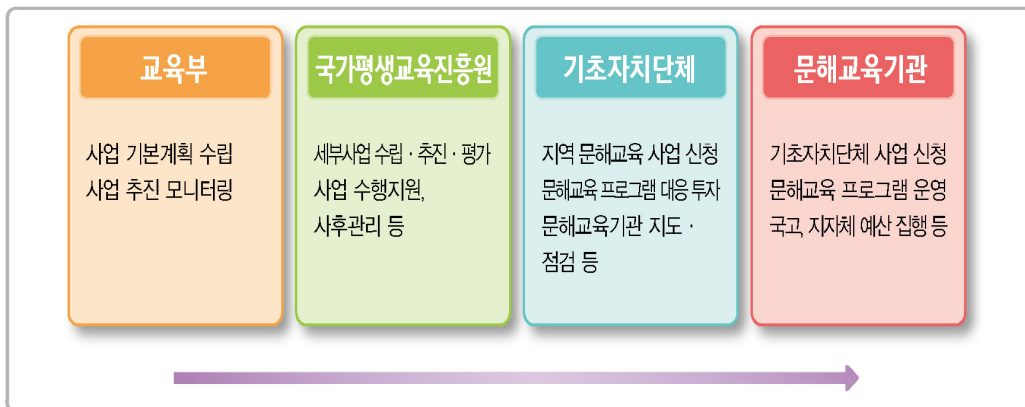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도 단위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지자체야학, 학교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등 선도사례 육성을 위한 ‘문해교육거점기관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은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단위 문해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도별 1개 지자체(시도청, 시도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되며, 1개 기관 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광역문해교육기관’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에 공동 참여하고, 시도 문해교육 교사 연수 등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2016년 14개 광역 지자체 참여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사업에 함께 하였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교육기회를 놓친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지자체, 학교 등) 및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기관에게 지원되며,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문해교육거점기관 육성 지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한

선도사례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회 이상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문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기관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다양한 문해교육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신청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참여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4]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체제

2006년부터 추진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12년차로, 총 213억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13억 7천 5백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국 165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377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총 24억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에 61개의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국의 약 70%에 이르는 165개 기초자치단체 참여로 확대되었으며, 누적 참여 학습자는 약 30만명에 이른다.



〈표 3-14〉 2006~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연도	국고지원액*	대응투자액	기초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수혜자**
2006년	1,375	828	61	178	14,668
2007년	1,800	1,619	108	356	21,294
2008년	2,000	3,000	118	439	25,579
2009년	2,000	2,424	130	353	24,638
2010년	2,000	2,398	134	348	23,778
2011년	1,800	2,068	129	360	20,135
2012년	1,500	2,026	107	189	16,334
2013년	1,950	2,263	130	261	19,745
2014년	2,200	3,132	142	306	23,879
2015년	2,250	3,398	146	318	35,614
2016년	2,436	4,978	162	384	36,039
2017년	2,436	5,862	165	377	39,732

* 공모사업을 통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에 한함

** 수혜자는 프로그램참여자, 학력인정자, 무상교과서 보급인원 등을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7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및 내부자료.

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77개 기관에 1,544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26,441명의 학습자가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지역별로 프로그램 개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총 18개 문해교육기관에서 212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3.7%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 학습자는 서울이 4,596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한다.

〈표 3-15〉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

(단위 : 개, 명, %)

광역시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서울	61	198 (12.8%)	4,419 (16.7%)
부산	53	147 (9.5%)	2,671 (10.1%)
대구	27	74 (4.8%)	1,256 (4.8%)
인천	16	32 (2.1%)	651 (2.5%)
광주	15	45 (2.9%)	635 (2.4%)
대전	13	38 (2.5%)	559 (2.1%)
울산	4	18 (1.1%)	275 (1.1%)
경기	57	199 (12.9%)	3,130 (11.8%)
강원	16	93 (6.0%)	1,175 (4.4%)
충북	13	49 (3.2%)	669 (2.5%)
충남	19	146 (9.5%)	2,235 (8.5%)
전북	23	109 (7.1%)	1,667 (6.3%)
전남	27	124 (8.0%)	3,112 (11.7%)
경북	10	41 (2.7%)	634 (2.4%)
경남	18	212 (13.7%)	3,029 (11.5%)
제주	5	19 (1.2%)	324 (1.2%)
합계	377	1,544 (100%)	26,441 (100%)

* 중복 수강자 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수준별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문해 3단계, 중학교 단계로 구분된다. 2017년 사업에 총 1,544개의 프로그램 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은 903개(58.5%)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초등 2단계(20%), 초등 3단계(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2017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

구분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학 단계	합계
2017년	903 (58.5%)	309 (20%)	242 (15.7%)	90 (5.8%)	1,544 (1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전체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 혼합 프로그램이 14.7%를 차지하였다.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에는 21,62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내국인 프로그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대상자 혼합	합계
프로그램	1,253 (81.2%)	31 (2%)	32 (2.1%)	228 (14.7%)	1,544 (100%)
학습자*	21,620 (81.8%)	508 (1.9%)	373 (1.4%)	3,940 (14.9%)	26,441 (100%)

* 중복 수강자 포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습자가 여성으로 2017년 참여자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5.4%, 60대가 2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별·연령별 현황

연령	남성	여성	합계
20대	75 (0.3%)	301 (1.2%)	376 (1.5%)
30대	71 (0.2%)	355 (1.4%)	426 (1.6%)
40대	97 (0.4%)	353 (1.4%)	450 (1.7%)
50대	152 (0.6%)	1,778 (6.9%)	1,930 (7.5%)
60대	232 (0.9%)	6,254 (24.2%)	6,486 (25.1%)
70대	262 (1%)	11,449 (44.3%)	11,711 (45.4%)
80대 이상	95 (0.4%)	4,340 (16.8%)	4,435 (17.2%)
기타	2 (0%)	6 (0%)	8 (0%)
소계	986 (3.8%)	24,836 (96.2%)	25,822 (100%)

* 중복 수강자 제외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함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의 봉사자, 강사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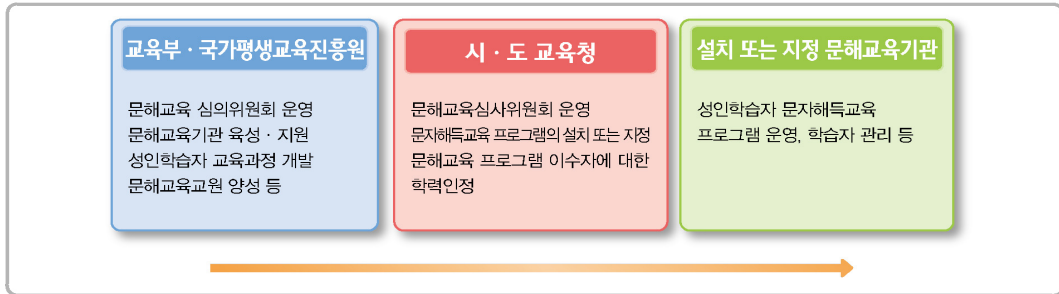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관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7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서 14회에 걸쳐 문해교육 교사 보수교육을 개최하였으며, 907명의 교강사가 참가하였다. 기관운영 컨설팅의 일환으로 사업 신규 참여 기관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존 사업 참여기관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나.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는 18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시·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문해교육기관의 추진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76조에 의거하여 문해교육 전반에 걸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문해교육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교육법」 제70조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전문가를 기반으로 문해교육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하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학습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충족여부 심사과정을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을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지정받은 문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 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안에 학교 등을 활용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 교원 확보, 교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지정받을 수 있다.



[그림 3-5]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2011년 문해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는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42개 기관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설치·지정하였다. 2011년 6개 교육청 참여로 시작한 제도는 2017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246개 문해교육기관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지정되었다. 초등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총 218개 기관으로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과정은 8개, 초·중학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20개이다. 지역별로 설치·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63개, 경기도가 58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현황

(2017.11.1 기준 /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설치	22	10	5		1			21			1				8		68	
	지정	28	8		6	3	1	6	1	30	7	5	20	10	14	5	5	1	150
	계	50	18	5	6	4	1	6	1	51	7	5	21	10	14	5	13	1	218
중학	설치	1		1		1													3
	지정	1				1	1		2										5
	계	2	0	1	0	2	1	0	2	0	0	0	0	0	0	0	0	0	8
초/중	설치																		0
	지정	11				1			5			1		1	1				20
	계	11	0	0	0	1	0	0	5	0	0	1	0	1	1	0	0	0	20
합계	63	18	6	6	7	2	6	1	58	7	5	22	10	15	6	13	1	24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 현황 보고서.

201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운영 이후, 전국에 8,802명의 학습자가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7,878명으로, 서울지역이 2,827명으로 35.9%를 차지한다.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924명으로, 대구지역이 271명으로 전국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0〉 2011~2017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2017.11.1 기준/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2,827	490	647	49	281	306	29		1340	48	22	688	83	686	111	228	43	7,878
중학	259		271		71	124			175			14		10				924
계	3,086	490	918	49	352	430	29	0	1,515	48	22	702	83	696	111	228	43	8,80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 현황 보고자료.

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문해학습자의 참여 촉진과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였다. 문해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성인문해 교과서를 무상 보급하고, 교육기관이 없는 소외지역을 위해 문해교육을 교육방송으로 제작·방영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생활문해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문해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보급’은 문해학습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4년까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성인문해 교과서는 유료 보급이었으나, 2015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또는 기관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보급하였다. 성인문해교과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1인당 5권의 교과서가 지원된다. 2015년 52,553명, 2016년 50,119명에게 지원되었으며, 매년 약 25만부가 보급되었다. 2017년에는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생활문해 교과서까지 포함하여 무상보급을 실시하였으며, 39,721명에게 지원되었다.



〈표 3-21〉 성인문해교과서 무상지원 현황

(2017.12.15. 기준)

교과서 명	2015년		2016년		2017년	
	학습자(명)	배포(권)	학습자(명)	배포(권)	학습자(명)	배포(권)
초등과정교과서	45,553	216,805	44,373	220,884	6,308	39,030
중학과정교과서	7,000	35,000	5,746	28,730	6,413	37,375
생활문해교과서	-	-	-	-	27,000	27,000
계	52,553	251,805	50,119	249,614	39,721	103,40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성인문해교육방송’은 문해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는 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의 문해학습자에게 예·복습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2016년 성인문해교육방송은 초등 성인문해교육과정 1~3학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총 78편을 제작하였으며, 2017년은 4~6학년 수준으로 52편을 제작하였다. 교육방송은 성인문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상황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연계하였으며, 문해교육 학습자가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특히, 4~6학년 수준의 교육방송에는 명사와 함께하는 수업으로 특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개발된 교육방송은 EBS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EBS와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고, 상시 예·복습이 가능하도록 활용사례를 발굴·홍보하였다.

2014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정의가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생활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 영역을 발굴하고, 생활문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2016년 생활문해교육 교과서로 ‘금융문해 교과서’, ‘교통안전문해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금융 문해 교과서’는 금융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약하고 금융감독원의 각종 금융교육 자료와 정보를 종합하여 문해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은행 창구 이용,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폰뱅킹 이용 등 기초 금융생활을 교과서에 담았다. ‘교통안전문해 교과서’는 고연령 문해 학습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인식 함양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하였다.

교통안전문해 교과서는 농산어촌에 생활하는 문해학습자가 학습공간으로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통해 2017년에는 문해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정보문해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소통메신저 어플 사용 방법을 교과서로 개발하였다.

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조사연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문해교육 조사연구 사업이 함께 운영된다. 먼저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위해 2013년 국민 문해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2014년 전국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4,057명을 대상으로 조사 검사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다. 2017년은 2014년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로, 조사 검사지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친밀도 있는 문항으로 일부 교체하고 전국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 지자체의 문해교육 지원 현황 및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성인문해 교육방송을 활용한 교실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3. 사업 운영 성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는 첫째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한 ‘문해교육 참여 확대’이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 문해교육 운영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 인구 30만여 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통한 초·중학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하여 8,802명의 학습자가 학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 성인문해교과서 무상보급이 도입되면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2016년 성인문해교육방송 콘텐츠 개발 방안을 통해 학습기회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5만여 명의 문해교육 잠재수요자에게 교과서를 보급하고, 문해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등이 운영되면서 문해교육 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사회변화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다.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문제능력을 정의하고 교과내용으로 개발 하면서, 문해교육의 교육내용이 다양화되고 문해학습자의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금융문해교육, 교통안전문해 교과서 개발에 이어, 2017년 정보문해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진행 되면서 성인문해교육 콘텐츠는 강화되었다.

4. 향후 과제

향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해학습자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문해교육센터와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문해 학습 대상자를 발굴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도문해교육센터는 경기도(2016.12.16), 충청남도(2017.5.29), 대전광역시(2017.6.16)가 설립되었다. 이후 17개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별로 문해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학습자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해교육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문해교육은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문해교육기관의 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더불어 문해교육 교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성인문해능력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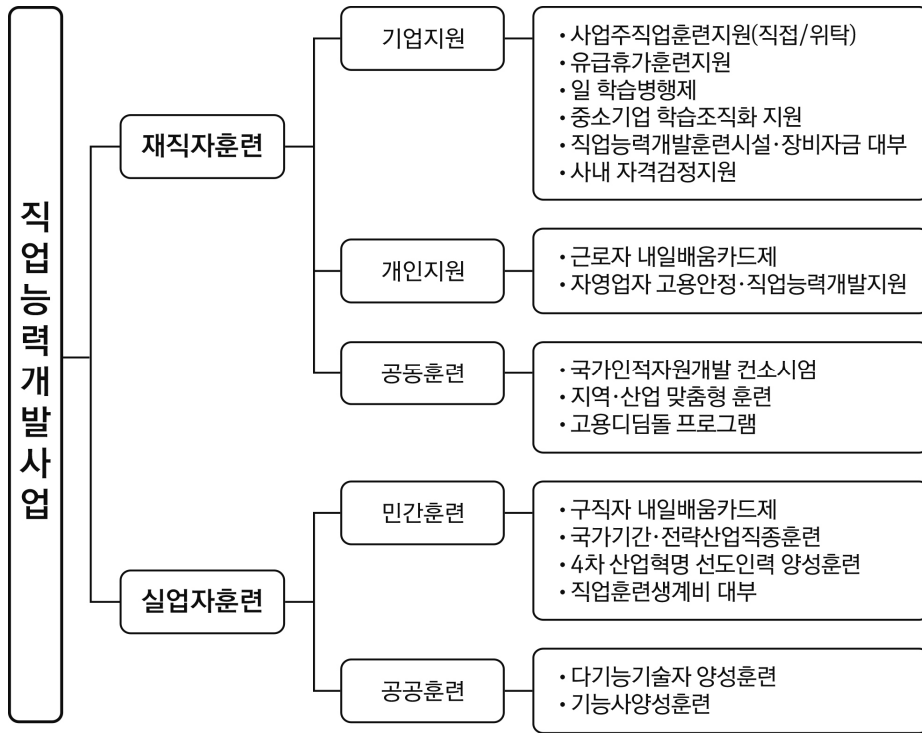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1. 개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제도는 1969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을 거쳐 1990년대에는 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향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명칭도 직업훈련으로 시작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평생직업능력개발로 발전하였다. 정부주도, 공급자 위주의 직업훈련은 2008년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 변화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2010년부터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이후로는 2002년부터 시작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학습모듈의 개발 및 활용 확대,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관련 정책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는 크게 재직자훈련(기업지원, 개인지원, 공동훈련)과 실업자훈련(민간훈련, 공공훈련)으로 구분한다(고용노동부, 2017b).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자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의 습득을 위해서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



[그림 3-6]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출처: 고용노동부(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3.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에는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훈련실적을 살펴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16.7만명으로 2015년(19.7만명)에 비해 15.2% 감소하였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5.9만명으로 2015년(7.4만명)에 비하여 20.3% 감소하였다. 취업사관학교는 212명, 지역실업자는 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근로자능력개발지원으로 세분화되며, 고용보험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은 2016년 290만명으로 2015년도(251만명)에 비해 15.7% 증가하였지만,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29.2만명으로 2015년(44만명)에 비해 33.6% 감소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25.1만명, 중소기업핵심직무 능력향상지원은 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구분	사업명(훈련대상)	재원	비고
실업자 직업 능력 개발	내일배움카드제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일반회계, 기금	내일배움카드제 (2015년 19.7만명 → 2016년 16.7만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실업자)	기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015년 7.4만명 → 2016년 5.9만명)
	취업사관학교(위기청소년)	일반회계	취업사관학교 (2015년 115명 → 2016년 212명)
	지역실업자	특별회계**	지역실업자(2015년 448명 → 2016년 437명)
재직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고용보험 기금	사업주훈련 (2015년 251만명 → 2016년 290만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15년 21만명 → 2016년 25.1만명)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2015년 5.9만명 → 2016년 6만명) 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15년 44만명 → 2016년 29.2만명)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6년판 고용노동백서. p.503. 고용노동부(2017a).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p.516.

* 근로자능력개발지원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가 해당함.

** 2016년 백서에는 취업사관학교와 지역실업자가 모두 일반회계로, 2017년 백서에서는 지역실업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2016년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37개소)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1개소)로 2015년에 비해 3개소가 많아졌고, 민간훈련기관은 사업주단체, 평생교육시설, 고용부 지정시설, 고용부 훈련법인 등 7,871개소로 2015년의 7,730개소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표 3-2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단위: 개소)

구분	2015년 12월 말 기준		2016년 12월말 기준	
전체	7,765		7,909	
공공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폴리텍대학(34) 한국기술교육대(1)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폴리텍대학(37) 한국기술교육대(1)
민간	7,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지정시설(772) 고용부 훈련법인(41) 학원(2,170) 사업주 단체 등(3,277) 평생교육시설(630) 학교전문대등 기타(840) 	7,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지정시설(765) 고용부 훈련법인(47) 학원(1,811) 사업주 단체등(3,962) 평생교육시설(424)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등 기타(862)

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 수. 장애인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기관 제외함.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6년판 고용노동백서. p.503. 고용노동부(2017a).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p.516.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현황은 2016년 12월 말 현재 272,793명으로 내일배움카드제(신규 실업자훈련 36,133명, 전직실업자훈련 177,276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8,947명,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437명 등이다. 2016년 전직실업자훈련은 177,276명으로 2015년의 157,847명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2016년의 취업률은 28.1%(76,674명)이었다.

〈표 3-24〉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전직실업자훈련	147,380	312,793	165,685	191,043	180,270	157,847	154,733	177,276
신규실업자훈련	69,495	98,729	51,595	51,477	43,576	39,793	50,713	36,133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농특회계포함) 2015년부터 지특*	504	761	504	776	225	448	241	437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5,000	38,069	35,220	41,142	69,000	74,207	85,312	58,947

주) 2014년까지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농특+광특), 2015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지특)*
출처: 고용노동부(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도 정부는 직무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이 현장(일)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연결기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하였다. 2013년부터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16년 12월 말 현재 24대 직업분야 847개를 개발하였다.

2013년 10월 51개의 시범기업을 시작으로 출발한 일학습병행제에는 2016년 12월 말 기준 8,679개 기업, 35,32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일학습병행제를 졸업생 단계에서 고교·전문대학·대학 재학생 단계의 정규교육과정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대학 단계인 IPP형 일학습병행제 - 으로 확대(고용노동부, 2016:172)하였으며, 일학습병행제의 성과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성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의 사업주,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4.08점(5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근로자 만족도는 4.15점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이 강화되고,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동기(흥미와 관심)가 부여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a). 제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 감소 등을 통해 학습근로자 1인당 평균 1,63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주요국의 도제훈련 비용편익 구조와 비교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a).

〈표 3-25〉 일학습병행제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선정 기업	훈련 기업	학습근로자
2014년	2,079	730	3,197
2015년	5,764	2,705	10,869
2016년	8,679	6,214	35,324

출처: 고용노동부(2017a).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p.194.

3. 사업 운영 성과

최근 청년 고용문제, 구직·구인자 간의 숙련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핵심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a). 한국형 도제훈련 제도인 일학습병행제는 추진 3년만에 8천여개 기업으로 확산되었고, 재직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단계로 확대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직무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의 성과 도출 외에도 2016년 대표적 변화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반영한 것이다(고용노동부, 2017a). 우선 미래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10.25)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표적 구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내에 빅데이터 분석, 드론조종 등 14개 신기술 분야 훈련 직종을 대폭 포함하였으며, 고학력 구직자 대상 신기술 분야 고숙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사업” 신설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성과·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훈련시장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HRD-Net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훈련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훈련과정 선택 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4. 향후 과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의 자율적인 교육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직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 생활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사전상담 의무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일학습병행제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습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산업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학교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에서의 교육이 산업체의 직무내용과 연계되어 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재직자나 실업자, 취약계층 등의 직업훈련도 산업체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에의 참여율이 기업규모, 고용상의 신분, 학력, 연령, 소득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의 참여율이 낮은 계층과 집단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3). 2013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6). 2016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7a).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총
론
제1부

평생교육의 범주·구조 및 전담체제
제2부

평생교육
현황
제3부

평생교육 문화 조성
제4부

향후 평생교육의 전망 및 과제
제5부



제4절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1. 사업 개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평생교육적 생애경로의 일부분이다. 평생교육법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평생교육의 6대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동안 다양한 교양을 쌓고 소양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경로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바쁜 일상과 직장 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과 쉽표가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경로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두 경로는 직업적 생활과는 구별되며, 개인의 일상적 삶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다. 여기에서는 인문교양 교육·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하여 그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2. 사업(제도 관련) 추진 현황

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영역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추진현황은 두 영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2009)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통계 조사, 늘배움 포털 정보제공,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의 다모아정보망 등에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를 주요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표 3-26>과 같이 설명한다.

〈표 3-26〉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영역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6대 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04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41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활동강좌 • 생활스포츠강좌 • 스포츠예술활동 • 수영·골프강좌 • 발리댄스교실 • 활쏘기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42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선아트강좌 • 사진예술강좌 • 천연염색강좌 • 생활공예강좌 • 노래교실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43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며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무용 • 미술·서예지도 • 문화예술관람 • 도자기·공예 • 연극·영화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05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51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치료 • 종교교육 • 식생활교육 • 생활의료교육 • 보건교육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52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수행교육 • 예절교육 • 정보인터넷활용 • 생활외국어 • 가정생활 • 생활한자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53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문학강좌 • 과학일반강좌 • 역사·전통강좌 • 철학·행복학강좌 • 독서강좌

출처: 김진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p.68.

제1부 총론
 제2부 평생교육의 발전과 과제
 제3부 평생교육 현황
 제4부 평생교육 문화 조성
 제5부 향후 평생교육의 전망 및 과제



나.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규정과 지침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현황은 매년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해서 주요 영역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표 3-27>과 같이 일정한 규정과 지침으로 설명한다.

<표 3-27>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규정과 지침

평생교육 영역	프로그램 지침
인문교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 외국어강좌 (생활 외국어 등) •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 •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모임 등) • 인문교양강좌 (역사강좌, 철학강좌, 미술사 강좌, 문학강좌 등) • 가정생활강좌(요리, 유아·아동·청소년교육, 꽃꽂이, 예절교육 등) •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생활의료교육 등)
문화예술스포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강좌 (피아노, 플룻, 노래교실 등) • 미술강좌 (풍선아트강좌, 사진, 공예, 천연염색 등) • 스포츠강좌 (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자료(p.60.).

다.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

평생교육기관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의 <표 3-28>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생교육통계(2016)로 나타낸다.

〈표 3-28〉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2016년 기준)

구분	평생교육영역		프로그램 수 및 개설정향성	
	인문교양	문화예술	6대영역 프로그램수	정향성
전체	29,825	53,093	161,788	51.3
학교부설	35	10	57	78.9
대학부설	2,899	6,127	28,884	31.2
원격교육	13,400	773	60,917	23.3
사업장부설	3,480	30,308	35,069	96.3
시민사회단체	624	1,532	3,535	61.0
언론기관부설	626	1,711	3,931	59.5
지식인력개발	844	2,882	8,749	42.6
평생학습관	7,917	9,750	20,646	85.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재구성.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현황은 프로그램개설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해 볼 때, 인문교양교육은 29,825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은 53,093개 프로그램으로 6대 영역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161,788개)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개설의 정향은 51.3%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에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은 50% 이상일 정도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9개 유형 중에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 기관과 지자체 평생학습관이 다른 기관보다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높은 운영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사업(제도)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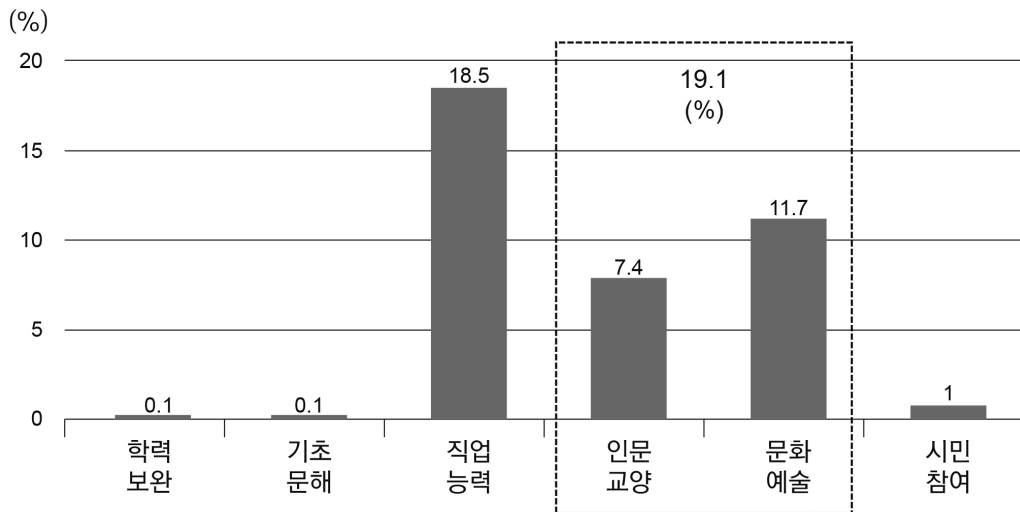
가. 추진 성과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과 지역의 평생교육의 확장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에서 인문교양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참여율과 광역 및 특별시별 프로그램의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교육 참여 증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킨다. 매년 국민의 평생교육참여율이 평생교육통계를 통해서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율은 11.7%,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참여율은 7.4%이었다. 이것은 각 영역별로 분리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교육에 대한 참여율 18.5%보다는 낮지만, 두 영역을 통합한 경우에는 19.1%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평생교육통계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영역과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분석경향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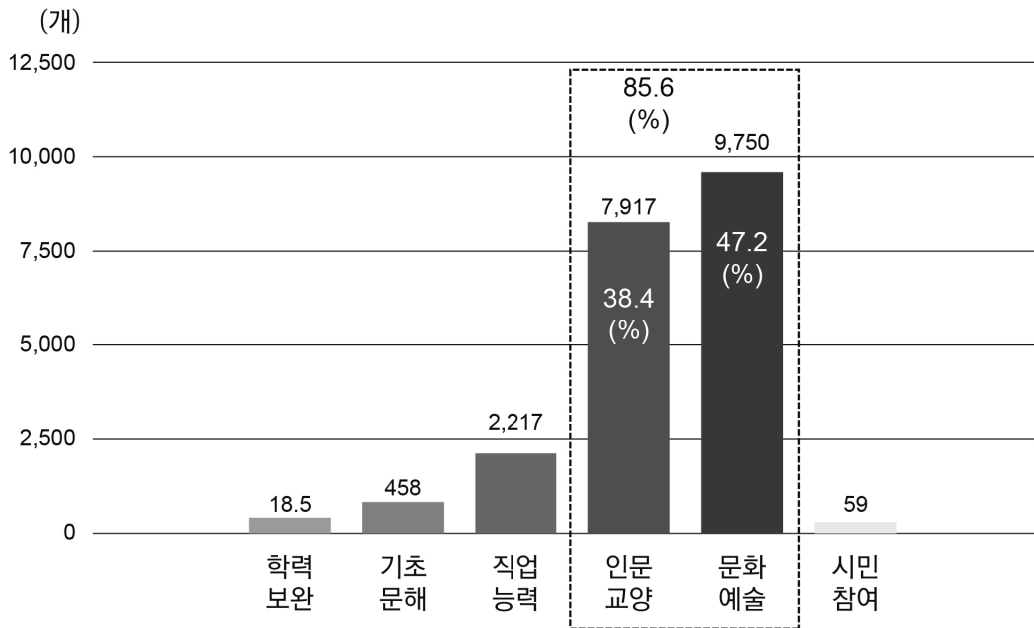


[그림 3-7]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평생교육통계자료 분석한 자료임

□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생태계의 확장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매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그 비중은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85.6%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은 38.4%를 나타냈다.



[그림 3-8]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생태계의 확장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평생교육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

나. 시사점

이러한 경향은 평생교육의 6대 영역에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나타내는 상대적 중요성이 어느 정도이고,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함에 있어서 인문교양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평생학습역량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평생학습의 역동성이 확장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잘못된 편견, 즉 개인만을 위한 취미오락으로만 간주한 경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진요인인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4. 향후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과거 제3차 산업국가시대에서처럼 단순히 기능과 기술만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 시기에 요청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창조적인 역량과 지성의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평생교육정책과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적 조망과 분석을 토대로 관련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그 성과와 가치를 실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확산을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적 재조명과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7개 광역 및 특별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질적 제고의 방안과 전략을 구상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 양은아(2012).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과 유형분석. 예술경영연구, 22. 195-237.
- 평생교육진흥원 (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개발 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교육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16).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통계자료.
- 홍아정·이지훈·박규미 (20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지형분석. 교육학연구, 54(3). 249.



제5절 시민참여교육

1. 시민참여교육의 배경

시민교육은 언제나 크든 작든 이해집단 간 정치적 긴장을 수반한다. 한 사회의 지배집단은 시민교육을 정치적 통제와 사회화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지배 논리에 저항하는 집단은 시민교육을 정치적 해방, 민주화의 수단으로 바라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는 시민교육을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고, 지배집단에 저항했던 대학생,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은 제도권 밖에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형태의 시민교육을 전개했다.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형식적으로 확보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보다 공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 운동과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자치단체 혹은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운동,’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 공동체적 삶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운동,’ 국가와 자본 주도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인권 등을 지키기 위한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을 전국 곳곳에서 전개했고, 그러한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7개월 동안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했던 촛불 시위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켰다. 시민교육의 가치가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습동아리, ‘누구나 학교,’ ‘학습 등대,’ 교육봉사 등 ‘학습공동체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자체는 공식 조직으로서 시민들의 학습기회의 확대에 주력했고, 시민들이 학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나아가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 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또 문해교육,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한 시민성 형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자체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 교실형태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성을 학습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안에 ‘국민주권,’ ‘국민참여’ 의제를 포함시켜 시민참여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 시민참여교육의 범주

오늘날 많은 교육자, 정치가,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되고, 시민사회에 참여하며, 민주적 가치에 헌신하도록 이에 관련된 지식, 기술 및 가치를 습득하길 기대한다. 2008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의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을 제시했다.

시민참여교육은 교육내용이나 형식, 교육주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김진화(2012)는 평생교육을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시민참여교육을 그 내용과 형식을 혼합하여 다시 시민책무성프로그램(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 등),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환경실천교육, 리더양성, NPO지도자과정, 지역문화해설사 등),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등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시민참여교육을 기초문해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등과 확연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기초문해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참여교육은 교육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강대현, 2006), 교육대상인 시민의 자율성의 성장에 따라(신두철·허영식, 2008), 혹은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에 따라(김민호, 2011) 다양하게 범주화되나, 어떤 유형의 시민참여교육일지라도 그 핵심은 시민성 함양에 있다. 여기서는 시민참여교육을 시민성 함양 방식에 따라 다음 <표 5-1>처럼 세 가지로 나누었다.



〈표 3-29〉 시민참여교육의 범주

구분	시민성 함양 방식	사례
범주 1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헌법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범주 2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운동
범주 3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문해교육, 종교교육, 인문학강좌

첫째,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민주주의, 선거, 대화와 타협, 소수자의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룬다. 둘째,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일차적 목표이나,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경우다. 학습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주민자치운동, 협동조합운동, 마을만들기 운동,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을 무형식적으로 함양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경우다.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종교교육 등의 성과로서 시민성 함양이 이뤄진다.

3. 시민참여교육의 추진 현황

가. 시민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교육의 전국적 실태조사는 이뤄져 있지 않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으로 분류, 조사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30>과 같다. 2016년 5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는 전체 161,731개의 프로그램 중 122개(0.08%)뿐이고, 참여 학습자는 전체 참여자 111,335,227명 중 0.01%인 13,735명에 불과하다.

〈표 3-30〉 평생교육시설별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계	대학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수 (개)	122 /161,731	23 /28,884	4 /60,917	2 /35,069	18 /3,535	6 /3,931	10 /8,749	59 /20,646
학습자 수 (명)	13,735 /111,335,227	1,361 /902,600	197 /7,304,497	1,335 /1,206,895	1,694 /156,000	398 /151,101	378 /664,509	8,372 /949,62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매년 5월1일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평생교육 영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까닭은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 부족 때문이다. 사실 민주시민교육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15대 국회(1997년)이후 16대 국회(2000년), 17대 국회(2007년)에 계속해서 제출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무산되었다(좌세준, 2014). 또한 교육부는 2012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을 위해 시민참여교육의 참여율을 2017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시민성보다 오히려 인성 회복에 주목했다. 2014년 말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5년마다 국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지자체가 연도별로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세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인성교육에 개입함으로써 빚어지는 국가주의적 인재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8개 핵심덕목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성을 포괄하기엔 제한적이므로 인권교육 및 시민교육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녕, 2016). 또한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마련된 교육부의 ‘2017년 업무계획’에서는 시민참여교육이 ‘창의인재강국’ ‘능력중심사회’의 논리에 휘둘려 평생교육정책 영역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참여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2014년), 경기도(2015년), 전라북도(2016년), 성남(2015년), 안양(2017년), 광명(2017년)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시민성 함양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충청남도 역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충청남도 기획조정실, 2017). 경기(2015년), 충북(2016년), 전북(2016년), 그리고 전남(2016년) 교육청 등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대상 시민성 함양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 평생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공포 이후 2014년부터 ‘서울시민대학’의 일부 프로그램을 동국대학교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운영했고, 2015년부터는 평생교육과 내에 민주시민교육팀을 두고 흥사단에 민간 위탁하여 ‘생활 속 시민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는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는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을 민관협치담당관 시민교육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참여교육을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전면에 부각시켰고, 성동구는 마을민주주의과를 신설했다. 성남시는 2015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남시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고, 2016년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성남을 바꾸다’를 주제로 시민권, 선거와 정치, 헌법, 지방자치, 세금·복지, 평등 성장, 분단·평화, 시민 생활을 주제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성남시 평생학습관, 2016). 충청북도 진천군은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자원 활동가 중심 평생학습 사업에 주력하여 시민참여교육 참여율을 29.7%로 증가시켰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공유와 실천방법 찾기’를 모색했다(경기일보, 2017.12.15.).

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

비록 직접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7)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599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1,865개로서 총 13,464개에 이른다. 다음 <표 3-3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영리민간단체는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3-31〉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추이

구분	2007	2012	2016
계	7,241	10,889	13,464
중앙 정부 등록	790	1,319	1,599
지방자치단체 등록	6,451	9,570	11,865

출처: 행정안전부 2017 통계.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2017)이 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분야는 시민사회일반, 경제, 예산감시와 납세자운동, 사회적 경제, 소비자, 사회공헌, 여성, 환경, 문화, 사법개혁, 건강과 보건의료, 평화와 통일, 국제연대와 협력, 언론, 인권, 교육, 노동, 사회복지, 이주와 다문화, 자원봉사, 기부와 나눔, 풀뿌리자치, 노년소비자운동, 시니어문화 등 총 24개 분야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모노리서치(2017)가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 까지 유선전화, ARS 전화를 통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1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시민단체 회원이라고 답했고, 앞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할 의향도 31.7%나 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로서 ‘정부와 시장의 견제’ 21.6%, ‘공동체 의식 및 협동 증진’ 19.8%, ‘사회적 약자 대변’ 18.6% 등으로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혹은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시민성을 함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0%, 시민단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64.3%, ‘신뢰하지 않는다’ 56.3%, 그리고 시민단체의 문제점으로 ‘대안 없는 비판’ 34.1%, ‘지나친 정치적 활동’ 16.7%, ‘시민참여 부족’ 16.2% 등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려면 시민단체 자체의 내적 쇄신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명래(2017)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시민사회의 핵심가치를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을 보이는 것은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으로 기능·역할을 잃어 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튼실한 재생산의 기반을 내부화”할 것을 요청했다.



〈표 3-3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연도별 현황

연도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2007	166	2,651	64,973	2,998	333
2012	495	5,497	186,712	3,602	1,385
2016	544	6,206	156,000	3,575	1,47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매년 5월1일 기준)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부설 교육기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앞의 <표 3-32>와 같이 2007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기관수는 3배 이상, 사무직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고,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강사 역시 상당히 증가했다.

다. 인문학교육 등을 통한 시민성 함양

시민성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만이 아니라 인문학교육 등 여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기를 수 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6)은 학습형 일자리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동아리 결성과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수원평생학습관은 2016년 다양한 인문사회 강좌들을 통해 시민성 학습을 의도하였다(수원시 평생학습관, 2016). 서울시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은 2013년부터 인문학 중심의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시민성 함양을 지향했다. 4개 권역별 별도의 학습장과 함께 23개 연계 대학의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다(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7).

지자체들이 추진한 인문학 교육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실천인문학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실천인문학 학습공동체의 하나인 ‘문탁네트워크’는 2009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어느 아파트 단지 동네 주민 9명이 가정집 거실에서 일리히(I. Illich) 책을 읽으며 학습모임을 시작해서, 인문학 공간 외 마을 작업장, 150평의 공유지와 매주 100명 정도가 주1회 방문하고, 연 2억7천여만원의 수입(2013년 말 기준)이 있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들이 2013년 자체적으로 개최한 인문학축제 결과물로 발간한 한 자료집에 따르면, 199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던 사람이 『맹자』를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가깝게는 문탁 회원, 멀게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참여 할머니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 인근 전철역 앞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피켓 시위를 하였다(문탁네트워크, 2013 참조).

4. 시민참여교육의 과제

일부 진보적 성향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중앙정부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은 매우 값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심각한 대립을 공론장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민주시민교육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의 교체에 대비하여 시민단체는 정치세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으로 혹은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참여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파트너로 존중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면, 시민단체 실무자들의 역량 개발과 자세의 정립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민참여교육과 관련하여 시민성을 학습자에게 ‘사회화’ 시키기보다 학습자 개개인이 시민성을 내면화하여 ‘주체화’하도록 돕는 자질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성 학습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문해교육이나 인문학교육, 문화예술 교육, 직업능력개발 및 종교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폭넓은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민교육의 물질적 여건의 확보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시민교육의 충실하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현(2006).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 구윤모(2017). '다름'의 다양성 존중하는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 경기일보. 2017.12.15.
-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6). 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고. (http://www.gje.kr/board/board.html?m=02010000&bo_code=board_2&wr_id=561(2016. 3. 15.))
- 김 녕(2016). '인성교육진흥법'의 발상과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명연구, 39, 55-102.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193-221.
- 김진화(201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문탁네트워크(편)(2013). 공부, 요~물! 들었다, 냐다, 들었다, 냐다. (2013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용인: 문탁네트워크.
- (사)시민운동정보센터·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2017).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 (사)시민운동정보센터·모노리서치(2017). 한국 시민단체 시민운동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사)시민운동 정보센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413-461.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2017). 2017년 서울시민대학 운영계획 (대시민 공개 자료).
- 성남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seongnam.go.kr>(2016.3.20.)
-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earning.suwon.go.kr>(2016.3.20.)
- 신두철·허영식(2008). 민주시민교육의 정석.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조명래(2017). 한국 시민운동의 위치와 성격 변화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사)시민운동 정보센터·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29-47.
- 좌세준(2014). 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경희대후마니타스 컬리지·사단법인 시민. 오늘의 시민교육을 돌아보다 (2014 시민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24-37.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2017).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안) (대국민 공개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서비스.

제2장

대상별 평생교육 현황



제1절 여성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노동시장이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재개편된다는 것은 이미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 등 여러 글로벌 지식 전문가 그룹에 의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성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교육기관과 내용들이 소개된 것은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중앙정부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의 평생학습관 등은 이 시기를 거쳐 탄생되었다고 하겠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비영리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비롯해 다양하지만 교양수준에 가까운 교육활동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NGO들로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립·운영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전의 여성 대상 교육들이 교양·취미 수준에 머물렀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행하는 교육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의 직업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되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도 대표적인 지역 여성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의 역사는 NGO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 더 길지만 사실상 평생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복합적 기능의 정체성이 강했었다. 예컨대 가정폭력여성에 대한 쉼터의 역할, 지역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공간역할, 아이들의 육아시설의 기능 등의 교육과 더불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다른 기능들이 함께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 중반에 이르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등이 재정비 되면서 여성회관은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회관은 도단위에서부터 기초단위에 이르기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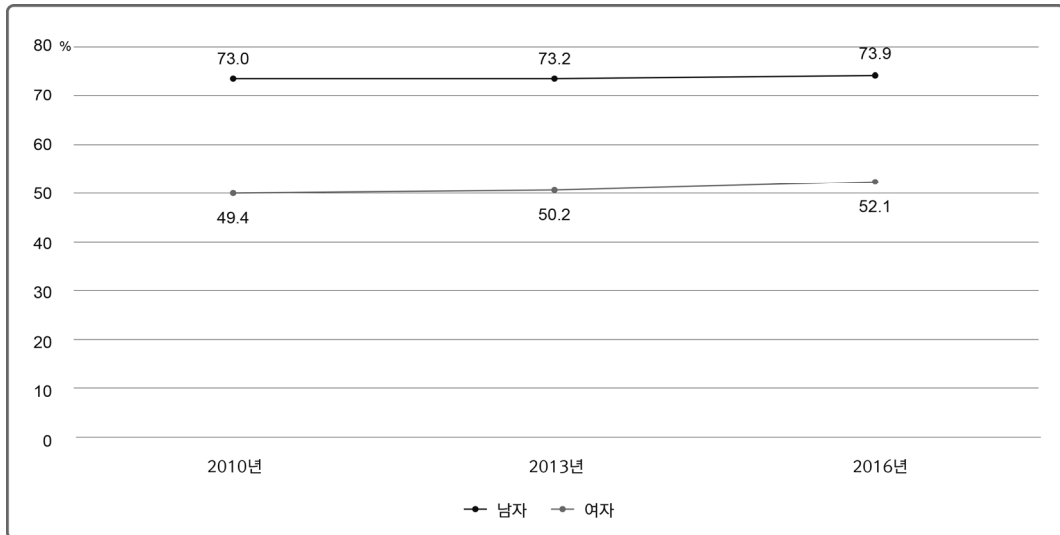
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고 여성평생교육시설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회관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도 혼란이 거듭되었으나, 최근에는 각 기초단위에서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이 여성평생교육기관만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받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해당지역에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을 성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여성들, 경력단절여성들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본 백서에서는 여성 평생교육에서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평생교육 과정 또는 사업이 아닌 취약계층,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정부 정책 사업에 한해서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인력활용 정책에 근거한 여성 평생교육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이하 새일센터)’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사업방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⁶⁾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6~65세)은 OECD 가입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2013년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6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52.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녀 간 격차는 2013년 약 23%, 2016년 21.8%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20%이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격차는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성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교육내용과 실적자료는 여성가족부 201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함.



[그림 3-9] 2010년, 2013년, 2016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출처: 통계청(2010~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저조는 30·40대 여성들의 집단적 경력단절현상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원인과 재취업 장애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취업관행이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⁷⁾을 2008년에 제정·시행하였고 2016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자체의 여성 친화적 교육시설에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155개 규모가 되었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사업의 기본적 방향 즉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를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법개정을 통해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7) 2007년 4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08년 5월에 통과됨.



예방사업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변화하였다.

예방사업과 관련한 2017년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2017,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계획).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둘째, 여성의 지속 근로 가능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셋째, 새일센터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력망 구축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이를 위해 지역 여성단체들과 새일센터,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이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이미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취업연계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현재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중심의 일반 직업교육훈련과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직무중심의 직업교육 훈련에서 벗어나 미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직업훈련과정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향후 고부가가치직종을 보다 구체화하여 확대할 예정에 있다.

나. 새일센터 사업 추진 경과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정·운영하는 여성 종합 취업지원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3-33〉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주요 사업 내용

지원 범위	주요 내용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 직종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여성 인턴십 지원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사업장, 인턴 대상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	구직자-구인처간 취업연계,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력단절예방사업	경력단절 예방 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 개선 교육, 워크숍, 직장문화 개선 관련 직무 컨설팅,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운영 지역 내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경력단절 예방 매뉴얼 개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일·생활 균형 위한 지역 문화 조성 추진,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p.132)를 바탕으로 추가·재구성.

새일센터는 2009년 2월에 5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경제위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009년 7월에 2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5개소, 2011년 1월 13개소가 추가되어 전국적으로는 90개소가 지정·운영되었다. 2012년에 10개소가 더 지정되었고, 2013년에는 지역별로 20개의 새일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새일센터는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욕구 및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게 경력개발형, 일반형, 농어촌형으로 구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155개의 새일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일반형은 121개이고 경력개발형은 6개이며 나머지는 농어촌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직업상담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개별 직업상담을 실시한 후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신청 및 선발 절차를 거친 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자녀여성(세 자녀 이상), 장애여성,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훈련생 선발 시 우선 대상이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모두 전액 무료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 전문기술과정,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과정, 창업과정, NCS기반 교육과정, 고부가가치직종을 운영하는 차세대 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 나뉘서 2015년 이후 진행하고 있다. 일반직업교육훈련과정은 비교적 오랫동안 경력단절이 되어있던 여성들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 훈련을 통해 비교적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대부분의 새일센터에서 범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다.

기업맞춤형은 기업과의 MOU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기획하여 직업교육훈련이후에 취업이 확실시 되도록 주문식과정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이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과정은 앞서 설명한 한부모,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 여성 등을 우선 선발하는 과정으로 해당 집단의 직업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센터가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일반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정과는 달리 해당 집단의 학습 애로점 등을 좀 더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창업과정은 2009년 새일직업훈련 초기부터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붐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역창조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협업과정으로 연계하는 붐업(Boom up)과정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하반기 지역 거점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신설하면서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부가가치 직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은 4차 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인력을 배출시키기 위한 선도 교육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직종은 일반과정에 비해 고비용·장시간의 교육훈련으로 미래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일역량교육과정은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직장적응교육과 기초직업역량 함양을 위해 단시간 직업교육훈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며, NCS기반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의 NCS기반 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이 된 교육훈련 중에 새일직업훈련으로 활용해도 적합하다고 판단한 교육과정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표 3-34〉 새일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세부 내용

교육과정	세부내용 범위	주요 교육과정
일반	일반	• 진로상담전문가, 전시기획자, 단체급식조리사, 기업경리회계실무과정 등(374개 과정)
	기업맞춤형	• 유휴간호사 재취업과정,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법무사무원 양성과정 등(142개 과정)
전문기술	전문기술	• 3D프린팅 전문가, 제약 바이오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카메라져 양성 등 (55개 과정)
	기업맞춤형	• 오피스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자동차부품 제조인력양성과정, 탄소산업분야 제조인력 과정 등(21개 과정)
취업 취약계층	결혼이민여성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등(38개 과정)
	장애여성	• 장애여성바리스타 양성, 디저트카페 창업과정 등(4개 과정)
	북한이탈여성	• 사무직취업 실무과정(1개 과정)
창업		• 오픈마켓 창업과정, 홈인테리어 창업과정 등(28개 과정)
NCS 인증과정		• ERP전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등 NCS 인증 프로그램(2개 과정)
전문인력 양성(고부가가치직종)		• IT, 콘텐츠, 디자인 등 고속력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25개 과정)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p.136)를 바탕으로 재구성.

2009년부터 시작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사업(이하 새일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총 90,852명으로 이 중 84,613명(93.1%)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새일직업교육훈련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일직업교육훈련의 수료률은 약 94%에 육박하고 있어서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원은 약 1만4천에서 5천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이 여성들의 교육·훈련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취·창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만을 특화한 새일직업교육훈련은 동 연령 간의 경제활동참여 격차가 심각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의 취업률의 변화는 약 1.1%정도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2015년 대비 전반적인 교육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한 영향이라 판단되는 바 지역의 교육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일직업교육훈련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3-35〉 새일직업훈련 취업현황

구분	교육 인원(a)	수료 인원(b)	수료율 (b/a)	취업 현황						취업률 (c/b)
				소계(c)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2012년	9,140	8,412	92.0	5,143	2,617	-	2,364	-	162	61.1
2013년	15,145	14,041	92.7	8,089	4,525	843	1,446	1,059	216	57.6
2014년	15,094	14,124	93.6	8,599	4,769	1,102	1,244	1,245	239	60.9
2015년	16,689	15,596	93.5	10,537	4,812	1,721	1,769	1,917	318	67.6
2016년	14,066	13,232	94.1	8,805	4,402	1,308	1,244	1,599	252	66.5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p.136)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

또한 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총체적·전문적 취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지금까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사업을 살펴보았다. 여성평생교육이 포괄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본 백서에서는 여성만을 특화한 교육사업으로 한정해서 그 대표적 사업인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새일직업훈련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추진경과, 실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새일센터 사업은 2016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는 법개정을 통한 새일센터의 역할 범위의 확대, 둘째, 4차 산업 혁명 등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인력양성 방향의 전환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일센터도 다음과 같은 변화의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

첫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 2016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내실화된 직업훈련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직종 발굴에 상당한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에게 필요한 취업직종의 발굴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와 공급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영주체 기관들에게 직종 개발을 위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여성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직종 발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절적 취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패키지화된 사례관리 방식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성 특화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은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는 구직여성의 욕구와 매칭되는 구인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함양에 달려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은 자생적 구직활동에 애로를 느끼는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단발적이며 분절적 취업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역량이 부족한 구직여성을 선별하여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직업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발굴과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의 NCS는 해당 일자리의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진 자료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틈새 일자리 발굴 및 지역별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및 전략산업 진흥과 연계한 지역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통계청(2010,2013,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제2절 노인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행정안전부, 2017). 이는 2000년에 고령인구 7%를 넘은 지 17년만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런 사회 변화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가에 따라 고령화는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제 2의 삶을 누리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중한 노인부양 부담에 사회발전의 발목이 잡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주로 소득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복지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더불어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시혜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넘어서 노년층이 지닌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년기 사회참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년층의 학습역량 제고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노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크게 노인 평생교육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 평생교육 사업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클럽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대학 평생교육원 등 초·중등 및 대학(원)부설, 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등 부설형 평생교육기관, 원격형태나 인적자원개발(HRD)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전담형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 평생교육은 별도의 과정 개설보다는 주로 노인대상의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 평생교육 기관은 1970년 부산 범일동에 설립된 ‘한얼노인대학’이며, 그 후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노인교실 설치요강>을 발표하고 전국 초등학교 (현 초등학교) 학구단위 노인교실 설립 및 운영비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인 평생교육기관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들 학구단위 노인교실은 현재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모태가 되었으며, 가장 많은 노인교실을 운영하던 한국성인교육협회가 1981년 대한노인회로 흡수되면서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권이 대한노인회에 맡겨지는 지금의 구도가 정착되었다(한정란, 2015).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노인복지법」의 전부 개정 에 따라 노인교실, 경로당 등이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노후생활에서 여가 및 평생학습 활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의 운영 등에 관련된 감독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되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법제상의 명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대학, 실버대학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운영되는 노인교실 중에서도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비 지원을 해 줄 뿐이어서, 사실상 많은 미등록 노인교실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인복지관은 법적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평생교육 지원 뿐 아니라 취미여가 지원, 기능회복 지원, 건강증진 지원, 급식 지원, 요양서비스, 상담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주거 지원, 고용 및 소득 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의 노인 대상 사업은 물론이고 방문간호나 노인돌봄 서비스 등의 가족기능 지원, 가족상담 등의 가족통합 지원, 자원봉사자 발굴과 후원자 개발 등의 지역자원 개발, 경로당이나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연계사업, 노인인권 옹호나 인식개선 등의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노인 평생교육 시설로만 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로당은 1998년부터 법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편입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성격의 노인정으로 시작된 자생적인 노인조직으로, 체계적인 관리나 전문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약 5년 동안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1983년부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199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노인교육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노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 그대로 둔 채로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만을 교육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처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 및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이 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로 통합·축소되었고, 2008년부터는 교육부 안에서 노인평생교육 담당 업무 직제마저 폐지 되기에 이르렀다(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11). 따라서 지금은 주무 부처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현장에서 노인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시설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지닌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적인 노인 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노인 평생교육 사업의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35,127개 일자리로 출발하여 2017년에는 437,000개 일자리 및 사회활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또 2016년까지는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공익형 일자리 급여가 2017년 처음으로 2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2017년 8월부터는 27만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표 3-3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사업	구분	유형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비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노-노 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9~12개월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월 27만원 (2017.8~)
	재능나눔활동	노인안전 예방 활동, 상담안내 활동, 학습지도 활동, 문화예술 활동, 기타 활동	6개월	월 4회 이상 총 10시간(일 3시간 이내)	월 10만원 이내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사업단별 근로계약서에 준함		월 21만원 이상
	인력파견형	관리사무 종사자, 공공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생산제조단순노무직	근로계약서에 준함		
	고령자 친화 기업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모기업 연계형, 시니어직능형	기업 및 기관별 운영규정에 준함		
	시니어인턴십	인턴, 훈련생	근로계약서에 준함(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함)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go.kr> 2017. 11. 27)로부터 재구성.

노인일자리사업은 2010년까지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과견형 등 5개 유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에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등 세 가지 형태가 추가되었다. 또 2014년부터는 재능나눔사업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일자리 등은 ‘공익활동’으로 묶어서 재능나눔과 함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장형의 사업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국의 지자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계약직 전담인력을 통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노년기 역할 창출과 사회통합에 의의를 두며, 참여자들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 평생교육적 효과도 수행하고 있다.

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7.8%에 불과하다(통계청, 2015). 이는 경로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노년층의 권위의식, 노인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데, 최근에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과 재능을 이용한 나눔문화 확산과 노년기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우수 노인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노인 자원봉사 리더 교육,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노인자원봉사 교육 체계 구축, 은퇴노인자원봉사 DB 구축, 노인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노인자원봉사 단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노인자원봉사 단체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를 통한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과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지원’으로 나뉜다.

노인 자원봉사는 봉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라는 복지적인 관점 외에도 봉사 자체가 훌륭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면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한정란, 2015).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 자체가 하나의 노인 평생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앞서 자원봉사 교육이 필수적이어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가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3. 사업 운영 성과

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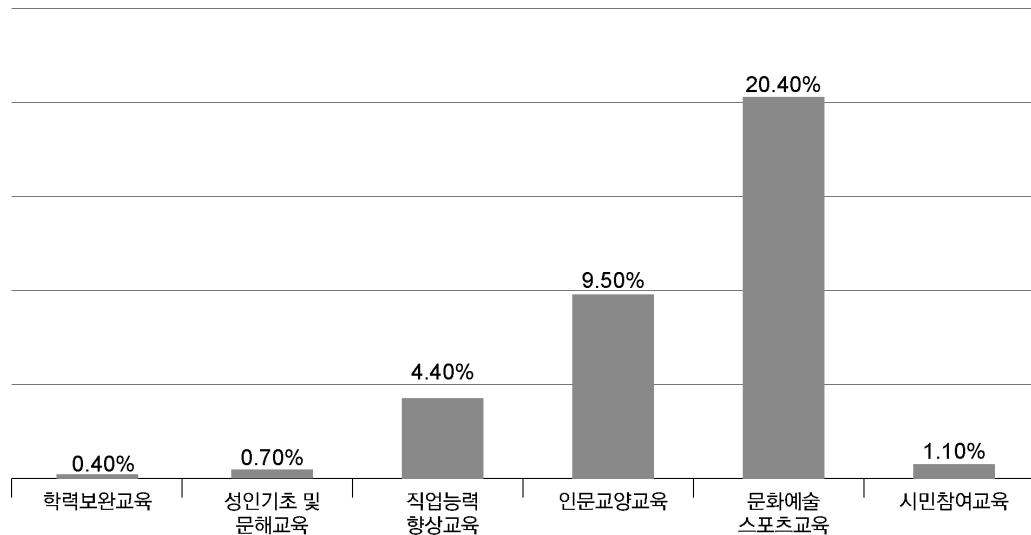
2016년 현재 전국에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4,153개이며, 개설 프로그램은 161,788개이다. 그러나 그 중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단 1.58%에 불과하며 참여 학습자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학습자의 비율은 1.12%에 불과하다. 기관 유형별로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1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인 학습자 비율도 평생 학습관이 9.82%로 가장 높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편, 매년 실시하는 교육부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25~64세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노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실태는 조사에서 빠져 있다. 이에 2016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평생학습 개인실태 추가조사로 65~79세 823명을 포함, 60~79세 1,1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국조사의 성인(25~64세) 평생학습 참여율은 35.7%인 데 반해 경기도 노인(60~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1.7%로 나타났다(이운조, 이경화, 김남희, 신혜란, 2016).

〈표 3-37〉 비형식교육기관 노인 참여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단위: 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로그램	전체	84,836	107,128	126,506	142,776	129,443	133,844	156,690	156,665	161,788
	노인	1,388 (1.64)	1,578 (1.47)	1,995 (1.58)	2,306 (1.62)	2,348 (1.81)	2,520 (1.88)	2,819 (1.80)	2,542 (1.62)	2,562 (1.58)
학습자	전체	11,403,373	22,454,539	27,026,042	28,920,780	17,618,496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노인	76,823 (0.67)	97,856 (0.44)	134,154 (0.50)	152,430 (0.53)	138,901 (0.79)	212,882 (1.17)	221,423 (1.71)	175,411 (1.46)	127,005 (1.12)
비형식교육기관 수	2,620	2,807	3,213	3,591	3,768	3,965	4,342	4,144	4,15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으로부터 재구성.



[그림 3-10]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율(60~79세)

출처: 이윤조 외(2016). 『경기도 노인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로부터 재구성.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

노인교실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교실에 한하여 지자체의 예산 가능 범위 안에서 약간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노인교실은 1,393개지만(보건복지부, 2017b), 실제로 종교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미등록 노인교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한정란, 2015). 노인교실의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 종교기관, 개인 등 다양한데,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2014년 말 현재 328개소이고 재학생 수는 49,577명이다. 또 대한노인회에는 노인대학 외에도 16개 시도연합회에 노인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18개 노인지도자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백세시대, 2015). 한편 대한노인회 외에 노인교실을 주로 운영하는 주체는 종교기관인데, 종교기관의 노인교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수 파악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 중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곳은 연합회를 갖고 있는 천주교의 일부 교구와 개신교 중 장로교 쪽의 한국노인학교연합회 소속 노인교실 뿐이다. 천주교의 경우 서울대교구 연합회인 가톨릭서울시니어아카데미에는 2017년 4월 현재 133개 노인대학이 운영중이며 (<http://www.>



isenior.or.kr), 2017년 현재 부산교구 노인대학연합회에 63개(<http://www.catholicbusan.or.kr>), 2017년 현재 대전교구 노인대학연합회에 42개(<http://senior.djcatholic.or.kr>), 그리고 2014년 현재 수원교구의 노인대학연합회에 59개(<http://cafe.daum.net/suwonsilver>) 등 연합회를 통하여 현황이 파악한 노인대학만 297개가 운영중이다. 또 예수교장로회의 한국교회노인학교 연합회 소속의 노인학교는 2012년 현재 서울 782개, 경기 772개, 인천 172개, 충남·대전 424개, 충북 154개 등 총 3,209개(국민일보, 2013)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교실이 미등록 상태에 있고,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정해진 표준이 없으며, 대부분 노인교실의 규모나 재정상태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주 1회 1시간 정도의 간단한 특강과 점심식사, 그리고 여흥 등의 단순한 여가활동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로서 1983년 전북 금암노인 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1989년 남부노인복지회관과 북부노인복지회관이 설립 되었고, 2016년 현재는 350개소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7b). 노인복지관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 및 인력에 대해 법적 기준을 따르고 다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비하여 규모도 크고 인력 배치기준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노인교실이나 경로당에 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전혀 없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노인 평생교육이 운영됨으로써 평생교육 보다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가 및 휴식시설로써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2016년 현재 전국에 65,04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보건복지부, 2017b). 그러나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경로당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적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지회별로 배치된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나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노인교실	363	172	51	36	40	13	23	7	174	51	6	72	72	73	111	102	27	1,393
노인복지관	76	25	15	17	8	7	12	0	56	13	16	15	23	29	17	19	2	350
경로당	3,369	2,247	1,450	1,463	1,300	804	787	445	9,315	3,086	4,080	5,648	6,608	8,884	7,854	7,277	427	65,044

출처: 보건복지부(2017b). 『2017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부터 재구성.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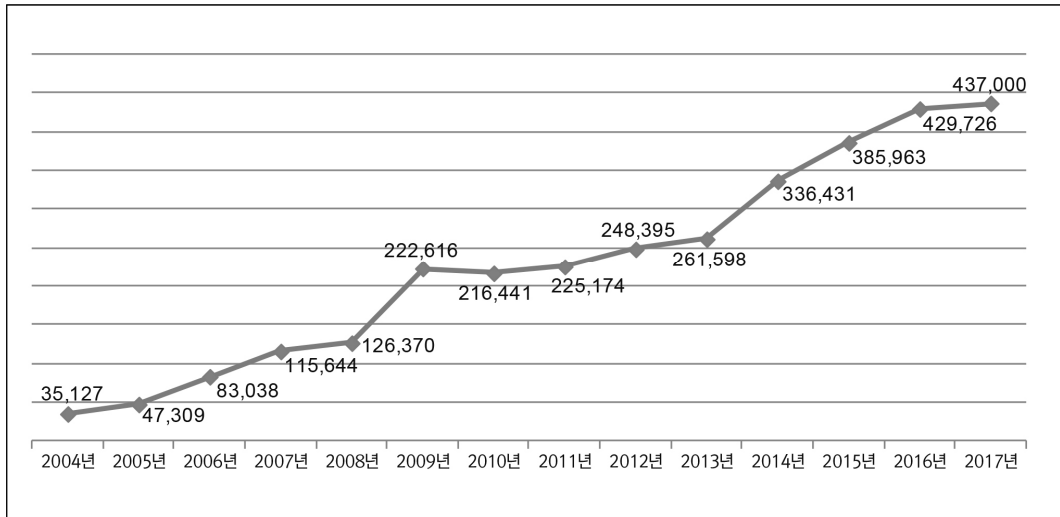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해마다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429,726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창출하였다.

〈표 3-3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단위: 개)

연도	계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시장형)	
		공익형	재능나눔	시장형/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등
2004	35,127	32,173	-	2,954	-
2005	47,309	42,745	-	4,564	-
2006	83,038	73,712	-	9,326	-
2007	115,644	103,415	-	12,231	-
2008	126,370	110,389	-	15,981	-
2009	222,616	195,798	-	26,818	-
2010	216,441	191,676	-	24,765	-
2011	225,174	194,480	-	25,866	4,828
2012	248,395	217,710	-	25,539	5,146
2013	261,598	227,439	-	28,082	6,077
2014	336,431	269,244	30,609	30,278	6,300
2015	385,963	305,140	40,847	32,619	7,357
2016	429,726	290,625	40,163	90,291	8,647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으로부터 재구성.



주) 2017년 일자리 개수는 실적이라 아니라 목표치임.

[그림 3-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으로부터 재구성.

〈표 3-4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2016년)

(단위: 개)

	지자체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지역 문화원	기타	계
공익형 활동	142	128	186	227	181	139	16	135	1,154
시장형 일자리	133	187	66	86	19	22	1	74	588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으로부터 재구성.

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중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전국의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노인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화상담,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영상 제작, 시니어 기자단 등 4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표 3-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2017년 노인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	7	4	1	-	4	4	-	9	1	2	2	4	-	-	2	-	47

출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aswcs.or.kr> 2017. 11. 28.)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를 통하여 노인회 지회에 속한 자원봉사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2016년에는 3,164개의 클럽을 지원하였다.

〈표 3-42〉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현황

사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클럽 수(개)	1,362	1,594	2,228	2,735	3,164
자원봉사자 수(명)	26,361	33,971	47,579	58,208	66,887

출처: 대한노인회 홈페이지(<http://www.koreapeople.co.kr> 2017. 11. 28.)

4. 향후 과제

이상 노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실질적인 노인 평생교육 사업은 노인 평생교육 사업뿐이며, 그 중에서도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 따라 노년층 학습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지원, 관리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베이비부머의 노화로 인한 노년층의 교육 및 사회참여 욕구수준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1) 노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

현재 노인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이나 「평생교육법」 등 법 조항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평생 교육을 ‘노인여가복지’에 포함시켜 실제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위주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선택과목에 ‘노인 교육론’을 포함시킨 것 외에는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더불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 노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할 주무부처 명시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현재 노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처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노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노인 평생교육 관리·감독 부처를 명시하고, 부처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노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지만, 아직까지 노인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년층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등록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 실질적인 노인 평생교육의 대상인 65세 이상 노년층을 포함시키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

현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인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사의 노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 평생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는 자격 양성과정에서 노인교육론을 필수로 이수하거나 임용 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노인교육론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노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노인평생교육 지원단(가칭)’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지원이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노인평생교육종합포털(가칭)’ 구축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평생교육 종합포털(가칭)’ 구축하여, 프로그램 및 강사 풀(pool) 제공, 지역 노인 평생교육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노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2011). 2010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일보(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 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2013.12.26.일자 기사).
 백세시대(2015).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대학 328개(2015.04.10. 일자 기사).
 보건복지부(2017a). 201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b).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윤조, 이경화, 김남희, 신혜란(2016). 경기도 노인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계청(2015). 2015사회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정란(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2008). 노인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보고서.
 행정안전부(2017).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2017.9.4.).



〈인터넷 검색 사이트〉

가톨릭서울시니어아카데미(<http://www.isenior.or.kr> 2017. 12. 1.).

대전교구 노인대학연합회(<http://senior.djcatholic.or.kr/> 2017. 12. 1.).

대한노인회(<http://www.koreapeople.co.kr> 2017. 11. 28.).

부산교구 노인대학연합회(<http://www.catholicbusan.or.kr> 2017.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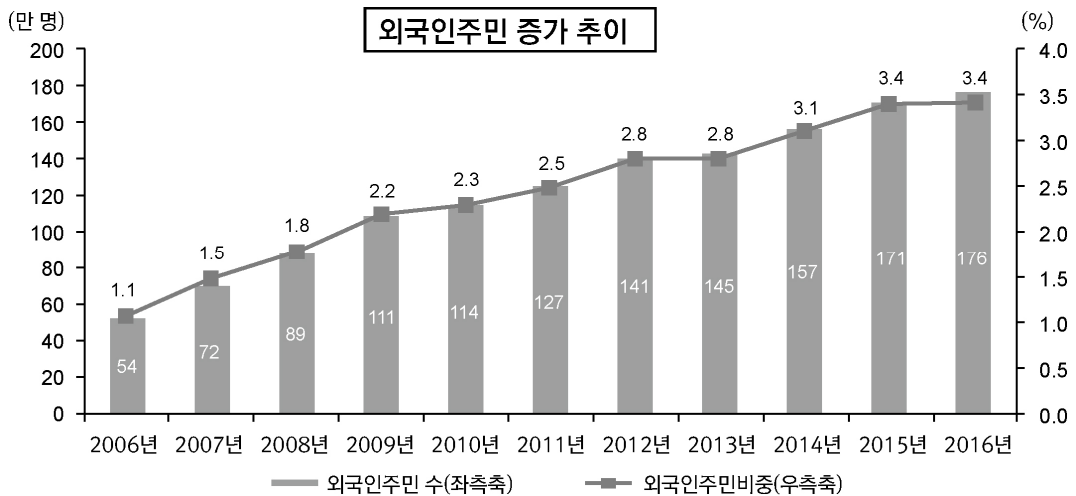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http://cafe.daum.net/suwonsilver> 2017. 12.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www.kordi.go.kr> 2017. 11. 27.).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우리사회는 전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문화, 정보, 상품의 이동은 물론 사람의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 노동력의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였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6만 4,664명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수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는 53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 1.1%, 2016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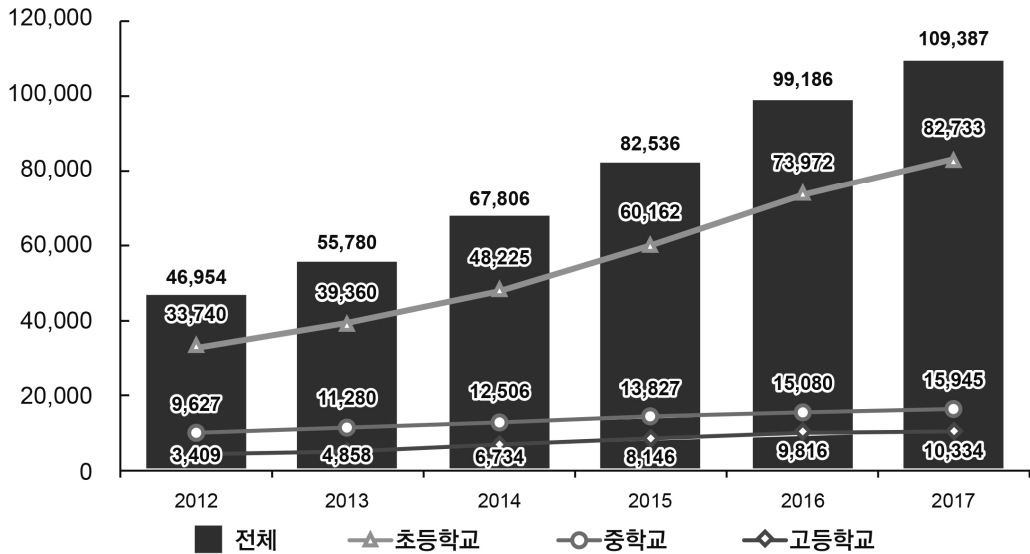
[그림 3-12]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의 증가는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 다문화학생 수는 109,387명(1.9%)으로 2016년 대비 10,201명(10.3%) 증가하였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89,314명(8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12,281명(11.2%),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7,792명(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3] 전체/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출처: 교육부(2017년).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이처럼, 우리사회는 여러 인종·민족국가 등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이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일정 수준 지속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국내 다문화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다문화가족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여러 인종·민족국가 등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사업과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2. 사업추진 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범부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 다문화 관련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7년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마지막 해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7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7년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등 6대 영역 799개 과제(중앙부처 87개, 지자체 712개)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 2017년 시행계획 6대 영역 〉

-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기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다문화교육정책 동향은 2017년 1월에 발표한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학생에게는 다른 문화, 인종 등에 대한 이해와 관용, 시민의식 등의 교육 필요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②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③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
핵심 과제	세부 과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유치원 확대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학생 정서 상담 지원 ▪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교원 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지원 ▪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구축

2017년 교육부 다문화교육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다문화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예비학교를 확대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글로벌브릿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 및 정서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구분	진입	적응	발전
국내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유치원에서 언어 및 기초학습 ('17년 17개 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지원 • 기초학력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 멘토링을 통한 진로 설정 • 언어, 수·과학 등 재능을 키우는 글로벌브릿지 확대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교에서 한국어 (KSL)·한국문화 학습 • 모국어를 활용한 외대 대학생 멘토링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적학급 입학 후 모니터링 	

[그림 3-14]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개요)

출처: 교육부(2017).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둘째, 학생,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운영하고,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운영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한국어교육과정, 진로진학 등 전문적인 교원 직무연수 운영, 다문화 교육의 실제 등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하여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예비교원 및 현직 교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 개발 등을 통하여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는 등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령기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가 학업의 중단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17년부터 법무부는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문화교육 안내자료 제공,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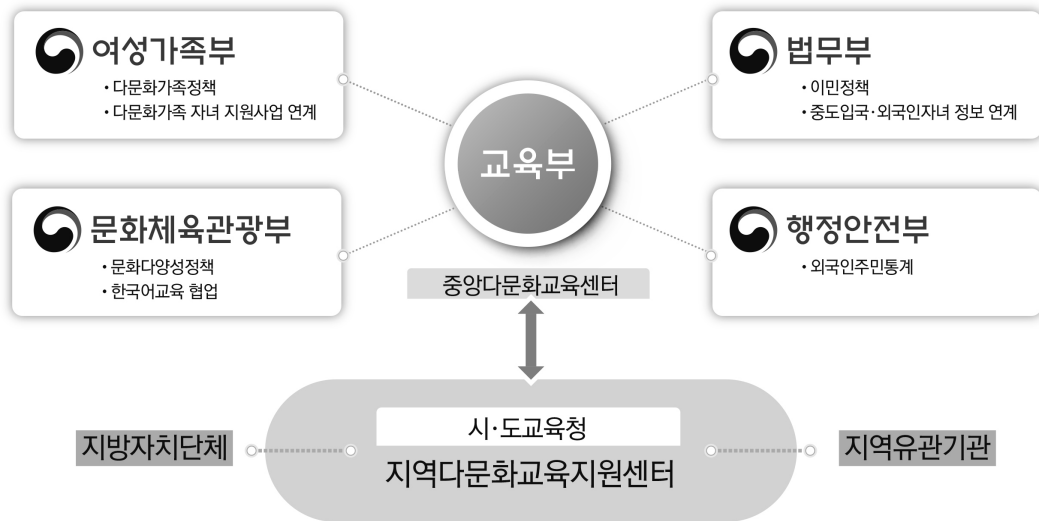
넷째,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정·확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적응 지원,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활용, 지역청 단위 특화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센터 지정·운영지원 (시·도교육청)	5개	8개	13개	2015년 도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 지원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사업 성과 분석·평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포럼,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 제고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시·도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을 통하여 지역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3. 사업 운영 성과

가. 추진성과

2017년 다문화교육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 17개 시도 90개원으로 확대운영하여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다문화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예비학교를 160개 학급으로 확대운영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로 멘토링 진행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과의 ‘모국어 멘토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13개 언어로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학생 전문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3-4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현황

유 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문화 유 치 원	-	-	30개원	60개원	9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52개교	80개교	100개교	124개교	166개교
다문화 중점학교	111개교	120개교	150개교	180개교	313개교
다문화 연구학교	30개교	36개교	40개교	39개교	24개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둘째, 이중언어, 수학, 과학, 예능 등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우수한 다문화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글로벌브릿지사업단 20개교를 운영하여 805명의 우수 다문화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청소년 국제발명품 전시회 은상 수상, 전국 웅변·글짓기 대회 대상 수상, SW사고력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5〉 글로벌브릿지 수혜 다문화학생수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680명	723명	805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셋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반편견 교육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전국 초·중·고등학교 313개로 확대·지정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다문화중점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20,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포래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다문화통합성, 외국인수용성 등 모든 항목에서 다문화 중점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향상되었다. 향후 다문화 중점학교의 지속적 확대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로의 확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46〉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효과성 사후조사 결과

구분		사전평균	사후평균	향상 정도 (사후-사전)	향상 폭 차이 (중점-일반)
다문화포래 수용성	중점학교	81.99	84.31	2.32	0.94
	일반학교	82.31	83.69	1.38	
세계시민의식	중점학교	70.74	74.27	3.53	1.13
	일반학교	71.44	73.84	2.40	
다문화통합성	중점학교	71.94	76.07	4.13	0.94
	일반학교	71.77	74.96	3.19	
외국인수용성	중점학교	73.63	76.62	2.99	1.26
	일반학교	73.95	75.68	1.73	
전체 평균	중점학교	74.58	77.81	3.23	1.07
	일반학교	74.88	77.04	2.1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넷째, 법무처, 민관 협업 및 지역 내 연계 강화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 보유한 외국인등록 자녀의 개인정보 공유를 통하여 중도입국외국인 자녀 845명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연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한국어교육 협업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나. 시사점

첫째, 다문화 중점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편견, 관용, 배려 등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중점학교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로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정책 유관부처 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은 다문화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법무부(출입국 관리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도입국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공유협력 등 다문화정책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 과제

첫째, ‘다문화교육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등 다문화가족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식개선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문화교육의 추진근거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난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성 등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문화사회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추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 등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민과 내국인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연령, 직업, 지역 등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개발하여 평생교육 추진체계 안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인, 시설종사자,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온라인 또는 집합 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9-10.
-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10.
- 여성가족부(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3-36.
- 양계민(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교육부. 111-127.



제4절 농·어업인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적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2004년 ‘정예농업인력 육성종합대책’,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2008년 ‘신농업교육체계’, 2010년 ‘농업교육 3개년(2011~2013) 기본계획’, 2011년 ‘농업교육 체계개편 계획’ 등이 마련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7년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등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책의 흐름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982년부터 농업, 농촌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계획(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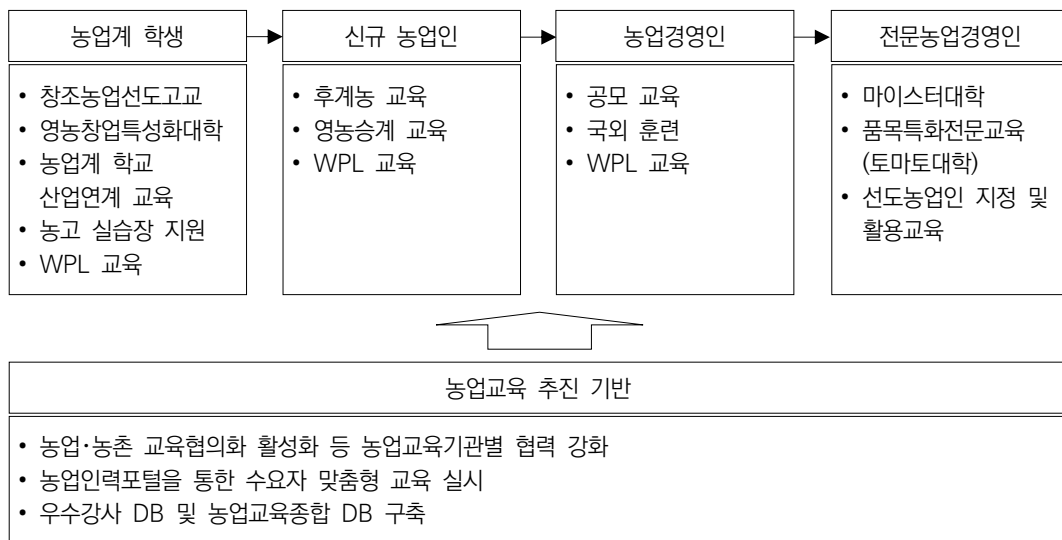
2016년 12월에 발표된 2017년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농업·농촌교육사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견인할 정예 핵심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교육 수요와 농정 목표에 부합한 실용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농촌 핵심인력 육성 및 효율적인 교육기반·운영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2017년에는 277억 5천 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농업·농촌교육사업은 새로운 인재 유입을 위해 농고생, 농대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품목특화대학 등 ICT 중심의 현장실습·전문교육을 확대하며, 농업인 맞춤형교육 서비스 본격 운영 및 우수 강사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다음의 [그림 3-16]과 같은 추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체계가 갖는 의미는 농업계 학교 학생이

신규농업인으로 유입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의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 농업인력포털(AgriEDU)을 통한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 우수강사 및 농업교육에 대한 종합 DB 구축이 기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농업·농촌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교육운영기관 등이 관련된다. 각 기관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표 3-47>과 같다.



[그림 3-16]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 체계도

<표 3-47> 농업·농촌교육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및 역할

기관	주요 임무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배정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운영 지침 수립 및 시행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 교육 프로그램 인증, 강사 등 양성 • 교육기관 운영 지원, 농업인력포털 운영 • 보조금 교부 및 최종 정산 보고 • 홍보, 교육성과 발굴 • 교육생 이력(DB) 관리 등
교육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주체(교육 시행) •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고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농업·농촌교육사업(2017년)이 갖는 특징은 농고생·농대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교육이 확대되고, 학습조직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 농업인력 포털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크게 1. 예비농업인교육 지원, 2. 전문농업경영체 육성교육 지원, 3. 농촌현장적응교육 지원 및 기반 강화로 구성된다. 각 세부사업의 목적, 2017년도 사업예산 및 목표, 2016년도 실적 등을 제시하면 <표 3-48>과 같다.

<표 3-48> 농업·농촌교육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사업명	사업 목적	2017년도 사업 예산 및 목표	2016년도 실적
1. 예비농업인교육 지원			
- 창조농업선도고교	농업계 학생(농고·농대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영농 정착 후계 인력 양성	24억원 3개교, 250명	3개교, 인프라 조성
-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20억원 5개교, 134명	5개교, 129명
- 농업계 학교 교육 지원		35억원 23개교, 13,500명	23개교, 15,112명
-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후계 농업인력 육성 실험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운영의 효율화 제고	13억원 3개교	1개교
2. 전문농업경영체 육성교육 지원			
- 농업마이스터대학(지자체)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51억 2천 5백만원 9개 대학, 33개 캠퍼스, 2,000명 교육	9개 대학, 33개 캠퍼스, 99개 품목 전공, 1,968명
- 현장실습교육(WPL) 운영	선도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 등을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추진	11억 7천만원 2,780명	2,958명

사업명	사업 목적	2017년도 사업 예산 및 목표	2016년도 실적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운영	ICT 등 첨단기술교육 확산을 통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10억 7천 5백만원 2,400명	899명
-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ICT 첨단기술교육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전문농업인 육성	11억 2천만원 7개 품목, 270명	4개 품목, 167명
-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공모)	농정목표 및 현장 교육수요를 반영,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우수교육과정을 발굴·지원하여 전문농업인 역량 향상	- 농업인 능력향상 교육 12억 8천 7백만원, 20개 기관, 20개 과정, 3,000명 - 승계농교육: 5억원, 1,000명 - 학습조직화사업: 3억원, 20팀 내외	34개 기관, 37개과정, 4,594명
- 농업인 국외훈련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지 사례학습, 현장실습, 벤치마킹을 통하여 FT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	9억 3천 2백만원 15개 과정, 350명	11개 기관, 11개 과정, 250명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유도	8억원 80개 내외 경영체	84개 경영체, 93명
- 농업회소 시범사업 지원	농업회소 활성화를 통해 농정 추진체계의 선진화·효율화 도모	2억원	5개소
- 선도농업인 활용교육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업인의 경험과 숙련된 경영·기술을 경영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7천 3백만원 - 보수교육 190명 - 선도농업인 역량전수 교육 350명	- 지정자 활용 8개 과정, 160명 - 미래리더멘토링 50명 - 보수교육 89명
3. 농촌현장적응교육 지원 및 기반 강화			
- 후계농교육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과학영농, 국·내외 신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억원 2,000명	2,007명
- 농정원 교육운영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강화, 우수강사 양성 체계 구축 등 교육 운영기반 마련 및 제3회 농업마이스터 신규 선발	8억 1천 6백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년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3-48>에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관할 농업·농촌교육사업 이외에도 농업인 교류센터 지원(농업정책과), 스마트팜 확산 지원(창조농식품정책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교육(농촌복지여성과), 체험마을리더교육(지자체)(농촌산업과), 농업인·소비자교육(농식품 공무원교육원), 양잠기술교육(종자생명산업과), 중국 조선족동포 농업교육(대변인실), 후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대변인실),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지원(농촌복지여성과) 등이 농·어업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농업·농촌교육지원사업 외에 농업인력 육성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는 농촌진흥청을 들 수 있다.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시행계획(농촌진흥청, 2017)에 따르면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가운데 교육훈련사업은 산·학·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인재개발 지식공유 강화, ICT·BT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축산업화, 6차산업화로 농업경쟁력 및 농업·농촌 활력 증대 교육 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맞춤 HRD 학습 시스템 지원 확대, 농촌진흥기관의 고품질 교육 브랜드화로 기관 위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훈련사업은 1.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2.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3. ICT기반 스마트팜·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4. e-러닝학습 역량개발로 구분되고, 총예산은 145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은 2.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3. ICT기반 스마트팜·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4. e-러닝학습 역량 개발이다. 해당 세부 사업별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표 3-49>와 같다.

<표 3-49> 농촌진흥사업 교육훈련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사업명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2.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2-1. 중앙단위 농업인·신수요자교육	- 농업정책 확산 및 신기술 현장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	- 성공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예원, 교육청 등의 협업 교육과정 운영 - GAP인증심사원교육 수탁, 주요 가축 개량 및 검정원 양성 등 주요 농업정책 및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기능성장잠, 육가공·유가공, 강소농·지역개발리더 육성 등

사업명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지방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내용 위주의 과정 개설 운영
2-2.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품목중심의 교육 운영 142개소(개소당 1-3천만원)
2-3. 품목별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 - 농·축산물 품목의 다양화·전문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력의 영농경력·기술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현장애로기술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실용기술교육 - 소비자·농촌생활문화교육
2-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창업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에 도시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발전에 기여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과 귀농창업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마케팅교육 - 신규농업인교육과 연계한 농업기술기반형 창업역량 지원
3. ICT기반 스마트팜·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3-1. 스마트팜 현장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농업기술 확산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수평적·수직적 스마트팜 협업 추진체계를 통한 소통 강화 및 기관 간 시너지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 축산 등 분야별 기본교육 - 딸기, 포도 등 실습 중심 품목별 특화교육 - 장기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최고전문가 심화교육
3-2. 발농업 기계화 현장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업 생산 전과정 연시·전시 현장적용 집중교육으로 발농업기계화율 제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속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 전문기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업 기계화촉진 연시·전시 및 신기술교육 - 임대사업 관리담당의 계층별 차별화 교육과정 운영 - ICT기반 정밀농업·무인자동화 전문기술 교육



사업명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 최신 농업기계 주요기능별 이용기술 및 핵심 정비기술 교육 운영
3-3.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교육	- 농작업 기계화의 대형화·자동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기영농 실현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대형기종 중심의 운전 및 정비기술 등 심화교육 - 농업기계 안전 및 관리운영 기술교육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이해 및 안전사용기술교육 - 발농업기계 촉진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3-4. 스마트 농업기계 전시관 운영	- 농업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 전시관 설치·운영 - 스마트 농업기계 기술의 보급·확산 촉진 - 작목별 발농업 전과정기계화 및 ICT기반 스마트 농업기계기술 능력 배양	- 스마트 농업기계 전시관 운영 - 주요 발작목 전과정기계화 전시장 운영 - 한국형 스마트팜 및 ICT 정밀농업기계 전시장 운영 - 일반농업기계 전시장 및 안전홍보관 운영
4. e-러닝학습 역량 개발		
4-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e-HRD 시스템 운영	- 수요에 따른 안정화된 e-HRD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서버 운영 - e-HRD 시스템 성능 개선 유지 - 농업 R&D와 기술보급을 연계한 정보화 기반 지식 정보 축적 - 현장과 소통하는 이러닝 학습체계 구축 및 활용
4-2. e-러닝 운영	- 정규 e-러닝 과정 확대 운영 - 시·공간의 제약없이 e-러닝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지원	- 학습자 환경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운영 - 모바일과 PC의 정보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학습환경 운영
4-3. e-러닝 콘텐츠 개발	- 최신 영농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개발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규 콘텐츠 개발 - 노후화 콘텐츠 재설계

출처: 농촌진흥청(2017).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3. 사업 운영 성과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 또는 교육훈련사업에는 실제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실습 시설 지원 등 인프라 조성, 농업경영 조직 육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교육 서비스 강화 기반 마련, 창업 활성화 지원, 전시관 운영, e-러닝 학습 기반 마련 및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농·어업인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특정 작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농·어업인의 성장을 고려한 평생학습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농산업현장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 등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고도로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농산업분야에서의 교육·훈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중심형 실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을 활용한 교육·훈련이 WPL, 선도농업인 활용교육, 농업기계 교육 등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제고되고 있다.

넷째, 농산업분야로의 신규 진입을 돕는 다각적인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예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고, 농대생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교육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로 일원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다섯째, 4차산업혁명, 농산업의 6차산업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스마트팜 현장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농업기계 전시관 등은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인 국외훈련 사업을 통해 FT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평생교육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e-러닝, m-러닝, u-러닝 등이 강조되면서 시스템 운영, 콘텐츠 개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농업인력포털(<http://www.agriedu.net>)을 통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검색과 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 성과 이외에도 농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는 점, 농업경영체 및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 또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추진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 과제

평생교육 측면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농·어업인을 위한 기존의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영역인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성과관리 중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인 교육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어업인에 대한 장기적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농·어업 경영조직으로서 조직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경력개발 차원에서 농·어업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잠재-예비-준비-진입-발전-은퇴와 같은 단계설정을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표준 이수 모형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마상진, 2012). 조직개발 차원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어업인 학습공동체가 보다 활발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의 경우 노하우 전수를 위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식 성문화(成文化) 방법에 대한 전수가 필요하다. 개인 영농인의 경우에는 학습공동체를 지역단위로 구축하거나, 작목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고, 성과 제고를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성과관리적인 시각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 체제가 보다 공고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농·어업인의 평생교육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된다. 정부부처에서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되고, 농촌진흥청,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이외에도 농업인력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여타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관련되며, 농업고등학교, 농과대학 등을 포함한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의 다양하고 다각적인 의견들이 잘 조율되고 쉽게 공유되는 체제를 공고히 할 때 농·어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년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계획(안).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2017).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시행계획. 전주: 농촌진흥청.

마상진(2012). 농정원의 역할과 농업교육 발전방향. 농업교육 열린포럼 자료집(1-38). 과천: 농림수산물부.



제5절 군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군 평생교육은 군 경쟁력 강화, 군대 사회의 선진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의 기여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군 조직은 지속적인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는 군이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 스스로 군인과 군인가족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개인의 자아 성취와 더 나은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군 복무기간 동안 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방 인력의 정예화를 위한 각종 학교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군 평생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군 평생교육은 개인적인 관점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개인 발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군 요구 중심의 일반적 학습을 장병 개개인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생애 학습프로그램, 군 기술교육과 사회기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내 학교교육과 직업보도 교육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 교육정량제와 평생학습 계좌제와 같은 군 복무기간과 비례한 선택적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직업 능력 인증제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군 학습계좌제를 통해 병역 의무이행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학습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군 평생교육은 시대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과 지식 확충으로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평생교육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체계를 적용하여 학습하는 ‘신(新) 병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군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군 평생교육의 중점사업은 국방 전문인력 육성, 기업과 연계한 직무연수, 학습의 연속성 보장과 자기개발여건 확대,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추진, 군사·외교 분야 인적 네트워크 활용, 장병사랑 재능기부사업 등이다.

가. 창의적 군사전문 인재 양성

국방부는 사이버전·우주전 등 미래 전장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군사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한편 ‘전투형 군대 육성’을 구현을 위한 실사구시형 위탁교육과 미래형 인재육성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문학위교육 중 박사학위 교육은 군 교수, 연구원, 특수 기술 분야의 군사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연간 20여 명을 선발하여 국내외 우수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석사학위 교육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융복합 공학 분야 등 이공계와 군사 분야 위주로 연간 230명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헌문 12개 전공과 무인·드론, E-Bomb(물리학)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국외 군사교육은 다양한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언어권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30여 개국의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사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교육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것이다.

더불어 자질 향상 교육은 야간대학(원) 및 사이버대학 교육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무향상을 위한 실무위탁교육은 직무지식과 평생직업교육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표 3-50〉 연차별 전문인력 육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문학위교육		251	288	304
국외군사교육		307	308	308
자질향상교육	야간(사이버)대학(원)	4,639	4,574	4,635
	실무위탁	13,110	13,145	9,545

출처: 국방부 내부자료(2017).

나. 단절 없는 학습여건 보장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평생학습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장병 자기개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군 복무 중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장병 의식도 크게 변화되었다. 병역제도를 통해 국가는 인재 육성과 군은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인 부대관리 및 병영 내 학습활동 조성을 희망한다. 또한 부모와 병사는 군에서 무엇인가를 배워 전역 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각각의 요구는 장병 자기개발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장병 자기개발(학습 활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원격강좌를 개설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원격강좌 개설대학은 2007년 5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0년 54개 대학에서 2017년 현재 141개 대학이 참여하여 전국 400여개 대학의 약 35%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수의 대학들이 참여함으로써 수강인원도 2014년 11,223명, 2015년 13,856명, 2016년 12,294명, 2017년에는 13,9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졸 미만 입대 장병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신장 확대를 위해 학습용 교재와 e-러닝 콘텐츠를 지원하고, 부대별 학습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검정고시 합격자는 2013년 3,533명, 2014년 2,556명, 2015년 2,741명, 2016년에는 1,838 명이었다.

장병 상시학습 지원을 통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외국어, 전산, 국가자격시험 등 선호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의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였다. e-러닝 수강실적도 2013년 39,688명에서 2014년 50,523명, 2015년 76,427명, 2016년에는 93,454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간부들의 자기개발과 최신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M-kiss (Military knowledge integrated service system) 사업은 군 간부들에게 개인역량 강화, 리더십, 부대 경영에 필요한 경영기법을 제공하여 사회와 단절된 정보·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표 3-51〉 군내 자기개발사업 추진성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원격강좌 참여대학	99개	110개	122개	134개
원격강좌 수강인원	10,297명	11,223명	13,856명	12,294명
고졸검정고시 취득	3,533명	2,556명	2,741명	1,838명
e-러닝 수강실적	39,688명	50,523명	76,427명	93,454명
자격취득현황	18,291명	19,443명	20,206명	20,653명

출처: 국방부 내부자료(2017).

다.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

산·학·군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은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입대 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임관 시 전문분야에 보직하여 군 특수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역 후 관련 분야에 우수 기능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2008년 서울 성동공고 등 14개교 정원 700명을 특성화고로 지정하여 졸업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입대토록 하였다. 또한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국방부와 한화그룹과 업무협약, 중소기업청과 국방전직교육원 연계 교육 및 취업지원 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59명이 전역하고 이 교육에 참여한 631명 중에 503명 취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1년 5월에는 <e-military U: electronic - Military University(군 전문학사 학위 과정)>를



개설하여 전문학사로 복무 중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문학사 취득자에 대한 4년제 학위취득 지원을 위해 e-MU 심화과정을 개설하였다.

〈표 3-52〉 산·학·군 맞춤형 기술 인력 육성사업 추진성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군 특성화고 정원	700명	700명	700명	700명	700명
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예비역 장교)운영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e-MU 등록생	301명	471명	476명	513명	547명

출처: 국방부 내부자료(2017).

라. 군 경력의 사회적 활용성 증대

군에서는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실천인 동시에 체력단련, 리더십, 정신교육, 사회봉사 등 군 복무 간 축적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련 교과 학점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로써 군 복무기간을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에 대해 국가 및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방법으로 다양한 장학제도, 금전적 보상, 취업 후 호봉의 가산적용, 국민연금 혹은 개별연금제도에 대한 보상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인정’ 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부·교육부 공동연구용역 2회, 공청회 2회, 사회장관회의 상정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특히 2017년에는 국방부는 교육부에 법령 개정 및 국무조정실에 정책조정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장급 실무회의 3회, 야전 수혜계층 병사대상 의견 수렴과 대학생 및 대학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 9월에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4명이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관련 법령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를 개정하여 모든 대학이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학습경험인정제)하는 것이다. 더불어 군

경험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설명회와 대학총장 및 교무처장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 장병 인성 및 개인역량 강화

군에서는 병영문화 혁신과제로 군 장병의 인성 함양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재능보유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활용하여 장병 사랑 재능기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장병사랑 재능기부 은행’은 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어학,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은 2016년에 총 26개 사업을 19개 부대 1,4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52개 사업으로 1,800여 명 장병에게 실시하였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한화, 한경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진로 및 취업 멘토링과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멘토링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3. 사업 운영 성과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생활하는 생활관 시설과 보급품의 개선 이외 에도 자기개발을 위한 IPTV, 전문 의료진 치료 및 심리 상담, 사이버정보지식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 비용을 1인당 5만 원씩 2000명을 시범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많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할 수 있는 수신용 휴대폰을 약 34,000대 이상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비 시간에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단순히 인터넷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군 원격강좌를 통해 학교의 수업을 듣거나 군 교육기관 평가 인정 과정을 유료해 학점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군대는 배움의 단절이라는 말보다는 군대는 배움의 발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군 평생교육과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4. 향후 과제

군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문화 및 국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군 평생교육 진흥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제4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총체적인 ‘군 평생교육발전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정책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20」 및 「병역법」 개정 등 국방정책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법률화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법적 제도적 장치로 군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 및 학습지원 내용을 포함하는「군평생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군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군 평생교육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군 평생교육의 이념에 기초한 국방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부분 도시에 ‘평생교육사’ 1~3명을 두고 업무를 관장하게 하듯이, 군에도 최소 연대급에 1명 정도의 전문가(학습지도관)가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군 평생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군 평생교육은 개인적인 관점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개인발전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군 평생교육의 학습방법에 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방안으로는 사회의 교육, 연수기관과의 제휴 프로그램 확대로 군내에 분교를 설치하고 야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국방 IPTV에 의한 학습과 민간 교육기관의 원격·사이버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정책적 제휴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DB.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국방부(2017).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경과 및 주요 실적.
- 국방부(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박효선(2010). 한국군의 평생교육. 서울: 학이시습.
- 육군본부(2011).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인정방안연구. 충남: 육군본부.



제6절 학부모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대한민국에는 약 1,100만 명의 학부모가 살고 있다. 여기서 학부모는 통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성인들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미취학 아동이나 대학생 자녀들을 둔 가정까지 포함하면 사실 일정 연령 이상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성인이 지금 학부모이거나 과거에 학부모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학부모는 시민적 권리로서 교육권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특히 의무교육 취학연령에 이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와 함께 학부모는 교육에 관한 시원적인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달리 말해, 학령기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두 주체는 학부모와 국가가 되는 셈이고, 공교육이란 형태로 부모가 교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실제로는 학교교육의 형태로 – 위탁했다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사회적 기관을 통해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학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부모는 국가와 더불어 핵심적인 교육활동의 주체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권리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부모지원정책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학부모정책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시·도간 정보교육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권리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녀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연령별·학교급별 학부모교육 강화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부모 교육포럼 및 정책 토론회,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해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 발굴 확산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7]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추진 전략

출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사업백서(2014).



3. 사업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2009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학부모지원을 위해 교육부내에 학부모정책팀이 설립되어 다양한 학부모 관련 정책들이 실시되어 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여건 개선, 학부모 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역량 제고 강화, 학부모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체제 마련 등의 다양한 학부모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왔다. 2010년 10월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단위 추진 체제 확립을 목표로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 서비스 지원과 학부모정책 기획 및 개발, 학부모 허브체제 구축이라는 비전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학부모지원 정책기반조성, 시·도센터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학부모 자녀교육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부모 지원정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학부모상담 실태 및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지원정책 종합진흥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학부모정책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사업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리더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부처 단위 협력 체계 구축 연구 학부모 교육정책 요구 빅데이터 분석 연구
시·도 센터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상담운영 성과 파악 및 인력 현황 조사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상담운영 성과 파악 및 인력 현황 조사	• 시·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요람	• 시·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요람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서비스 오픈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1899-0025) 운영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1899-0025) 운영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1899-0025) 운영
	•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육성 연수	•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육성 연수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강사 연수	• 성교육(성폭력 예방) 강의교안 및 교재 개발	• 시도 학부모 정책협의회 운영 • 지역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 팟캐스트 '신애라와 함께하는 필통스쿨' 개발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온라인 교육센터 통합 • 학부모On누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 학부모On누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운영	•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 학부모On누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운영
	• 자녀연령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자료 개발	• 학부모교육 모델 매뉴얼 개발	• 학부모교육 모델 매뉴얼 개발	• 학부모교육 모델 매뉴얼 개발
	•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 학부모를 위한 자녀안전지도 교육자료 개발	• 밥상머리교육 매뉴얼 발간 및 홍보영상 개발		• 4차 산업혁명시대 학부모교육 모델 매뉴얼 개발
	•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행학습 예방 표준 강의교안 및 학부모용 교재 개발 • 선행학습 없는 바른 교육 만들기 공모전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육성 연수 자료집 개발 • 선행학습 예방 홍보영상 개발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부모용 매뉴얼 보급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 개발 및 보급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부모용 매뉴얼 보급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홍보영상 보급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릴레이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릴레이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릴레이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정책 심층 토론회 개최 • 미래공간, 학부모 토크콘서트 개최
학부모 자녀교육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온누리 웹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온누리 웹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온누리 웹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온누리 웹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정책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정책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첫째, 학부모지원정책 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에 학부모 지원정책과 수요자 중심 학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상담에 관한 실태 및 요구,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학부모정책 발전의 기반조성 및 향후 체계적인 학부모정책 수행에 기여하고자 전국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사업백서를 발간하였다.

2015년도에는 학부모 학교참여와 지원에 대한 사례 분석, 학부모 정책 현황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한 학부모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학부모지원정책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학부모리더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리더의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실태 및 학부모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세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외 학부모정책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학부모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학부모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내·외 학부모정책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단위 학부모지원 정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하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 정책 수요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학부모의 의견과 인식을 기반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정책 요구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시·도센터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부모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우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하여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매뉴얼 형태로 발간·보급하였다. 더불어 학부모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도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도 센터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강사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상담 전화번호를 대표번호 (1899-0025)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성과 파악 및 인력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요람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육성 연수(2014년),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육성 연수(2015년),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강사 연수(2015년), 성교육 강의교안 및 교재 개발(2016년), 지역 학부모교육 참여지원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2017년) 등을 통해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 학부모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인식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된 교육 자료를 온라인 연수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 및 콘텐츠 DB화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부모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및 강사, 교원 등 학부모 교육 수요자를 위한 26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중에 있다. 전국학부모지원 센터는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하여 민간기업인 풀무원과 함께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및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는 온라인 교육과정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선행학습 관행 유발 근절 및 올바른 자기주도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학부모교육정책 심층 토론회 및 미래공감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넷째,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2011년 3월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공신력 있는 교육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2017년 11월까지 홈페이지의 누적회원 수는 78,151명, 총 방문자 수는 3,764,084명에 이른다. 2012년 10월부터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학부모On누리 웹진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함께하는 교육, 학부모On누리(http://blog.naver.com/nile_parents)’를 개설하고 SNS 서비스(페이스북 및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를 실시하여 정책기관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학부모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부모 자녀교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교육부 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주관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사례집 형태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지원정책을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2014~2015),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2016),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2014~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2017)에서 정책관 운영 및 홍보부스 참여 등을 통해 전국학부모 지원센터와 각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사업 및 활동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4. 향후 과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등 학부모 교육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기반을 두어 향후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지금의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정책의 근거법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책임이며, 이를 위해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나타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부모지원 관련 정책시행시 근거법 부족으로 인해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권한 및 책무성 향상에 있어 학부모교육 등을 통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김은영, 2017).

둘째, 학부모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확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별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학부모의 참여를 일괄적으로 영역을 정하고 양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각 지역의 학부모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학부모 교육참여 영역과 목표를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은영, 2017).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요구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은영 외(2017). 국내·외 학부모정책 분석 연구.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3-114, 124.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2014). 2011~2014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사업백서.



제7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2017년 9월 기준으로 31,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1,000명 수준을 보이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매년 2,000여명 이상이 입국하여 2006년에 1만 여명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 말 북한 최고 권력자의 사망에 이은 내부단속 강화 등으로 2012년대 이후 입국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제난 등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의 탈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은 남한과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하였던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남한 사회 적응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남한 사회에 대한 직업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입국 초기 수용시설(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초기정착교육과 정착지에서 지역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적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가 17,700여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58%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4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4%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표 3-54〉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9 (잠정)	합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명)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7년 9월 입국자 기준).

〈표 3-5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33	1,592	2,461	2,058	1,315	504	328	8,891
여	625	1,961	6,308	6,873	3,995	1,210	936	21,908
합계(명)	1,258	3,553	8,769	8,931	5,310	1,714	1,264	30,79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입국당시 연령기준, 2017년 9월 입국자 기준).

남한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46%(14,498명)가 무직부양이었고, 38%(11,355명)가 노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경제, 산업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는 직업 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6〉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등)	계
남	395	659	3,884	3,143	75	77	204	454	8,891
여	125	107	7,961	11,355	1,189	189	471	511	21,908
합계(명)	520	766	11,845	14,498	1,264	266	675	965	30,79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7년 9월 입국자 기준).

나. 초기적응 시설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초기 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평생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응교육은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습득 및 경제적·직업적 역량 배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크게 기본 프로그램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프로그램은 심리 정서 안정, 남한 사회 이해,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 훈련 등으로,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은 운전면허, 부모교육 등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시간의 60% 가량을 체험·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57〉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과정(기본 프로그램)

주제	세부영역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9시간, 12.5%)	- 심리검사 및 상담 - 건강검진, 진료
우리 사회 이해 증진 (122시간, 31.1%) *특화수업 35시간 중 일부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 역사, 문화, 생활법률 - 현장체험(시장구매, 역사체험, 도시체험)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 (130시간, 33.1%) *특화수업 35시간 중 일부	- 적성검사, 진로지도 - 진로설계 프로그램 - 기초직업적응훈련(여성 12종, 남성 11종)
초기 정착지원 (57시간, 14.5%)	- 정착지원제도 안내 - 정착의지 함양 교육
합계	392시간

출처: 통일부(2017). 통일백서.

다. 정착지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의 초기 적응교육 이수 후 정착지로 이동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에서 지역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일명 하나센터)는 지역정착 초기 지역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적응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보뿐 아니라 취업, 진학 등 지역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역정착 단계에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표 3-58〉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예시

영역	주제	세부내용
기본 교육프로그램 (30시간)	초기/심층상담	- 지역 정착 초기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초기 검사 - 상담 실시
	실생활 현장체험	- 휴대폰 및 컴퓨터 교육 - 경제현장 체험 - 법률사례 상담 - 주택 관리
	취업교육	- 구인/구직 정보 제공 - 미래행복통장제도 안내 - 모의 면접 훈련 - 기업 견학 - 취업선배 특강
	심리 정서 집단상담	-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상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요기관 탐방	- 주민센터, 경찰서 등 방문 -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습득
	대중교통 및 생활예절	- 지역 생활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 사회생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지역 문화 탐방	- 지역 관광지 방문 및 지역에 대한 이해 습득
	3종 보호담당관 지원 협업	- 지역 사회 적응, 직업 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 정보 제공 - 계획 수립



지역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제2하나센터(강원도 화천 소재)에서는 기초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관련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즉, 중국어 취업준비과정, 용접기능사, 영농정착 교육 등 8개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직업능력향상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역량개발, 창업, 영농,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응 교육 관련 언어, 대화, 법률 등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남북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체제 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부처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민간단체 등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 연령대에서 요구되는 과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인식과 가치, 그에 기반한 생활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경력 등 북한이탈주민의 선행학습 경험 및 역량, 심리·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고려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원 및 지역정착 초기에는 사회적응교육 형식의 각종 평생교육에 참여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 부족, 인식 미비 등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교육과 함께 휴식, 여가 기능을 병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의 성격을 넘어, 통일준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남북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체제 적응, 남북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추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통일부(2017). 2017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2017). 북한이탈주민 통계, 통일부.
 통일부(2015). 통일부 보도자료, 2017. 12. 4.

〈인터넷 참고 사이트〉

- 대구하나센터 : <http://www.nkpeople.or.kr/ko/whatwedo/%ec%a0%95%ec%b0%a9%ec%a7%80%ec%9b%90/>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제3장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



제1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1. 사업 개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학교를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센터로,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거점으로 그 기능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양흥권, 2006).

이러한 변화 요구는 평생교육법과 정부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평생교육법 제29조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하는 것을 학교평생교육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가 더 이상 폐쇄적인 교육공간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거듭남으로써,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기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1950년대 UNESCO-UNKRA가 한국정부에 전후 재건 사업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지역 사회학교 건설’을 한국정부에 건의하면서부터 시작한 학교평생교육은(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2007년 12월 14일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의무 및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조항을 신설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2013년 이후 교육부의 주요 평생교육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13)을 들 수 있다. 해당 계획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학교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 내용과 추진 결과를 우선 살펴본 후, 각 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표 3-59〉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학교평생교육 추진 경과

연도 과제명	2013년	2017년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교육 공동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 연계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 시설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EBS를 통한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학교시설 복합기능화 - 농어촌 폐교 활용을 통한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출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2017년 교육부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이 외에도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2012~2014년) 등을 추진한 적도 있으나, 2017년 현재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복학습센터는 학교보다는 지역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로 이어지는 지역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변화·확장하는 추세이다.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은 사업 체계 및 내용이 기존의 학교평생교육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학부모 중심으로서의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방향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 별 학교평생교육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및 학부모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60〉 2017년도 시·도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추진 현황⁸⁾

교육청명	분야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협력교사 지원 등) -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 300교 학부모회, 학교당 2,000천원 • 단위 학교별 학부모교육 특강 등 자체 추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학교주도로 운영한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2016년 216교)' 운영체제를 프로그램 수요자인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이 기획·운영 : 245교, 535개 •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에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 설치 - 22교 확대 설치 : 11교('16) → 33교('17) •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교학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역사탐방·지역사회문제인식 등에 관심 갖고 토론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 - 55팀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별 5팀, 동아리별 2,000천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기관 유치를 통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행복교육지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행복교육지구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로 지정한 지역 - 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운영 방안 모색 - 지자체 및 학교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포럼 실시 - 부산다행복학교와 일반학교 연계 방안 마련, 초·중·고 연계 벨트화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중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모교육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중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1학교 1평생교육 지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52교, 지역주민 참여 다양화 - 2017년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우수 프로그램 유치 : 500교 이상 • 학교시설 이용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유치: 452교, 지역주민 참여 다양화

8) 학교평생교육 정의 및 시·도교육청 각 정책 목적·내용이 다양하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주요 업무 계획 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업만 기술함(시도별 주요업무계획 작성 방향 및 작성자 이해도에 따라 사업이 누락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 학교교육에 지역사회 참여가 드러나는 마을연계형 사업 또는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협의하는 거버넌스 사업 * 학부모교육 :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 또는 참여 프로그램, * 평생교육 프로그램 :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청명	분야	사업 내용
대구광역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추진단 구성·운영: 초·중 • 학교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 리닝페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주민과 함께 나누는 인성 리닝페어 운영 - 리닝페어: 인성프로젝트 결과를 사진,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평생학습관 기본과정 운영 •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초·중·고·특 453교 • 학교평생학습관 업무관계자 연수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홍보 및 관내 문화예술행사 안내(매월) - 인천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http://afterschool.ice.go.kr)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운영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학부모회 20교, 학부모동아리 30개) 및 컨설팅(연2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초·중·고 14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대표자 협의회 구성·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및 운영: 1~2월(30팀 내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마을의 교육기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계 활동 전개
대전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초·중·고 20교) - 지자체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성구, 유성구 관내 초 6교)
울산광역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12덕목 인성교육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렌디(Friend+Daddy) 스쿨 운영 50교 -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절교실 300학급 및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운영 420학급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발달 단계별 학부모교육 운영비 지원 2016년 초 20교, 2017년 30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2016년 7학급 이상)
경기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꿈의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60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200교,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 운영

교육청명	분야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꿈의학교의 지속발전가능한 컨설팅 및 운영주체 역량강화 지원 - 기초지자체, 학부모, 전현직 교직원, 지역주민과의 협력 확대 - 경기꿈의학교 스토리 발굴 및 홍보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 리더 발굴 육성 - 2016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48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215교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시설물 개방 -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안전조치를 위한 보험가입 - 2016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343교, 665개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민관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 - 행복교육지구 운영(태백시, 화천군)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단체 5단체, 온마을학교 운영 지원 22교 - 마을선생님 위촉 운영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19교
충청북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자원지도 개발 및 적용 • 마을교사 양성을 위한 체제 마련
충청남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운영 및 컨설팅
전라북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 특구 운영 -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육협력 강화
전라남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학교 네트워크 운영 - 무지개학교 간 지역별, 급별 네트워크 구축(21개 권역) - 거점학교 중심 공동 연수, 공동과제 해결 및 정보 공유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의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교육지원, 지역사회 교육협력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학부모 교육 실시 - 학부모 교육 예산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권장 -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운영(100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각급 학교 -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평생교육 운영사례집 발간 보급



교육청명	분야	사업 내용
경상북도 교육청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활성화 사업: 125개교 1억 2,5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중심학교 운영 지원: 13교 1,300만원 - 특수학교를 활용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3교 1,000만원 - 특성화고를 활용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지원: 3교 1,0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교육지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 및 지역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24개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개방 및 관리 •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급 학교
세종특별 자치시 교육청	마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사와 재능기부를 통한 학부모의 유아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 교육청, 지자체,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마을교사 확대 운영(2016년 30명 → 2017년 60명) - 학교와 마을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원봉사자 양성(민간인)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참여 활동계획서 공모·심사를 통해 적정 경비 지원 - 맞벌이가정,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부모 참여 유도(수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지역 공공기관의 주민 개방 활성화(시범 2교) •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4교)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17년 주요 업무계획.

3. 사업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초·중·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의 평생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5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및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으로 채택한 ‘서울교육 희망공동선언’에서 출발한 서울형 혁신지구(서울)를 시작으로, 부산 행복교육지구(부산), 경기꿈의학교(경기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강원도), 혁신교육 특구(전라북도), 무지개학교 네트워크(전라남도), 행복교육지구(경상남도), 세종마을교육 공동체(세종) 등 사업명과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조금씩 다를 뿐, 이러한 사업들은 민·관·학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지역교육 공동의 주체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공교육을 혁신하고 학교가 지역공동체와의 ‘이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학교 스스로가 공교육의 체제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려는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지역과 함께 인위적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평등권과 공동체적 돌봄, 모두의 성장 및 인간 존중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관한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전환을 이끌고자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수, 2016).

두 번째, 학부모교육의 활성화이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이 단편적인 자녀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또는 학교교육 지원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학부모회 설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서울, 광주, 부산,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 등) 및 학교 기본 운영비 3% 이상을 학부모 교육 예산에 편성하는 등(전라남도) 학교 참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학부모를 교원, 학생과 더불어 동등한 교육주체로 참여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교학상장’(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서울)과 같은 사업에서는 학부모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주체가 되고 이끌어어나가는 위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는 학습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평생교육의 원리와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2017년 8월 31일 유은혜 의원 외 12인이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추가시키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08905)하였는데, 해당 법이 시행되면 평생교육이 학부모교육을 기존의 학술적 개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포괄하게 됨으로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학교 기반 시설의 평생교육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초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만 해도 인구 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공간 확보를 주안점으로 내세웠으나,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 및 학교의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 강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학교 시설의 평생교육 공간 활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6년 종합체육관, 에어로빅실, 탁구장, 다목적체육실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중리초등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경상남도)을 시작으로 서울 70교, 부산 15교, 경기도 13교, 대구 4교, 대전 1교, 경상남도 4교 등에서도 복합화 시설을 보유한 학교가 늘기 시작했다(김현자 외, 2017). 물론 이러한 시설 증·개축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운영이 복잡하다는 면에서 모든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 공간을 평생교육 교실로 전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 우리 마을 전용교실 ‘마실’ 33교 (서울), 365일 1학교 1평생교육시설(경기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변화 및 학교의 역할 변화로 인한 평생교육 기반 시설 확대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나. 시사점

마을공동체, 학부모 교육 사업의 대두는 초·중·고 평생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까? 그것은 더 이상 학교 평생교육이 프로그램 제공 단위에서 머물러서는 지속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주요업무계획서상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에서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지난 백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평생교육은 - 학교 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 서울을 제외 하고는 대체로 유지, 축소되거나, 규모나 세부 추진형태 면에서만 소폭 증가한 경우가 많다.

〈표 3-61〉 2013년 및 2017년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비교

연도 교육청	2013년	2017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평생학습센터 선정·운영: 110교 • 교당 1강좌 이상 운영 권장: 초·중·고 (628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축소) 1교 1평생교육 지원 노력 (500교 이상)
대구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80,470천 원) • 교육감 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437교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증가) 교육감 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453교 • (삭제)
경기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 123교 •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2교 • 다문화 가정 학교 평생교육: 15교 • 학교 자체계획에 따른 평생교육: 213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343교)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 및 17개 시·도교육청 2017년 주요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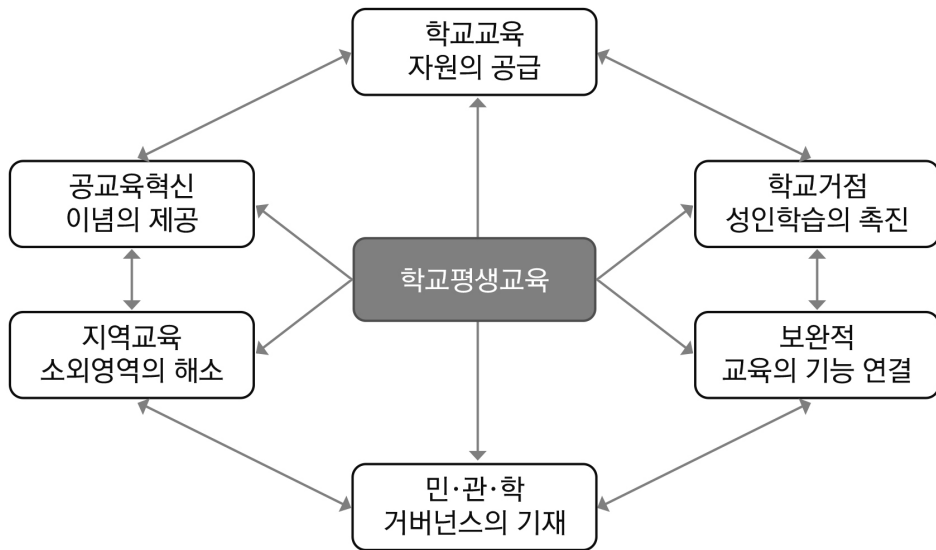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시대 흐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의 주된 역할이 학습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서 지역사회거점센터로의 역할(마을공동체, 학부모 참여)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초·중·고 평생교육 역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열린 참여 속에서 학교 순기능은 살리고 문제는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장 시급한 점은 시·도 교육청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학부모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분야 별로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학부모 교육 사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도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애써 구축한 민·관·학 거버넌스가 다른 사업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등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각 사업 분야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가는 체제 속에서 학교평생교육은 그 역할과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초·중·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우선 원칙에 따라 현장 담당자들에게 부가적인 업무로 치부되어온 면이 있다. 마을공동체 개념의 등장으로 그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융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지금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3-18] 개방 시스템으로서 학교평생교육 실천모형

출처: 이희수 외(2016).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참고문헌



양흥권(2006). 학교평생교육의 효과적 운영 모형. 2006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학교평생교육의 현황진단과 발전전략 탐색. 경기도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65.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2). 교과서 한권의 기적: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2013).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49-52.

교육부(2017). 2017년 교육부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평생교육 백서. 192-194.

이희수(2016). Holschoolgram을 위하여. 제1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 2016 한국 사회, 평생학습에 길을 묻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75.

김현자·최병관·문종덕(2017).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35-46.

이희수·임경수·김수정·배현순·한희정(2016).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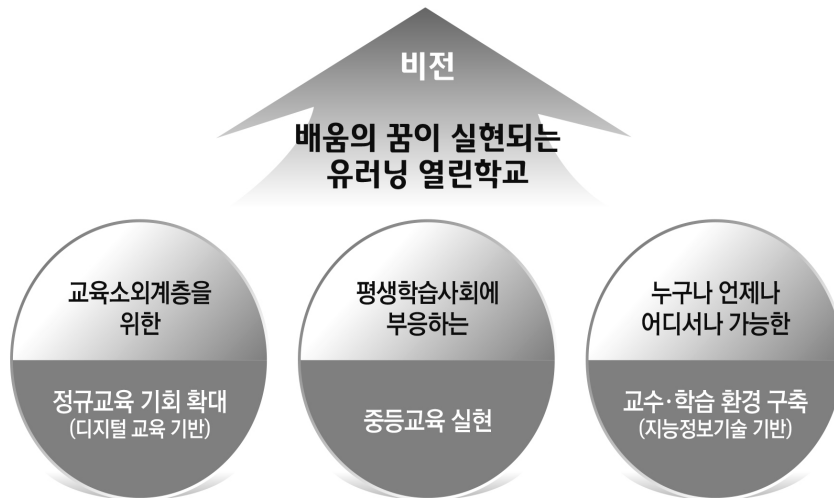


제2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 사업 개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이하 ‘방송중·고’)는 전통적인 면대면 출석수업 중심의 학교와는 달리 원격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을 통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정규 중·고등학교이다. 방송중·고의 비전 및 목표는 [그림 3-19]와 같다. 방송중·고는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유러닝(u-learning) 열린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중·고는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상대적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실현하며,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사회 구축



[그림 3-19] 방송중·고의 비전 및 목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실행계획서.

방송중·고 설치 및 운영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 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과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방송중·고의 설치·교육과정·방법,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원격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중·고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하여 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 위탁하여 지원받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방송중·고 일반 현황

1) 방송중 현황

<표 3-62>는 최근 5년간 방송중 운영 현황을 나타낸다. 방송중은 2013년 광주와 대구 지역에 2교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 20교가 운영 중이며 총 재학생은 3,970명이다. 서울특별시의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중과 대구광역시 대구고등학교⁹⁾ 부설 방송중은 다른 방송중과 달리 성인반과 청소년반을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중은 청소년반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교원과 독립시설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다.

9)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에 따라 방송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부설할 수 있음.



<표 3-62> 최근 5년간(2013~2017년) 방송중 운영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설치 시·도 수	2개 시·도	5개 시·도	8개 시·도	13개 시·도	13개 시·도
학교 수	2교	6교	12교	20교	20교 ¹⁰⁾
편성학급 수	5학급	30학급	81학급	123학급	154학급
학생 수	160명	826명	2,074명	3,241명	3,970명
교원 수	21명	88명	198명	345명	442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2017년 기준 방송중 재학생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720명(43.3%)으로 가장 많으며, 60대 1,714명(43.2%), 70대 301명(7.6%), 40대 130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3-63>은 최근 5년간 방송중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63> 방송중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7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별	10대	1명 (0.6%)	40명 (4.8%)	90명 (4.3%)	69명 (2.1%)	41명 (1.0%)
	20대	0명 (0.0%)	5명 (0.6%)	9명 (0.4%)	19명 (0.6%)	23명 (0.6%)
	30대	1명 (0.6%)	9명 (1.1%)	26명 (1.3%)	23명 (0.7%)	27명 (0.7%)
	40대	8명 (5.0%)	48명 (5.8%)	112명 (5.4%)	118명 (3.6%)	130명 (3.3%)
	50대	68명 (42.5%)	407명 (49.3%)	887명 (42.8%)	1,479명 (45.6%)	1,720명 (43.3%)
	60대	76명 (47.5%)	288명 (34.9%)	819명 (39.5%)	1,314명 (40.5%)	1,714명 (43.2%)
	70대	6명 (3.8%)	29명 (3.5%)	126명 (6.1%)	213명 (6.6%)	301명 (7.6%)
	80대 이상	- ¹¹⁾	-	5명 (0.2%)	6명 (0.2%)	14명 (0.3%)
계	160명 (100%)	826명 (100%)	2,074명 (100%)	3,241명 (100%)	3,970명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10) 방송중 지역별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1교), 부산광역시(1교), 대구광역시(1교), 인천광역시(1교), 광주광역시(1교), 대전광역시(1교), 울산광역시(1교), 경기도(4교), 강원도(3교), 전라북도(1교), 전라남도(2교), 경상남도(2교), 제주특별자치도(1교)

11) 2013, 2014학년도에는 연령대 구분이 '70대 이상'(80대 포함)으로 조사되었음.

방송중은 2013년 처음 개교하여 2016년 처음으로 2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17년에는 642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중에서 588명(91.6%)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자 중에서 96.4%에 해당하는 567명이 방송고로 진학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b). 최근 3년간 방송중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은 <표 3-64>와 같다.

<표 3-64> 방송중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2015~2017년)

연도	2015	2016	2017
졸업생 수	1명 ¹²⁾	201명	642명
진학생 수	1명	86명	588명
진학률	100.0%	42.8% ¹³⁾	91.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2) 방송고 현황

방송고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된 이후 2017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42교¹⁴⁾가 운영 중이며, 총 재학생은 10,378명이다. <표 4>에서 제시된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7년 기준 50대 학생이 2,989명(28.8%)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10대 학생 1,790명(17.3%), 40대 1,598명(15.4%), 60대 1,372명(13.2%), 20대 학생 1,364명(13.1%), 30대 1,089명(10.5%), 70대 이상 17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12)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조기졸업자 1명을 나타냄.

13) 졸업생 배출 학교(6교) 중 3교(아현중, 광주북성중, 경원중)는 진학현황 조사 미실시로 반영하지 않음.

14) 방송고 지역별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5교), 부산광역시(2교), 대구광역시(1교), 인천광역시(2교), 광주광역시(2교), 대전광역시(2교), 울산광역시(1교), 경기도(5교), 강원도(7교), 충청북도(2교), 충청남도(2교), 전라북도(2교), 전라남도(2교), 경상북도(4교), 경상남도(2교), 제주특별자치시(1교)



〈표 3-65〉 방송고 학생 연령별 분포(2014~2017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별	10대	2,654명 (21.9%)	2,332명 (20.4%)	2,076명 (18.9%)	1,790명 (17.3%)
	20대	2,101명 (17.3%)	1,865명 (16.3%)	1,669명 (15.2%)	1,364명 (13.1%)
	30대	1,189명 (9.8%)	1,229명 (10.7%)	1,142명 (10.4%)	1,089명 (10.5%)
	40대	2,074명 (17.1%)	1,865명 (16.3%)	1,728명 (15.7%)	1,598명 (15.4%)
	50대	3,045명 (25.1%)	3,029명 (26.5%)	3,040명 (27.6%)	2,989명 (28.8%)
	60대	975명 (8.0%)	1,021명 (8.9%)	1,182명 (10.7%)	1,372명 (13.2%)
	70대	98명 (0.8%)	101명 (0.9%)	159명 (1.5%)	176명 (1.7%)
계	12,136명 (100%)	11,442명 (100%)	10,996명 (100%)	10,378명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c).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표 3-6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방송고 졸업생은 총 3,616명으로, 이 중에서 35.2%에 해당하는 1,273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방송고 학생의 진학 대학 유형은 2~3년제 대학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방송통신대학교 26.5%, 원격 및 사이버대학 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3.0%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c).

〈표 3-66〉 방송고 졸업생 및 대학교 진학생 현황(2013~2017년)

구분	2013년 ¹⁵⁾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졸업생	4,625명	4,510명	4,267명	3,775명	3,616명
진학생	1,552명	1,491명	1,579명	1,430명	1,273명
진학률	33.6%	33.1%	37.0%	37.9%	35.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c).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15) 2013년 통계는 4년제, 2년제, 원격대로 나누어 집계하였음.

나. 주요 사업 추진 과제

2017년 방송중·고 관련 주요 사업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방송중·고 관련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기반 구축, 방송중·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추진 과제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제시하면 <표 3-67>과 같다.

<표 3-67> 2017년 방송중·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제 및 내용

추진 과제	추진 내용
방송중·고 관련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중·고 수업연한 유연화 및 학습경험인정제 활성화 • 방송중 전국적 설치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중·고 신규 온라인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방송중·고 온라인교육시스템 학습창 신규 개발
방송중·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중·고 학생 영어·수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방송고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 지원

3. 사업 운영 성과

가. 방송중·고 관련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

1) 방송중·고 수업연한 유연화 및 학습경험인정제¹⁶⁾ 활성화

방송중·고 관련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방송중·고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배경은 방송중·고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 및 교육배경이 다양하나, 학령기 학생이 절대 다수인 일반중·고와 동일하게 학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이

1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에 근거하여 자격 취득, 검정고시 과목 합격,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등을 방송중·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제도임(한국교육개발원, 2017f).



일반중·고의 2배가 넘는 방송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의 요인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범위를 확대¹⁷⁾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¹⁸⁾하는 것이다.

2017년에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서 방송중 15교에서 74명의 학생이 총 286건의 학습경험을 인정받았고, 방송고는 26교에서 201명의 학생이 총 685건의 학습경험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습경험인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학습경험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 방송중 전국적 설치 확대

방송중은 2013년 대구와 광주에 2교가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4교 개교, 2015년 6교 개교, 2016년 8교 개교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0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방송중을 설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2018년 충청북도(주정중학교 부설), 충청남도(천안중 부설), 경상북도(포항중 부설)에 각 1교씩 설치를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23교의 방송중을 운영하게 되어, 성인학습자들의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 기반 구축

1) 방송중·고 신규 온라인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됨에 따라, 방송중·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교과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콘텐츠 개발은 <표 3-68>과 같이 연차별(2017~2019년) 계획에 따라 방송중·고의 방송·정보통신

1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수업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이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방송중·고 각 1학년에 적용되는 교과목 10종씩을 개발하였다.

〈표 3-68〉 방송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신규 개발 현황 및 계획

구분		2017년 (1차년)	2018년 (2차년)	2019년 (3차년)	계
방송중	과목수	10	11	11	32
	과목명	2017년 ☞ 국어, 도덕,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체육, 사회, 정보, 음악			
방송고	과목수	10	12	11	33
	과목명	2017년 ☞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d), 2017년 방송통신중·고 운영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계획(안).

2) 방송중·고 온라인교육시스템 학습창 신규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개발되는 신규 온라인교육과정 콘텐츠는 기존 동영상 중심에서 동영상과 여러 유형의 학습활동이 조합된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림 3-20]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학습 콘텐츠 구성과 이에 따른 학습 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창을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쉬보드(dashboard)’의 형태의 학생 개인화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1학년 경제 1회차 · 경제생활의 의미와 주체

강의영상 75% (2/4) 학습활동 참여전 (0/2) 문제풀이 3/5 전체 100%

학습목차

- 예방접종 자가진단 (학습완료 15분)
- 질병의 예방접종 방법 알아보기 (학습전 15분)**
- 학습활동 참여전
- 학습정리 (학습전 15분)
- 토론하기 (학습전)
- 평가하기 (평가전 0/5)

전체 자막 + 펼쳐기

자 그럼 무료 예방 접종 시작 시기를 앞았으니, 이제는 언제 맞아야 효과적인지, 독감 예방접종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은 독감백신을 9월 초보다는 10월에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형성된 항체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료 예방 접종 시작 시기를 앞았으니, 이제는 언제 맞아야 효과적인지, 독감 예방접종의 적절한

참고영상 + 더보기

- 신생아 예방접종
- 독감 백신 꼭 맞아야 하...
- [교과연계] 감염병 예방...
- 감기 예방교육

단어장 + 더보기

- 어느점 녹는점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 얼음을 녹이는 방법 빙하시대
- 물과 증기 물의 특성

[그림 3-20] 방송중·고 온라인교육시스템 신규 학습창 화면 예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e). 2017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다. 방송중·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1) 방송중·고 학생 영어·수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송중·고 학생은 오랜 학업 공백 기간 또는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등의 배경으로 인해 일반중·고 학생과 비교하여 기초학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어·수학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중·고는 전화, 이메일, 원격학습 등을 통한 1:1 튜터링을 포함한 기초학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집중지원 대상 학생은 방송중 475명, 방송고 754명이었다. 기초학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전후로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를 비교할 때, 방송중 학생의 경우 영어 36%, 수학 31%의 성적 향상을 달성하였고, 방송고 학생의 경우 영어는 다소 하락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수학은 8.2%의 향상을 보였다. 특히 학생 개인별로 진단 및 성취도평가 결과를 세부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인지하고 집중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방송고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 지원

방송고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기초로 운영한다. 2017년 인성검사는 1,506명, 진로검사는 1,185명이 참여했다.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 소속의 전문상담사가 온라인 인·적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응 지원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7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단위학교 차원의 인성·진로교육 운영 정착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성·진로지도의 실제 및 적용’을 주제로 하는 원격교원연수 과정을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학점인정(2학점)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방송고 교원 376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인성·진로교육 담당 교원 대상 집합연수와 방송고 15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인성·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4. 향후 과제

앞서 제시한 방송중·고의 주요 추진 과제는 향후 지속·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다. 이 중에서 방송중·고 운영 전반에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 측면의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 개정으로 방송중·고 수업연한 유연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겸직교원 중심의 부설형 운영체제로 인해 법령으로 수업연한 유연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적용할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의 여건 또는 학생의 요구로 수업연한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편제·운영, 출석수업 운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수업연한 유연화와 더불어, 최근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추진에 따라 방송고에 적합한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점제의 특징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교과목별 성취기준 적용, 졸업요건 설정 및 적용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방송고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다른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첫째, 방송고는 원격수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보는 물론, 그 만큼 다양한 교과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 투입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교과목별 성취기준 적용은 방송고 학생의 학력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쟁점이다.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평가에 의해 학생이 일정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많아지는 경우 수업연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고의 수업연한은 이미 유연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방송고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최소 성취수준을 정하여, 재이수 상황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입전형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졸업요건 역시 정규 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방송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실행계획서.
-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2017c). 2017학년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2017d). 2017년 방송통신중·고 운영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계획(안).
- 한국교육개발원(2017e). 2017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17f).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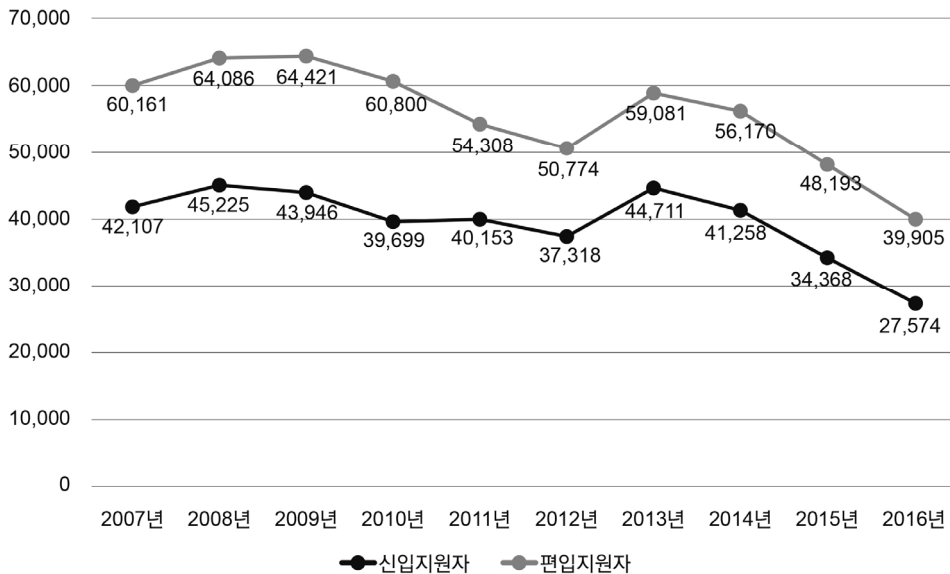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에 13개의 지역대학이 있으며 32개의 시·군에 학습관(서울 3개의 학습센터)을 설립·운영하면서 전국적인 학습망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격·평생·고등교육 기관이다. 지난 45년 동안 방송대는 65만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정, 연령, 학습시간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적 차원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회 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의 감소, 사이버대학의 신설·확대운영, 학점은행제의 등장 등의 요인으로 등록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습자군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대학교는 새로운 학습자군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래평생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라는 명제하에 방송통신대학교는 기존의 출석수업과 원격학습이 혼합된 학부과정과 100% 온라인으로 운영 되는 프라임 칼리지를 동시에 2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령별, 직업별 학습자군에 따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사업추진 현황

가. 학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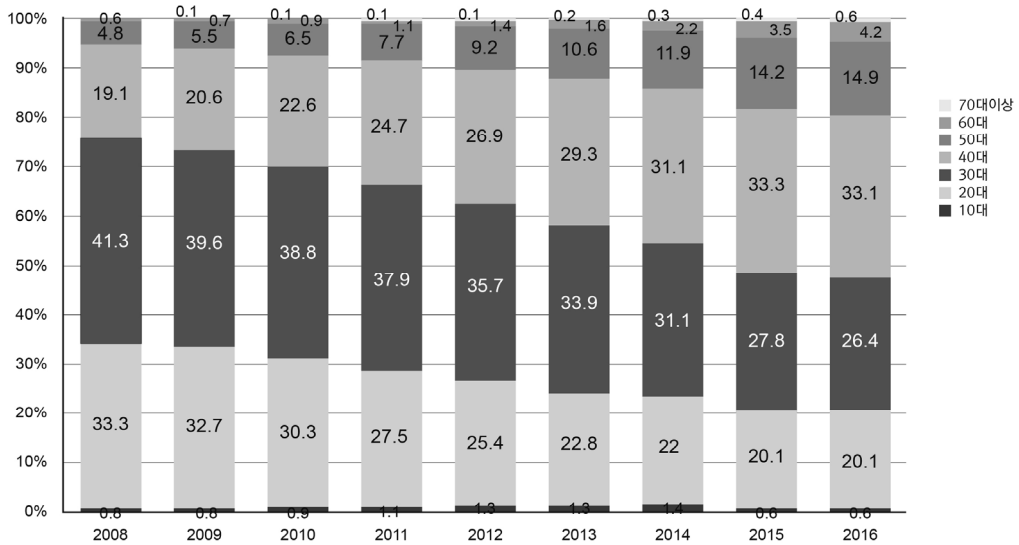
개교 이후 방송통신대학교는 입학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신·편입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2016년 사이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21] 방송대 신입입생 입학지원자 변화추이(2007~2016)

출처: 원격교육연구소(2017). 방송대 지원자 특성 분석.

다음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편입자가 신입자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16년,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자의 52%가 이미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는 고졸자가 입학하는 비율보다 전문대졸 및 대졸자가 다시 고등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속 교육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의 변화는 연령층의 변화이다. 2008년에는 30대가 41.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40대가 43.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주 연령층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중·장년층의 학습요구가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22] 신입입생 연령별 분포(2008~2016)

출처: 정혜령(2017). 방송대 학생특성변화. 방송대 내부자료.

나. 대학원 현황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은 2001년 ‘평생대학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대학원으로 개설되었다. 출범 당시에는 4개의 학과(행정, 경영, 정보과학, 평생교육)에서 정원 200명으로 시작 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8개의 학과에 모집 정원 780명으로 성장하였다. 2017년 현재 재적생은 2,039명으로 대학원의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69> 대학원 재학생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733	1,975	1,994	1,996	2,039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7).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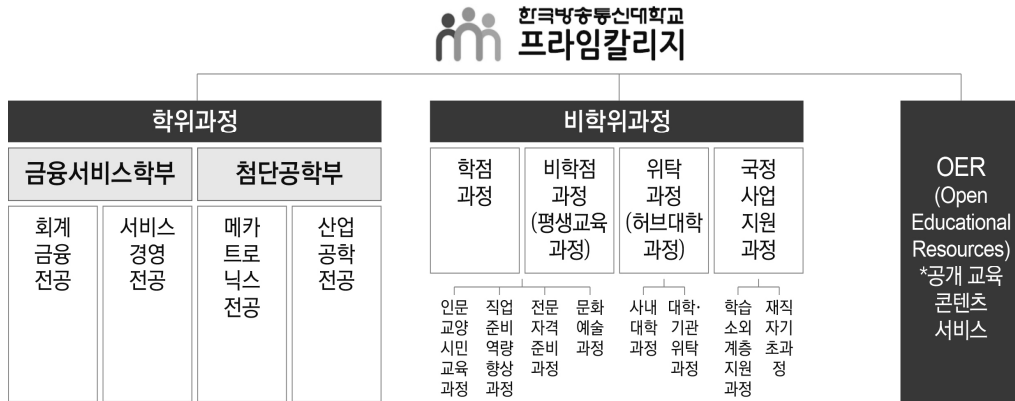
이와 같이 방송대에 대학원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렴한 학비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반감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전공영역에 대한 학습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프라임칼리지 현황

방송통신대학교는 2012년부터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거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흡수, 확대한 프라임칼리지(Prime College)를 신설하였다. 프라임은 ‘최고의’ 뜻 외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생 2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013년부터는 재직청년층을 위한 후진학 학위과정 운영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프라임칼리지는 기존의 학부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송대 안의 사이버대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학위과정에는 첨단공학부와 금융서비스학부가 있고 그 안에 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회계금융, 서비스 경영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2014년 첫해에는 751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으며, 2016년에는 1,083명이, 2017년에는 금융서비스와 첨단공학부 재학생까지 모두 포함하여 1,757명이 재학중이다 (2017년. 프라임학위과정 운영현황, 방송대 내부자료). 이들은 주로 20~30대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층이 대부분이며, 모두가 재직자들이라는 특성이 있다.

한편 프라임칼리지 안에는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제2인생설계과정 이외에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이 학점과정과 비학점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점과정의 경우에는 총 12학점 이내에서 방송대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평생교육 과정으로는 자격준비과정, 시민인문교양과정, 경력개발과정, 사회통합과정이 있으며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또한 프라임칼리지는 평생교육 허브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직자기초과정과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학습소외계층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들은 교육자료개방(OER)이라는 원칙하에서 무료로 타기관에 대여하기도 하며, 사내대학이나 기타 대학들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자료개방 프로그램들은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프라임칼리지 안에 있는 전체 교육과정의 구조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23] 프라임칼리지의 전체 교육과정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발전방안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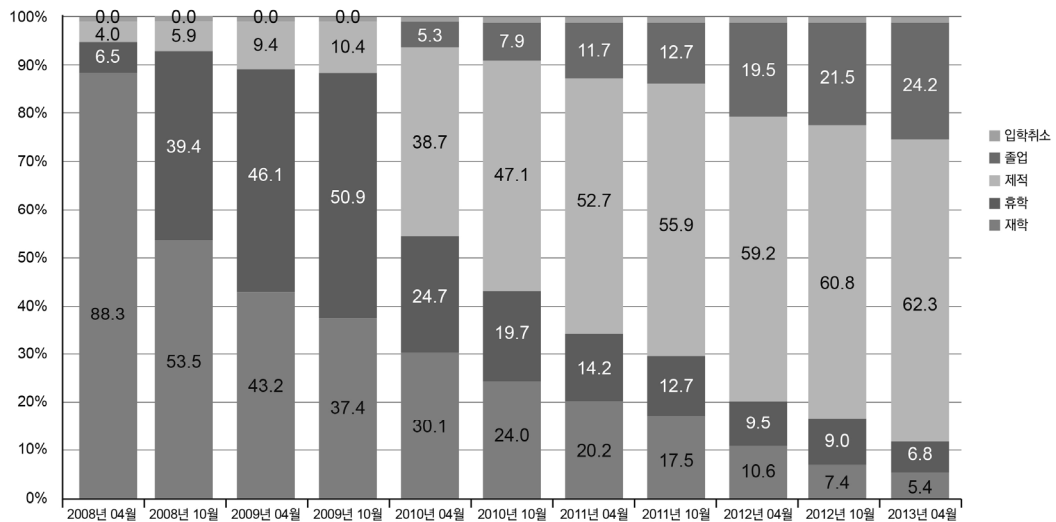
3. 주요 성과

지난 45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왔다. 그 중 주요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다양한 시민들에게 원격고등.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 방송통신대학교는 다양한 생애 주기에 걸친 성인들에게 저렴한 학습비로 고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프라임칼리지에 다문화학생 및 가족, 장애인 등 교육적 소외집단 들을 배려한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하겠다.

2) 다양한 학습지원정책을 통한 졸업률 제고 : 과거 1980~90년대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의 졸업률은 입학생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학생 대부분이 일과 학습 혹은 가사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내기도 어려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격강의와 출석수업을 병행

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의 교육방법, 엄격한 시험제도, 졸업논문 제출 등이 중도탈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송통신대학교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 지원정책을 도입하였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튜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멘토링, 학생통합서비스센터의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업지도나 상담, 학사과정 안내를 하였다. 또한 출석수업의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출석대체 시험제도를 운영하여 원격학습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시험제도의 개선, 졸업논문제도의 학과별 선택,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학습자지원과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원격교육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도 탈락률을 약 25%대로 감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평균 졸업률을 30%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학과별 차이는 있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의 학생들의 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3-24] 2008학년도 입학생 학적 변화 시계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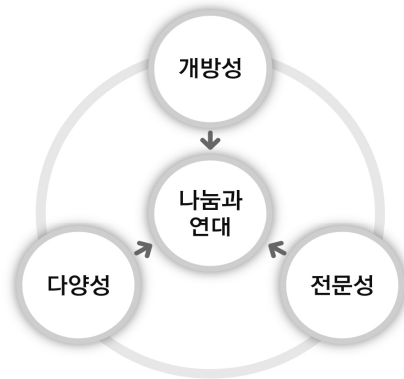
출처: 정혜령(2017). 방송대 학생특성변화. 방송대 내부자료.



3) 프라임칼리지의 성공적 안착 : 지난 몇 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는 국고를 지원받아 선취업후진학 지원사업(2013~2017)과 제2인생설계과정(2012~15)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2016년도 사업결과 보고회에서 성공적으로 프라임칼리지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으로는 첫째, 프라임칼리지를 통해 100% 원격교육의 방식으로 새로운 학위과정의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학과인 공과대학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험을 하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둘째로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향후 4050세대의 은퇴후 인생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셋째로 협력대학 및 기업과의 콘텐츠 공유를 통해 실무중심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체 재직자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점. 넷째로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직자 기초과정을 개발, 무료 개방함으로써 평생교육 허브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국정 사업평가회 자료 2017).

4. 향후 과제

방송통신대학교는 향후 미래 사회를 위한 방송대의 핵심가치를 개방성, 다양성, 전문성, 그리고 나눔과 연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발전 전략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 창조적 지식축적과 질높은 교육제공, 혁신적 맞춤형 고등교육과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신설, 방송대의 지식컨텐츠와 시설의 공유 등으로 설정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핵심가치	
전문성 Knowledge	· 실천적 지혜를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나눔과 연대 Network	· 집단지성을 통한 성숙한 세계시민양성
개방성 Openness	· 교육복지의 구현
다양성 With U	· 조화로운 사회의 구현

[그림 3-25] 방송통신대학교의 핵심가치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0년사(2013).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방송통신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생애단계에 따른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과거의 방송대의 학과나 교육과정이 다소 학문적인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보다 실무역량 중심의 학위과정이 추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성인들의 평생교육 수요는 주로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부분에 가장 요구가 높다. 특히 성인 2기의 학습자는 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집단이며, 학위나 학벌보다는 직업교육적 기능으로서의 학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인 3기의 학습자들은 주로 은퇴이후의 연령대로서,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의미있는 생을 위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한승희, 2014). 그러므로 향후 베이비 부머를 겨냥한 3기 성인 6070을 위한 교육과정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학위와 비학위 과정의 경계를 넘어 선 순환적 학습생태계의 조성 :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장은 아직도 학위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인들은 학습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편이다. 또한 이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위와 비학위를 연계하는 계속교육적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도록 교육 제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학위 단기과정을 자격과정(Certificate)으로 운영하다가 학습모듈별 자격과정을 서로 연결하여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학위과정(open degree)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선행학습인정제(RPL)와 연결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영국 개방대학(OU)에서는 개방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동인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3) 콘텐츠 대외 개방 과정의 확대 운영을 통한 개방형 평생학습체제 구축 :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는 방대한 원격 고등평생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다. 이것을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개방(OER)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등록제, 사전학습 인정제(RPL),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AP, UP)등의 제도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개방형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조직화, 체계화하여 직업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방송통신대학교(KNOU) MOOCs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정혜령(2016). 학생 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학생자원 창출방안 연구. 원격교육연구소. 6.
 정혜령(2017). 방송대 학생 특성변화. 방송대 내부자료.
 한승희(2014). 제17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 포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
 원격교육연구소(2016). IDE통계분석보고. 2016-제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0년사. 7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7). 통계연보. 78.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7). 프라임 발전방안 내부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7). 2016년도 국정사업 평가회. 내부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7). 2017학년도 프라임칼리지 워크숍 내부자료.

총
 제1부

평생교육의 범국가적
 제2부
 정책추진 및 전담체제

평생교육
 제3부
 현황

평생교육
 제4부
 문화 조성

향후 평생교육의
 제5부
 전망 및 과제



제4절 대학평생교육

1. 사업 개요

2008년부터 추진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평생교육체제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융합을 통한 미래 사회 동력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이다. 고령화정보화 사회 등장에 따라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성인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0세 시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적극적 생애 전환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평생학습 성공경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 사업은 대학으로 (재)진입하고자 하는 후진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체제개편을 유도하고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확충 및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부터 사고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미래 인재 양성을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고등 교육 체제에 대한 혁신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체제의 융합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 일과 학습의 병행, 다양한 통로를 통한 학점과 학위 취득, 평생에 걸친 재교육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를 인지하고 성인학습자의 대학으로의 유입에 주목했던 2008~2011년의 사업은 비학위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위과정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선취업한 재직자의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인생 제 2막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의 제2, 제3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였고 본격적인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유도를 추진해왔다. 2015년에 들어 다양한 성인학습자 층을 연령별로 트랙화하여 지원하던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던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사업이 통합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선취업 후 진학 지원을 사업 목표 전면으로 내세우게 된다. 한편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도입은 성인학습자를 전담·지원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조직 내 설치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및 계속 학습 지원을 대학 조직 내에 공식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및 전담조직을 대학 내에 설치함으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재직자·성인학습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회 및 학습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2017년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 사업은 대학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의 모델을 설계하도록 유도하였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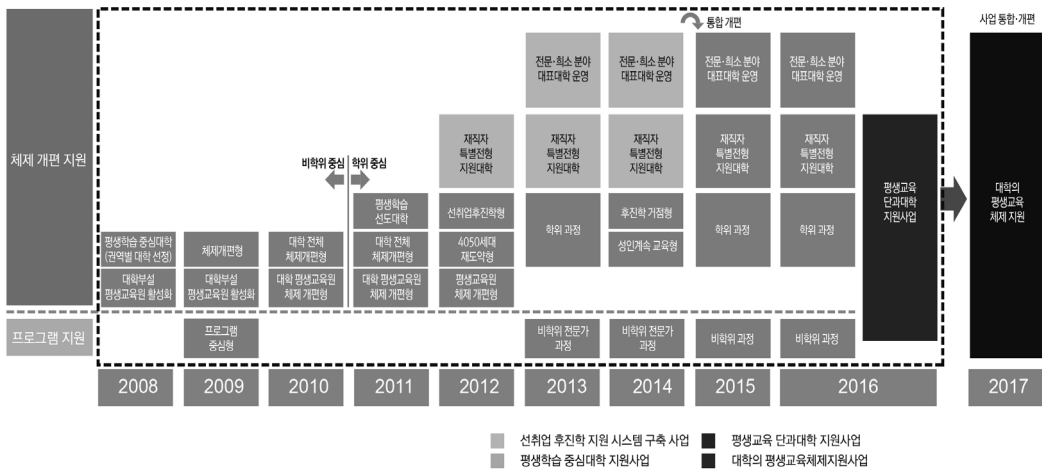
2. 추진 현황

정책 변화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국정과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실현’을 위해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의 전환과 이를 통한 일과 학습의 병행 기반을 조성, 선취업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생애단계별 맞춤형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수요 기반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세부 과제로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친화형 열린 체제 전환을 주도해왔다. 2015년 ‘교육개혁 추진계획과 대학규제혁신방안’은 고졸 취업 문화 확산 및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선취업 후진학 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과 통합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방안 확정 및 후진학 제도 개선(안)’ 발표는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키워드와 강력히 결합시켰고, 이에 따라 대학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시스템을 재직자의 후진학·계속교육을 전면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재구조화 되고 있다. 2017년 교육부는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대학의 성인친화형 교육 운영 방안을 내실화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업 측면으로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2016년에 추진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그리고 2017년 이 두 사업을 통합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구분화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의 개략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6]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표 3-7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지원액 현황

(단위: 교,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 사업	대학수	53	86	20	24	25	47	45	47	31	
	지원예산	2,500	7,600	2,500	4,040	5,508	27,508	10,233	10,733	10,320	
재직자 전형	대학수					18	18	12	16	6	
	지원예산 (학교당 평균액)					1,200	1,200	800	800	680	
전문 희소	대학수						7	10	10	-	
	지원예산 (학교당 평균액)						1,600	1,600	1,600	1,600	
평단 사업	대학수									9	
	지원예산									25,535	
평체 사업	대학수										15
	지원예산										23,132
종합	대학수	53	86	20	24	43	72	67	73	46	15
	지원 예산 (학교당 평균액)	2,500 (47.16)	7,600 (88.37)	2,500 (125.0)	4,040 (168.33)	6,708 (156.0)	30,300 (420.83)	12,633 (188.55)	13,133 (179.90)	38,135 (829.02)	23,132 (1542.1)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가.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종료된 사업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자들이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령기 중심의 대학 학사 시스템을 평생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를 확충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시행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학위과정 및 대학평생교육원의 비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5년 선취업·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흡수하면서 사업 내용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선취업 후진학 및 계속교육 강화로 구체화되었다. 2017년 4월에 종료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2016년 기준 사업비 131억원이며 평생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후진학·후학습 기반 및 생애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I 유형(학위 비학위과정), 재직자특별전형 시행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재직자를 위한 후진학 교육 여건을 조성·지원하는 Ⅲ유형(재직자특별전형 과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면서 총 29개교 37개 사업단을 지원하였다.¹⁹⁾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학과단위 개편을 지원하고, 정원 외 전형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용하여 학교가 자율적인 정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전문반 또는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료자가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자 또는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이다.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참여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1〉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참여 대학 현황

구 분		대학 수	선정대학 현황
계속	Ⅰ유형(학위)	11교	공주대, 광주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정보대, 순천대, 순천향대, 세경대, 영남이공대, 영산대, 위덕대, 호원대
신규	Ⅰ유형	학위	5교 경일대, 남서울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비학위	15교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경상대, 경일대, 경희대, 금오공대, 남서울대, 단국대, 동국대(경주), 동서대, 상명대(천안), 서원대, 우석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
	Ⅲ유형(재직자특별전형)	6교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서원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합계		37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 방안(시안)이 마련(2015.5.26.)되면서 고등교육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을 고졸취업자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후진학자 친화적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학 내 전담조직 설치, 성인학습자 맞춤형

19)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희소 계열(농업, 해양 수산 분야 등) 및 지역의 뿌리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여 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운영을 활성화하는 Ⅱ유형(전문·희소분야과정)은 2016년 적합 대학 미선정으로 사업 종료됨.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학과(전공)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교육부, 2015. 12.). 교육부는 2015년 12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2016년 1월 지원사업 선정공고를 냈었고, 9개 대학을 선정·지원하였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육성을 위해 단과대학 수준의 행정 조직 구성을 의무화하여, 본격적인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2016년 기준 255억 원으로,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한 성인학습자 전담 대학 시스템 개편, 성인학습자 및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 방식 운영, 학비 경감 등 학비 부담 완화 노력에 주력하였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확보,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학위과정은 재직자특별전형과 평생학습자 전형으로 모집하며, 그 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전문반 또는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료자가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다 또는 30세 이상인 성인학습자이다.

〈표 3-72〉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참여 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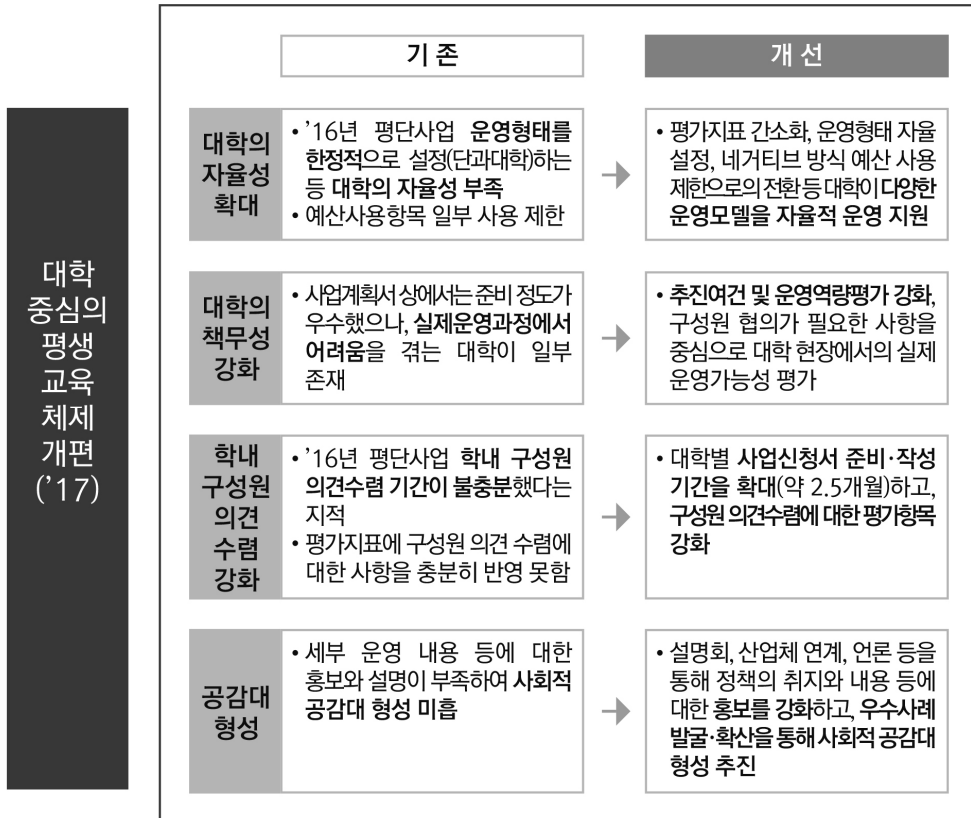
대학	운영학과(학위과정)	모집인원 (정원내/외)
동국대	치안과학융합학과, 케어복지학과	92 (2/90)
대구대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재할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융합학과	200 (60/140)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189 (43/146)
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수산식품냉동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180 (60/120)
서울 과기대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240 (72/168)
인하대	메카트로닉스학과, IT융합학과, 헬스디자인학과, 서비스산업경영학과, 금융세무재테크학과	198 (11/187)
제주대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154 (40/114)
창원대	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융합학과, 향노화헬스케어학과	160 (83/77)
한밭대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36 (35/101)
합계	42개 학과	1549 (409/114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이 별도 시행에 따른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사업을 통합·개편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2017년 1월에 발표되었다. 이 사업은 기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두고 있다.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개편 ('17)

[그림 3-27]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1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약 231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하고 성인친화형 대학시스템 발전 유도를 위한 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지원체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수요 기반 선도 모델 15개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충청권 2개교, 대경강원권 2개교, 동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이며, 유형별로는 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이다. 각 대학은 대학 자체 내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수, 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동의를 거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모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 사회 수요 기반 성인 전담형 학위과정 설치 운영을 통한 성인학습자 모집 정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행정 체계 마련 및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직원 확보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 확대 노력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재직자 등 후진학자가 성공적인 계속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지원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일과 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업 방식 운영,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운영 개선 및 성인학습자의 학비 부담 완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 및 성과 관리 추진 속에서 전문가 및 학습자, 사업 대학(협업체) 등의 공식적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후진학 수요 조사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사 일정과 매칭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의 엄격한 준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홈페이지(univ.nile.or.kr)를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역시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학위과정은 재직자 특별전형과 평생학습자 전형으로 모집하며 그 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전문반 또는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료자가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자 또는 30세 이상인 성인학습자이다. 2017년 사업 선정 대학 및 대학별 운영 학과, 모집 정원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3〉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현황

권역	대학 (운영모델)	운영학과(학위과정)	모집인원 (정원내/외)
수도권 (5개교)	경희대학교 (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120 (1/119)
	동국대학교 (단과대학)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52 (3/149)
	명지대학교 (단과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190 (44/14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케어학과, 문화예술학과, 영미문화학과, 벤처경영학과	240 (72/168)
	아주대학교 (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106 (2/104)
충청권 (2개교)	서원대학교 (단과대학)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112 (23/89)
	한밭대학교 (단과대학)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13 (35/78)
대경 강원권 (2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학부)	언어재활상담전공, 치매전문재활전공	50 (40/10)
	경일대학교 (학부)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 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전공	63 (3/60)
동남권 (3개교)	부경대학교 (단과대학)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공공안전경찰학과	200 (60/140)
	영산대학교 (단과대학)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연계전공학부	110 (85/25)
	창원대학교 (단과대학)	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공학과, 창업자산융합학부, 향노화헬스케어학과	160 (83/77)
호남 제주권 (3개교)	순천대학교 (학과)	융합산업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80 (20/60)
	제주대학교 (단과대학)	건강부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154 (40/114)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휴먼융합서비스, ICT융합학부	140 (20/120)
합계	단과대형 10 학부형 2 학과형 3	52개 학과(학부 내 전공 포함)	1,990명 (531/45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6).

3. 사업 운영 성과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중심의 대학체제 개편을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후진학·계속학습 교육 토대를 조성하였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재)진입 접근성을 확대 강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학제 등을 도입 확대 개편하였으며, 성인학습자 맞춤형 친화형 교육과정, 교수법을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 조직, 제도 영역 등에서 대학의 전반적 체질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고령화·정보화 사회의 지속적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성인계속교육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신설·운영은 고등교육 영역 내에 성인학습자를 전담 지원하는 공식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 사회 수요 기반 성인 전담 학위과정 운영, 성과관리 강화 및 소통 채널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7년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진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고 고등교육 (재)진입 후 성공적인 계속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재) 진입 접근성을 확대·강화하였다.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15개교 선정·지원(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하고 있는 17년 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성인 전담 학위과정 신설·운영을 통해 단과대학·학과(학부) 학생(입학) 정원 확보(52개 학과, 1,990명 정원)하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입학 전형 재설계 추진하였다. 9개교를 선정·지원한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성인 전담 학위과정 운영 규모(42개 학과, 1,549명 정원) 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학제를 탈피하고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 체계 및 성인친화형 학사·학제 등 도입 확대·개편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법」을 개정('17.11.9.)하여 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인정되던 ‘학습경험인정제(RPL)’를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학기제·집중이수제(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재학연한 폐지(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학점당 등록금제(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장학금 지급 규정(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17년 사업 대학 15개교)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계속 교육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교수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성인학습자 및 지역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교수 방법 도입 운영하였다. 명지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수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용 기반 인바운딩(in-bounding) 학과 개편 시스템 및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의 온-오프-원격화상 결합 수업 방식(TBL 수업 방식) 도입 등 이 대표적이다. 동국대학교(미래융합디자인연구소) 및 제주대학교(미래융합아카데미) 등은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3-74〉 2017년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

구 분	2016년		2017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단과대학 지원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예산	132억원	255.35억원	231,32억원
대학수	29개교(재직자6개교)	9개교	15개교
학위과정수	106개	42개	52개
모집정원수	2061명	1549명	1990명
학습자충원율	70%	55.7%	-
전임교원강의비율	-	64.4%	-
비학위과정수	67개	-	-
중도탈락율	재직자 3.6%	6%	-

* 2017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는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종료: '17.5)과 2016년 평생교육 단과 대학(종료 '17.7) 사업이 2017년 중에 종료하였음을 고려하여 세 사업(평중, 평단, 평체)을 함께 제시함.

**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평체사업) 성과는 2017년 12월 30일 기준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마지막으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성인전담 조직 구축 및 교원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 전담지원을 위한 공식 추진 체제 구축(전임교원 85명, 전담직원 105명 확보 등)을 전면화한 본 사업은 2017년 사업에서도 전담 행정조직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수업 질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직원을 확보(학장, 학과장, 전공 주임 등을 전담 교원을 확보 의무화 등)하고 전임교원 강의 비율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계속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 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구조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업 내용의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질 제고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지역 평생교육 거점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인력-교육의 융합 네트워크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나갈 수 있는 평생교육 허브역할 우수 모델을 창출해내야 한다. 그동안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10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미흡함을 볼 때, 대학의 지역 사회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하면서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수 모델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 사회 협력 및 기여도, 지역 사회 내 평생교육 책무성 및 수행 실적, 평생교육 역량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인친화적 학사 제도 개편 추진 및 학습자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공 기제들을 사업 구조에 반영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성인 친화적으로 대학 학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²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현장의 변화가 여전히 저조함을 볼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인친화형 학사 제도 개편 및 작동 현황을 분석해내야 하고, 그것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요소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시행하고자 하는 성인친화적 학사 및 학칙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검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선정 및 성과평가 단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운영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 사업 관리 방식을 대학 자체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즉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동시에 대학 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자하는 국가적 노력과 관련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측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 평생교육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구체적인 특성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여 많은 대학의 참여를 높이고 고등·평생·직업교육의 선순환적 국가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6.12) 및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7.11.9.)등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및 융합전공제 도입 기반 마련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 규제 혁신.
- 교육부(2016).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기본계획 확정·발표.
- 교육부(2017). 2017년 교육부 업무 계획.
- 교육부(201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내부자료.



제5절 평생교육기관

1.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와 분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세 조건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평생교육법 제2조 2항).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및 8개 평생교육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학교 및 8개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포함하는 학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다(평생교육법 제29~38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도 평생교육법(제19~21조)에 의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 정보 제공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등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다. 매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 현황이 수집·분석되고 있었다.

2017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기관 지위가 부여되었다(평생교육법 제20조 2항). 다만 2017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계획하거나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의 현황 자료가 구비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직업교육훈련 학원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된다(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입시 및 검정,

보충학습, 교습소 등의 학원 기능을 제외한 경우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셋째,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타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관이다. 우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학점은행제로 대표되는 학점 등에 대한 인정은 프로그램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도 포함하여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평가·인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그리고 이후에 소개되는 다양한 기관이 모두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 의미를 갖는다.

〈표 3-75〉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범위와 유형

법적 근거	해당기관	기관 유형	백서 포함	
평생교육법	제19조-제21조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비형식	포함
	제29조	학교(초·중등학교, 대학교)	준형식	미포함
	제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준형식	미포함
	제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비형식	포함
	제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비형식	포함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6조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포함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교습소 제외)	비형식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평가인정 운영기관	준형식	미포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시·군·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비형식/ 준형식 미구분	미포함
동법 시행령	제8조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문화시설		
동법 시행령	제19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관		



법적 근거		해당기관	기관 유형	백서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 수련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학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또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도 타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기관의 주요 목적과 기능에 교육 또는 훈련을 명시하고 있으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17년 평생교육백서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이에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조사되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은 현황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그 동안 발간된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의 기준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제도(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평생교육기관을 포괄하였다. 즉, 초·중등 및 대학 부설,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학원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었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자체 또는 학점 및 학력인정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는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등)과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점 및 학력 인정 기관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포함하였다. 2017년 백서에서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초점을 두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평생교육기관 현황

학원을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기본 현황(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을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표 3-76> 참조).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사무직원 수 등에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까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약 4,000개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프로그램 수도 21만 개 정도였다. 교·강사 수도 7만 명 이상이었고, 사무직원 수는 2만 명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경우 2013년 1,826만 명에서 2014년 1,291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약 1,189만 명이었다. 2014년 학습자 수 감소는 원격형태의 학습자 감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표 3-76> 참조).

〈표 3-76〉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연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¹⁾	2013년	3,965	180,843	18,260,301	72,954	18,376
	2014년	4,342	205,546	12,919,836	72,477	19,586
	2015년	4,144	211,193	11,982,654	70,835	18,833
	2016년	4,153	212,339	11,336,564	73,204	19,842
	2017년 ²⁾	4,032	214,413	11,897,236	71,723	19,778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2013년	1,027	미조사 ³⁾	677,620	6,545	2,634
	2014년	1,034		637,130	6,597	2,616
	2015년	1,037		609,489	6,908	2,603
	2016년	1,024		567,331	7,076	2,717
	2017년	1,040		545,869	7,204	3,514

1) 학원을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임.

2) 2017년부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가됨.

3)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는 미조사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경우도 학습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3년에 비해 2017년 약 13만 2천 여 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학습자수 역시 2017년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반면에 교·강사 수나 사무직원 수는 2013년에 비해 2017년 각각 659명, 880명씩 증가하였다. 다만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교와 유사한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 조사에서 프로그램 수나 직원 수 대신 학급수, 학과수, 교원수로 조사되었다.

3. 유형별·지역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는 유·초·중등 학교부설부터 학원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였다. 10개의 유형이 포함되었다. 그 동안 평생교육백서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학원을 제외하고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2017년 백서에서는 이 세 개 유형도 포함하였다.

평생교육기관 수를 보면 2013년부터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학원을 제외한 경우에는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학원이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격형태,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순으로 다수였다. 평생학습관은 2017년 424개로 대학(원) 부설보다 많았다.

프로그램 수는 학원이 조사되지 않아서 9개 유형만 분석되었다(<표 3-77> 참조). 전체 프로그램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1만 4천여 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기관 유형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의 증감 동향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는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는 2014년을 정점으로 프로그램 수의 감소 추세가 분명하였다. 특히 언론기관부설은 2014년 대비 2017년 프로그램 수가 58.2% 감소하였다.

<표 3-7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원 포함 총계	10,023	10,694	11,090	11,305	11,534	-	-	-	-	-
학원 미포함 총계	3,965	4,342	4,144	4,153	4,032	180,843	205,546	211,193	212,339	214,413
유·초·중등 학교부설	8	9	9	6	5	32	44	47	57	73
대학(원)부설	405	402	403	406	412	26,952	28,098	28,685	29,532	28,882
원격형태	876	883	903	927	949	45,247	58,951	62,517	63,602	70,272
사업장부설	375	392	414	426	424	63,348	65,449	72,519	70,511	65,779
시민사회단체부설	524	556	549	544	515	5,350	7,434	6,375	6,206	4,970
언론기관부설	703	1,038	882	792	707	6,485	10,914	5,293	4,624	4,557
지식·인력개발형태	687	669	626	608	579	12,574	12,126	12,898	10,824	10,42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²⁾	-	-	-	-	17	-	-	-	-	1,677
평생학습관	387	393	358	444	424	20,855	22,530	22,859	26,983	27,774
학원 ³⁾	6,058	6,352	6,946	7,152	7,502	-	-	-	-	-

1)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

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3) 학원의 프로그램수는 미조사.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내용을 기준으로 현황을 보면(<표 3-78> 참조), 연도에 상관없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3년 이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수였으나 2014년부터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2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도 이런 경향은 강화되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수는 6만 7천 개를 넘었다. 반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는 5만 천여 개로 2016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 외에 인문교양, 학력보완 등은 2만여 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 추세의 주역은 직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표 3-7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²⁾
총계 ¹⁾	150,138	156,690	156,665	161,788	164,160
학력보완	21,461	20,387	21,492	20,348	20,967
성인기초/문자해득	1,062	597	546	682	634
직업능력향상	50,230	63,242	57,467	57,718	67,470
인문교양	26,229	21,000	26,945	29,825	22,593
문화예술	51,027	51,392	50,145	53,093	52,297
시민참여	129	72	70	122	199

1) 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포함

2) 2017년부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가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는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2014년부터는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 수준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 특히 더 감소하여 학습자 총계가 1,28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런 학습자 수의 변동은 대부분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 변동과 궤를 같이 하였다. 그만큼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가 전체 평생교육기관 학습자수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순이었다(<표 3-79> 참조).

〈표 3-7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학습자 수

(단위: 명)

구분	학습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원 포함 총계	18,776,056	13,942,598	13,469,838	12,850,156	13,203,085
학원 미포함 총계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11,897,236
유·초·중등학교부설	388	1,078	1,094	1,337	1,321
대학(원)부설	833,176	869,789	824,011	902,600	882,884
원격형태	13,799,283	8,670,272	8,043,523	7,304,497	8,013,061
사업장부설	1,197,333	1,150,763	1,179,153	1,206,895	1,160,749
시민사회단체부설	170,032	196,724	140,058	156,000	116,438
언론기관부설	225,355	417,086	188,735	151,101	151,703
지식·인력개발형태	869,497	813,185	767,210	664,509	630,856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¹⁾	-	-	-	-	28,574
평생학습관	1,165,237	800,939	838,870	949,625	911,650
학원	515,755	1,022,762	1,487,184	1,513,592	1,805,849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강사 수는 2015년 약간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학원 포함하여 교·강사 수는 약 11만 4천명 정도였다. 학원을 제외하면 총 7만 여명 수준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원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부설, 대학(원)부설, 평생학습관, 원격형태 순으로 교·강사가 많았다. 프로그램 수나 학습자 수와는 달리 교·강사 수에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학습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교·강사 수도 증가하여 학원을 제외하면 3위로 많은 교·강사 수를 보였다(<표 3-80> 참조).



〈표 3-80〉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원 포함 총계	99,559	111,773	106,375	112,224	113,988
학원 미포함 총계	72,954	72,477	70,835	73,024	71,723
유·초·중등학교부설	35	51	41	35	29
대학(원)부설	16,192	16,064	15,206	15,033	15,562
원격형태	11,945	10,297	10,470	11,123	11,399
사업장부설	18,949	20,201	22,024	21,128	19,302
시민사회단체부설	3,610	3,625	3,865	3,575	3,032
언론기관부설	3,955	5,284	4,060	3,604	3,414
지식·인력개발형태	9,160	7,459	6,472	6,916	6,847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¹⁾	-	-	-	-	720
평생학습관	9,108	9,496	8,697	11,790	11,418
학원	26,605	39,296	35,540	39,020	42,265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수는 2016년 이후 학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원을 제외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학원 미포함 총계는 대략 1만 8천 명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규모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원격형태가 약 6천 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언론기관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의 순으로 사무직원이 많았다. 평생교육기관 유형 중 지식·인력개발형태와 평생학습관은 사무직원 수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7년에 각각 15.8%(571명)와 14.1%(281명)씩 증가하였다.

〈표 3-8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사무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사무직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원 포함 총계	27,448	30,136	27,837	19,842	19,778
학원 미포함 총계	18,376	19,586	18,833	19,842	19,778
유·초·중등학교부설	20	20	17	15	12
대학(원)부설	1,981	1,966	1,954	1,983	2,078
원격형태	6,004	6,196	5,872	6,494	5,887
사업장부설	1,665	1,760	1,962	1,767	1,793
시민사회단체부설	1,436	1,492	1,489	1,479	1,405
언론기관부설	1,658	2,373	2,065	2,010	1,870
지식·인력개발형태	3,623	3,709	3,589	3,738	4,197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¹⁾	-	-	-	-	266
평생학습관	1,989	2,070	1,885	2,356	2,270
학원 ²⁾	9,072	10,568	9,004	-	-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2) 학원은 2016년부터 사무직원 수 미조사.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사에 대한 조사에도 학원은 빠져 있어서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 3,935명에서 2016년 4,79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무직원 수가 증가하여도 사무직원 총계에서 평생교육사 총계의 비중은 21%에서 24%를 유지하고 있다. 즉 사무직원 5명 또는 4명 중 1명이 평생교육사였다. 그러나 평생교육기관 유형별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사무직원 중 평생교육사의 비중은 25% 정도였다.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유형은 대학(원) 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이었다. 반면에 유·초·중등학교부설, 원격형태의 경우는 17%에서 2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수가 1,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평생학습관이 712명,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기관이 660명의 순이었다.



〈표 3-8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 ¹⁾	B ¹⁾	C ¹⁾	A	B	C	A	B	C	A	B	C	A	B	C
총계 ²⁾	18,376	3,935	0.21	19,586	4,486	0.23	18,833	4,585	0.24	19,842	4,797	0.24	19,778	4,985	0.25
유·초·중등학교부설	20	2	0.10	20	4	0.20	17	2	0.12	15	2	0.13	12	2	0.17
대학(원)부설	1,981	490	0.25	1,966	541	0.28	1,954	556	0.28	1,983	571	0.29	2,078	623	0.30
원격형태	6,004	906	0.15	6,196	1,008	0.16	5,872	1,083	0.18	6,494	1,125	0.17	5,887	1,178	0.20
사업장부설	1,665	454	0.27	1,760	481	0.27	1,962	514	0.26	1,767	522	0.30	1,793	541	0.30
시민사회단체부설	1,436	455	0.32	1,492	501	0.34	1,489	509	0.34	1,479	524	0.35	1,405	509	0.36
언론기관부설	1,658	493	0.30	2,373	745	0.31	2,065	713	0.35	2,010	685	0.34	1,870	629	0.34
지식·인력개발형태	3,623	600	0.17	3,709	621	0.17	3,589	639	0.18	3,738	654	0.17	4,197	660	0.16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³⁾	-	-	-	-	-	-	-	-	-	-	-	-	266	131	0.49
평생학습관	1,989	535	0.27	2,070	585	0.28	1,885	569	0.30	2,356	714	0.30	2,270	712	0.31

1) A: 총 사무직원 수, B: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C: 총 사무직원 중 평생교육사 비율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 2, 3급 모두 포함됨

2) 학원은 평생교육사 현황 미조사로 제외.

3)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학원은 지역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관 수의 경우 해마다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800여 개 가량 더 많았다. 2013년 수도권은 2,294개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671개였다. 2017년에는 수도권이 2,428개였고, 비수도권은 1,604개였다.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66.1% 수준이었다. 반면에 학원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약간 더 많았다.

기관 수 만큼 프로그램 수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를 보였다. 2013년 수도권 프로그램 수가 180,843개였고 비수도권은 110,897개였다. 이런 차이는 2017년에도 여전히 유지되어 수도권이 214,413개, 비수도권이 141,238개였다.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약 65.9% 수준이었다.

〈표 3-8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3,965	4,342	4,144	4,153	4,032	180,843	205,546	211,193	212,339	214,413
수도권	2,294	2,560	2,502	2,510	2,428	110,897	132,771	138,031	141,901	141,238
비수도권	1,671	1,782	1,642	1,643	1,604	69,946	72,775	73,163	70,4389	73,175

1)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

2) 학원은 지역별 통계 미비로 제외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지역별 학습자 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여전하였다. 2013년 수도권이 14,972,474명이었던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3,287,827명이었다. 이후에 수도권의 학습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비수도권의 학습자도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수도권 학습자 수가 9,583,106명이었고, 비수도권은 2,314,130명이었다. 수도권의 학습자 수 대비 비수도권은 24.1% 수준이었다.

〈표 3-8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학습자 수

(단위: 명)

구분	학습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11,897,236
수도권	14,972,474	10,501,439	9,667,178	9,114,278	9,583,106
비수도권	3,287,827	2,418,397	2,315,476	2,222,286	2,314,130

1) 학원은 지역별 통계 미비로 제외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지역별 교·강사 수와 사무직원 수는 평생교육기관 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수도권의 교·강사 수와 사무직원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고, 해마다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차이가 유지되었다. 2013년에 수도권 교·강사 수는 42,692명이었고, 비수도권은 30,262명이었다. 2017년에는 수도권이 41,130명이었고 비수도권이 30,593명으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교·강사 수는 74.4% 수준이었다.



사무직원 수의 경우에도 2013년 수도권은 12,397명, 비수도권은 5,979명이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수도권이 13,524명, 비수도권이 6,154명으로 수도권 대비 45.2% 수준이었다. 따라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사무직원 수는 절반도 못 미쳤다.

〈표 3-8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72,954	72,477	70,835	73,204	71,723	18,376	19,586	18,833	19,842	19,778
수도권	42,692	42,366	41,587	42,890	41,130	12,397	13,351	12,993	13,736	13,624
비수도권	30,262	30,111	29,248	30,314	30,593	5,979	6,235	5,840	6,106	6,154

1) 학원은 지역별 통계 미비로 제외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4. 향후 과제

본 백서의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자의 감소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은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생학습자 역시 2013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2017년 학습자수는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감소는 일부 평생교육 거품이 사라지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감소는 평생교육의 확대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연구와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감소에서 증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매년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질 관리 방안이 미비하다. 2013년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해마다 작게는 1,000여 개에서 많게는 20,000개 이상 증가해왔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의 증가는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증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점은행제 등의 프로그램 질관리의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 시장에서 소비자인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즉 시장에 의한 질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에 대응하여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나 정책적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를 평생교육기관 평가나 지원 등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사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본 백서의 분석 결과에서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사무직원 중 1/4 정도가 평생교육사였고, 평생교육사의 비율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인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전문가의 배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지적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에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들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교육은 개인 삶의 질과 지역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배려가 요청된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중 비형식 및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만 주로 통계자료가 축적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통계 중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통계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는 학원, 학점인정제도,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학원과 학점인정제도는 일부 통계가 조사되고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수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범위에 부합되도록 관련 통계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http://kess.kedi.re.kr/index>>. (2017.12.11.).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http://kess.kedi.re.kr/index>>. (2017.12.11.).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http://kess.kedi.re.kr/index>>. (2017.12.11.).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http://kess.kedi.re.kr/index>>. (2017.12.11.).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http://kess.kedi.re.kr/index>>. (2018.1.16.).

제4장

평생교육 예산 현황



1. 평생교육 예산 현황

가. 한국의 교육 예산 현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은 2013년 49.6조원, 2014년 50.4조원, 2015년 50.8조원, 2016년 51.4조원, 2017년 57.2조원으로 연평균 3.6%의 증가율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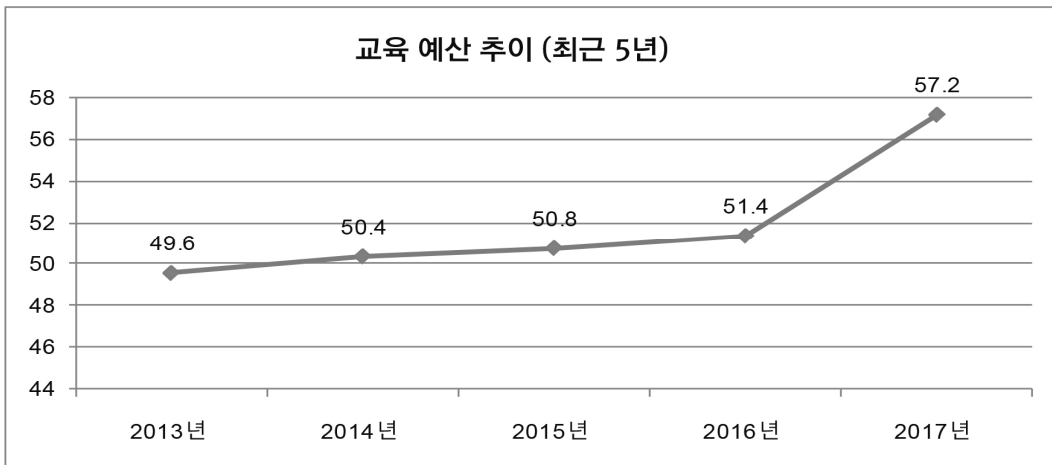
〈표 3-86〉 교육 예산 및 정부 총 예산 현황(최근 5년)

(단위: 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교육 예산	49.6	50.4	50.8	51.4	57.2	3.6%
정부 총 예산	341.9	355.8	375.4	386.3	400.5	4.0%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한국통합재정수지」, 교육부 홈페이지「재정·예산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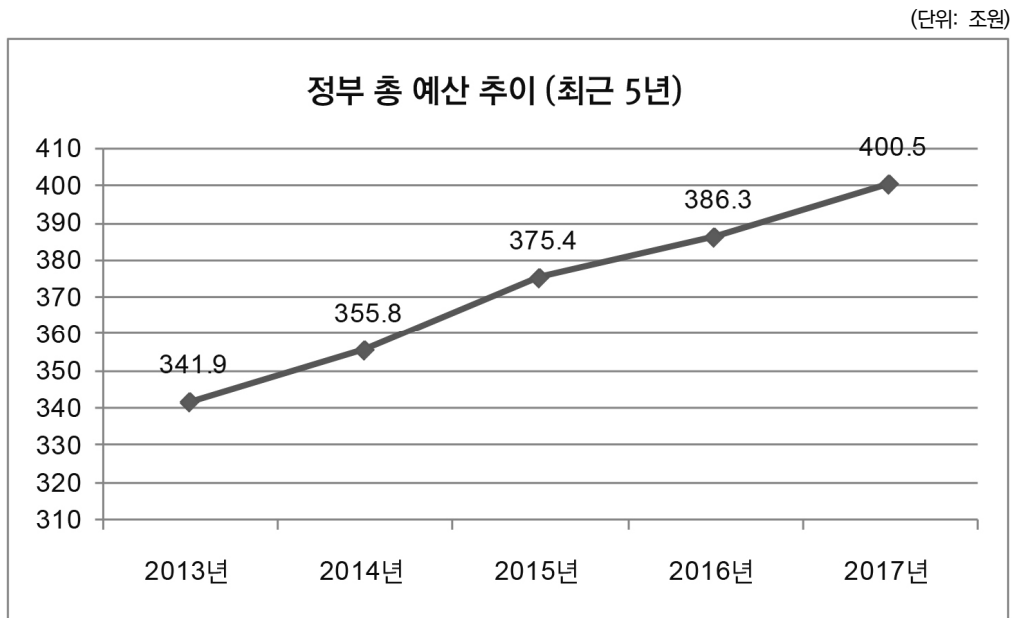
(단위: 조원)



[그림 3-28] 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하지만, 최근 5년간 정부의 총 예산과 비교해 보면 교육 분야 예산 증가는 다소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총 예산은 2013년 314.9조원, 2014년 355.8조원, 2015년 375.4조원, 2016년 386.3조원, 2017년 400.5조원으로 연평균 4.0%의 증가율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이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총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9] 정부 총 예산 추이(최근 5년)

나. 교육부 평생교육 예산 현황

교육 예산은 크게 네 가지(유아·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로 구성되며, 평생교육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 분야 예산을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유아·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2013년 412,286억원, 2014년 411,370억원, 2015년 395,974억원, 2016년 414,008억원, 2017년 471,494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율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2013년 75,647억원, 2014년 86,520억원, 2015년 105,284억원, 2016년 92,895억원, 2017년 92,807억원으로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2013년 7,433억원(추경예산 포함), 2014년 5,384억원, 2015년 5,704억원, 2016년 5,894억원, 2017년 6,195억원 5년간 연평균 △4.5%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는 2013년도까지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으로 포함되었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 2,010억원이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분류됨에 따른 영향으로, 2014년도 이후로만 한정해서 보면 연평균 4.8%의 증가율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분야의 예산은 2013년 929억원, 2014년 1,003억원, 2015년 991억원, 2016년 1,073억원, 2017년 1,079억원으로 연평균 3.8%의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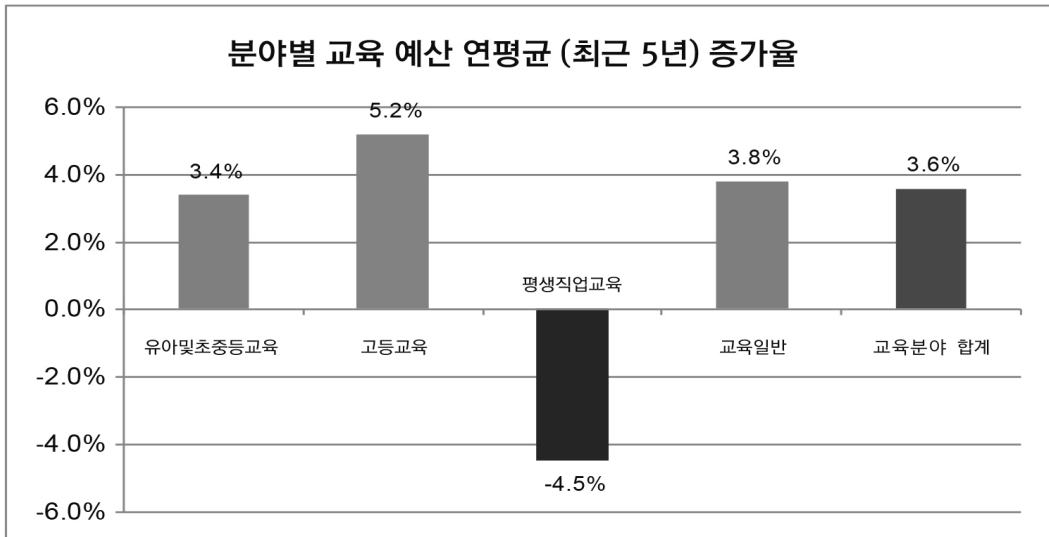
〈표 3-87〉 분야별 교육 예산 현황(최근 5년)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412,286	411,370	395,974	414,008	471,494	3.4%
고등교육 예산	75,647	86,520	105,284	92,895	92,807	5.2%
평생·직업교육 예산	7,433	5,384*	5,704	5,894	6,195	△4.5%
교육일반 예산	929	1,003	991	1,073	1,079	3.8%
교육 분야 예산 계	496,295	504,277	507,953	513,870	571,57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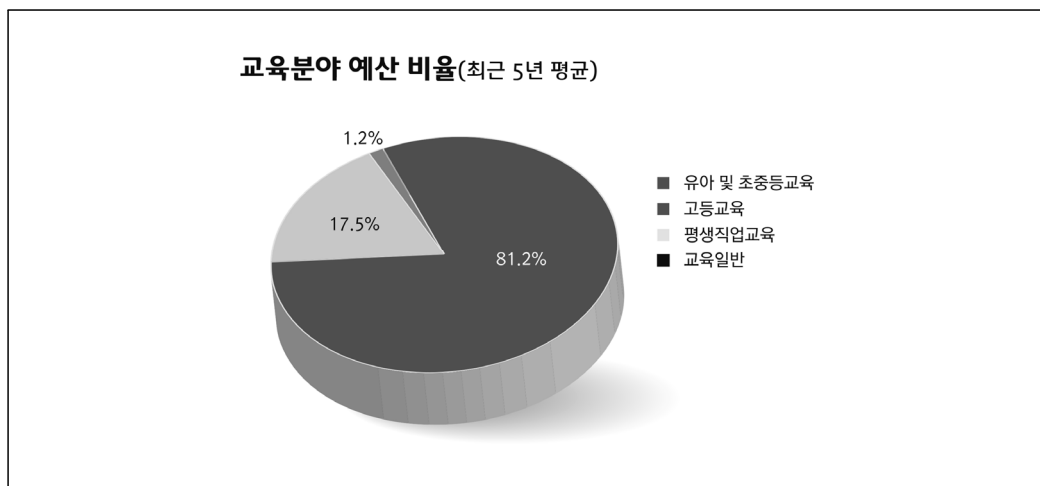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재정·예산정보.

* 2013년도까지 평생·직업교육 예산에 포함되었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2,010억원)’ 예산이 2014년도부터 지방비로 분류됨에 따라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 대폭 감소(7,433억원 → 5,38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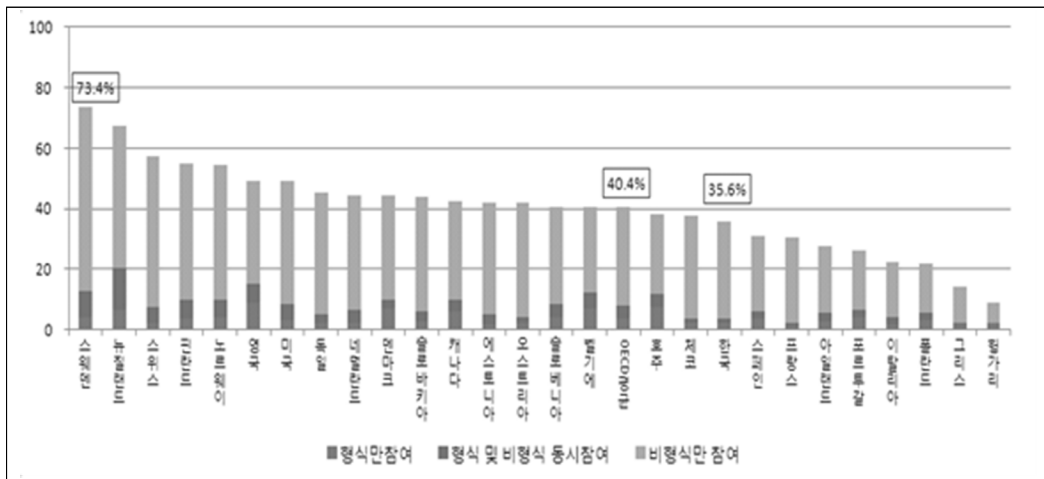
[그림 3-30]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최근 5년) 증가율

또한, 전체 교육 예산 518,794억원(최근 5년 평균 금액) 중에서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421,026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대부분인 81.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고등교육 예산 17.5%(90,631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 1.2%(6,122억원), 교육일반 0.2%(1,015억원) 순이다. 이처럼 평생·직업교육 예산 비중은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3-31] 분야별 교육 예산 비중(최근 5년 평균)

이렇듯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규모 및 관심도는 타 교육 분야에 비해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55~64세)의 노동참여율이 62.1%로 OECD 평균인 54.4%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 인프라는 미흡한 상태이고, 평생학습참여율 또한 2012년 기준, 35.6%로 OECD 주요국(스웨덴 73.4%, 스위스 57.3%, 핀란드 55% 등)은 물론이고, OECD 평균(40.4%)보다도 약 5% 가량 낮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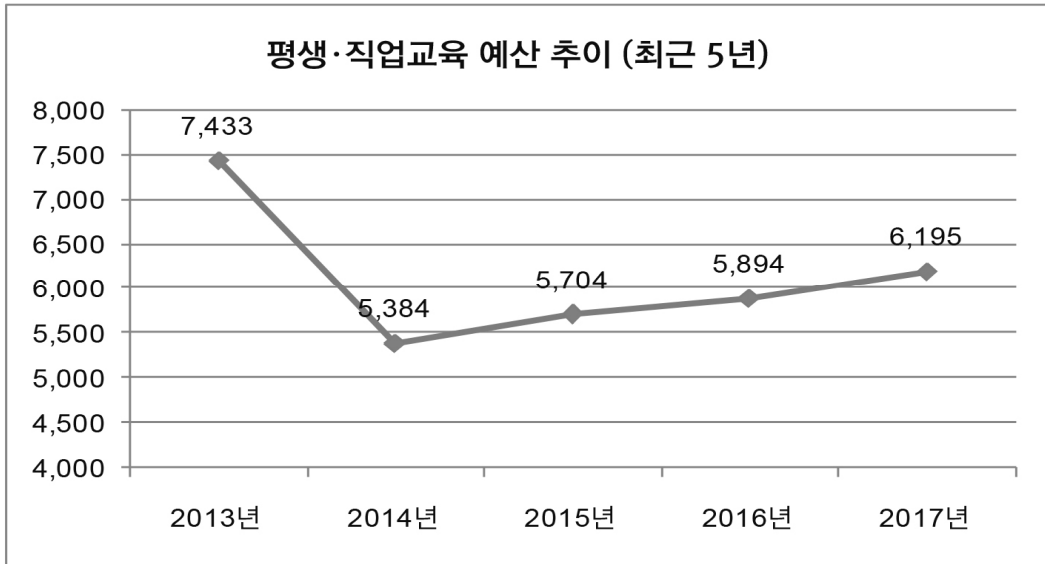
[그림 3-32]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12년 기준)

출처: 교육부(2013).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이처럼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인프라 및 평생학습참여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뒤쳐져 있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평생·직업교육 예산 추이를 보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단위: 억원)



[그림 3-33] 평생·직업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현황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 일-학습-삶이 조화로운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의 평생교육정책 실행을 위해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 개원 후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603억원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교육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429억원이다. 이는 교육부 예산 571,575억원 대비 약 0.08%,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 6,195억원 대비 6.93%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교육정책 실행이라는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데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표 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규모(2017년, 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비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비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출연금	42,944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출연	14,407	
- 평생학습진흥지원	1,141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3,766	
-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268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230	
-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	23,132	
□ 교육부 예산	57,157,487	0.08%
- 평생·직업교육분야*	619,477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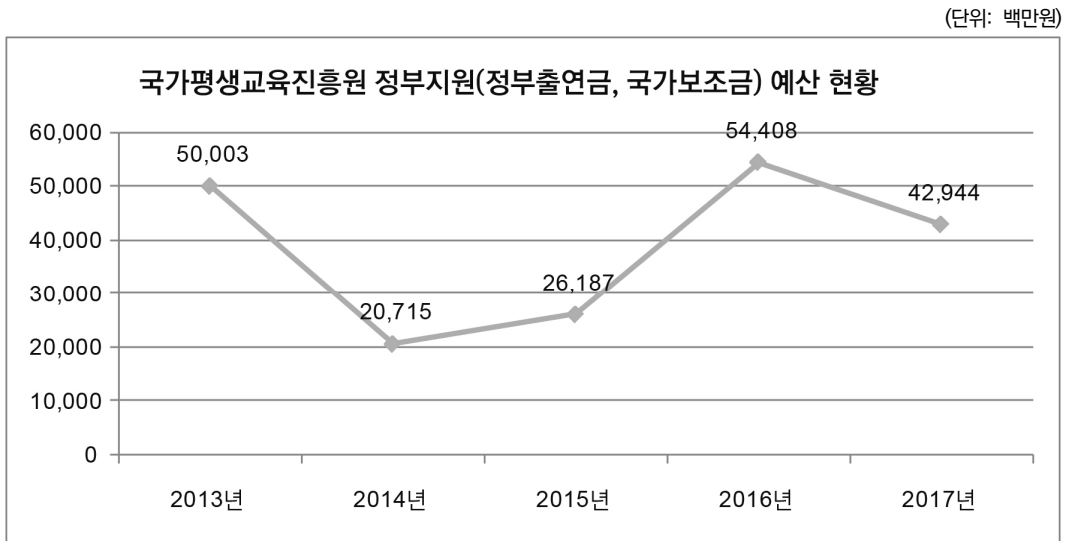
* 평생·직업교육분야는 1)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2)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3)국제교육협력증진, 4)국립국제교육원지원, 5)산학연 협력활성화, 6)정보활용활성화지원 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표 3-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 예산	50,003	20,715	26,187	54,408	42,944	△3.7%

더구나 최근 5년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부지원 예산은 2013년 50,003백만원, 2014년 20,715백만원, 2015년 26,187백만원, 2016년 54,408백만원, 2017년 42,944백만원으로 연평균 △3.7%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평생교육 진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투자 확대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림 3-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2. 향후 전망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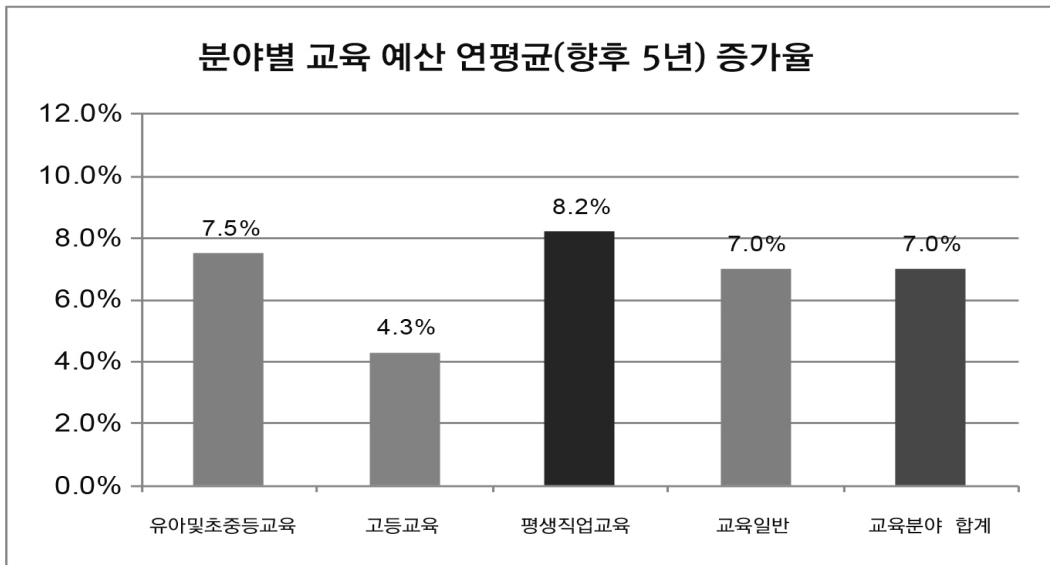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예산은 2017년 574,123억원, 2018년 641,428억원, 2019년 681,196억원, 2020년 727,417억원, 2021년 753,408억원으로 연평균 7%의 증가율로 교육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이 2017년 6,935억원, 2018년 6,673억원, 2019년 7,086억원, 2020년 9,494억원, 2021년 9,497억원으로 연평균 8.2%의 예산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증가율 7.5%,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4.3%, 교육 일반 예산 증가율 7.0%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서, 국가의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3-90〉 교육 분야 투자계획(2017~2021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471,494	537,326	575,548	604,433	630,558	7.5%
고등교육 예산	94,584	96,159	97,245	112,107	111,900	4.3%
평생·직업교육 예산	6,935	6,673	7,086	9,494	9,497	8.2%
교육일반 예산	1,110	1,269	1,317	1,383	1,453	7.0%
교육 분야 예산 계	574,123	641,428	681,196	727,417	753,408	7.0%

출처: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예산」.



[그림 3-35]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향후 5년) 증가율 전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평생교육 관련하여, 평생교육 혁신에 재정투자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 혁신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K-MOOC)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개발, 한국형 단기학위(Nano-degree) 운영, 문해교육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 혁신을 이룩하여 평생교육이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및 활기찬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2 - 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한국 성인의평생학습실태. 33 - 35.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OECD 교육지표. 444 - 445.
- 기획재정부(2016).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75 - 83.

제5장

평생교육 국제교류 현황



1. 사업 개요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리나라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국내 및 국제 동향이나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여 이루어지는 정보교류 등이 있다. 또 다른 방식은 국가 간 양자협력 혹은 UNESCO, ASEM, OEC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직·간접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 때 대개의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다자협력은 시작되며 상호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국제협력은 여러 부처, 기관에서 추진하게 되고, 결과를 가시화시키기까지 장기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되는 국제협력사업 역시 아직은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3년간 수행한 국제협력 활동 및 평생교육관련 국제행사에서 논의된 평생교육의 주요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성과

〈표 3-91〉 업무협약 체결 현황

연번	국가명	기관·기구명	체결년도	비고
1	호주	Adult Learning Australia	2009	
2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원		
3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Danish School of Education		
4	-	OEI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 기구)	2011	기간만료('14), 재체결 진행중
5	엘살바도르	영부인재단	2012	
6	파나마	INADEH (국가직업전문교육기관)		
7	미국	조지아대학교	2013	



연번	국가명	기관·기구명	체결년도	비고
8	뉴질랜드	교육자격청(NZQA)	2013	
9	중국	XuetangX	2015	
10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교육부	2016	
11	우크라이나	국립공과대학교 이고르 시코르스키 키에프 공학연구소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Igor Sikorsky Kyiv Polytechnic Institute")	2017	
12	우크라이나	키에프 타라스 쉘벤코 국립대학교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13	프랑스	FUN-MOOC		
14	일본, 태국	JMOOC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ThaiMOOC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다자협력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전 세계 지역으로 해외 기관들과의 국제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양자 혹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2017년 말까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다. 이들 국가나 기관과는 그간의 평생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정책, 경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가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업무협약 활동과 병행하여, 지난 몇 해 동안 국제세미나 혹은 워크숍이 매년 운영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회의(World Education Forum)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난민기구, 유엔여성기구,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가 주관한 대규모 행사이다. 이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부대 행사로서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MOOC)를 통한 평생학습 실현(Lifelong Learning for All through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약 16개국 20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MOOC의 국제 이슈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MOOC인 K-MOOC의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협력기관 연수워크숍 후원기관으로서 서남아시아 10개국의 교육부 및 문해교육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2016년에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이와 연계하여 「아시아지역 지역 학습센터(CLC)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지역 지역학습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우리나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무크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노력이 기울여졌다. 2016년 10월 유네스코방콕과 공동으로 「제2회 아태지역 MOOC 전문가 회의(Second Regional Expert Meeting : MOOCs as a Catalyst to Enhance Teaching and Lifelong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를 개최하여 아태지역 16개국 전문가 23명 및 국내 대학 관계자, 일반 시민과 함께 역내 MOOC 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2017년 3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일본 JMOOC 및 태국 ThaiMOOC와 공동으로 「제1회 아태지역 MOOC 관계자총회(The First Asia-Pacific MOOCs Stakeholders' Summit)」를 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내 MOOC 관련 전문가, 정책 입안자, 대학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그간의 역내 국가별 MOOC 플랫폼 현황과 MOOC 관련 정책 추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1월에는 「제6차 아셈교육장관회의(The 6th ASEM Education Ministers' Meeting)」가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ASEM MOOC 관계자 포럼(ASEM MOOC Stakeholders' Forum)」에 이어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ASEM 회원국 MOOC 전문가, 대학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ASEM 역내 MOOC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ASEM 회원국들과의 MOOC 기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 교육회의 중간회의(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수원시, 오산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경기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평생학습 연구소(UIL)가 발간한 「제3차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RALE III, The Third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를 UIL과의 협력으로 국문번역을 하여 발간·배포하였다. 이 중간점검 회의에서는 다양하게 세션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특히 한 세션에서는 성인 교육 및 학습이 각 지역별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발표가 이루어졌다. 다음 절은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혹은 성인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교류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개해 나갈 때 향후 보다 생산적인 발전과 기회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식과 이해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계 지역별 평생교육 특징 및 과제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인 학습 및 교육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특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지역은 크게 1)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Sub-Saharan Africa), 2)아랍지역(Arab States), 3)아시아-태평양지역(Asia and The Pacific), 4)유럽 및 북아메리카(Europe and North America), 5)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으로 구분하여 그 지역의 현황 및 특징이 보고되었다.

2017년 수원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 6차 세계성인 교육회의 중간회의(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는 2009년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 이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및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부 및 성인학습 관계자, 국제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모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각국의 성인교육 활동과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성공 사례 및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 지역별 평생교육 현황 혹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Sub-Saharan Africa)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문맹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 문해능력 보장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제공 측면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성인교육에 대한 정의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좁은 의미에서의 기초 문해 및

성인교육에만 한정 지은 국가들도 일부 있어 향후 성인교육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09년 이후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인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특히 문해력 및 기초 교육 분야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인교육 참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이다. 성인교육의 진전, 질적 성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및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나. 아랍지역(Arab States)

아랍 국가들은 문맹률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2009년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이후 성인교육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랍 지역 국가들은 정치적 갈등 및 내전을 겪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상당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인구증가는 지역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젊은 연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업문제 및 내전으로 인한 난민 증가가 성인교육을 제공하는데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교육제도 역시 전반적인 교육거버넌스와 성인교육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여전히 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많은 문맹자 수로 인해 여전히 3R(읽기, 쓰기, 산수)중심 교육이 진행되어 포괄적인 범위의 성인교육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 스킬 이외에 다양한 능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아랍식 문해력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교육 밖에 있는 아이들이 많으며 문맹자 수도 많다. 초등학교 학령인구 중 약 1천 6백만 명, 중학교 학령인구 중 약 3천 4백만 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3분의 2는 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밖 아동은 문맹인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성인교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제도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 정책에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에 지역협력이 포함되는 것이 성인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분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성인교육의 제안, 실행, 평가에 있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며 이는 지역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축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있어 성인교육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라. 유럽 및 북아메리카(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성인교육의 긴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유럽과 남유럽은 지속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성인교육을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중동 국가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유럽 지역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은 성인교육의 관리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성인교육 정책 시행을 위한 교육의 분권화와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인교육에 한정지은 데이터 수집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성인교육 관계자들의 자격 미달, 모니터링 체계의 부족, 형식교육 내에서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있다.

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큰 지역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의 복잡한 교육사회적 맥락은 낮은 교육 성취도 및 문해율로 이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정책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지역의 성인교육은 주로 지역 수준에서 결정되고 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분권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통합할 공식적인 중앙 정부 채널 부재로 인하여 교육 참여자들 간의 의견 전달 및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주체는 시민단체이다. 성인교육을 조직하는 정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및 문해교육 관리는 교육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에서 교육 분야로의 공적 재정 지원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성인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정부 예산에서 가장 적게 할애되며 투자자가 다양하고 부처별로 투자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수집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내부에서 보다 성인교육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4. 향후 과제

평생교육 국제협력 및 교류 활동과 각국의 관심영역 및 활동은 중횡으로 그 폭이 매우 넓은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 성인교육 등 그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향후 우리 국제협력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 바탕 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협력사업을 도출하며,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 교육회의의 중간회의(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의 결론에서 강조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의 축적, 분석, 개선 등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은 보다 더 중장기적인 국제협력 기틀 위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련하여 SDG4 – 교육 2030 활동을 우리나라도 시작하였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7개 분야로 구분하여 7개 대표기관을 두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부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 대표기관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 관점에서 평생 교육 및 학습을 재조명하고 향후 국내 및 국제 두 관점에서 정책과 활동을 추진해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 국제 협력 활동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업무협약 체결현황. 내부자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7). *CONFINTEA VI Mid-Term Review 2017 - Progr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The status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 Summary of the Regional Reports.*

제4부

평생교육 문화 조성

제1장 |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및 제도

제2장 |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활동



!

제1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및 제도



제1절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1.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가. 사업 개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평생학습 우수 사례 공유와 평생학습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이하 박람회)가 2012년 제1회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6년 제5회 경상남도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매해 개최되었다. 하지만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에 보다 내실 있는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7년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전국 지자체가 모이는 박람회는 2년 단위로 2018년에 개최하고, 1년차인 2017년에는 준비기간으로 활용(추진체제 구성, 프로그램 기획, 차기 개최지자체 선정 등)하는 격년제로 전환, 운영하였다.

따라서 1년차인 2017년은 제6회 박람회를 준비하는 한해로 ‘2018년 공동주관 기관 선정 공고 및 심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를 차기개최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였다. 박람회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개인, 지자체,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평생교육분야 성과를 종합하는 통합 컨퍼런스인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을 신규 브랜드사업으로 런칭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과 다함께 참여하는 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 증진과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나. 2017년 사업 추진 현황

1) 2018년 공동주관기관 선정

2017년은 제6회 박람회를 준비하는 한해로써 공동주관 기관을 선정하였다. 공동주관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가 차기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1단계로 계획 수립단계이다. 박람회 운영방식, 격년 개최로 변경 등은 교육부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세부 사업의 내용을 포함한 실행계획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립되고 교육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된다.

2단계는 교육부의 공동주관 기관 선정 공모이다. 선정 공모는 교육부 공고를 통하여 추진되며 일반적으로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된다.

3단계는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 심사의 절차가 추진된다. 선정심사계획은 심사기본 방향 설정, 운영체계 및 평가절차, 평가내용 및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립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선정절차는 첫째, 심사위원 상피제를 도입하고, 기피·제척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심사는 프로그램, 추진체제 및 전략, 휴먼웨어 및 서비스 3개 영역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고, 14개 세부지표를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최종 공동 주관기관 선정·발표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역대 박람회 공동주관기관 선정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2) 2017년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발표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이하 정책관)을 기획·운영하였다. 참여행사는 시·도 및 시·도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지역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박람회(축제) 중 운영장소(정책관 설치가 가능한 개최지 등), 개최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최종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였다. 정책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주민학습서비스 플랫폼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추진기구 현황,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배움을 위한 제2의 학습기회 제공으로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주요내용, 방송중고 개념도 및 주요통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적 경제 학습체계로 자발적 학습모임 개념, 사회적 경제의 개념, 국내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2018년 평생학습 프로젝트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개념, 평생교육 바우처 개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부대행사로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및 제도 안내,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표 4-1〉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현황

구분	운영일정	장소	연계행사명	주최/주관
서울정책관	9.22.~9.24.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광주정책관	10.13.~15.	광주 중외공원	제5회 광주 평생학습박람회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강원정책관	10.14.~15.	인제군하늘내리센터	2017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강원도, 인제군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3)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2017년 개인, 지자체,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평생교육분야 성과를 종합하는 통합 컨퍼런스인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을 신규 브랜드사업으로 런칭하였다. “상생과 공존의 해법, 배움의 오늘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증서 및 동관수여식,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선포식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였다. 개막행사는 ‘공감(共感)’, ‘탐색(探索)’, ‘고찰(考察)’을 테마로 대전의 서막을 열었고 공식행사에서는 평생학습대상 시상, 신규 도시 증서 및 동관수여, 제6회 박람회 개최지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4-2〉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현황

구분	세부내용
행사명 및 슬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大展) • 슬로건 : 상생과 공존의 해법, 배움의 오늘을 말하다
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1월 24일(금) 13:30~15:30 • 더케이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3층)
주최 및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 오프닝 영상 '128번째 질문' • 더불어 깨우치고 함께 깨닫는 배움공동체의 미래 •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 2017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다. 전국 단위 박람회 사업 추진 현황

1) 박람회 추진절차 및 추진체제

박람회는 다음의 5단계로 추진되었다. 1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사무국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 주관기관과의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2단계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이다. 전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평생학습도시, 전국평생학습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안내를 실시하고,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단계는 전시 프로그램 및 행사의 주제 적합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운영 매뉴얼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개막식 운영 계획 및 행사 전반의 행정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기관(단체)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행사장 구성 및 배치를 확정하고 홍보계획과 참가 기관(단체)의 지원 물품, 필요 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한다. 이 단계는 박람회 실행 전 마지막 단계로서, 종합 행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교통, 숙박 등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4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사무국 중심으로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행사장 구성 및 종합 행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현장 상황실에서는 전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지원과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종합 안내, 전시장과 행사장 내 시설 관리 및 지원, 교통, 숙박, 식당 등을 관리·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점검 및 평가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한다.

5단계는 박람회 평가 및 정리 단계이다.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박람회의 발전 방안을 기획하게 됨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에 따라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는 기관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박람회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단계에 운영위원회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박람회 성과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운영 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박람회는 마무리된다.

박람회의 추진 조직은 교육부, 조직운영의 대표조직인 운영위원회, 실행계획 수립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국,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후원기관으로 구분되며 추진 조직별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4-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중앙단위 홍보지원 및 박람회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박람회 참가 협조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조직 운영의 대표 조직으로서 대외 명칭 사용 • 박람회 참여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공조체제 구축 • 박람회 운영 총괄, 사무국 운영 지도·감독 • 박람회 세부 실행계획, 예·결산 심의·의결 • 박람회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심의·의결



구분	주요 기능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기획·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 • 홍보, 의전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 민간자문기구 운영, 자원봉사 등 인력 채용·관리, 홍보 등 • 행사 관련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박람회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박람회 결과 보고 •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참여 협조 • 광역시·도 및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등 업무 협조 • 차기 개최지 선정 및 홍보 등
후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회원기관 및 단체 참여 촉진, 박람회 개최 홍보 지원 등

출처: 교육부(2016).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2) 전국 단위 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박람회는 1단계(3~4월)에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단계(5월)에는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립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3단계(6월)에는 홍보 체험관 운영 계획과 참가신청을 확정하고, 4단계(7~8월)에는 자원봉사계획 및 설명회 개최,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확정하였다. 5단계(9~10월)에는 세부 실행계획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6단계(11~12월)에는 결산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표 4-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단계	추진기간	추진목표
1단계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예산 교부 및 예산 운영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설립 및 창립 총회 • 사무국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2단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관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홍보·체험관 프로그램 참가 신청(1차 조사) • 전국 우수 프로그램 공모 • 포스터 및 서체 확정

단계	추진기간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별 운영프로그램(안) 선정
3단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1차 확정 • 홈페이지 오픈 • 홍보·체험관 프로그램 확정 •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관계자 설명회(부스 등) • 전국 우수 프로그램 선정 • 동아리 작품전시, 우수 사례발표 참가 선정 • 학습동아리 등 경연대회 참가팀 선정
4단계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 • 식당 운영 계획 수립 및 숙박업, 요식업 관계자 설명회 • 자원봉사자 배치 및 자원봉사자 교육
5단계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실행계획 및 매뉴얼 확정 • 셔틀버스 운영 계획 수립 • 참가기관·단체 숙박 수요 조사 • 홍보·체험관 운영지침 통보 • 홍보 관련 기자 간담회 실시 • 종합 대책 회의 개최 • 참가 관계자 최종 설명회 • 자원봉사자 발대식 • 종합 상황실 설치, 긴급지원 및 안전대책 이행 •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 실무자 최종 리허설 • 박람회 개최
6단계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 결산 •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보고회 개최

출처: 교육부(2016).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라. 사업 운영 성과

1) 2017년 주요성과

2017년 박람회 준비기간에는 제6회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해로 공동주관 기관인 ‘부산광역시’를 조기 선정하여 내실있는 박람회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준비의 해 도입에 따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벅스코 전시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제 역시 빠르게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박람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역 평생교육추진체제와 연동한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 운영을 통하여 국정과제 및 국가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광주, 강원 3개 광역지자체에 38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전년대비 27.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에 개인, 지자체, 교육기관(단체)를 아우르고, 평생학습 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신규브랜드 행사로 출범하여 평생학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4-5〉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구분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
2018년 박람회 개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선정·준비(신청공고, 선정심사, 개최지 공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지 선정(부산광역시, BEXCO) • 추진체제 구성 및 사무국 운영, 슬로건 및 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2017년 박람회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생학습박람회(축제) 통합 관리 체제 도입 : 공동홍보, 성과분석, 인근 시·도 및 시·군·구 참여 등 •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및 국가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 슬로건 및 주제 선정, 패널 등 설치 디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2개 기관·단체 참여 (전년대비 27.3% 증가)
2017년 평생학습대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를 결산하는 평생교육분야 통합시상식 및 컨퍼런스 ‘평생학습대전’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평생교육행사 신규브랜드 런칭(57개 기관, 500여명 참석, 18점 시상, 동판 10점 수여 등)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2) 최근 3년 박람회 주요성과

박람회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제3회와 제4회(2013~2014년)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앙부처 중심의 박람회’로 운영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연계를 통하여 제5회(2016년)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 중 선정심사를 통하여 최종 거창스포츠파크 등 거창군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3년간 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구분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
제3회 박람회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학습하는 즐거움, 함께 나누는 행복 • 기 간 : 2014. 10. 17.(금) ~ 10. 19.(일) <3일간>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B, 10AB홀 • 주최/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도시 : 경기도 고양시(참여기관 212개) • 후 원 : 고양시
제4회 박람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 • 기 간 : 2015. 9. 4.(금) ~ 9. 6.(일) <3일간> • 장 소 : 서울시 코엑스 C HALL • 주최/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도시 : 서울특별시 (참여기관 242개) • 후 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
제5회 박람회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 • 기 간 : 2016. 9. 22.(목) ~ 9. 25.(일) <4일간> • 장 소 : 거창스포츠파크 등 경남 거창군 일원 • 주최/주관 : 교육부 /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거창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도시 : 거창군 (참여기관 300개) • 후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국립현대미술관, 17개 시·도,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거창군의회, 거창교육지원청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5, 201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마. 향후 과제

박람회가 축제에서 사업명이 변경되고 예산이 줄어들며, 개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제6회 박람회부터는 지역축제 수준의 행사에서 벗어나 중앙 정부 차원의 평생학습 통합 행사로 추진하며,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및 지역(지자체) 참여 제고를 위해 2년 주기(격년제)로 개최방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상황에서는 박람회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 통합행사로 추진하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증액이 필요하다.



박람회 기획과 프로그램이 우수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있는 최소한의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에서 나아가 기업체, 언론사, 국제기구 등과의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양한 참여주체와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여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박람회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박람회 본연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광인프라를 연계하여 경제적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전국행사인 박람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가 국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영향을 주고 산업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2016).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2.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가. 사업 개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이하 평생학습대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지속적 학습활동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한국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교육부가 주최하면서 평생학습 분야의 유일한 정부 시상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2013년 국무총리상 승격에 따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지침 및 시상부문을 조정하였으며, 2015년 기관 차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을 위한 ‘기관 추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목적은 개인학습자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 및 영역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포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학습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는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과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국가 단위 평생학습문화 촉진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주요 연혁

- 2004년 ‘평생학습대상’ 출범, 제1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
- 2005년~2011년 학습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학습자, 교육자, 기관 등 시상부문을 확대하여 개최(제2~8회)
* 개인(학습자/교육자), 학습동아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 6~7개 부분
- 2012년(제9회) 파급력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개인, 기관·단체, 공공’ 3개 분야로 시상부분 조정하여 개최
- 2013년(제10회) 국무총리상 승격에 따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지침 제정 및 시상부문 조정
- 2015년(제12회)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기관추천제 도입·시행
- 2017년(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병행 시상식 개최



나. 사업 추진 현황

1)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개요

2017년 제14회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장학재단, KT희망나눔재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이상 7개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였다.

〈표 4-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현황(2014~2017)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최/주관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일보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일보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일보
시상부문	○ 시상규모:2개부문 10점 시상 * 개인, 프로젝트 ※ 접수건수 : 2개부문 77건	○ 시상규모:2개부문 10점 시상 * 개인, 사업 ※ 접수건수 : 2개부문 81건	○ 시상규모:2개부문 11점 시상 * 개인, 사업 ※ 접수건수 : 2개부문 141건	○ 시상규모:2개부문 19점 시상 * 개인, 사업 ※ 접수건수 : 2개부문 170건
후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장학재단 KT희망나눔재단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 진흥원협의회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무총리상) 1건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건, 사업 부문 3건 총 5건 특별상(진흥원장상) 총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무총리상) 1건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건, 사업 부문 3건 총 5건 장려상(주관기관장상) 총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무총리상) 1건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건, 사업 부문 3건 총 5건 장려상(주관기관장상) 총 4건 특별상(교문위원장상)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무총리상) 1건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건, 사업 부문 3건 총 5건 장려상(주관기관장상) 총 3건 특별상(교문위원장상 등) 9건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각 추진체제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최 기관인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였다. 공동주관기관인 중앙일보는 기획기사 보도 등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후원기관에서는 특별상 시상 및 관계자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평생학습대상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지침(2015.5.21)’에 따라 사업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며,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선정위원으로 총 12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업, 문화,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로 총 7인이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대상선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대상선정위원회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2)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경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지속적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보여준 개인학습자 또는 교육현장에서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성공적으로 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인교육자 및 평생학습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8일~ 9월 18일까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다. 접수 결과, 개인부문 111건, 사업부문 59건으로 총 170건이 접수되었다.

사업홍보와 관련하여 포스터(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접수는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평생학습계좌제의 평생학습이력철 또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개인수기를, 사업 부문의 경우 공적요약과 프로젝트 성과 및 활동 사례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출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다단계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접수 서류 및 증빙서류(포트폴리오 등)를 기초로 평가지표와 평가편람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하여 수상규모의 2배수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8〉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개인부문)

구분	평가내용
①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新지식에 대한 습득노력과 학습활동의 지속 정도
② 자기계발 및 혁신	경험과 학습을 위한 도전과 노력, 성장 정도
③ 사회공헌	학습결과의 활용 및 사회적 공헌 정도
④ 타인에의 긍정적 영향	해당사례의 사회적 파급효과 정도

〈표 4-9〉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사업부문)

구분	평가내용
① 사업목적 및 비전	사업목적과 비전 설정의 적절성
② 사업내용	사업운영의 공공성, 시행방법의 효과성
③ 사회공헌	학습결과 활용 및 사회공헌 우수성
④ 성과 및 가치창출	사업성과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창출

출처: 교육부 공고 제 2017-189호,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선발 공고.

2차 심사는 면담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 확인 및 평생교육의 의지, 성과 등에 대한 확인, 진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수상자를 의결 선정하였으며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대상(국무총리상) 1점, 우수상(교육부장관상) 5점 등 총 18점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였다. 부문별 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0〉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부문별 수상현황(2017)

구분	훈격	수상자명/사업명(신청기관)
대상	국무총리상	김종민
	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개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사업)		도시형 소규모 학습공동체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 (서울 서대문구) 서(書)로 서(書)로 이어가는 평생학습 (경남 김해시) 삼삼오오 학습마실 길거리 학습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장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단지! 배움아! 같이 가치 (부산 사상구)
	중앙일보사장상	김은정 신만철
특별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상	평생문화예술학교 (김해도서관) 시흥형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 (경기 시흥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임사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퇴근학습길 (경기 부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	윤은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대학부설 노인대학 운영사업 (대구대 평생교육원)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	동화구연, 동극, 실버체조 지역나눔 사업 (와부동화이야기보따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상	서천군 별별(別star)학교 (충남 서천군)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회장상	학습공동체 '민들레홀씨' 마을활성화 프로젝트 (부산 서구)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다.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 ‘대상’ 수상자의 경우 젊은 나이지만 장애를 딛고 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귀감이 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그간 평생학습대상 수상자들이 오랜 시간 학습을 통해 평생학습의 성과를 인정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에게도 필수요소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향후 평생학습대상은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안정적 사업운영 체계의 확보이다. 평생학습대상은 2013년 국무총리상 승격 이후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상부문 조정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대상선정위원회 구성 시 평생교육 및 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의 위원을 위촉하여 홍보와 시상부문 확대 등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더불어 2013년 이후 평생학습대상 접수 건수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평생학습대상의 위상과 대통령상 격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다만 평생학습대상 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홍보방식의 확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지원체계의 정립과 대통령상 격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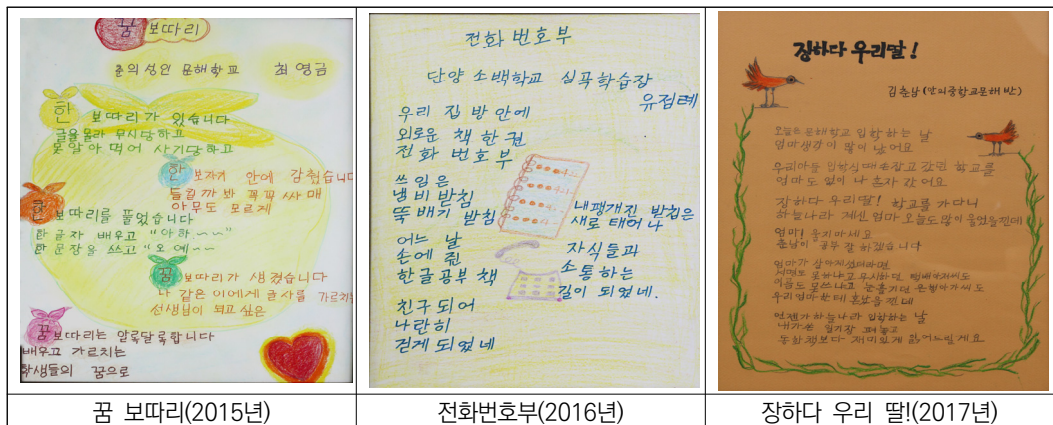
셋째, ‘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및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이다. 기존의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나 2017년의 경우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단독 행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은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과 함께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평생학습을 주제로 주제강연 및 축하공연, 2017년 평생학습 주요 사업설명 및 ’18년 추진방향 홍보물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은 그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의 부대행사에서 탈피하여 평생교육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평생교육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병행하여 다양한 홍보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3. 대한민국 문해의 달

가. 사업 개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은 ‘문맹’, ‘까막눈’ 등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통해 생애 첫 수상의 기쁨을 안은 문해 학습자는 그간의 성과를 격려받고, 잠재 문해교육 참여 대상자는 문해의 달을 통해 전개되는 각종 홍보를 통해 문해교육에 참여할 용기를 얻는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은 2012년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시작하면서, 시화를 통한 문해학습자의 학습 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 ‘대한민국 문해주간’을 거쳐 2014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발전하였다. 매년 9월에는 전국 광역문해교육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과 공동주관으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화전 전시 및 문해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해의 달과 관련하여 민·관·기업이 연계한 홍보 캠페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 2015~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작품



나. 사업 추진 현황

1)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대회 테마를 정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제시된 테마를 바탕으로 시화작품을 창작하여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한다. 2017년 테마는 ‘문해, 첫 시작을 열다’로, 문해교육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학습자의 이야기를 모았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문해교육 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해교육기관은 참여 학습자의 시화 작품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 접수처(광역문해교육기관)로 추천한다. 광역문해교육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작품의 10%를 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추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학 전문가, 문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 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위 20개 작품에 대해서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후에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등을 개최하여 문해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있다.



[그림 4-2]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절차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 결과, 전국 10,387명의 문해 학습자가 참여하여 총 114명이 수상하였다. 특히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특별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종 심사위원회 점수(50%)와 대국민 투표 점수(50%)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투표는 2015년부터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7년은 SNS 로그인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표 4-11〉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 결과

시상명	시상 인원(명)	비 고
글꿈상(최우수상)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글아름상(특별상)	1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10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10	세종문화회관 사장상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글봄상(우수상)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꽃상(장려상)	4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총 합	114	

2)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과 함께 문해교육과 관련한 학습성과를 펼쳐보이는 다채로운 공연 등이 함께 하며, 문해교육 참여 학습자 및 관계자를 위한 전국 단위 축제의 장이다.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은 2017년 9월 2일(토)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화전 수상자 및 문해 학습자, 문해교육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7년 선포식은 시화전 시상식을 포함하여 TBN 라디오 공개방송, 문해 학습자의 삶을 담은 특별 공연, 대국민 투표 최우수상작 시낭송, 문해교육 홍보대사 메시지 전달, 문해학습자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5년부터 추진한 한국교통방송(TBN) 라디오 특집 생방송은 2017년에도 시화전 수상자 및 문해교육 정책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해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해교육 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4-12〉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1부	14:00~15:00	60' ▶ [라디오 특집 생방송] 문해, 첫 시작을 열다 - TBN	
2부	15:00~15:30	30' ▶ [특별공연] 그땐 그랬지 - 사단법인 문화나눔초콜릿	
3부	15:30~15:35	5' ▶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및 문해 학습자	
	15:35~15:55	20' ▶ 환영사, 축사 등 -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병욱 의원, 노회찬 의원	
	15:55~16:05	10' ▶ 대국민투표 최우수상작('장하다 우리 딸!') 시낭송 - 김춘남(안의중 성인문해학교)	
	16:05~16:10	5' ▶ 문해교육 홍보대사 메시지 - 시인 김용택, 역사강사 최태성	
	16:10~16:20	10'	
	16:20~16:50	30'	▶ 우수작품 시상
			- 글꿈상(최우수상)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글아름상(특별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 글아름상(특별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 글아름상(특별상) - 세종문화회관 사장상
		- 글아름상(특별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 글봄상(우수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6:50~17:00	10'	▶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 기관 및 개인 감사패 전달	
17:00~17:05	5'	▶ 감사편지 전달	
17:05~17:15	10'	▶ [축하공연] 「문해, 첫 시작을 열다」특별합창 - 해나루시민학교	

〈표 4-13〉 2012~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결과

연도	일시	장소	참여규모	비고
2012년	10. 8(월) 1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0여명	성인문해교육 포럼 개최
2013년	9. 6(금) 13:00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300여명	대한민국 문해주간 선포식
2014년	9. 3(수) 13:30	세종문화회관 트락	500여명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2015년	9. 5(토) 13:40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장(서울 코엑스)	500여명	
2016년	9. 1(목) 14: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000여명	
2017년	9. 2(토)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여명	

3)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은 나라말이 없는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 전국 264만명 비문해자의 학습을 응원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문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라디오, TV,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은 한국교통방송과 연계하여 2017년 9월 한달 동안 라디오를 통해 3편의 캠페인(총 60회)을 송출하였다.

다. 사업 운영 성과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운영 성과는 문해 학습자의 참여 확대와 시도 단위 문해의 달 사업 운영 체계 정착, 문해교육 인식 확산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제1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전국에서 2,490개 작품이 참여하여 72개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2017년 6회를 맞이한 시화전은 전체 참여작 수가 2016년 (4,595작품) 대비 126.1% 증가하는 등 문해 학습자의 참여 규모 및 학업 성취 격려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표 4-14〉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결과

연도	시화전 주제	참여작품 수(개)	수상작품 수(개)
2012년	시와 그림으로 희망 쓰기	2,490	72
2013년	문해, 시와 그림으로 행복을 말하다	5,992	106
2014년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	5,561	130
2015년	문해, 꿈을 실현하다	5,684	134
2016년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	4,595	103
2017년	문해, 첫 시작을 열다	10,387	114
합계		34,709	659



아울러, 시·도 단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추진 체계가 활성화 되고 정착되었다. 2017년은 전국 17개 광역문해교육기관 공동주관으로 75곳에서 각종 시화전 전시 및 문해의 달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2016년(14개 광역거점문해교육기관, 53곳) 대비 41.5% 증가한 수치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단위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 및 전국 동시 시화전 개최 결과

연도	일자	장소	전국 동시 시화전 및 문해의 달 행사
2012년	10. 8(월) ~ 12(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9곳
2013년	9. 6(금) ~ 8(일)	세종문화회관 인근	19곳
2014년	9. 3(수) ~ 6(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43곳
2015년	9. 4(금) ~ 6(일)	코엑스 1층 동문 로비	30곳
	9. 17(목) ~ 19(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2016년	9. 1(목) ~ 9. 3(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53곳
2017년	9. 2(토)/ 9. 27(수)~9. 29(금)	국회 의원회관 1, 3층 로비	75곳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문해교육 홍보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 2017년에는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해 844건의 문해의 달 관련 언론 보도가 집계 되었다. 이는 2016년(632건) 대비 33.5% 증가한 수치로,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문해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향후 과제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통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단위 문해의 달 지원 체계 구축 강화다. 17개 시·도별로 문해교육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문해의 달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해의 달이 학습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문해의 달 관련 민·관·기업 네트워크 구축 체계 강화다. 문해교육 관련 사회적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관·기업이 가진 자원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문해교육

정책 및 홍보 역량 등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해의 달 관련 콘텐츠 다각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은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등이 잠재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해의 달 관련 신규 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평생학습도시

1. 사업 개요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격차 없는 학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3년 이후부터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의 증가, 도시쇠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의 접근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학습형일자리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출범 이후 시·도와 시·군·구를 사업의 시행주체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추진하였다. 4개 세부과제 중 첫 번째,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의 정책총괄기구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현장착근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두 번째,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은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역 평생교육 정보의 공유·유통·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성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2001년 시작하여 2007년 이후 중단되었던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특성화 지원’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평생교육법 제15조)를 마련함에 따라 2011년 재개되었다.

네 번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 유휴시설을 발굴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전담인력 배치, 조례 제·개정, 특성화콘텐츠 개발,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수요자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4-1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경과

구분	2001~2007	2011~2013	2014~2017
사업내용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지정, 既 선정도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지정, 既 선정도시 특성화, 일반도시 특성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지정, 既 선정도시 특성화, 일반도시 특성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집행방식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부 출연	지자체 경상보조, 교육부 출연
지원대상	시·도교육청/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중점방향 주요성과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도시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정보망 구축 등 시·도 역량강화 지원 '13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일반도시로 확대	학습형일자리 개념을 도입, 학습결과 환원 및 공유의 문화 조성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특이사항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시·군·구 공동신청 방식으로 추진 (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 구 지원금 교부)	'07년 중단 이후 일반회계 편성하여 평생학습도시 등 세부사업 재개 '08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이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유도	세부과제 순차적 종료 ▪ '16년,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17년,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 ■는 3년 계속지원

2.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시행주체는 광역자치단체로 2011년 대전, 경기를 시작으로 매년 3~5개 시·도를 선정하여왔다. 지원보조금은 지자체당 60백만원 내외를 3년간 계속 지원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은 지방비 대응투자 형태로 운영되었다.

〈표 4-17〉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현황

선정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지자체	대전, 경기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인천, 광주 경북	대구, 전남, 강원, 서울	경남, 세종, 전북



선정된 시·도는 지원 1년차에 시·도 내 관할 시·군·구 담당자, 평생교육기관,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지역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직후 시·도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평생교육 총괄기구로서의 수행역량 제고 및 운영 안정화를 중점 추진한다. 지원 3년차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시책사업 발굴, 전문인력 양성, 시·군·구 컨설팅 등 지원, 학습공동체 육성 등의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진된 이후 2011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016년 전북평생교육진흥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해당사업은 2015년 선정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의 3년 계속지원이 종료된 2017년까지 지속하였다.

〈표 4-18〉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현황(2017.12. 현재)

연번	시·도	설립시기 ¹⁾	유형	위탁기관	주요사업
1	서울	2015. 3.12 (2014. 4. 3)	법인	-	디지털아카이브, 관계자 역량강화 및 컨설팅, 자율학습모임 지원
2	부산 ²⁾	2017. 1. 1 (2011. 3. 1)	법인	-	지역대학·인재육성기관 지원,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3	대구	2014. 2.20	위탁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 소외계층 지원
4	인천	2014. 5. 9	위탁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사업)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평생교육 정책제안 포럼 개최
5	광주	2015. 2.27 (2013. 2. 8)	법인	-	인생이모작 상담,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 평생교육정책포럼
6	대전	2011. 6.13	법인	-	대전시민대학·배달강좌 운영, 연합교양대학, 인문고전읽기
7	울산	2012. 7. 1	위탁	울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8	세종	2016. 2. 5	위탁	세종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사업)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컨설팅
9	경기	2011.12.28	법인	-	국제개발협력, 우리동네학습공간, 체인지업캠퍼스, G-Seek 운영
10	강원	2014. 3.25	위탁	강원연구원 (인재육성장학사업)	정보망 E-Room 운영, 정책포럼, 지역특화 프로그램, 관계자 연수
11	충북	2011. 4.20	위탁	충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민주시민교육,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협의체 및 컨설팅

연번	시·도	설립시기 ¹⁾	유형	위탁기관	주요사업
12	충남	2016. 5.31 (2012. 1. 1)	법인	-	시·군 특성화 지원, 온통시민 배움터 지원, 사이버교육과정
13	전북	2016. 8. 1	위탁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지역 네트워크 및 소통플랫폼 구축
14	전남	2014. 3.19	위탁	전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사업)	학습동아리 지원, 정보망 및 DB 구축,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지원
15	경북	2013. 6.27	위탁	경북도립대학교 (고등교육)	마을평생교육지도사 양성, 특화 프로그램 지원, 행복지수 조사
16	경남	2015. 1. 1	위탁	경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연구)	담당자 역량강화, 학습공감 강화 나르미 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17	제주 ²⁾	2018. 1. 1 (2012 7.18)	법인	-	학습-고용 연계사업,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

1) 독립법인의 경우 전환시점을 설립시기로 기재, 단 ()는 최초 설립시기

2)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생교육정보망을 자체 구축한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당해 연도에 선정된 시·도는 해당 시·도의 정보망 구축을 목표로 75백만원 내외의 보조금과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19〉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현황

선정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지자체	부산, 충남	제주, 울산, 대전	인천,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광주, 전북, 세종

2015년, 17개 전 시·도의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 기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지역 교육기관 정보수집·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5개 시·도 (정보시스템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울, 경기 미신청)에 대해 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등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개발 시 데이터수집 등을 위한 표준을 적용, 현재 국가평생학습포털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2011년부터 재개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일반도시 지원의 3개 과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3개 세부과제는 국고보조금 대비 100% 지방비 대응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2011년 6개, 2012년 8개 시·군·구를 지정한데 이어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2013년 28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이후 2014년 11개, 2015년 7개, 2016년 7개, 2017년 10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양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17년 12월 기준 평생학습도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7.7%인 153개 시·군·구²¹⁾가 지정되어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선정 이듬해부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대한 공모를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지자체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가 학습형 일자리 창출, 학습-고용-복지 연계, 학습공동체 육성,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시책 등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통해 매년 20여개 평생학습 도시에 지자체당 최대 50백만원, 총 5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1) '06년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된 신안 무안·목포를 3개 시·군·구로 산정하여 추산

〈표 4-20〉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시·도	관할 시·군·구	선정 도시	지정연도 ¹⁾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25	15	-	-	-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	은평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	-	용산구	-
부산	16	13	-	해운대구	-	-	-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남구 사하구 서구	기장군	-	동구	북구 중구
대구	8	4	-	-	-	-	달서구 동구	-	-	수성구	-	북구	-	-	-	-
인천	10	6	-	-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남동구	-	-	서구	-	-	계양구
광주	5	5	-	-	-	-	남구	광산구 동구	-	북구	-	-	-	서구	-	-
대전	5	4	유성구	-	-	-	-	-	대덕구	-	동구	서구	-	-	-	-
울산	5	4	-	-	-	-	-	울주군	중구	-	북구	-	-	-	동구	-
경기	31	26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구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옹진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화성시	고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	여주시
강원	18	10	-	-	-	-	-	삼척시 화성군	강릉시 황성군	-	동해시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
충북	11	8	-	-	-	청주시	단양군 제천시	진천군	-	-	-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	-
충남	15	12	-	-	-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서천군 천안시	-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
전북	14	9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	-	-	-	-	부안군
전남	22	12	-	-	순천시	목포시 ²⁾ (신안·무안)	-	곡성군 광양시 여수시	강진군 영암군	-	-	-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경북	23	10	-	-	안동시	칠곡군	-	-	경산시 구미시	-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청도군	김천시	-	의성군
경남	18	13	-	-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	-	창녕군	합천군	-	합안군	밀양시 산청군
제주 ³⁾	0	2	-	제주시	서귀포시	-	-	-	-	-	-	-	-	-	-	-
계	226	153	3	3	5	8	14	24	19	6	8	28	11	7	7	10

1) '08~'1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중단
 2) 목포·신안·무안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지정(1개 도시로 환산)
 3)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시·군·구를 '0'으로 환산

총론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더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도시에 대한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 지자체 혹은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자체당 최대 50백만원, 총 3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16년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은 서울 종로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라. 행복학습센터 운영

2014년부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선정된 지자체는 선정 이후 3년간 지자체당 평균 31.5백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으며 해마다 지원금의 50% 이상 대응투자를 확보·편성하여 운영하였다.

2014년에 60개 시·군·구를 3년 계속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이어 2015년에는 32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92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별도의 신규선정 없이 92개 시·군·구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단년도 지원 형태로 37개 시·군·구를 신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4-21〉 행복학습센터 운영 참여지자체(2014~2017)

구분	지자체
서울(15)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부산(16)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강서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중구
대구(5)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
인천(6)	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광주(5)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대전(4)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구분	지자체
울산(1)	중구
세종(1)	세종
경기(12)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
강원(12)	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8)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충주시
충남(6)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전북(8)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전주시
전남(11)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7)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의성군
경남(10)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산청군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 운영’의 사업내용 중 선정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요소는 제도 정비, 인력배치, 시설 확보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제도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추진, 두 번째 인력배치는 지역 주민의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서 학습매니저의 배치를 의미한다. 학습매니저는 지역별로 전임부터 파트타임,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시설확보와 관련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거점센터 1개소, 읍·면·동센터 3개소 이상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읍·면·동센터는 경로당, 아파트 주민자치시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유휴시설을 활용하였다.

3. 향후 과제

2011년에 출범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10년이 경과한 2018년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3년 계속지원 세부과제(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 내실있는 정책운영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어 온 평생학습도시의 평가 체제 도입, 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현을 통해 지역의 추진기구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가 실질적인 지역 평생교육의 구동체로서 주요 사업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2016).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2017).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제3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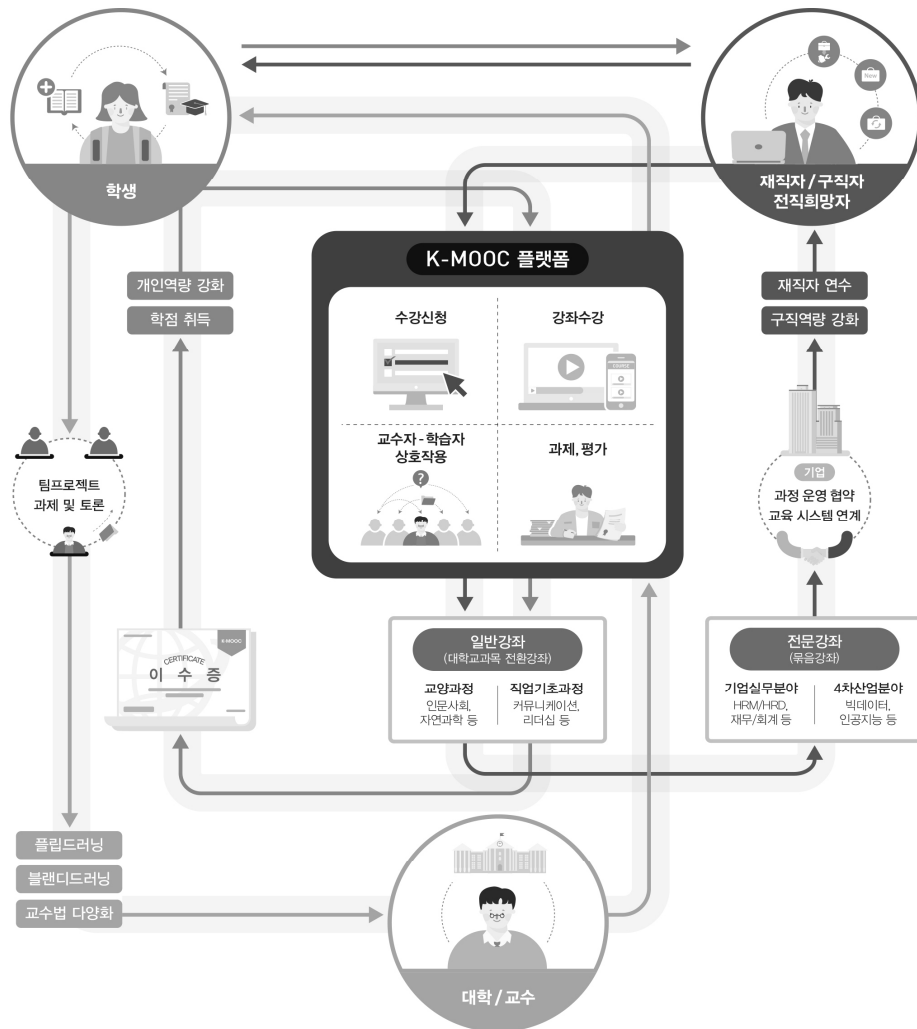
교육부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 사업을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였다. K-MOOC 사업은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하고, 고등교육의 기회 균형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100세 시대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여 열린 고등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써,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의미하는데, 교수-학생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 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사업(제도 관련) 추진 현황

K-MOOC는 출범 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최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대학을 우선 구성 후, 향후 참여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활용도와 범용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 후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국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후 점진적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기에는 우선 국내 대학의 강좌를 중심으로 개발·운영하되, 단계적으로 해외 MOOC 운영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주요 대학의 우수 콘텐츠를 K-MOOC 플랫폼에 직접 탑재·운영하거나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교육 혁신 및 교육비 절감을 위한 K-MOOC 구축·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5차에 걸친 국무회의 보고 후 2015년 2월 K-MOOC 시범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4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포함된 10개의 무크선도대학을 선정하고 27개 강좌를 개발하여 시범서비스를 개통하였다.



[그림 4-3] K-MOOC 사업의 운영 개요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한편 K-MOOC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인프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Open-edX를 활용하였다. 이는 초기 서비스의 안정성, 콘텐츠의 국제적 호환성,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Open edX는 미국의 MIT와 Harvard대학교가 공동출자하여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MOOC 플랫폼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중국, 태국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2015년 10개의 무크선도대학에서 개발한 27개 강좌가 첫째 운영된 이후, 2017년에는 무크선도대학 강좌, 분야지정 강좌,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강좌 등 총 324개까지 강좌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지원

K-MOOC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공고를 하며, 대학, 혹은 강좌단위로 선정된 참여대학을 최종 승인한다. 또한 우수 강좌 및 지원인력을 선정·표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4] K-MOOC 사업추진 체계(2017. 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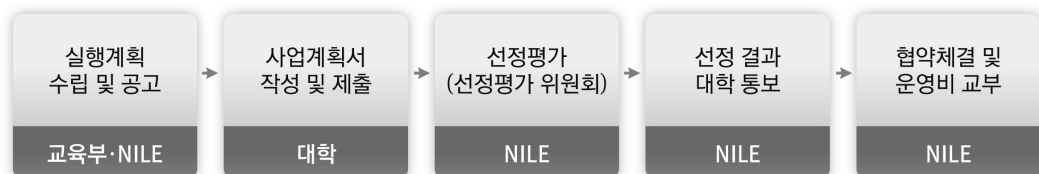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사업공고에 맞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개발한 강좌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업주체인 참여대학은 콘텐츠를 개발, 운영, 활용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담당한다. 교육부의 사업 선정 공고에 맞춰 사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K-MOOC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아울러, 참여대학은 자체 교육조교(TA) 및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통해 K-MOOC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제고하는 것은 물론 사업운영과정에서 산출되는 성과도 관리한다.

K-MOOC 콘텐츠 개발 지원은 개략적으로 협약체결, 강좌개발, 콘텐츠 검수, 강좌 최종 승인 및 운영 준비, 강좌 운영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절차는 선정된 대학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체결 단계이다. 교육부가 K-MOOC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참여 대학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K-MOOC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습득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참여대학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강좌 운영 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대학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한다. 협약서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의무, 저작권재산권 관련 사항, 협약 해지 및 변경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된 대학에는 강좌 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강좌당 개발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림 4-5] 참여 대학 선정 절차

두 번째 사업 운영 절차는 강좌 개발 단계이다. 2017년도에 선발한 K-MOOC 강좌의 유형은 무크선도대학이 개발한 강좌, 분야지정강좌, 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강좌, 교비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강좌로 구분할 수 있다. 무크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당 1차년도에 2개 이상의 강좌를, 2·3차년도에는 3개 이상의 강좌를 개발해야 하며, 개발된 강좌들은 필수적으로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분야지정강좌의 경우에는 4차산업, 한국학 분야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분야를 지정하고, 이를 강좌단위로 선발하였다. 한편, 각종 타 대학재정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등]의 선정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K-MOOC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표 4-22〉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2017년 12월 기준)

구분		대학 및 강좌 수
무크선도대학	2015년 선정대학	10개교 / 109개
	2016년 선정대학	10개교 / 63개
	2017년 선정대학	10개교 / 21개
분야 지정 강좌		14개교 / 30개
재정지원사업 활용 강좌		45개교 / 90개
대학 자체재원 활용 강좌		1개교 / 2개
KOCW 변환 강좌		9개교 / 9개
소 계		70개교 / 총 324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세 번째 사업 운영 절차는 콘텐츠 검수 단계로서 대학의 자체검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품질관리위원회 검수, 테스트링으로 이루어진다. 자체검수는 대학이 직접 설계, 개발, 검수, 운영의 4단계별로 14개 영역 32개 준거로 구성된 자체검수 도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행한다.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품질관리위원회 검수에는 사전검수와 최종검수가 있는데, 사전검수는 강좌 개발 전 설계단계에서 교수설계 측면에서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각 대학이 제출한 ‘강좌개발계획·운영계획서’와 ‘콘텐츠제시전략설계서’를 검토한다. 품질검수는 전체 강좌의 약 70% 분량이 개발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검수로서 콘텐츠 품질, 저작권, 웹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사전테스트와 이용자테스트로 구성되는데, 사전테스트는 플랫폼에 탑재된 강좌와 학습 지원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용자 테스트는 강좌 업로드 직후에서부터 강좌 오픈 이전 일련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내용상 오류와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이다.

〈표 4-23〉 K-MOOC 검수 프로세스

자체검수	품질관리위원회 검수		테스팅	
	사전검수	최종검수	사전 테스트	이용자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기관 내 자체 검수를 실시합니다.	개발 전 설계 단계에서 교수-학습 설계를 중심으로 사전검수를 진행합니다.	전체 강좌에 대한 70% 분량 수준에서 최종 품질 검수를 진행합니다.	플랫폼에 탑재된 강좌와 학습 지원 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원활한 학습 활동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K-MOOC 강좌 개발 운영 가이드라인.

네 번째 사업운영 절차는 개발 강좌의 최종 승인 및 운영 단계이다. 콘텐츠 검수의 품질검수에서 최종 승인된 강좌 개발기관에게 승인 결과를 통보하면 강좌 개발기관은 강좌명, 개강일, 종강일, 수업 주차 수 등이 포함된 강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이 내용에 따라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 운영 지원 인력인 교육조교(TA : Teaching Assistant)의 활용, 온-오프라인 학습자 커뮤니티의 구성 및 운영, 오프라인 특강, 화상토론 등 ‘교수자-학습자의 만남’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K-MOOC를 활용한 수업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과는 달리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참여대학 사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K-MOOC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포럼, 세미나, 워크숍을 상시적으로 개최한다. 운영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강좌별 학습 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정량 위주의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성과확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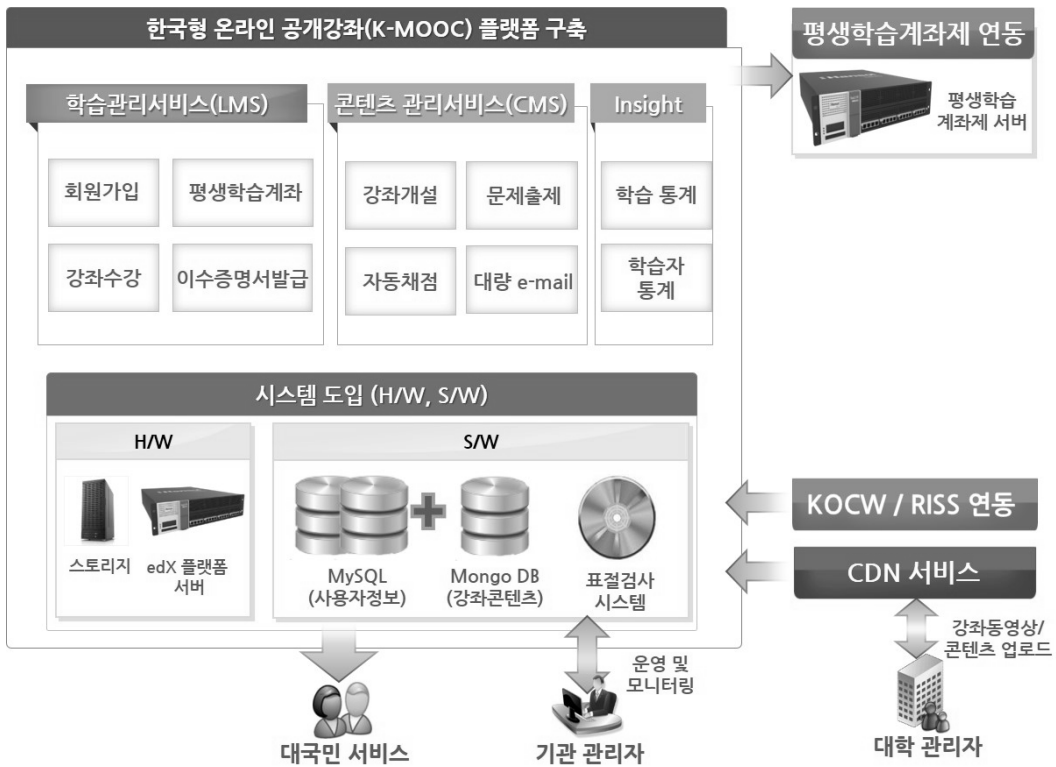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우수 강좌에 대해 강좌 개발 교수 표창 수여 및 우수강좌 배지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나. 공용 플랫폼 구축·운영

K-MOOC 플랫폼은 구축기간 단축, 초기 서비스 안정성, 향후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콘텐츠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오픈소스인 Open edX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Open edX는 미국의 Harvard와 MIT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edX, 중국의 XuetangX, 프랑스의 FUN 등 전 세계 약 800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MOOC를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초기부터 많은 학습자들의 이용을 전제로 설계하여 적은 서버 자원으로도 대규모 강좌의 안정적 운영이 용이하다. 둘째, 오픈소스로서 연 2회 정도 지속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각 서비스의 운영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셋째, 타 서비스와의 콘텐츠 교류가 용이하다.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표준을 따르고 API도 지원하고 있어, Open edX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LMS와의 콘텐츠 교류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K-MOO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관리자 기능’, 둘째, 강좌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수자 기능’, 셋째, 강좌를 실제로 수강하는 ‘학습자 기능’이다.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 회원가입자 및 강좌 관리, 강좌 운영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강좌 개발 및 운영, 학생관리 및 평가, 강좌 데이터 분석 등 참여 기관이 강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능을 활용한다. 특히 학업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 선다형, 수식 입력, 텍스트 입력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유형 뿐 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등의 이미지 기반 문제, 학생들이 서로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호평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유형을 지원한다. 또한 ‘K-MOOC Insights’라는 강좌별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들의 행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통계 지식이 부족한 교수자도 데이터에 기반한 강좌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강좌 수강신청 및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 진행 상황, 학습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및 강좌 내 영상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그림 4-6] K-MOOC 시스템 구성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3. 사업(제도)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한국형 무크(K-MOOC)는 2015년 10월 개통 이후 약 한 달간 홈페이지 방문이 약 24만

건, 수강 신청자는 약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만 2년 정도가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홈페이지 방문 약 474만 건, 수강 신청 약 45만 건, 회원가입자 수는 23만명으로, 개인학습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점인정 등 강좌의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강좌의 이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4〉 K-MOOC 연도별 실적

구분	15년도(10월~)	16년도	17년도	합계	
예산	2,268백만원	4,018백만원	6,928백만원	13,214백만원	
참여대학 수	10개	28개	32개	70개	
강좌수	27개	116개	181개	324개	
학습자 이용건수	방문	446,832건	1,735,710건	2,562,074건	4,744,616건
	회원가입	34,793명	80,232명	112,819명	227,844명
	수강신청	55,559건	126,092건	263,756건	445,407건
	이수자	2,058건	9,447건	29,442건	40,947건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회원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0.2%)를 중심으로, 30대(15.4%), 40대(15.8%)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 회원가입자 수(54.5%)가 여성 회원가입자 수(45.5%)보다 조금 더 많다. 학력 분포도 학사 수준의 학습자(32.5%)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25.9%) 학습자가 많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학습자도 15.7%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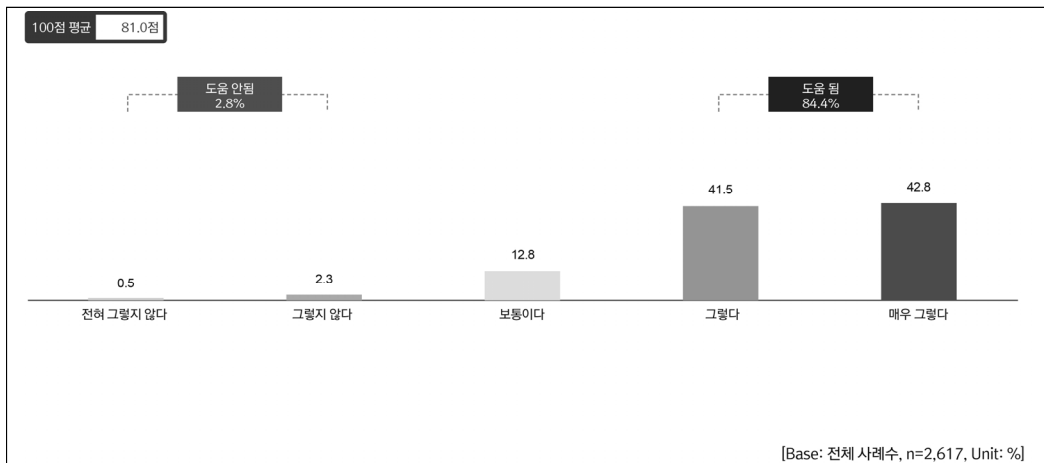
〈표 4-25〉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가입자 수

연령 \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기타	계
20세 미만	0 (0.00)	77 (0.03)	249 (0.11)	44 (0.02)	12,306 (5.40)	14,706 (6.45)	1,104 (0.48)	6,152 (2.70)	34,638 (15.20)
20세~29세	136 (0.06)	1,758 (0.77)	27,536 (12.09)	2,234 (0.98)	40,875 (17.94)	1,661 (0.73)	50 (0.02)	17,275 (7.58)	91,525 (40.17)
30세~39세	1,338 (0.59)	7,541 (3.31)	18,379 (8.07)	1,564 (0.69)	1,451 (0.64)	18 (0.01)	16 (0.01)	4,712 (2.07)	35,019 (15.37)
40세~49세	3,244 (1.42)	9,141 (4.01)	15,502 (6.80)	2,143 (0.94)	1,941 (0.85)	25 (0.01)	14 (0.01)	3,813 (1.67)	35,823 (15.72)
50세~59세	3,085 (1.35)	6,022 (2.64)	9,252 (4.06)	964 (0.42)	1,640 (0.72)	39 (0.02)	20 (0.01)	1,536 (0.67)	22,558 (9.90)
60세 이상	1,345 (0.59)	2,111 (0.93)	3,139 (1.38)	327 (0.14)	771 (0.34)	53 (0.02)	34 (0.01)	501 (0.22)	8,281 (3.63)
계	9,148 (4.02)	26,650 (11.70)	74,057 (32.50)	7,276 (3.19)	58,984 (25.89)	16,502 (7.24)	1,238 (0.54)	33,989 (14.92)	227,844 (10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 기타는 시스템 상에서 학력 미가입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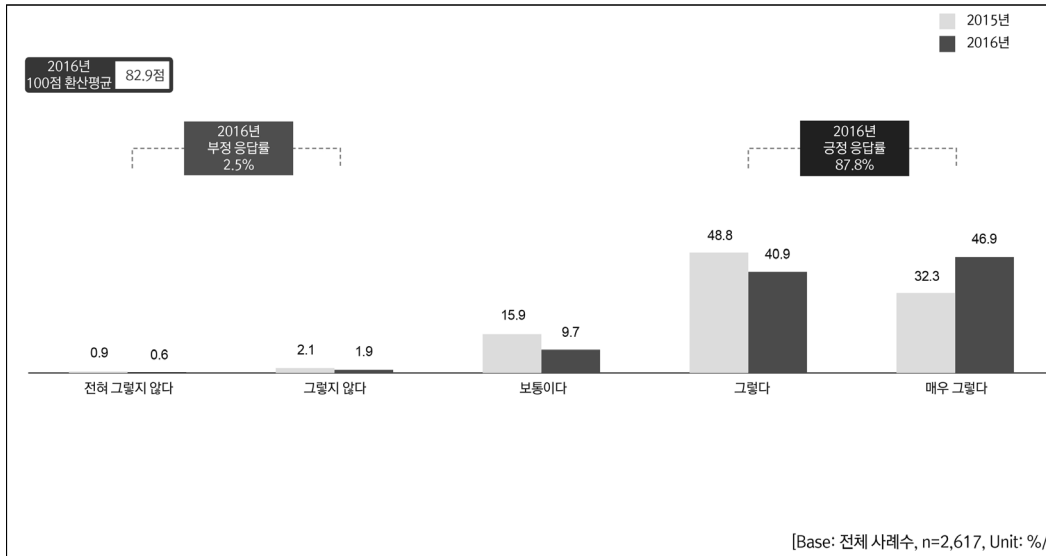
2017년에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K-MOOC 강좌 수강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4.4%는 강좌 수강이 당초 수강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년의 72.8%보다 11.6% 증가한 결과이다.



[그림 4-7] K-MOOC 수강 후 목적 달성 도움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또한, K-MOOC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8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2016년 대비 긍정 응답률이 6.7% 상승하였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14.6%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8] K-MOOC 종합만족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주: 전년도 개발강좌 대상조사(ex). 2017년에는 2016년 개발강좌평가

학습자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유인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대학이 K-MOOC 강좌를 학점인정 혹은 플립드러닝 강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활용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MOOC와의 협력 차원에서도 일본의 J-MOOC, 태국의 Thai-MOOC, 프랑스의 FUN-MOOC와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K-MOOC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K-MOOC를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시사점

2015년 K-MOOC 개통 이후 K-MOOC 강좌 개발 대학 및 강좌수가 점차 증가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강좌의 양적 확보수준과 다양성이 해외 MOOC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주요 해외 MOOC 운영기관인 Coursera의 경우 약 1,800여개의 강좌, edX의 경우 약 1,50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MOOC 강좌를 활용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용이 학내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 재교육,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K-MOOC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K-MOOC 서비스의 정착 방안 및 단계적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 및 강좌의 질 관리, 우수 강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 MOOC와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강좌 이수증 발급시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강좌 개발·운영 대학의 수익창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4. 향후 과제

K-MOOC 사업은 강좌 수가 확대되고 대학 내 서비스가 정착됨에 따라 그동안의 방향에서 더 나아가 산업현장의 재직자 및 퇴직자까지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하여 전문강좌를 개발하고 이를 묶음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차년도부터 검토중인데, 그동안의 사업 방향이 대학 우수과정의 디지털화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직무역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강좌가 확대될 예정이다.

〈표 4-26〉 K-MOOC 전문(목음)강좌 개발(안)

구분	일반 강좌	전문 강좌(목음형태)
주 학습자	대학생, 일반인	재직자, 구직자, 전직희망자
활용	대학내 활용, 성인 직업기초교육 (플립드러닝, 학점인정 등)	산업체 실무 위주 (사내 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분야	교양, 직업기초역량, 4차산업입문	4차산업심화분야, 기업실무분야
수준	고등교육(대학 및 기초실무)	전공심화 또는 석사과정
구성	단일강좌	목음강좌(3~7개)
개발방식	대학이 단독 개발	산업체와 대학 협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K-MOOC 구축·운영을 위한 학습분석 방안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기본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16). 2016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17).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16). 『2016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공고. 교육부.
- 교육부(2017).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공고. 교육부.
- 기영화 외 9인(201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절 평생학습계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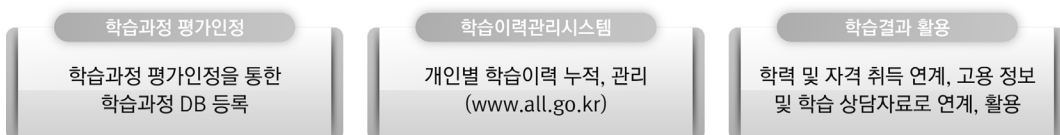
1. 제도 개요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하고,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계좌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학교교육의 결과 뿐만 아니라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1995년에 제안되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200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되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부터 전국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이 실시되고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2. 제도 추진 현황

가.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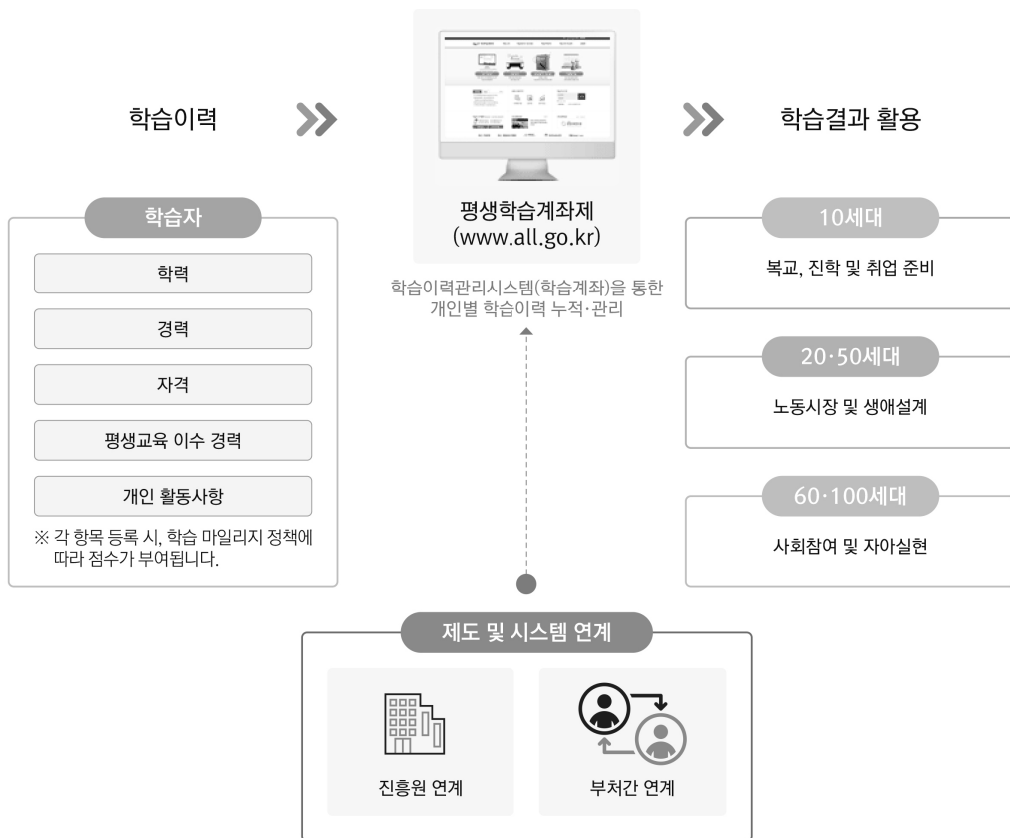
평생학습계좌제의 사업 구조는 크게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그리고 학습 결과의 활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4-9]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구조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은 학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만든 학습계좌에 개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 실적, 특기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공간이다. 학습결과의 활용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력 및 자격과 연계하거나, 누적한 학습이력을 고용 관련 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계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



나. 주요 현황

2017년 신규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12,549명이다. 평생학습계좌제 시행 첫 해인 2010년 학습계좌 개설자는 977명이었고, 2017년 현재 누적 계좌개설자 수는 66,592명으로 약 68배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학습계좌 개설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만명이 넘는 학습자가 학습계좌를 신규 개설하였고 2016년 일시적으로 학습계좌 개설자 수가 감소하였다가 2017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4-27〉 학습계좌 개설자 수

연도	학습계좌 개설자 수
2013	15,709명
2014	11,240명
2015	14,419명
2016	8,055명
2017	12,549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12.31.)

2017년 신규 등록된 학습이력 건수는 48,641건이다. 학습이력 등록건수는 학습계좌 개설자가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활동(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외국어, 독서 등)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개수를 말한다. 2010년 학습이력 등록건수는 3,615건 이었고, 2017년 현재 누적 학습이력 등록건수는 215,061건으로 약 59배 증가하였다. 학습이력 등록은 매년 약 4만 건 정도 이루어지며,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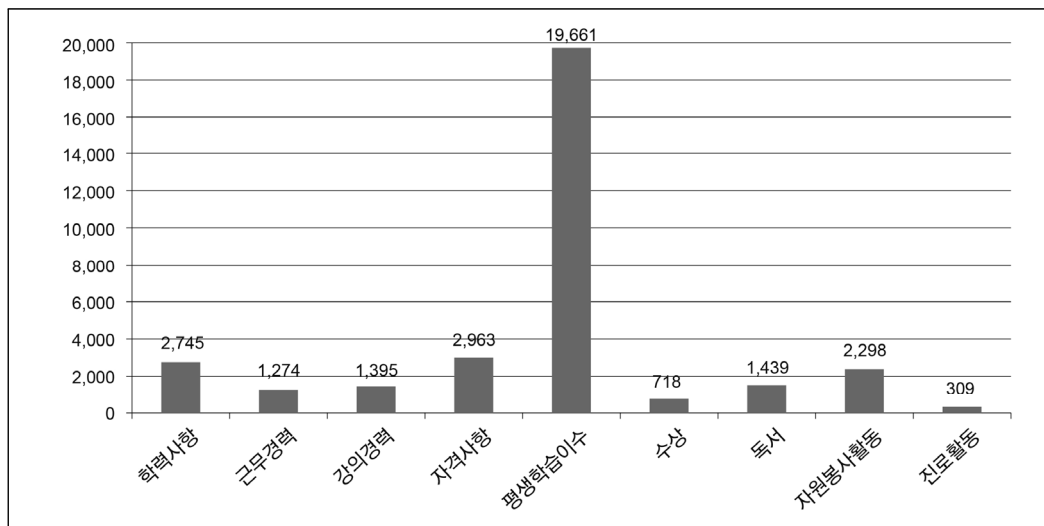
〈표 4-28〉 학습이력 등록건수

(단위 : 건)

연도	학습이력 등록 합계	구분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
2013	33,924	11,013	3,583	2,402	13,402	3,524
2014	40,724	4,013	2,901	1,612	25,539	6,659
2015	36,884	4,842	2,857	8,450	13,170	7,565
2016	44,895	2,947	3,483	2,283	30,669	5,513
2017	48,641	3,120	3,017	3,185	32,709	6,610

* 기타 :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및 기고, 특허, 해외경험/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 및 동아리 등

[그림 4-11]을 보면 등록 학습이력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평생학습 이수이다. 그 다음으로 자격사항, 학력사항, 자원봉사활동, 독서, 강의경력, 근무경력 순으로 이력등록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2017년 학습이력 유형별 등록건수

2017년 현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는 21,630개(누적)이고, 초·중·고졸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 수는 6,545개(누적)이다.



학습계좌 개설자의 학습이력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타 부처 및 유관 기관사업과의 학습이력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2013년 이후 주요 협약기관 및 연계사업(제도)는 <표 4-29>와 같다.

〈표 4-29〉 평생학습계좌제 협약기관 및 유관사업(제도) 연계 현황

연도	연계 내용
2013	LG전자(이력증명서), 한국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학습이력)
2014	늘배움(학습이력), 학부모On누리포털(학습과정/이력), 한국생산성본부(자격이력), 국방부 나라사랑포털(학습과정/이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습과정/이력)
2015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자격이력),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학습과정/이력), K-MOOC(시스템 로그인 연동), 한국저작권위원회(학습이력)
2016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연수이력), 평생학습단과대학 지원사업(학습과정/이력),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원연수이력), K-MOOC(학습이력), 학점은행제(학위취득정보), 독학학위제(학위취득정보), 행복학습센터(학습이력), (재)아침편지 문화재단(학습이력)
201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보망(HRD-Net)(학습이력), 국립특수교육원(학습이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팍(유사서비스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연계협약 체결)

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추진 현황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심사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평가인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육 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등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2017년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형과 유형별 신청요건은 <표 4-30>과 같다.

〈표 4-30〉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 요건

평가인정 유형	개별 학습과정 단위		전체 학습과정 단위	
	오프라인 학습과정	온라인 학습과정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가면제
신청대상 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유형별 신청요건	(학습과정) 기간 및 운영 시간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최근 1년 이상, 학습 과정을 연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학습과정)차시 또는 운영 시 수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최소 3 개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학습과정)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소속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평가인정은 2013년과 2014년 연 2회 실시되었고, 2015년은 중단되었다가 2016년 다시 연 2회 실시되었으며, 2017년은 연 1회 실시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연도별 실시 횟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단위 평가인정은 8차(2013년 11월), 10차(2014년 11월), 13차(2017년 9월) 평가인정에서 실시되었다.

2017년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는 5,207개이고, 2017년 기준 누적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는 21,630개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급격히 증가하고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소폭 감소하였다.

〈표 4-31〉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인정학습과정	655	3,427	4,708	5,864	5,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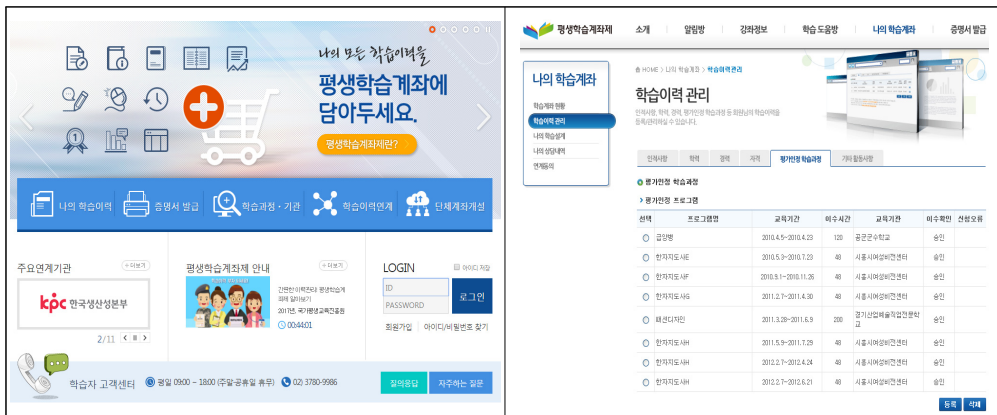
2017년 평가인정 받은 오프라인 학습과정을 평생교육 6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직업능력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문교양 분야 학습과정 수가 많았다. 기초문해, 학력보완, 시민참여 분야는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특정분야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평생학습계좌제는 온라인상에 개설하는 학습계좌로서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all.go.kr>)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림 4-12]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주요 화면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별 학습이력의 누적·관리기능 및 증명서 발급과 학습자 상담, 평가인정 학습과정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검정고시 면제과정 정보 및 제도 안내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학습자는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학습계좌에는 개인의 인적 사항, 초·중·고·대학(원) 학력, 자격증 취득 실적,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 실적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육 및 연수·자원봉사·외국어·취미 및 동아리·수상·독서활동·저술실적·특허출원 등 각종 특기 사항 등도 추가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계좌 개설자의 학습이력 통합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기관·제도와의 학습이력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HRD-net(직업훈련정보) 자동연계,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자동연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생학습계좌제와 타기관·제도 시스템 연계 현황은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평생학습계좌제와 타기관·제도 시스템 연계 현황

마. 학습결과 활용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초·중등 학력인정과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초·중등 학력 연계방안에는 검정고시 과목 면제, 방송통신중·고 과목 이수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 3가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의 시험(국·영·수 제외)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별도로,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7년 제10차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평가에서 235개 학습과정을



연계하여, 검정고시 연계 누적 학습과정은 총 6,545개이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고학생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해당 학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시 최대 1년의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 관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2/3 범위에서 이수 인정(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중 2단계까지 이수 인정 가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학습이력 활용은 제도화된 부분이 없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취업, 이직, 경력 설계 등 노동시장에서 학습이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사업 운영 성과

가. 추진성과

2017년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운영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계좌 학습자 참여 확대이다. 2017년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12,549명으로, 2016년 8,055명보다 약 4,500명 증가하였다. 2017년 학습이력등록건수 48,641건으로 전년대비 8.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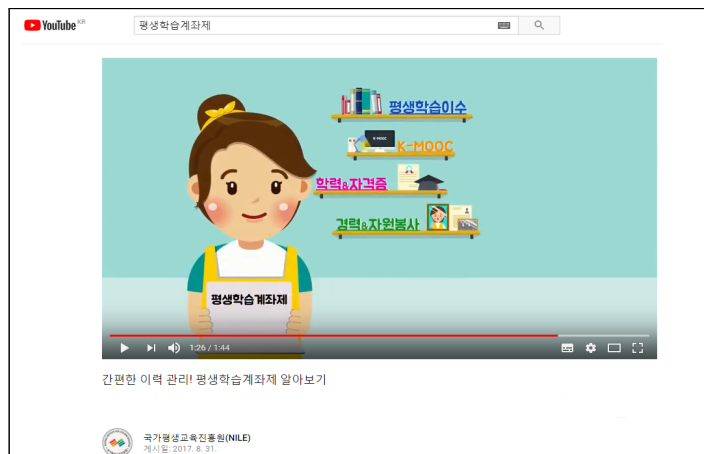
둘째, 타기관·제도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학습이력관리 기능 강화이다. 2017년 7월 평생학습계좌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정보(HRD-net)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훈련이력과 학습이력의 통합관리 및 구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수교원 연수 이력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팍) 운영 중단에 따라, 기존 체험활동이력 이전 및 신규 이력 등을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듀팟 이용자의 이력관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학학위제 과목 정보 및 학위 취득 이력 자동연계, 학점은행제 학점 및 학위 취득 이력 자동연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자 및 연수과정 이수이력 연계, 평생학습 중심대학 학습과정 및 학습자 이수내역 연계, K-MOOC 학습과정 이수 이력 연계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타 제도·사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허브로서의 평생학습계좌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학습이력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이다. 학습경험인정제(RPL)를 활용한 학습이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초·중등 학력연계 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력연계 제도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제도 인지도 및 고객 서비스 강화이다. 2017년에 평생학습 계좌제 홍보대사 15명을 선발하였고,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신규 제작하여 Youtube, Facebook 등 SNS에 게시하였다.



[그림 4-14]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동영상



2017년은 제12차 및 제13차 평가인정 교육기관 실무자 대상 집합연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운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개편 및 학습이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개선 (발급 양식 다양화, 증빙자료 출력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나. 시사점

2017년은 고용노동부 HRD-net과의 자동연계를 완료함으로써, 훈련이력과 학습이력의 통합관리 및 구직자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타기관·제도와의 자동연계 확대 등에 힘입어 학습이력등록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학습계좌 개설자 수도 증가하였다. 반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기관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평생학습계좌제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평생교육 바우처 등 학습비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현재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검정고시 과목 면제, 방송통신중·고 과목 이수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 등 초·중등 학력에만 제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학습경험인정제(RPL) 등을 통해 학력·자격과의 연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중인 국가역량체계(KQF)에 따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개편하는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체제 정비이다. 학습이력의 지역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학습자 상담 및 생애학습설계 서비스의 제공 방안 마련이 향후 주요 과제이다.

참고문헌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

교육부(2017). 2017년 평생학습계좌제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2017).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교육부.

총
론
제1부

평생교육의
목적
제2부
평생교육의
목적
및
전달체제

평생교육
현황
제3부
평생교육
현황

평생교육
문화
구성
제4부
평생교육
문화
구성

평생교육
의
전망
및
과제
제5부
평생교육
의
전망
및
과제

제2장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활동



제1절 공공단체의 활동

1. 공공단체의 활동 개요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공공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153개 평생학습도시 협의체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상호간 교류와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세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또한 협의회는 매년 평생학습 선진사례에 대한 공동 연수를 통해 평생학습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균형 발전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평생학습 선진사례 연수, 시·도 평생교육 정책토론회, 시·도 평생교육 한마음 성과 공유회, 정책 연구조사 사업,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간 주제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평생학습 선진사례 연수는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독일, 스웨덴, 영국을 방문하여 유럽 국가의 평생학습 사례를 파악하여 평생학습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균형 발전 추진전략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7월 10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공동 주최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기초발제로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평생교육” (이희수 중앙대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법 개선”(양병찬 공주대 교수), “전생애 평생학습이력 관리제 운영 방안”(김진화 동의대 교수), “5천만 국민 학습권의 시작,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신민선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강대중 서울대 교수) 등이 이어졌으며, 5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상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벤치마킹, 공동사업 논의, 상호 사업 공유 및 컨설팅, 연구 과제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진흥 정책을 발굴하고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주제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교육관계자들과의 정보 및 성과 공유 등 소통과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이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 평생교육 성과 관리 방안 모색 및 현장 평생교육사 릴레이 토론을 6개 그룹으로 나눠 합성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우수 평생교육 사업을 보급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 평생교육 한마음 성과 공유회를 2018년 1월에 실시하였다. 성과공유회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간 주제별 네트워크 사업 사례 발표, 평생교육 도시의 정책 사업과 내용 공유 및 팀 빌딩, 공동체 프로그램, 진흥원별 경연대회, 진흥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원별로 특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진흥원의 2017년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등 및 중학 학력인정 교원을 확보하고 문해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문해교육 교사 양성과정, 기존 교사의 보수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는 문해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기초 자치단체와 문해교육기관에 종합적 정보제공으로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해교육기관 현황자료 수집·분석 및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문해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문해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체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셋째, 평생교육 관계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평생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관내 산재된 평생학습동아리 통합 DB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우수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 정보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와 연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2017년 7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평생학습,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평생학습대토론회가 열렸다.

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간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학습도시의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에게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평생학습의 인식을 확산시켜 평생학습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9월 21일에 설립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07년 11월 22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5조에 2항에서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 1항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임의단체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우선, 2011년부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도시의 재정 지원 사업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1~2명이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전광역시



동구, 청주시, 부산광역시 서구, 경주시, 군산시 등 6개 평생학습도시에 천만원씩 지원하였다.

둘째,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계자 3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은 5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이 평생교육사업 중점과제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셋째, 2017년부터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의 평생학습도시 관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전국 평생학습자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발표대회는 평생학습 성과공유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다섯째, 전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평생 학습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학습도시의 우수 사례가 발표되었다.

3. 사업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공공단체의 2017년도 평생교육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본연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전국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대체로 기존 사업을 이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시사점

2017년 공공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은 사업의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매년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과제

2000년 평생교육법이 발효되고 2001년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추진기구가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지니지 못한 채 기존의 평생교육 사업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6대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2조1항). 그러나 공공 단체의 평생교육 사업은 이들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2016년 5월 19일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시·도 평생교육 협의회와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2).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의 공공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 기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료 또는 저가로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면서 기존 평생교육기관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비가 많이 들거나 수강생이 적어 민간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민간단체의 활동

1. 민간단체의 활동 개요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민간단체는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등이 있다. 또한 공공, 민간의 기관과 단체, 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가 2017년에 출범하였다.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 이창기)는 1976년 7월에 창립되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며,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증진과 연대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인 평생교육추진기구로 관련된 단체, 학회 등을 아우르는 사단법인이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 신민선)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거 배출되는 평생교육사(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연수 및 세미나, 시민교육 원탁토론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평생교육사 연수 및 세미나는 평생교육사의 시대 및 사회에 대한 민감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연수를 실시하며,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 평생학습 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교육 원탁토론 운영은 평생교육사 역할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하고, 평생교육사가 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며, 사회현상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문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단체는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전국야학협의회(회장 : 박영도),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회장: 김인숙) 등이 있다.

(사)한국문해교육협회(회장 : 전은경)는 유엔이 1990년 ‘세계문해의 해’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유네스코와 세계성인교육협회(ACAE; Inter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가 각 국에 문해교육단체를 설립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989년 8월 한국사회교육협회(현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던 ‘전국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 한국문해교육협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여 1989년 9월 2일 출범하였다. 설립 당시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국의 성인 및 청소년의 문해 및 기초사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①문해 및 성인기초교육에 관한 연구, ②자료 개발과 보급을 통한 교육진흥, ③문해학습 관련 독서 진흥, ④문해교육지도자 연수 및 학술회의 개최, ⑤문해 및 기초교육에 관한 국제교류와 협력, ⑥문해교육 유공자(한국문해교육상 시상), ⑦문해교육 교사자격증 과정 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14일에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사회적 운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국단위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주요 인사들의 상설회의체로 출범하였다.

좋은 시민, 행복한 지역사회를 표방하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 강전항)는 1969년 창립된 이래, 가족공동체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학교 공동체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 공동체로 활기찬 지역사회 만들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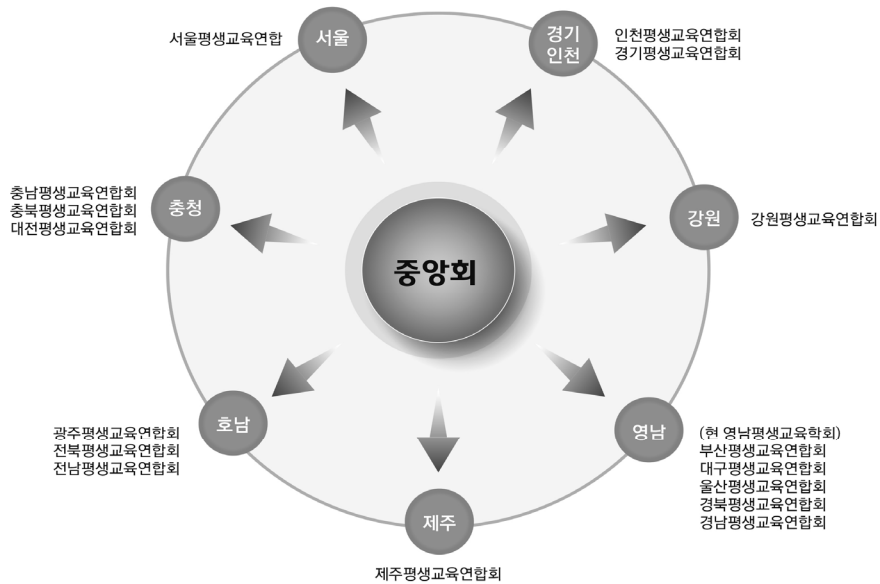
2008년 4월에 창립된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1998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돕고 학점은행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학회로는 1966년 창립된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 한송희), 1997년 창립된 한국성인교육학회(회장 : 김상길), 1989년 창립된 한국산업교육학회(회장 : 장원섭), 1997년 창립된 한국기업교육학회(회장 : 정환영), 1998년 창립된 한국인력개발학회(회장 : 배을규), 2014년 창립된 한국노년교육학회(회장 : 한정란), 2015년 창립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회장 : 김주영) 등이 있다.

2. 사업(제도 관련) 추진 현황

가.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조직은 각 지역의 평생교육 현장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평생교육연합회와 각 분야별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직능단체로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사)한국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 (사)평생교육 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4-15]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조직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생활화 운동, 평생학습축제 지원, 연차대회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 교육부와 공동 주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시민들의 학습생활화, 평생학습 참여증진을 도모하였다. 2017년 연차대회는 1월 19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전신인 한국사회교육협회 창립 장소인 경상북도 구미에서 제43차 연차대회 ‘한평년 40년, 한국 평생학습 100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둘째, 평생교육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에 최돈민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직업기술학원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3월 1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월 27일에는 평생학습타임즈와 공동 주최하여 ‘2017 차기정부 평생교육 정책의 향배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2017년 11월 14일에는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와 함께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둘째, 평생교육 관계자, 지역별 구심체 기능 강화 및 연계를 통한 연결망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제44차 연차대회를 ‘100년의 학습바람: NEXT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2017년 5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으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원조직으로 가입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위한 전문 연수를 위해 TF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연합회 및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분야별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인들 상호간의 연대와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2004년 비영리단체등록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직능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통해 학술용역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사업은 평생교육실태 및 수요조사와 그 밖의 평생교육관련 연구,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이며, 위탁사업은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등 보다 전문적인 사업 기획,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 운영, 평가의 단계를 검증 후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017년에는 한국체인스��어협회의 연구과제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 연구”(과제책임자 : 최돈민)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25일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공공행정학회 주최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인재 양성 방안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넷째, 평생교육 기관 분석 및 평생교육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 9월 시흥시의 평생학습축제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하여 ‘전국 평생학습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관하였다.

다섯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는 평생교육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성인교육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회원 단체로서 평생교육의 국제적 동향 수집 및 국내 보급, 평생교육 추진 체제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동안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의 제3차회의부터 참여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태와 추진 실적을 해외에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매년 정기적인 한·일 민간교류 차원의 일본 사회교육연구 전국집회 참가를 비롯하여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 동아시아 평생교육연합회(EAFAE)와의 연결을 통한 국제평생교육 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나.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2002년 설립되었다. 비전과 목표는 아래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비전과 목적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 전국 약 11만 명의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제공하며, 전국 각 지역에 지회를 결성하여 평생교육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과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핵심과제는 아래 <표 4-32>와 같다.

<표 4-32>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핵심과제

- 평생교육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평생교육사 전국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화 등 고용안정화 추진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분야의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핵심사업인 평생교육사 권익 신장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전담공무원제와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 내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배치 의무화와 민간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안을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전국 지회 활동 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포럼, 세미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제주 가는 평생교육사 고공행진”이라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광주, 광명, 인천, 남양주, 강원도, 포천 지회를 설립하였다. 위탁사업으로 “과연 토크쇼, 과연 평생학습 도시는 존재 하는가”, 2017 화성시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시흥시 2017 학습거버넌스, The solution, 강남구 기관장, 실무자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정책 제안으로 광화문 평생학습 1번가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1, 2차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생교육사 관련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 (사)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국의 성인 및 청소년들의 문해 및 기초교육 사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의 목적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문해교육의 연구, 학술행사, 연수, 국제교류 등으로 다음과 같다(정관 제4조).

〈표 4-33〉 한국문해교육협회의 주요사업

- 문해 및 성인 기초교육에 관한 연구
- 자료개발·보급을 통한 교육진흥
- 문해학습 관련 독서진흥
- 문해교육지도자 연수 및 학술회의 개최
- 문해 및 기초교육에 관한 국제교류와 협력
- 문해교육 유공자 표창(한국문해교육상 시상)
- 문해교육사자격증 과정 운영



1989년 창립 이래 한국문해교육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는 한국의 문해교육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었지만 5대 이선재 회장 취임이후 다시 활성화되었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지역별 문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지역(시·군·구) 문해교육인들로 구성된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15개 지부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부는 지역 문해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부도 있다.

2017년 한국문해교육협회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8일 “성인문해교육 지자체 담당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문해교육 성공전략 워크숍”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대강당에서 교육부 예산 지원으로 개최하였다.

둘째, 대외협력 사업이다. 먼저 청양군 위탁사업으로 청양군 문맹율 ZERO 선포식 및 문해백일장을 개최하였다. 또한 강원 정선군 ‘도란도란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홍보 사업으로 제3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성인문해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한국문해교육협회는 ‘늘배움’이라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문해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고, 2007년부터 카페(<http://cafe.daum.net/KoreaLiteracy>)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8,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넷째,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습자 편지쓰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학습자 편지쓰기 대회는 6,875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1,106편이 수상하였다. 12회를 맞이한 체험수기사업은 초기에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교사수기도 공모하고 있다. 2017년 체험수기 사업은 전국에서 3,065편 작품이 응모되어 413편이 수상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문해교사양성과정(문해교육사 민간자격증 부여)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총 21회가 운영되었으며, 이 가운데 보수교육 혹은 역량강화교육이 3회 운영되었다. 문해교육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총 689명이 교육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문해교육사 3급자격증 취득자는 544명, 2급자격증 취득자는 11명이다. 문해교사 연수 사업은 위탁(지자체가 한국문해교육협회에 위탁), 프로그램 파트너(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프로그램운영 담당), 자체운영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이밖에도 대선 기간 동안 문해교육단체(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성인문해교육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문재인후보 공약에 ‘성인문해교육기회확대’가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대통령 100대 공약집에도 포함되었다.

라.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이하 전평연)는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회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평연은 2017년 6월 9일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언 공청회 준비 1차 모임에 이어 2017년 7월 10일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언 제1차 공청회(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장소: 국회도서관)를 계기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3개 공청회 주관 단체 간담회에서 국회 평생학습의원포럼 및 후속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를 결성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1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전평연 창립대회 및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에서는 경과 보고, 규약 채택, 임원 선출, 창립 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창립대회에서는 ‘평생학습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새 길을 열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창립대회에 이어 개최된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2차 공청회”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련 법안의 제·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공청회는 기초발제로 새로운 평생교육교육 체제 구축(권두승 교수), 법안 발표로 민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인제 도입(최돈민 교수), 인생 제3기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최일선 교수),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방안(양병찬 교수),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체제 구축(김현수 교수)이 있었다.

마.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①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② 회원 간의 자율적인 협력, ③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 ④학점은행제 운영기관장, 실무자 및 교·강사를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 등 회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 향상, ⑤회원 기관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점검, ⑥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 ⑦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기관 학습자 대상 ‘학점은행제 학자금 용도 대출’을 시행하여 203건, 77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017년 6월 3일(토)부터 6월 11일(일)까지 전국학점은행기관장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운영실태 및 정보 공유, 핀란드의 원격교육 운영 상황 및 정보 공유, 스웨덴의 대학평생교육원 활동 파악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후속조치를 취하였고, 원격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였다. 또한 법제처 주관으로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차별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및 관련 부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매년 실시하던 학점은행 기관장 교직원 직무연수는 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바.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는 1966년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로 출발하여, 1991년부터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연구회를 한국사회교육학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 및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평생교육학회는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평생교육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론체계 정립과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평생교육학회는 연차학술대회 및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평생교육 세미나를 개최 또는 후원하며, 평생교육학 관련 학자 및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월례평생교육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학회지 「평생교육학연구」의 발행 기타 관련 출판물을 간행하고 중앙부처, 지방정부, 각종 평생교육관련 실천 단체, 타 학술 단체 등과의 교류를 실시하며 매년 일본사회교육학회와 한일 학술교류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 사업(제도)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2017년 민간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10년이 경과하면서 실천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평생교육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평생교육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는 그동안 양성 배출된 11만명의 평생교육사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계약 조건과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사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개선은 물론 보수 교육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시사점

평생교육을 실제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지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간단체에서 평생교육 활동은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직무·보수 교육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사의 배치 확대와 합당한 능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평생교육사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사 간 네트워크와 경력 관리 체제를 통하여 평생교육사의 권익을 높이고 이에 합당한 처우와 지위를 담보해야 한다.

4.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 사회에서의 평생학습·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준비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평연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평생교육법에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하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민교육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만약에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 아동 감소로 문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유급학습휴가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의 경로당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배달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배달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퇴직자 중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로당의 행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현재 교육부 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 수준이다. OECD국가 평생교육예산 평균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평생학습진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2017). 창립총회자료.

한국기업교육학회 홈페이지(2017). www.hrdkorea.com/

한국산업교육학회 홈페이지(2017). <https://kstd.jams.or.kr/co/main/jmMain.kci>

한국성인교육학회 홈페이지(2017). <http://www.aceofkorea.or.kr/>

한국인력개발학회 홈페이지(2017). www.koreahrd.or.kr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홈페이지(2017). http://kace.or.kr/p01_03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홈페이지(2017). <http://kale.or.kr/bizdemo22372/>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홈페이지(2017). www.kfle.or.kr/

한국평생교육학회 홈페이지(2017). www.lifelongedukorea.or.kr/

한국학점은행협의회 홈페이지(2017). <http://www.cacb.kr/>

제5부

향후 평생교육의 전망 및 과제



평생교육백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연례 보고서이다. 한 해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다음 해의 전망을 담는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사회교육법」을 대체한 이후로 한국의 평생교육은 가시적인 여러 변화를 만들어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대상, 성인문해교육 법제화, 대학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행정 체제 구축 등 큰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열악한 공공 재정 투자, 평생학습 참여 불균형 등 문제점들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간 발행된 평생교육백서에는 지난 20년 동안 평생교육계의 성취와 변화,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생교육백서는 그 자체로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상을 조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2013년 평생교육백서 발간 이후 지난 3년 동안 백서 발간이 중단되었다. 그동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평생교육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모든 시도에 설치 혹은 지정되었다. 문해교육센터 설치와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런 변화들을 매년 발간되는 평생교육백서에 그때그때 기록하고, 성과를 점검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제 2017년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재개해 그간의 변화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은 2013년에 수립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목표, 평생교육 기반구축, 투자 확대와 소요재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2018년 2월에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아래에서는 2017년까지 평생교육 영역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상을 돌아보고,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2013 ~ 2017년의 성과와 한계

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년 평생교육백서가 발행된 이후의 성과는 사실상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동일하다.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던 제3차 기본계획은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의 네 영역에서 12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두드러진 평생교육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광역-기초 수준의 추진 체제를 갖추었다.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이어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진용을 갖추었다. 시도평생교육협의회도 17개 시도에서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2014년 11개, 2015년 7개, 2016년 7개, 2017년 10개로 지속되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53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도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규정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2014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29개 시·군·구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했다.

둘째,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가 2015년 10개 대학 27개 강좌로 시작해 2017년 말까지 324개 강좌로 확대되었다. 강좌 이수자도 4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강신청 건수는 44만5천여 건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보망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과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의 연계 체제도 구축되었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필요한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셋째, 대학 중심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도입하는 등 성인 학습자의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에 정규 강좌를 제공하는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사 운영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장학제도를 도입해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다. 성인학습자의 수학 연한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일반대학에서 산업체, 연구소의 근무경력은 물론 국외에서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험 학습인정제도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도 비교적 뚜렷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제1차 기본계획은 총 695억원을, 제2차 기본계획은 총 3,358억원을, 제3차 기본계획은 총 3,779억원의 재정 소요를 적시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숫자였다. 제3차 기본계획의 예산 규모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영역의 과제에 전체 예산의 37.2%가 배정되어 대학 평생교육 분야에 예산 편중도가 높았다. 둘째, 계획의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그 시행을 평가할 주체가 분명치 않았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이 시행된 5년 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현장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셋째, 평생교육은 교육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중앙정부 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은 대부분 교육부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나. 평생교육 통계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

지난 5년간 한국의 평생학습실태 조사 결과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대략 35%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30.2%, 2014년 36.8%, 2015년 40.6%, 2016년 35.7%, 2017년 34.4%의 참여율은 2008년 26.4%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간의 평생교육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6년 OECD국가 평균 참여율인 40.4%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 나타난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참여율을 무색하게 만든다. 대학생이 많은 20-24세 연령대인 성인 입문기 남성은 2시간 7분, 여성은 1시간 25분씩 학습하지만, 25-39세 연령대인 성인 초기에는 남성 10분, 여성 12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학습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60세 이상이 되면 하루 평균 2분 정도만 학습에 사용한다. 이런 경향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국인은 성인 입문시기까지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인초기가 되면 역량 수준이 급격히 감소한다. 계층간, 집단간 평생학습 참여의 불균형 현상도 뚜렷하다.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참여율은 대졸 이상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약 21.2%p 차이가 난다. 학력별 참여율은 중졸 이하 23%, 고졸 29%, 대졸 이상 44.2%이다.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비율은 14%이며, 고졸 학력 소지자는 40%에 달한다.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참여율 격차는 2007년 조사에서 19%p였다. 10년 동안 평생교육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둘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져 55~64세 이상 중·고령자의 참여율은 25~34세에 비해 12.9%p 낮다. 연령대별 참여율은 25~34세 41.8%, 35~44세 39.2%, 45~54세 34%, 55~64세 28.9%, 65~79세 26.9%이다. 특히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5~34세가 22.7%인데 반해 55~64세는 8.6%로 14.1%p의 격차가 있다.

셋째,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참여율 차이는 21.4%p에 이른다. 가구소득별 참여율은 150만원 미만 20.9%, 150~300만원 미만 27.2%, 300~500만원 미만 33.6%, 500만원 이상 42.3%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참여율 격차는 2007년 조사에서는 12.3%p였던 것이 10년 만에 21.4%로 확대되었다.

넷째, 비정규직·비임금 근로자의 참여율이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참여율이 40.9%인데 반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3.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28.1%이다.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참여율 격차는 17.5%p이다.

다섯째, 규모가 작은 직장에 근무할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다. 10명 미만 직장 근무자의 참여율은 300명 이상 직장 근무자 참여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직장 규모별 참여율은 10명 미만 26.9%, 11~49명 38.8%, 50~99명 44.3%, 100~299명 52.4%, 300명 이상 57.8%이다. 평생학습 참여에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필요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 완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망

가. 비전과 전략

한국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면서도 일자리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생애 전반부에 학교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일자리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복지 비용 마련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중고령층의 증가는 평생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겪은 두 차례의 경제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저성장의 그늘을 짙게 드리웠다. 그 결과로 비정규직 증가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마련되었다. 전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급속한 기술 변화의 시대에 국민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평생교육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과 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이른바 4P 전략을 내세웠다. 4P는 사람(people), 참여(participation), 성장과 번영(prosperity), 연계와 협력을 뜻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대변한다.

첫째, 사람 전략은 평생교육 현장에 프로그램 공급 중심으로 접근해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우선시하는 전략이다. 그동안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를 견인해온 가장 큰 힘은 프로그램의 양적인 공급 확대였다. 양적인 공급 확대는 평생교육기관이 강사에 의존하는 현상을 낳았다. 학습자들의 참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을 현장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공급자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학습자는 프로그램의 수동적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경험이 교수자의 경험보다 중요하다는 안드라고지의 원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은 학습자를 가장 중시한다. 평생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람(학습자)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운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

둘째, 참여 전략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사람 전략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일회성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습자 상담과 가능한 학습경로의 안내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 지에 대한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습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이끌어내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참여 전략은 평생교육 정보망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평생교육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학습자의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적의 학습 설계와 학습자 상담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셋째, 성장과 번영 전략은 평생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을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특히 노후를 맞은 이들이 즐기는 여가와 취미 활동인 것처럼 오해한다. 물론 평생교육은 노후를 맞이한 이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사회 정책으로 평생교육은 전 연령대의 국민들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자신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가령, 대학이 평생교육정책의 대상이 될 때 대학은 학령기 학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을 위한 학위와 비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인식된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자연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인적자원에 미래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역량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각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의 초석이다.

넷째, 연계와 협력 전략은 보다 유기적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교육진흥원-기초평생학습관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 추진체제가 관료적 위계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생교육 요구와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상호 발전해나아가야 한다.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들과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들이 판박이처럼 똑같아질 것이 아니라 고유한 특색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 존재할 때 창조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협력의 시너지가

생겨날 수 있다. 개인학습자 차원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 정비로 자신의 학습 결과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누적된 학습결과가 자격과 학력 등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견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평생교육기관들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나. 주요 추진 과제

제4차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의 네 영역에서 19개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영역 별로 주요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학습비 부담을 줄여주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2018년부터 도입된다. 2018년에는 2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약 5천명을 지원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4만5천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유급학습휴가제를 확산시킨다. 2018년에는 20억 규모로 대체인력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대학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학업의지가 있는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대학원 과정을 대학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포함한다.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평균 7만명 이상이 문해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문해, 정보문해 등 생활문해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등록 장애인 250만여 명의 약 60%가 중졸 이하의 학력인 점을 감안해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둘째,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해 무크(MOOC) 등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직업교육에 특화된 무크(MOOC) 강좌, 4차 산업혁명 관련 무크 강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공유,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제4차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융합전공, 경험학습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새로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위해 평생학습도시의 성과평가를 통한 특성화 지원,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자발적 시민학습모임 지원을 추진한다.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153개 지정되어 있지만 도시별로 프로그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가 지자체 장의 관심과 재정 여건 차이로 도시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를 법제화하고 도시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평생교육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안전재난대응교육, 환경교육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정부 내 여러 부처들이 연계해 제공한다. 2022년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모임 9,000개 내외를 육성한다.

넷째,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관련 통계를 개선하며, 평생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를 구축하고, 평생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온라인 평생교육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에는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본이 1만1천명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표본을 3만3천명으로 늘린다. 2021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한국 평생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 나간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EBS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재정 투자 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해 파악하고 이를 공시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이전에 수립되었던 세 차례의 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평가와 환류 체제를 갖춘 점이다. 이전 계획들이 중장기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재정 투자 미비로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았다. 또한 이행한 과제 역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추진 정도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의 개정도 추진된다.

3. 나가며

한국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의 결과로 2000년 「평생교육법」이 시행되고 2002년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국가 수준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이 확대되었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과 온라인 평생교육이 강화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추진체제도 갖추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삼아 한국 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평생교육은 학교제도 외부에 학령기 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과 민간의 시설을 만들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 확장은 사회경제적 계층, 학력의 수준에 따른 참여율 격차를 불러왔다. 그 결과 중상층과 고학력 집단일수록 평생교육의 혜택을 더 누리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학령기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결핍이 학령기 이후에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평생교육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유급학습휴가제, 평생학습바우처 등 제4차 기본계획에 도입된 정책들이 면밀하게 설계되어 안착되어야 한다.

둘째, 보다 과감한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지난 5년간 예산은 연평균 3.6% 정도씩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평생직업교육예산은 연평균 4.5% 비율로 줄어들었다. 유치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이 각각 3.4%, 5.2% 비율로 늘어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 64조여 원의 0.1%에 불과한 6,600억 가량이다. 이 정도 재정 투자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교육 예산을 연평균 7% 정도씩 늘여가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다른 분야의 증가율 보다 높다. 그러나 2021년에도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비율은 교육예산의



약 0.1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평생교육 재정 투자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제4차 기본계획의 시도별 평생교육 관련 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일인당 예산 투자가 적은 곳은 4천원에 불과했지만 많은 곳은 7만4천원에 달했다. 평생교육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확충된 자원의 균형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사 배치와 연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는 학습자 숫자와는 무관하게 기관별 1인 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규모 평생교육시설이나 인구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하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제도 개선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사 자격 자체의 관리를 위한 상설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사 제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작은 부서에서 자격의 발급, 연수 등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장의 관심도가 크지 않으면 자격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관리기구에서 자격 제도의 개혁 방안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조건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 부문 평생교육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공무원 직렬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교육, 인권교육, 직업교육, 환경교육, 여성교육 등 민주주의 확산과 국민 생활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평생교육 추진체제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타부처와 교육부가 보다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부처의 각종 교육 정책사업들이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 한국 사회에 풀뿌리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들은 참여 주민들의 평생교육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조율이 중앙과 지방 단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백서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편집위원

이해주 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대중 (서울대학교)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양병찬 (공주대학교)	이희수 (중앙대학교)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중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동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집필위원

강구섭 (전남대학교)	강대중 (서울대학교)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김민호 (제주대학교)	김진화 (동의대학교)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박상길 (서울시교육청)	박효신 (청주대학교)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양병찬 (공주대학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해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희수 (중앙대학교)	정진철 (서울대학교)	최도민 (상지대학교)
한정란 (한서대학교)	현영섭 (경북대학교)	<가나다 순>
김세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재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정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민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민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영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종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현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오창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미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길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수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승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선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나다 순>	

기획위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성연 (평생학습정책과)	권재현 (기획경영관리처)	박인섭 (제도정책연구실)
박봉서 (평생학습정책과)	심한식 (평생직업교육본부)	이중환 (제도정책연구실)
성지윤 (평생학습정책과)	장동현 (제도정책연구실)	황동섭 (제도정책연구실)

[제17호]

2017 평생교육백서

발 행 일 2018년 4월 20일

발 행 인 윤여각

발 행 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02) 3780-9700

팩 스 (02) 3780-9797

Homepage www.nile.or.kr

인 쇄 처 디자인 범신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7

평생교육백서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비매품/ 무료



9 788994 740751

ISBN 978-89-94740-75-1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